

#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연구

##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연구

2017. 1



2017. 1

#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연구

2017. 1

##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연구』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김재진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기은선 강원대학교 교수

2017년 1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박 형 수



# 목 차

I. 서론 .....	15
II. 벤처산업 현황 .....	19
1. 벤처기업·벤처캐피탈 정의 .....	21
가. 벤처기업 정의 .....	21
나. 벤처캐피탈 정의 .....	25
2. 벤처산업 현황 .....	28
가. 벤처기업 현황 .....	28
나. 벤처캐피탈 현황 .....	34
III. 벤처기업·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	43
1. 현행 벤처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 .....	45
가.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	45
나.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	50
2. 벤처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 변천 과정 .....	56
가.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	56
나.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	66
IV. 주요국의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 .....	77
1. 미국 .....	79
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79
나. 벤처캐피탈 조세지원 .....	80
2. 이스라엘 .....	82
가.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	82
나. 벤처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	83

3. 영국 .....	84
가. 벤처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	84
4. 캐나다 .....	87
가.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	87
나.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	88
5. 스웨덴 .....	88
가.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	88
<b>V. 타당성 평가 .....</b>	<b>93</b>
1.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	95
가. 벤처산업 지원의 필요성 .....	95
나.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로 인한 과소공급 문제 .....	98
2. 벤처산업 투자 현황 국제비교 .....	100
가. 우리나라의 조세지원 및 투자 현황 .....	100
나. OECD 주요국의 세제지원 및 투자 현황 .....	117
다. 요약 .....	125
<b>VI. 효과성 평가 .....</b>	<b>127</b>
1.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효과 .....	129
가. 선행연구 .....	129
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혜기업 특성 분석 .....	130
다. 벤처기업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효과성 분석 .....	137
2. 벤처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효과 .....	161
가. 선행연구 .....	161
나. 벤처투자자와 관련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평가 .....	164
3. 벤처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 .....	196
4. 벤처기업 임직원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 .....	200
5. 소결 .....	201

<b>VII. 제도 개선방안 분석</b> .....	<b>207</b>
1. 기본방향 .....	209
가. 벤처기업 위주의 세제지원에서 벤처투자자 위주의 세제지원으로 전환 .....	209
나.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 .....	212
2. 벤처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의 실효성 제고 .....	216
가. 벤처캐피탈을 비롯한 벤처투자전문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216
나. 중간 규모 벤처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219
다.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제도의 과세형평성 제고 .....	220
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과의 차별화 .....	222
가. 기술력과 혁신성에 따른 벤처기업 차등지원 .....	222
나. 지방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	224
4. 창업 후 3년 이상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226
5. ICT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227
6. 벤처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일반규정으로의 통합·단순화 .....	228
<b>VIII. 설문조사 결과</b> .....	<b>231</b>
1. 조사개요 .....	233
가. 조사 목적 .....	233
나. 조사 내용 .....	233
2. 조사 설계 .....	234
가. 표본 설계 .....	234
나. 실사 설계 .....	234
3. 응답자 특성 .....	235
가. 벤처기업 .....	236
나. 벤처캐피탈 .....	237
4. 벤처기업 조사결과 분석 .....	238
가. 기업개요 .....	238
나. 벤처기업 지원정책 전반 .....	242
다. 벤처기업 조세지원정책 .....	244
5. 벤처캐피탈 조사결과 분석 .....	257

가. 기업개요 .....	257
나. 벤처캐피탈 지원정책 전반 .....	263
다.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정책 .....	265
6. 조사 결과 요약 .....	275
가. 벤처기업 지원정책 전반 .....	275
나. 조세지원제도 인지 및 활용 여부 .....	276
다. 조세지원제도 활용 및 효과 .....	277
라.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 .....	278
마.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에 대한 세법 개정안 효과 여부 .....	279
<b>IX. 결 론 .....</b>	<b>281</b>
1. 현황 .....	283
2. 실증분석 .....	284
가. 벤처기업 .....	284
나. 벤처캐피탈 .....	285
3. 설문조사 .....	286
4. 제도 개선방안 .....	286
가.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 .....	286
나. 벤처캐피탈의 두 가지 역할 지원 강화 .....	287
다. 엔젤투자자 및 기업의 투자 지원 확대 .....	288
라. 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 보완 .....	288
마. 중기 이후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	289
바. ICT 산업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289
사. 벤처기업 구조조정 지원의 실효성 제고 .....	290
<b>참고문헌 .....</b>	<b>291</b>

## 표 목 차

<표 II-1> 벤처기업 확인요건 .....	24
<표 II-2> 조합유형별 비교 .....	27
<표 II-3> 벤처기업 연도별 증감현황 .....	29
<표 II-4> 벤처기업 업종별 현황(2016년 6월 기준) .....	30
<표 II-5> 벤처기업 확인유형별 현황(2016년 6월 기준) .....	30
<표 II-6> 벤처기업 업력별 현황 .....	31
<표 II-7>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경영성과 비교 .....	32
<표 II-8>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의 부채비율 및 자기자본비율 .....	33
<표 II-9> 벤처캐피탈회사 현황 .....	34
<표 II-10> 창투자조합·벤처조합 등록 및 운영 .....	35
<표 II-11> 신기술투자조합 현황 .....	35
<표 II-12> 개인투자조합 현황 .....	36
<표 II-13> 신규투자 현황 .....	36
<표 II-14> 업종별 신규투자 현황 .....	37
<표 II-15> 업력별 신규투자 금액 .....	38
<표 II-16> 엔젤투자 현황(소득공제 신청 기준) .....	39
<표 II-17> 회수 현황 .....	40
<표 II-18> 신규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	41
<표 III-1>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	49
<표 III-2>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	54
<표 III-3> 창업·성장단계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변천과정 .....	59
<표 III-4> 성장 및 인수·합병 단계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변천과정 .....	65
<표 III-5> 투자단계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변천과정 .....	68
<표 III-6> 보유단계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	71
<표 III-7> 양도단계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	74

<표 IV-1> 미국의 법인세율(2016) .....	79
<표 IV-2> VCT를 통해 조성된 펀드 크기 및 VCT의 수 .....	85
<표 IV-3> 주요국의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 비교표 .....	90
<표 V-1> 업종별 신규투자 현황 .....	109
<표 V-2>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신규 IPO기업의 업종별 분포(2015년 기준) .....	109
<표 V-3> 업력별 신규투자 금액 .....	111
<표 V-4> 업력별 펀드 투자현황 .....	115
<표 V-5> 2010년~2014년 4개의 투자단계별 평균 투자금액-지역비교 .....	121
<표 V-6> 엔젤투자자를 비롯한 비전문투자자의 초기단계 벤처기업 투자금 .....	123
<표 V-7> 미국과 유럽의 벤처캐피탈 비교 요약(2013년 기준) .....	124
<표 VI-1> 세액감면 창업벤처기업 및 창업중소기업 수 .....	131
<표 VI-2> 세액감면 창업벤처기업의 지역별 분포 .....	132
<표 VI-3> 세액감면 창업벤처기업의 규모별 분포 .....	133
<표 VI-4> 세액감면 창업벤처기업의 업종별 분포 .....	135
<표 VI-5> 세액감면 창업벤처기업과 창업중소기업의 특성 비교 .....	136
<표 VI-6> 창업벤처기업과 벤치마크 그룹의 정의 .....	138
<표 VI-7> 대응기업 추출을 위해 사용된 외감법인 표본추출 과정 .....	141
<표 VI-8>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효과성 분석을 위한 표본 개수 .....	142
<표 VI-9>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효과성 분석을 위한 표본의 기술통계량 .....	144
<표 VI-10> 기업그룹별 유효세율 기술통계량 .....	145
<표 VI-11> 기업그룹 간 유효세율 차이 검증 .....	148
<표 VI-12> 기업그룹별 경영성과 비교 .....	152
<표 VI-13> 창업벤처기업과 창업중소기업 경영성과 비교 .....	153
<표 VI-14> 창업벤처기업과 일반벤처기업 경영성과 비교 .....	154
<표 VI-15> 창업벤처기업과 비벤처 일반중소기업 경영성과 비교 .....	156
<표 VI-16> 창업벤처기업과 대기업 경영성과 비교 .....	157
<표 VI-17> 창업벤처기업과 대응기업 경영성과 비교결과 요약 .....	158
<표 VI-18> 업종별 효과 분석(제조업 vs. 서비스업) .....	159
<표 VI-19> 업종별 효과 분석(ICT기업 vs. 기타) .....	160

<표 VI-20> 비과세 수혜 벤처캐피탈의 재무현황 .....	166
<표 VI-21> 벤처캐피탈 유효세율 인하 효과 .....	167
<표 VI-2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의 투자현황 .....	169
<표 VI-23> 창투자 투자실적자산 규모 .....	170
<표 VI-24>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IPO 추이 .....	173
<표 VI-25>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신규 IPO기업의 업종별 분포 .....	174
<표 VI-26> IPO 소요기간 추이 .....	175
<표 VI-27>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의 경영성과 비교분석 방법 .....	177
<표 VI-28>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 성과비교를 위한 표본추출과정 .....	178
<표 VI-29>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 성과비교를 위한 표본구성 .....	179
<표 VI-30>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	181
<표 VI-31> 복수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단일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	182
<표 VI-32> 벤처캐피탈 투자가 IPO 이후 피투자기업의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 .....	183
<표 VI-33> 벤처캐피탈 투자가 IPO 이후 피투자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	184
<표 VI-34> 벤처캐피탈 투자가 IPO 이후 피투자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	185
<표 VI-35> 벤처캐피탈지분율이 IPO 이후 피투자기업의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 .....	186
<표 VI-36> 벤처캐피탈지분율이 IPO 이후 피투자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	187
<표 VI-37> 벤처캐피탈지분율이 IPO 이후 피투자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	187
<표 VI-38>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의 경영성과 비교결과 요약 .....	188
<표 VI-39> 업종별 효과 비교(제조업 vs. 서비스업) .....	189
<표 VI-40> 업종별 효과 비교(ICT기업 vs. 비ICT기업) .....	189
<표 VI-41>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개정연혁 .....	190
<표 VI-42> 과세대상근로소득(총급여) 규모별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금액 .....	192
<표 VI-43> 벤처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조세지원 현황 .....	197
<표 VI-44> 벤처기업의 임직원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조세지원 현황 .....	201
<표 VII-1>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실적 .....	212
<표 VII-2> 벤처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출실적 .....	213
<표 VII-3> 벤처기업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 인지·활용도 순위 .....	214
<표 VII-4> 벤처투자자와 관련된 조세지원제도 인지·활용도 순위 .....	215

<표 VII-5> 벤처캐피탈 비과세 수혜현황 .....	217
<표 VII-6>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223
<표 VII-7> 혁신형 중소기업별 차이 비교 .....	227
<표 VIII-1> 조사 항목 .....	233
<표 VIII-2> 표본 설계 .....	234
<표 VIII-3> 응답자 특성 - 벤처기업 .....	236
<표 VIII-4> 응답자 특성 - 벤처캐피탈 .....	237
<표 VIII-5> 설립연도 .....	238
<표 VIII-6> 벤처기업 최초 확인연도 .....	239
<표 VIII-7>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경험 여부 .....	240
<표 VIII-8> 투자받은 벤처캐피탈의 역할 .....	241
<표 VIII-9> 벤처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효과 여부 .....	242
<표 VIII-10> 확대지원이 가장 필요한 벤처기업 지원정책 .....	243
<표 VIII-11>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 정도 .....	245
<표 VIII-12>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데 도움을 받은 곳 .....	246
<표 VIII-13>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	247
<표 VIII-14>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인지 및 활용 여부 .....	249
<표 VIII-15>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효과 여부 .....	251
<표 VIII-16>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	252
<표 VIII-17>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 .....	253
<표 VIII-18>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중 개선사항 .....	254
<표 VIII-19>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에 대한 세법 개정안 효과 여부 .....	256
<표 VIII-20> 설립연도 .....	257
<표 VIII-21> 주요 투자업종 .....	258
<표 VIII-22> 주요 투자수단 .....	259
<표 VIII-23> 투자하는 기업의 주된 업력 단계 .....	260
<표 VIII-24> 주요 회수방식 .....	261
<표 VIII-25> 평균 회수기간 .....	262
<표 VIII-26> 벤처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효과 여부 .....	263
<표 VIII-27> 확대지원이 가장 필요한 벤처기업 지원정책 .....	264

<표 VIII-28>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활용 정도 .....	265
<표 VIII-29>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데 도움을 받은 곳 .....	266
<표 VIII-30>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	267
<표 VIII-31>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인지 및 활용 여부 .....	269
<표 VIII-32>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효과 여부 .....	270
<표 VIII-33>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	271
<표 VIII-34>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향 .....	272
<표 VIII-35>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중 개선사항 .....	273
<표 VIII-36>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에 대한 세법 개정안 효과 여부 .....	274

## 그림 목 차

[그림 II-1] 투자조합의 자금흐름 및 구조도 .....	27
[그림 II-2] 벤처기업 수 .....	28
[그림 II-3]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매출액 증가율 비교 .....	32
[그림 II-4] 업력별 신규투자 금액 비중 .....	38
[그림 II-5] 연도별 회수 비중 현황 .....	40
[그림 IV-1] 연도별 회수 비중 현황 각국별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 비율 .....	82
[그림 IV-2] 펀드총액 및 펀드를 관리하는 VCT 수의 회계연도별 추이 .....	85
[그림 V-1] 긍정적 외부효과 .....	99
[그림 V-2] 긍정적 외부효과의 해결 .....	99
[그림 V-3]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실적 .....	101
[그림 V-4] 벤처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출실적 .....	103
[그림 V-5]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총조세지출실적 .....	104
[그림 V-6] R&D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자본조달과 세제지원, 2006년 및 2012년 기준 .....	105
[그림 V-7] 국가별 산업 내 제조업 비중 .....	106
[그림 V-8] GDP 대비 제조업에 대한 고정자본투자 .....	106
[그림 V-9] 명목 GDP 대비 서비스업의 명목 부가가치 변화의 추이 .....	107
[그림 V-10] OECD 국가 대상 자산을 통한 총고정자본형성 중 ICT 투자비중(2011) ...	108
[그림 V-11] 벤처캐피탈의 숫자 추이(Index 2007=100) .....	118
[그림 V-12] 2007년~2014년 ICT분야의 성장률 .....	119
[그림 V-13] ICT 분야 및 관련 분야의 부가가치 국제 비교 .....	120
[그림 VI-1] 세액감면 창업벤처기업의 지역별 분포 .....	132
[그림 VI-2] 세액감면 창업벤처기업의 기업규모별 분포 .....	134

[그림 VI-3] 세액감면 창업벤처기업의 업종별 분포 .....	135
[그림 VI-4] 세액감면 창업벤처기업과 창업중소기업의 특성 비교 .....	137
[그림 VI-5]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효과성 분석을 위한 표본추출 과정 .....	141
[그림 VI-6] 기업그룹별 유효세율의 추이 .....	147
[그림 VI-7] 유효세율 비교: 창업벤처기업 vs. 창업중소기업 .....	149
[그림 VI-8] 유효세율 비교: 창업벤처기업 vs. 일반벤처기업 .....	149
[그림 VI-9] 유효세율 비교: 창업벤처기업 vs. 비벤처 일반중소기업 .....	150
[그림 VI-10] 유효세율 비교: 창업벤처기업 vs. 대기업 .....	151
[그림 VI-11] 기업그룹별 경영성과 비교 .....	152
[그림 VI-12] 경영성과 비교: 창업벤처기업 vs. 창업중소기업 .....	153
[그림 VI-13] 경영성과 비교: 창업벤처기업 vs. 일반벤처기업 .....	155
[그림 VI-14] 경영성과 비교: 창업벤처기업 vs. 비벤처 일반중소기업 .....	156
[그림 VI-15] 경영성과 비교: 창업벤처기업 vs. 대기업 .....	157
[그림 VI-16] 업종별 효과 비교: 제조업 vs. 서비스업 .....	160
[그림 VI-17] 업종별 효과 비교: ICT기업 vs. 비ICT기업 .....	161
[그림 VI-18] 벤처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효과성 분석방법 개요 .....	165
[그림 VI-19] 벤처기업 수 .....	168
[그림 VI-20] 창투사 및 창투조합의 신규투자실적 .....	170
[그림 VI-21]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출액과 벤처캐피탈 신규투자금액 추이 .....	171
[그림 VI-22] 신규 IPO기업 중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수 .....	173
[그림 VI-23]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신규 IPO기업의 업종별 분포(2015년) .....	174
[그림 VI-24] IPO 소요기간 추이 .....	175
[그림 VI-25]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	181
[그림 VI-26] 복수/단일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	182
[그림 VI-27]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연도별 추이 .....	191
[그림 VI-28] 총급여 규모별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자 수 .....	193
[그림 VI-29] 총급여 규모별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금액 .....	194
[그림 VI-30] 창투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엔젤투자액 .....	195
[그림 VII-1] 총급여 규모별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의 1인당 소득공제액 .....	221

[그림 VII-2] 벤처기업 확인유형별 현황(2016년 6월 기준) .....	224
[그림 VII-3] 창업중소/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업의 지역별 분포 비교 .....	225
[그림 VIII-1] 전화조사 실시설계 .....	234
[그림 VIII-2] 설립연도 .....	238
[그림 VIII-3] 벤처기업 최초 확인연도 .....	239
[그림 VIII-4]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경험 여부 .....	240
[그림 VIII-5] 투자받은 벤처캐피탈의 역할 .....	241
[그림 VIII-6] 벤처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효과 여부 .....	243
[그림 VIII-7] 확대지원이 가장 필요한 벤처기업 지원정책 .....	244
[그림 VIII-8]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 정도 .....	245
[그림 VIII-9]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데 도움을 받은 곳 .....	246
[그림 VIII-10]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	248
[그림 VIII-11]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인지 및 활용 여부 .....	249
[그림 VIII-12]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효과 여부 .....	251
[그림 VIII-13]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	252
[그림 VIII-14]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 .....	254
[그림 VIII-15]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중 개선사항 .....	255
[그림 VIII-16]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에 대한 세법 개정안 효과 여부 .....	257
[그림 VIII-17] 설립연도 .....	258
[그림 VIII-18] 주요 투자업종 .....	259
[그림 VIII-19] 주요 투자수단 .....	260
[그림 VIII-20] 투자하는 기업의 주된 업력 단계 .....	261
[그림 VIII-21] 주요 회수방식 .....	262
[그림 VIII-22] 평균 회수기간 .....	263
[그림 VIII-23] 벤처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효과 여부 .....	264
[그림 VIII-24] 확대지원이 가장 필요한 벤처기업 지원정책 .....	265
[그림 VIII-25]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활용 정도 .....	266
[그림 VIII-26]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데 도움을 받은 곳 .....	267
[그림 VIII-27]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	268

[그림 VIII-28]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인지 및 활용 여부 .....	269
[그림 VIII-29]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효과 여부 .....	270
[그림 VIII-30]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	271
[그림 VIII-31]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향 .....	272
[그림 VIII-32]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중 개선사항 .....	273
[그림 VIII-33]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에 대한 세법 개정안 효과 여부 .....	274
[그림 VIII-34] 벤처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효과 여부 .....	275
[그림 VIII-35] 확대지원이 가장 필요한 벤처기업 지원정책 .....	275
[그림 VIII-36]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인지 및 활용 여부 .....	276
[그림 VIII-37]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인지 및 활용 여부 .....	276
[그림 VIII-38] 벤처기업/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활용 정도 .....	277
[그림 VIII-39] 벤처기업/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효과 여부 .....	277
[그림 VIII-40] 현행 조세지원제도 개선사항 .....	278
[그림 VIII-41]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중 개선사항 .....	278
[그림 VIII-42]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에 대한 세법 개정안 효과 여부 .....	279



# I. 서론





## I. 서론

- 현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의 핵심정책은 창업·벤처 기업 투자 활성화인바,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벤처산업 활성화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음
  - 한국의 벤처기업의 수는 1998년 2,042개에서 2016년 9월 기준 벤처인증 받은 기업은 총 32,468개에 이르며, 창투자 및 창투자조합의 벤처캐피탈 투자현황은 1999년 501억원에서 2015년 기준 신규투자금액이 2,120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함
  - 그러나 ‘창업 → 성장 → 회수 → 재투자’라는 벤처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여 벤처기업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임
  
-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18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창업·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체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이 뒷받침되고, 투자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쉽게 회수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함
  - 그러나 사업적 불확실성, 정보의 비대칭성, 기존 기업과의 경쟁의 한계로 인한 시장실패로 인하여, 대상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용하는 데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의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벤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우리나라 벤처산업 현황을 벤처기업과 전문적·비전문적 벤처기업 투자자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벤처기업에 대한 숫자, 업종별 현황, 업력별 현황, 경영성과, 재무현황에 대한 분석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등록 현황, 신규투자 현황, 업종·업력별 현황, 엔젤투자 현황, 회수 현황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8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후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벤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 및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함
  - 벤처기업을 창업·성장·인수 및 합병의 세 단계로 나누고, 벤처캐피탈을 투자·보유·양도의 세 단계로 나누어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소개와 제도의 변천과정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 셋째, 해외 주요국의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 정리와 국제비교를 통하여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 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주요국들의 정책방향이나 지원 수준을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을 참고하는 것은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지원체제의 수준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넷째, 우리나라의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실증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정책의 타당성, 효과성 및 실효성 측면을 평가하여 봄으로써 향후 벤처산업에 대한 바람직한 조세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조세지출실적을 바탕으로 유효세율 및 경영성과의 측면에서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실증분석하고,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및 인지·활용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본 연구는 경제활력을 회복하면서 국정목표인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벤처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벤처투자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을 재설정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판단됨

## Ⅱ. 벤처산업 현황





## II. 벤처산업 현황

### 1. 벤처기업·벤처캐피탈 정의

#### 가. 벤처기업 정의

##### 1) 벤처기업의 정의

- 벤처기업은 일반적으로 “위험은 높으나 성공 시 기대수익이 큰 독자적인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신규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신생 중소기업”을 의미함(김진수·김재진, 2000)
  - 김세중(2008)에서는 벤처기업을 구체적으로 첫째, 소기업으로서 출발했지만 독자의 존재이유를 가지며, 둘째, 경영자 자신이 고도의 전문능력을 가지고 있고, 셋째, 기업가 정신이 넘치며, 넷째, 고수익·급성장의 특성을 가진 기업군으로 정의함(김세중, 2008)
  
- 한편,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벤처기업확인제도’를 통하여 지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보다는 법적·정책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아 외국에 비하여 폭넓게 파악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기준요건 충족 확인을 받아야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에서의 벤처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하여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을 의미하기도 함
    - 이는 벤처캐피탈 투자로 접근하는 미국의 관점과 연구개발집약형 기업으로 접근하는 유럽이나 일본의 관점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여짐(김기완, 2011)
  
- 1998년 5월부터 시행된 ‘벤처기업확인제도’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예비벤처기업의 다섯

- 유형의 기준요건 중 하나의 유형에 만족하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정되는 제도임
- 초기에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정부가 직접 담당하였으나 벤처기업의 무분별 양산이라는 비판으로 인하여 2006년 이후 벤처기업에 투자·융자·보증하는 벤처금융기관 등의 민간기관이 확인업무를 담당함(국회예산정책처, 2010)
- 벤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벤처기업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1~2개월 전에 벤처기업확인을 재신청하면 계속 벤처기업이 될 수 있음

## 2) 벤처기업확인제도<sup>1)</sup>

### 가) 벤처투자기업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으로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 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인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자본금의 7% 이상이어야 함
  - 벤처투자기관으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이 있음

### 나) 연구개발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sup>2)</sup>하고, 연구개발비가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으로,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sup>3)</sup>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 창업 3년 이상의 기업은 벤처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으로,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5~10% 이상 이어야 함
  -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은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인 조건만 만족하면 됨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 참고

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를 보유해야 함

3)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전 유형 평가), 국발기술품질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산업은행, 전자부품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사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다) 기술평가보증기업

-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는 중소기업으로, 대출 및 보증 금액의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총자산의 5% 이상이어야 함
  -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 또는 대출승인<sup>4)</sup>만으로 벤처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함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을 신청하면 됨
  -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 및 보증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으로, 총자산 대비 비율을 적용하지 않음

#### 라) 기술평가대출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중진공의 대출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순수신용으로 받는 중소기업으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합산금액이 9천만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 총자산 대비 비율이 5% 이상이어야 함
  -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 또는 대출승인<sup>4)</sup>만으로 벤처확인이 가능함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을 신청하면 됨
  - 창업 후 1년 미만인 기업과 보증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을 적용하지 않음

#### 마) 예비벤처기업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로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술보증기금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함

4)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중 녹색신성장기반자금,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기업전용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표 II -1> 벤처기업 확인요건

벤처유형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요함)	확인기관
유형 1 벤처투자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단, 해당 기업이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7%이상)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유형 2 연구개발기업	1.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2. 업력에 따라 아래 기준을 충족할 것 - 창업 3년 이상 기업: 벤처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10%(업종별로 상이함) 이상일 것 - 창업 3년 미만 기업: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3.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 3 기술평가보증기업 (보증승인만으로 벤처인증 가능)	1.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3.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총자산 대비 비율은 적용 배제)	기술보증기금
유형 4 기술평가대출기업 (대출승인만으로 벤처확인 가능)	1.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3.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총자산 대비 비율은 적용 배제)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 5 예비벤처기업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 등록을 준비중인 자 2. 상기1.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업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나. 벤처캐피탈 정의

- 벤처캐피탈이란 장래성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기반이 취약한 기업에 대하여 기업 설립 초기단계에 자본참여를 통해 위험을 기업가와 공동으로 부담하며 자금, 경영관리, 기술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경영 활동을 의미함<sup>5)</sup>
  - 벤처캐피탈 회사는 벤처캐피탈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의미하고, 벤처캐피탈 리스트는 벤처캐피탈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함
  
- 우리나라에서는 1974년 한국기술진흥금융이 설립된 시기에 벤처캐피탈이 최초로 도입된 이후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발전하였고,<sup>6)</sup> 초기에는 벤처캐피탈회사의 직접투자가 주로 이뤄졌으나, 현재는 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투자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함<sup>7)</sup>
  - 벤처캐피탈회사는 고유계정을 통하여 직접 벤처기업으로 투자할 뿐만 아니라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투자활동을 진행함
    - 벤처캐피탈회사는 투자조합을 통하여 투자자금을 모집 및 운용하는 GP 역할을 수행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유한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있음
  - 자금을 모으는 vehicle 성격의 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규정을 준용하는 사모방식의 투자자간 계약 형식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한국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있음
  
- 벤처캐피탈회사는 각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투자사업을 영위하고, 납입자본금 및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해야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로 등록하여 이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

5) 김진수·원종학(2010), 김재진·홍범교(2015) 재인용

6) 조성숙·박정서(2009)

7) 금융위원회 신성장금융팀,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참고

는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사업 및 투자조합 결성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납입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함<sup>8)</sup>

- 등록 후 3년이 지난날까지 납입자본금의 50% 범위에서 40% 이상을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사업 및 투자조합 결성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3년이 지난 후에도 투자 의무비율을 유지해야 함<sup>9)</sup>

○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는 벤처투자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조합결성 금액의 1% 이상을 출자하는 요건을 갖추어 한국벤처투자조합의 GP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한회사를 의미함<sup>10)</sup>

○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신기술금융사)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융자·경영 및 기술의 지도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및 자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진행함<sup>11)</sup>

□ 설립목적 및 소관 법률 등에 따라 조합 및 해당 조합을 운용할 수 있는 벤처캐피탈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해야 함<sup>12)</sup>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창투조합)은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기술금융사업자는 창투사와 공동 GP 형태로만 참여 가능함<sup>13)</sup>

- 등록 후 3년이 지난날까지 출자금의 50% 범위에서 40% 이상을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사업에 사용해야 함<sup>14)</sup>

○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조합)은 벤처기업 창업과 벤처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중소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창투사, 신기술금융사업자 및 벤처전문인력을 갖춘 LLC가 운영자로 참여 가능함  
벤처조합 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모태조합의 출자를 받아야 함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조합)은 신기술사업자<sup>15)</sup>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 운영을 담당함

8)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

9)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12) 금융위원회 신성장금융팀,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참고

1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

1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1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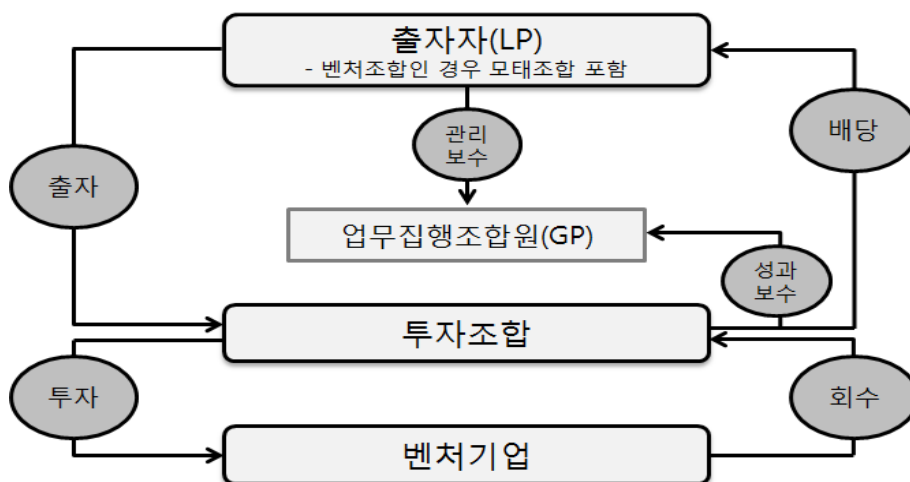
-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 및 3년 이내 창업기업 중 중소기업청의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으며 개인 및 전문회사, 모태조합, 중소기업 투자지원기관 등이 결성할 수 있음

<표 II -2> 조합유형별 비교

구 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설립근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할기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결성주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투자, 신기술금융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LLC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개인, 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투자대상	비상장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창업기업
투자의무	납입자본금의 50% 범위 내에서 40% 이상을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해야 함	조합 결성 시 모태조합의 출자를 받아야 함		

자료: 김재진·홍범교(2015) 참고

[그림 II -1] 투자조합의 자금흐름 및 구조도



자료: 조성숙·박정서(2010) 참고

## 2. 벤처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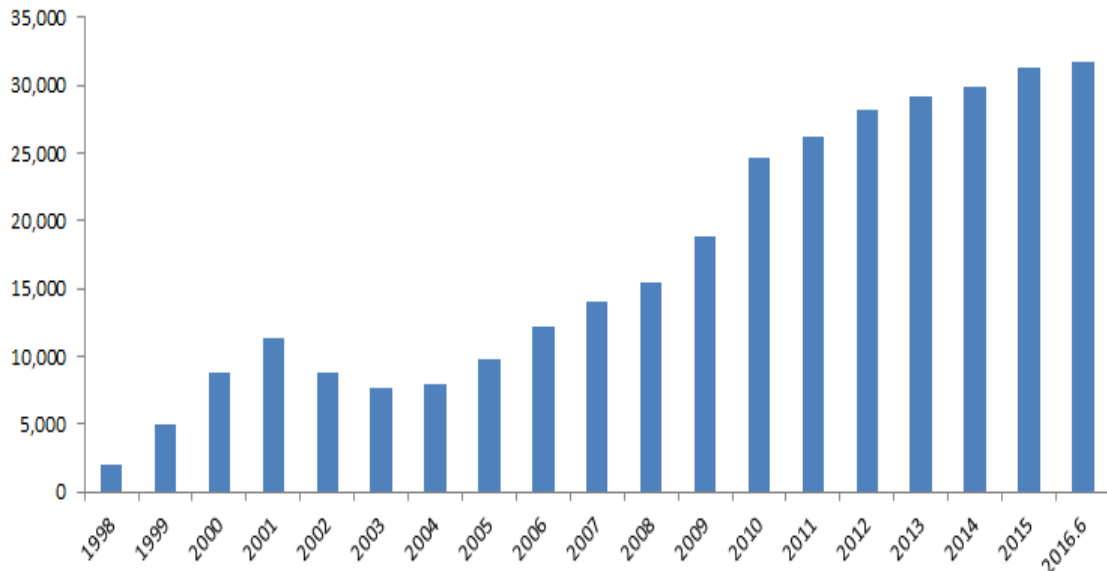
### 가. 벤처기업 현황

#### 1) 벤처기업의 수

- 1998년 5월 처음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시작되고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2년 벤처 버블 시기에 약 3,000여개의 벤처기업이 감소하였고,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0년에는 2만개, 2015년에는 3만개를 초과함
- 1998년 벤처확인을 시작한 이후에 약 2천여개의 벤처기업이 설립되었고, 정부의 적극적인 벤처지원 정책으로 인하여 기업이 크게 증가함
- 이후 벤처 버블로 인하여 벤처기업의 수가 1만개 이하로 감소하였으나 2004년부터 벤처기업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3년 벤처 활성화 정책 등에 따라 2015년 벤처기업의 수가 약 3만여개로 대폭 증가함

[그림 II -2] 벤처기업 수

(단위: 개)



〈표 II -3〉 벤처기업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개)

구 분	전체누계	증감추이
1998	2,042	-
1999	4,934	2,892
2000	8,798	3,864
2001	11,392	2,594
2002	8,778	-2,614
2003	7,702	-1,076
2004	7,967	265
2005	9,732	1,765
2006	12,218	2,486
2007	14,015	1,797
2008	15,401	1,386
2009	18,893	3,492
2010	24,645	5,752
2011	26,148	1,503
2012	28,193	2,045
2013	29,135	942
2014	29,910	775
2015	31,260	1,350
2016.6	31,766	506

자료: 벤처확인·공시시스템 벤처인

## 2) 벤처기업 업종별 현황

- 벤처기업 중 제조업이 약 70.5%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정보처리 및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이 약 20%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중소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약 11%<sup>16)</sup>임을 감안하면 벤처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음

16)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표 II -4> 벤처기업 업종별 현황(2016년 6월 기준)

(단위: 개, %)

구 분	기업 수	비중
제조업	22,345	70.5
정보처리· S/W	5,186	16.4
연구개발· 서비스	327	1.0
건설운수	482	1.5
도소매업	591	1.9
농·어·임·광업	68	0.2
기타	2,687	8.5
합계	31,686	100

자료: 벤처확인·공시시스템 벤처인

### 3) 벤처기업 확인유형별 현황

-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이 약 28,000여개로 약 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연구개발 기업은 약 2천여개로 전체 비중의 6%, 벤처투자기업은 약 1천여개로 전체 비중의 약 3%를 차지함

<표 II -5> 벤처기업 확인유형별 현황(2016년 6월 기준)

(단위: 개, %)

구 분	벤처투자 기업	연구개발 기업	기술평가 보증기업	기술평가 대출기업	예비벤처 기업	합계
업체수	1,048	1,834	25,946	2,789	69	31,686
비율	3.3	5.8	81.9	8.8	0.2	100

자료: 벤처확인·공시시스템 벤처인

### 4) 벤처기업 업력별 현황

- 업력이 5~20년 사이인 기업의 수가 약 52%로 가장 많고, 1년 미만인 경우는 전체 벤처기업의 약 4%를 차지함

- 벤처확인요건만 만족하게 되면 벤처기업확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업력이 오래된 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창업 3년 미만의 업체 수는 현재 벤처기업의 약 23%를 차지함

<표 II -6> 벤처기업 업력별 현황

(단위: 개, %)

구 분	업체 수	비 율
6개월미만	234	0.7
6개월~1년미만	881	2.8
1~3년미만	6,148	19.4
3~5년미만	5,948	18.8
5~10년미만	8,237	26.0
10~20년미만	8,257	26.1
20년 이상	1,981	6.3
합계	31,686	100.0

자료: 벤처확인·공시시스템 벤처인

## 5) 벤처기업 경영성과

- 벤처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08년을 제외하고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보다 높은 수준으로, 2010년에는 2009년에 비하여 22%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증가율이 하락하여 2014년은 전년도에 비하여 약 11%의 매출이 증가함
  - 전체적인 매출액 증가율의 추이는 비슷하나, 벤처기업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편이며,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4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함
-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또한 2014년을 기준으로 벤처기업이 5.8%로 대기업(4.4%), 중소기업(3.1%)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매년 하락하고 있으나, 벤처기업은 2011년 이후 5%대를 유지하고 있음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0년 이후 기업 분류와 무관하게 하향세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2012,2014년에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전년도보다 증가함

□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수치를 보면, 2011년 이전까지 대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높았으나, 이후 대기업의 매출액 순이익률이 2%대로 감소하고, 벤처기업은 4%대로 증가하면서 2014년 벤처기업의 매출액 순이익률이 4.1%로 가장 높음

<표 II -7>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경영성과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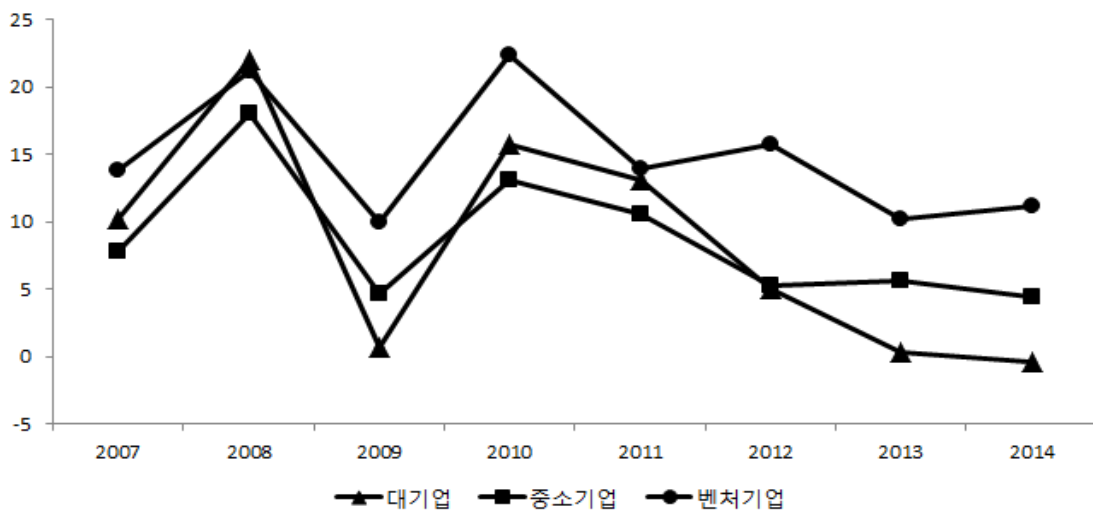
구 분	매출액증가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2007	10.2	7.8	13.8	6.8	4.0	6.8	5.8	2.6	3.8
2008	22.0	18.1	21.2	5.8	4.1	7.0	2.6	1.6	3.5
2009	0.7	4.7	9.9	5.8	4.5	6.2	4.2	2.7	2.9
2010	15.8	13.1	22.4	6.8	4.9	5.9	5.7	3.2	4.0
2011	13.1	10.6	13.9	5.3	3.1	4.7	3.3	1.6	2.7
2012	5.0	5.3	15.8	4.7	3.1	5.7	2.9	1.8	3.4
2013	0.3	5.6	10.2	4.7	3.2	5.2	2.0	2.0	4.0
2014	-0.4	4.4	11.2	4.4	3.1	5.8	2.7	2.1	4.1

주: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 매출액 순이익률=(순이익/매출액)×100  
 자료: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각 연도, 김재진·홍범교(2014)를 바탕으로 업데이트

- 벤처기업의 매출액 순이익률은 3%대 이내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현재는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임

[그림 II -3]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매출액 증가율 비교

(단위: 개, %)



## 6) 벤처기업 재무현황

- 201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벤처기업의 부채비율은 대기업(127%)보다는 높고 중소기업(161.5%)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약 130~40%대를 유지하고 있음
  -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2011년에 전년도에 비하여 약 40%p 증가하였으나,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약 5%p밖에 증가하지 않아 비교적 안정적인 비율을 유지함
  
- 벤처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대기업(44.1%)보다는 낮고 중소기업(38.3%)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2007년에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11년에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이 각각 9%p, 7%p 감소하였으나, 벤처기업의 경우 약 1%p밖에 감소하지 않아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표 II -8>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의 부채비율 및 자기자본비율

(단위: %)

구 분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2007	97.4	147.7	124.1	50.7	40.4	44.6
2008	119.4	148.3	154.9	45.6	40.3	39.1
2009	110.9	144	153.7	47.4	41	39.1
2010	102.7	136.4	142.7	49.3	42.3	41.2
2011	144.9	179.2	147.3	40.8	35.8	40.4
2012	140.1	174.3	146.1	41.6	36.5	40.6
2013	133.5	168.3	146.7	42.8	37.3	40.5
2014	127	161.5	134.5	44.1	38.3	42.6

주: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 매출액 순이익률=(순이익/매출액)×100  
 자료: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각 연도, 김재진·홍범교(2014)를 바탕으로 업데이트

## 나. 벤처캐피탈 현황

### 1) 벤처캐피탈회사 등록 현황

- 2015년 기준으로 등록된 창투사의 수는 115개사,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운영하는 LLC의 수는 8개, 신기술금융사의 수는 3개로, 투자재원은 창투사가 약 14조원, LLC가 9,385억원, 신기술금융사가 2,500억원으로 회사당 재원은 약 1,000억원대임 (창투사 1,242억원, LLC 1,169억원, 신기술금융사 833억원)
- 창업투자회사의 수는 약 100여개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재원은 2008년 6조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14조원대로 7년동안 2배가 증가함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LLC의 수는 현재 8개로 2010년부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재원은 2008년 2,400억원대에서 2015년 9천억원대로 증가하여 7년 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함
- 벤처조합에 투자하는 신기술금융사의 수는 전체 32개의 신기술금융사 중 3개 이고, 조합재원은 전체 2조 4천억원 가운데 2,500억원으로 전체 조합재원의 약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II -9> 벤처캐피탈회사 현황

(단위: 개, 억원)

구 분	창투사		LLC <sup>1)</sup>		신기술금융사 <sup>1)</sup>	
	등록수	재원 <sup>2)</sup>	등록수	조합재원	등록수 <sup>3)</sup>	조합재원 <sup>4)</sup>
2008	97	67,925	4	2,409	3(22)	590(10,812)
2009	100	74,581	6	2,984	2(20)	290(10,990)
2010	103	80,253	7	4,824	4(20)	1,290(12,759)
2011	105	98,152	7	5,124	3(17)	990(12,559)
2012	105	96,775	8	5,949	3(16)	990(15,844)
2013	101	105,234	7	7,174	4(19)	1,890(19,719)
2014	103	121,567	7	8,345	3(22)	2,000(22,686)
2015	115	142,912	8	9,359	3(32)	2,500(24,008)

주: 1) 중소기업청에 신고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운영하는 회사 수

2) 회사계정재원과 조합재원

3) 괄호 안의 수는 신기술금융을 취급하는 회사의 수

4) 괄호 안의 수는 신기술금융을 취급하는 회사의 투자금액 합계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6 KVCA Yearbook』

## 2) 벤처캐피탈조합 신규등록 및 운영현황

### 가) 창투조합 및 벤처조합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창업투자조합의 수는 557개, 창투조합의 결성금액은 약 15조 원으로 2010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신규 조합 수는 매년 평균 70개, 결성 금액은 매년 8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증가함

<표 II -10> 창투조합·벤처조합 등록 및 운영

(단위: 개, 억원)

구 분	신규		운영	
	조합 수	결성금액	조합 수	결성금액
2010	67	15,899	393	76,140
2011	67	22,838	417	94,578
2012	41	8,213	381	92,859
2013	54	15,679	404	103,416
2014	82	25,697	449	120,928
2015	110	26,915	533	142,134
2016.6	57	16,682	568	155,379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enture Capital Market Brief」(2016.6)

### 나) 신기술조합

- 신규 신기술조합은 매년 20개 정도로, 2015년에 총운영되고 있는 신기술조합의 수는 115개로, 이전 연도보다 크게 증가하였고, 결성금액은 2014년 기준 약 3조원 대로 2009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함

<표 II -11> 신기술투자조합 현황

(단위: 개, 억원)

구 분	신규		운영	
	조합 수	결성금액	조합 수	결성금액
2009	25	4,071	80	16,125
2010	22	5,143	90	19,361
2011	12	6,201	71	24,289
2012	17	3,625	66	20,471
2013	13	3,196	70	26,502
2014	25	9,960	82	32,402
2015	-	-	115	-

자료: 여신금융협회, 「신기술금융업권 투자실적 분석」, 「2013년 신기술금융업권 투자실적」, 『여신금융』 2016 봄호

### 다) 개인투자조합

- 개인투자조합은 2013년부터 결성 조합 및 투자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5년의 조합 수는 89개로 이전 연도보다 34개 증가하였고, 결성금액은 446억원, 투자금액은 364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배 이상 증가함

〈표 II -12〉 개인투자조합 현황

(단위: 개, 억원)

구 분	조합 수	결성금액	투자금액
2011	2	9	9
2012	13	46	33
2013	29	321	75
2014	55	406	158
2015	89	446	364

자료: 중소기업청 보도자료(16.07.27)

### 3) 신규투자 현황

- 신규 투자를 받은 기업의 수는 매년 약 500~700개사 정도였으나, 2014년 이후 900개사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1,000개가 넘는 기업이 투자를 받았고, 투자금액 또한 2015년 2조원을 초과하였고, 2016년 현황을 고려했을 때 예년과 비슷한 기업 수 및 투자금액이 조달될 것으로 판단됨

〈표 II -13〉 신규투자 현황

(단위: 개, 억원)

구 분	투자업체 수	투자금액
2002	768	6,177
2003	630	6,306
2004	544	6,044
2005	635	7,573
2006	617	7,333
2007	615	9,917
2008	496	7,247
2009	524	8,671
2010	560	10,910
2011	613	12,608
2012	688	12,333
2013	755	13,845
2014	901	16,393
2015	1,045	20,858
2016.6	449	9,488

주: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창투자 및 투자조합이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 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임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enture Capital Market Brief」(2016.6)

-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투자업체 수와 투자금액이 모두 증가하였음

#### 4) 업종별·업력별 신규투자 현황

-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서비스의 신규투자가 2015년 크게 증가하였고, 바이오/의료, 유통/서비스의 투자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전기/기계/장비의 신규투자는 감소하는 추세임
  - ICT 서비스의 신규투자는 2014년 약 2천억원대에서 2015년 4천억원으로 2배 증가하였고, 바이오/의료 분야 투자도 2013년 1,400억원대에서 2014년 약 3천억원대로 2배 이상 증가함
  - 전기/기계/장비 분야에 대한 신규투자는 2011년 3천억원대에서 2015년 1,600억원대로 하락함

<표 II -14> 업종별 신규투자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6
ICT제조	1,860	1,754	2,099	2,955	1,951	1,463	413
ICT서비스	804	892	918	1,553	1,913	4,019	1,624
전기/기계/장비	2,141	2,966	2,433	2,297	1,560	1,620	933
화학/소재	1,064	1,266	1,395	989	827	1,486	820
바이오/의료	840	933	1,052	1,463	2,928	3,170	1,945
영상/공연/음반	1,733	2,083	2,360	1,963	2,790	2,706	1,127
게임	945	1,017	1,126	940	1,762	1,683	645
유통/서비스	954	1,270	608	1,092	2,046	3,043	1,479
기타	569	427	342	593	616	1,668	502
합계	10,910	12,608	12,333	13,845	16,393	20,858	9,488

주: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창투자 및 투자조합이 창업기업(창업 후 7년이내 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임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enture Capital Market Brief」(2016.6)

- 2003~2007년에는 업력이 중기인 회사의 신규투자 금액이 가장 높았던 반면, 점차적으로 업력이 초기·후기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

- 업력이 초기인 기업에 대한 투자는 2004년 2천억원대에서 2015년 6천억원대로 증가하였고, 업력이 후기인 기업은 2003년 500억원대에서 2015년 8,500억원대로 10배 이상 증가함
- 그리하여 전체 신규투자금액 중에서 후기 기업에 투자되는 비중이 2013년에 약 50%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시 초·중기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비중이 감소함

<표 II -15> 업력별 신규투자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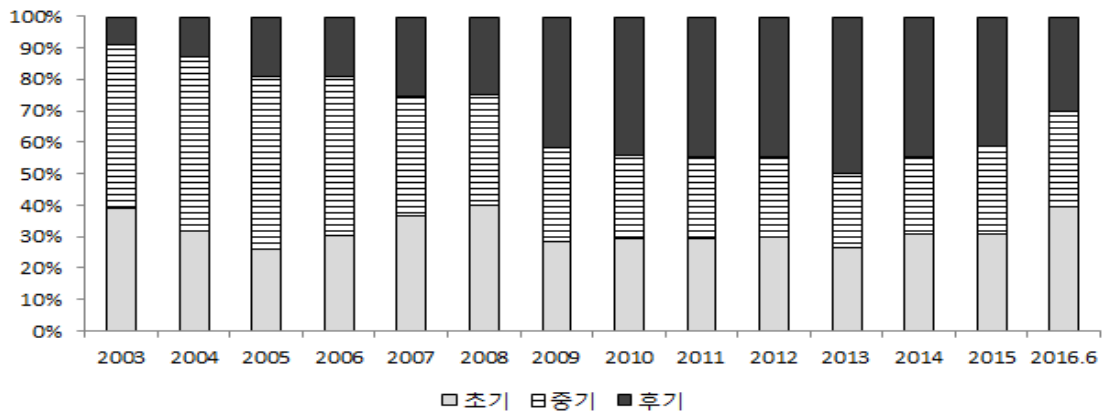
(단위: 억원)

구 분	초 기	중 기	후 기
2003	2,460	3,281	565
2004	1,940	3,343	761
2005	1,972	4,162	1,439
2006	2,224	3,721	1,388
2007	3,650	3,774	2,493
2008	2,908	2,553	1,786
2009	2,476	2,601	3,594
2010	3,192	2,904	4,814
2011	3,722	3,296	5,590
2012	3,696	3,137	5,500
2013	3,699	3,259	6,887
2014	5,045	4,069	7,279
2015	6,472	5,828	8,558
2016.6	3,754	2,889	2,845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enture Capital Market Brief」(2016.6)

[그림 II -4] 업력별 신규투자 금액 비중

(단위: %)



## 5) 엔젤투자 현황

- 엔젤투자자의 투자액은 2000년에 약 5,500억원대에 다다랐고 엔젤투자를 받은 기업의 수도 1천여개에 달하였으나, 벤처버블 이후 300억원대 초반까지 투자액이 감소하였다가 다시 벤처 활성화 정책 등으로 엔젤투자규모가 점차 증가함
  - 2015년 엔젤투자자의 투자액은 약 1,400억원으로 2014년에 비하여 약 500억원 가량이 증가하였고, 엔젤투자를 받은 기업의 수 또한 약 300개에 달해 작년보다 100개 가까이 증가함

<표 II -16> 엔젤투자 현황(소득공제 신청 기준)

(단위: 억원, 개)

연 도	투자자 수	투자액	투자받은 기업수
2000	28,875	5,493	1,291
2001	12,002	3,409	1,007
2002	4,717	1,109	573
2003	3,964	3,031	453
2004	2,246	463	194
2005	2,107	820	174
2006	2,727	971	238
2007	2,170	897	220
2008	1,742	492	152
2009	1,243	346	87
2010	777	341	83
2011	862	428	66
2012	1,105	557	91
2013	916	566	167
2014	1,102	834	207
2015	-	1,399	295

자료: 중소기업청 보도자료(16.07.27); 『한국 벤처정책 20년사』

## 6) 회수 현황

- 2015년의 회수금액은 약 1조원으로 지난 4년에 비하여 회수금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장외매각 및 상환을 통하여 회수하는 비율이 매년 전체 회수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높음

- 다음으로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sup>17)</sup>의 회수 비중이 약 30%를 차지하고, 프로젝트는 약 16%를 차지함
- M&A를 통한 회수금액은 2014년에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하여 22억원에서 163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전체 비중은 1% 내외임
  - 대부분의 회수가 장외매각 및 상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벤처투자기업이 제대로 가치평가를 받지 못하는 데 기인함<sup>18)</sup>

<표 II -17> 회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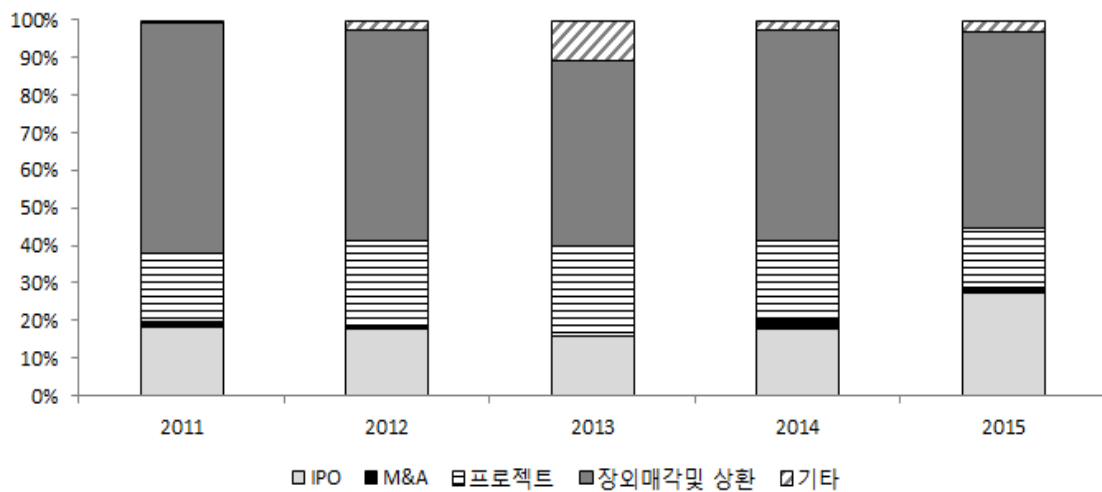
(단위: 억원)

구 분	IPO	M&A	프로젝트	장외매각 및 상환		기타 장외매각 및 상환	합계
				주식	채권		
2011	1,080	86	1,102	2,608	1,044	37	5,957
2012	1,220	72	1,533	2,655	1,165	188	6,833
2013	1,072	22	1,613	2,363	1,025	736	6,831
2014	1,411	163	1,639	3,080	1,311	217	7,821
2015	2,784	150	1,605	3,724	1,614	342	10,219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enture Capital Newsletter」(2016.4)

[그림 II -5] 연도별 회수 비중 현황

(단위: %)



17) 코스닥 등 주식시장에 처음 상장하는 것

18) 김재진·홍범교(2014)

## 7) 신규 결성조합출자자 비중

- 신규 결성조합의 출자자 비중은 정책기관이 가장 높았고, 정책기관 중 모태펀드의 비중이 전체 출자금액의 23.2%를 차지하여 나머지 기관들보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벤처캐피탈의 비중은 11.5%, 개인 및 외국인의 비중은 2.6%임
- 정책기관의 비중이 약 30%를 차지하고 공적인 목적으로 조성된 성장사다리펀드의 비중 또한 10% 가까이 되어, 벤처기업 투자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2013년 8월에 조성된 성장사다리펀드의 비중은 2014년 11%, 2015년 9%로 벤처캐피탈과 비슷한 수준임

<표 II -18> 신규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단위: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정책기관	16.9	34	27.8	16.7	29.7
모태펀드	11.6	26.3	26.4	14.5	23.2
금융기관	23.5	19.6	30.9	22.4	23.0
산은/정금	17.6	7.3	17.4	12.4	4.2
연금/공제회	21.2	10.7	9	20.5	4.1
벤처캐피탈	13.4	19.4	13.4	11.4	11.5
일반법인	12.4	11.7	14.5	9.5	14.5
기타단체	7.9	1.3	1.1	12.9	10.8
성장사다리	-	-	-	11.1	9.4
개인	0.8	0.8	1.9	3.3	3.8
외국인	3.9	2.5	1.4	3.3	2.6
계	100	100	100	100	100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enture Capital Newsletter」(2016.4)



### Ⅲ. 벤처기업·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 Ⅲ. 벤처기업·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 1. 현행 벤처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sup>19)</sup>

##### 가.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 1) 창업단계

가) 창업벤처중소기업<sup>20)</sup>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제2항)

-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sup>21)</sup>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 벤처기업의 범위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을 포함한 28개 업종<sup>22)</sup>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함

- 일몰기한: 2018년 12월 31일

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함
  -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함

19) 국세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 중소기업 조세지원(중소기업청, 한국세무사회) 참고

20)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1)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22) 「조특법」 제6조제3항 참고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sup>23)</sup>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중과세율<sup>23)</sup> 적용을 배제함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37.5% 감면함
  -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함
- 일몰기한: 2018년 12월 31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관련조항은 2017.12.31.)

## 2) 성장단계

### 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조특법 제16조의2)

-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에 따라 납부할 수 있음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벤처기업 임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 원천징수하지 않은 벤처기업 임원 등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포함해 신고하되, 해당 이익에 대한 소득세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 가능(분할납부세액)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연도에 분할납부세액의 25%씩 각각 납부
- 일몰기한: 2018년 12월 31일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6조의3)

- 벤처기업 우수인력 유치 지원을 목적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분부터 제도가 적용됨

23)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4항, 제28조 제2~3항, 제111조 제2항

-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적격 스톡옵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는 스톡옵션으로 연가 행사금액 1억원 이하)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방식과 양도소득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근로소득 과세방식: 스톡옵션 행사 시 부여받은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 양도소득 과세방식: 스톡옵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 양도 시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함

### 3) 인수·합병단계

#### 가)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2조의3)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다음 요건을 갖추어 합병하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 중 특허권 등의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함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인 경우
  -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 순자산시가의 130% 이상일 경우
  -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액이 20% 미만인 경우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법인세를 공제받은 합병법인이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의 지배 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

□ 일몰기한: 2018년 12월 31일

#### 나)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2조의4)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다음 요건을 갖추어 취득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함

-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 등을 최초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 취득인 경우
  - 인수법인이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 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고, 이를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주식을 매각하고 받은 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액이 20% 미만인 경우
-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5년 이내에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피인수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율이 일정 기간에 비하여 낮아지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
- 일몰기한: 2018년 12월 31일

다)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조특법 제31조)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sup>24)</sup>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통합으로 취득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함

라)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46조의7)

-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벤처기업의 주주가 소유하는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회사인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제휴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아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로 인해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받을 수 있음

- 벤처기업 등과 제휴법인 간의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고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 등이 이루어져야 함
- 벤처기업 등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제휴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야 함
-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주식교환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제휴법인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벤처기업 및 제휴법인 간 체결해야 함
  -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일몰기한: 2018년 12월 31일

<표 III-1>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단계	구분 (시행연도)	내 용	조세 지출액
창업 단계	창업벤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 창업 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li> <li>▪ 관련법령: 조특법 제6조 제2항</li> </ul>	계 1,672 소득세 (559억) 법인세 (1,113억)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를 37.5% 감면함</li> <li>▪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50% 감면함</li> <li>▪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li> </ul>	
성장 단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적격 스톡옵션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방식과 양도소득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li> <li>▪ 관련법령: 조특법 제16조의3</li> </ul>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분할납부 가능</li> <li>▪ 관련법령: 조특법 제16조의2</li> </ul>	

단계	구분 (시행연도)	내 용	조세 지출액
인 수 · 합 병 단 계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함</li> <li>관련법령: 조특법 제12조의3</li> </ul>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li> <li>관련법령: 조특법 제12조의4</li> </ul>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li> <li>관련법령: 조특법 제31조</li> </ul>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교 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벤처기업 등과 제휴법인 간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여 주식교환 및 현물출자 후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아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주주가 주식교환 및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음</li> <li>관련법령: 조특법 제46조의7</li> </ul>	

출처: 김재진·홍범교(2014)를 참고하여 업데이트

## 나.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 1) 투자단계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6조)

- 투자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출자 또는 투자 금액의 30~100%<sup>25)</sup>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하여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부품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5) 출자·투자 금액 중 1,500만원 이하분은 100%, 1,500~5,000만원 이하분은 50%, 5,000만원 초과분은 30%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조합 출자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본 조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투자자가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에 해당하게 되면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부품 전문투자조합·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일몰기한: 2017년 12월 31일

나)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6조의4)

-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제도가 적용됨
- 개인이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을 허용함
- 적용대상에서 벤처기업 대주주(지분율 30%)의 친인척, 벤처기업과 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 관계가 있는 자, 최대주주 등의 벤처기업 특수관계인은 제외함

2) 보유단계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제13조 제4항)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특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일몰기한: 2017년 12월 31일

나) 투자조합 등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조특법 제14조 제4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일몰기한: 2017년 12월 31일

다) 투자조합 등의 귀속소득 원천징수 특례(조특법 제14조 제5항)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합 또는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일몰기한: 2017년 12월 31일

라) 투자조합 등의 소득금액 계산특례(조특법 제14조 제6항)

- 「조특법」 제1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뺀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함

일몰기한: 2017년 12월 31일

### 3) 양도단계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제13조 제1항)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투자조합<sup>26)</sup>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또한, 이러한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일몰기한: 2017년 12월 31일

나)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4조제1항)

개인투자자 및 투자조합이 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

○ 개인투자자 및 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

○ 창업투자회사 등: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기술사업자

일몰 기한: 2017년 12월 31일

다)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 제117조제1항)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농식품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농식품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이 코넥스 상장기업에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일몰 기한: 2017년 12월 31일

2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라)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46조의8)

-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의 주주를 대상으로 함
- 주주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일정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80% 이상을 다음에 해당하는 출자·투자를 한 경우,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벤처기업 등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야 함
-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일몰기한: 2018년 12월 31일

<표 III-2>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단계	구분 (시행연도)	내 용	조세 지출액						
투자 단계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일 또는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또는 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li> <li>▪ 소득공제율 및 한도</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공제율</th> <th>예외*</th> <th>한도</th> </tr> </thead> <tbody> <tr> <td>10%</td> <td>30%/50%</td> <td>종합소득금액×50%</td> </tr> </tbody> </table> <p>주: *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p>	공제율	예외*	한도	10%	30%/50%	종합소득금액×50%	계 146 소득세 (146억)
공제율	예외*	한도							
10%	30%/50%	종합소득금액×50%							

단계	구분 (시행연도)	내 용	조세 지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무보유기간: 3년내 출자지분 등 이전·회수시 추징</li> <li>관련법령: 조특법 제16조, 조특법 시행령 제14조</li> </ul>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 에 대한 과세특례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이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을 허용함</li> <li>관련법령: 조특법 제16조의4</li> </ul>	
보 유 단 계	벤처기업등 투자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li> <li>관련법령: 조특법 제13조 제4항</li> </ul>	계 14 법인세 (14억)
	투자조합 등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li> <li>관련법령: 조특법 제14조 제4항</li> </ul>	-
	투자조합 등의 귀속소득 원천징수 특례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분배금에 대하여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함</li> <li>관련법령: 조특법 제14조 제5항</li> </ul>	-
	투자조합 등의 소득금액 계산특례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함</li> <li>관련법령: 조특법 제14조 제6항</li> </ul>	-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가 보유한 특정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li> <li>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투자할 경우</li> <li>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투자할 경우</li> <li>③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을 통하여 투자할 경우</li> <li>관련법령: 조특법 제13조 제1항, 조특법 시행령 제11조의2</li> </ul>	계 14 법인세 (14억)
양 도 단 계	창업자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투자자 및 투자조합이 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 비과세</li> <li>① 개인투자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벤처기업에 출자 시</li> </ul>	-

단계	구분 (시행연도)	내 용	조세 지출액
		② 투자조합: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 회사에 출자 시 ▪ 관련법령: 조특법 제14조 제1항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2000)	▪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 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 관련법령: 조특법 제117조 제1항	계 28 증권 거래세 (28억)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2014)	▪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주주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일정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 의 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80% 이상을 재투자 한 경우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 도차익에 대해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할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음 ▪ 관련법령: 조특법 제46조의8	

출처: 김재진(2014)을 참고하여 수정

## 2. 벤처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 변천 과정<sup>27)</sup>

### 가.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 1) 창업단계

가)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제1항, 제2항)

- 1998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조특법 제6조)에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신설되었고, 1999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지원함
- 1998년 벤처기업 지원내용 신설 시 벤처기업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벤처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27) 국세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간추린 개정세법』 각 연도 참고

-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원
- 1999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제2항이 신설되어 입주 조건 등을 폐지하고, 벤처기업 중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감면
- 2004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으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지원을 축소하고, 2008년에는 창업초기 기업이 벤처확인요건을 2년 내에 충족하기 어려워 기한을 연장함
  - 기존 6년간 50%의 세액을 감면하였으나, 2004년 개편을 통해 이를 4년간 감면하는 것으로 변경했고, 사업개시 또는 벤처확인연도부터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당해 5년이 되는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의 세액을 감면함
  - 벤처확인제도 개편으로 인하여 벤처확인을 받기 위한 기존 요건이 강화되어 창업초기 기업의 경우 벤처확인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2008년 벤처확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여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함

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2011년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 및 신축·증축하려는 자와,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을 면제하는 제도를 신설함
  -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 및 조성하여 분양,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 및 증축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50% 경감
  -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산업기술단지 입주자에게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함
  - 본 조항에 대해 두 번에 걸쳐 일몰이 연장되어 현재 제도에 따르면 2017.12.31.까지 적용됨
- 2012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조항이 추가되었고, 2014년 경감비율을 37.5%로 인하함

- 2014년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비율이 50%에서 37.5%로 인하되었고, 일몰기간이 2014년에서 2016.12.31.일까지 연장됨

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조특법 제16조의2)

- 2015년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됨
  -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현금정산형 제외)을 행사함에 따른 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종합소득신고시 소득세액을 3분의 1만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은 이후 2년에 걸쳐 납부하는 제도임
  - 2013년 8월 신설되었으며, 2014년에 해당 조특법을 2016년까지 일몰 연장하되 지원비율은 50%에서 37.5%로 인하하였음
  - 한편, 제 1, 3항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신축, 분양 또는 임대할 경우 취득세를 기존의 37.5%에서 50% 경감해주는 것으로 증가함
  - 2016년 조특법 제16조의 2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연장되었으며, 분할납부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되었고, 당해 종합소득세 납부부터 5년간 세액의 5분의 1을 납부하는 것으로 개정됨

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6조의3)

- 벤처기업이 우수인력을 유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적격스톡옵션에 대해 근로소득과세방식을 근로소득과세방식과 양도소득과세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적격스톡옵션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은 스톡옵션으로 연간 행사가액이 1억원 이하임
  - 근로소득과세방식은 스톡옵션 행사시 부여받은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 양도소득과세방식은 스톡옵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 양도 시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함

마) 벤처기업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46조 2)

- 2000년에 벤처기업 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벤처사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주 간 주식을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는 과세특례가 신설됨

- 전략적 제휴계획에 따라 2000년도에 주식을 교환하여야 하고, 주주 간에 특수 관계가 없는 경우에 감면받을 수 있음
- 현행 기업집단 간 특정계열사의 주식교환을 통한 기업양수도시 개인주주의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 교환양도한 주식을 10년 이내 재취득하거나 교환 취득한 주식을 5년 이내에 양도 또는 주식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사업이 폐지되거나 해산되었을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함
- 2002년 제도로 인한 감면실적이 미미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됨

<표 III-3> 창업·성장단계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변천과정

시행연도	조항	변천내용
1998	조특법 제6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li> <li>- 벤처기업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벤처형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지원</li> </ul>
1999	조특법 제6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구분 및 범위 확대</li> <li>- 벤처기업전용단지 등의 입주조건 폐지</li> <li>- 벤처기업 중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발생연도부터 6년간 50% 세액감면</li> <li>▪ 일몰 신설: 2003.12.31.까지 해당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만 지원</li> </ul>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개정</li> <li>- 벤처기업 중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발생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li> <li>- 단, 사업개시 또는 벤처확인연도부터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5년이 되는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의 세액감면</li> <li>▪ 일몰 연장: 2006.12.31.까지</li> </ul>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몰 연장: 2009.12.31.까지</li> </ul>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벤처기업 확인기간 연장(2년→3년)</li> <li>-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li> </ul>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몰 연장: 2012.12.31.까지</li> </ul>
2011	지특법 제5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신설</li> <li>- 제1항: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 및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취득세 면제 또는 재산세 50% 경감</li> <li>- 제2항: 벤처기업집적시설, 산업기술단지 입주자 등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함</li> </ul>

시행연도	조항	변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항: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건축물, 연구시설 신축 및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재산세 50% 경감</li> <li>- 1~3항 일몰 연장: 2012.12.31까지</li> </ul>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항 신설</li> <li>- 제4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50% 경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50% 경감</li> <li>- 조항 일몰 연장: 2013.12.31</li> </ul>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항 일몰 연장: 2014.12.31.까지</li> </ul>
2013	조특법 제16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납부특례 신설</li> <li>-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3년간 분할납부</li> </ul>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항 개정(지원비율 50%→37.5% 인하)</li> <li>- 취득세·재산세 지원 비율 37.5%로 인하</li> <li>- 일몰 연장: 2016.12.31.까지</li> </ul>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항, 제3항 개정(취득세 감면→50% 감면)</li> <li>- 제1항: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 및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취득세 또는 재산세 50% 경감</li> <li>- 제3항: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건축물, 연구시설 신축 및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재산세 50% 경감</li> </ul>
2015	조특법 제16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신설</li> <li>-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적격스톡옵션에 대해 근로소득과세 방식과 양도소득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용함</li> </ul>
2016	조특법 제16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개정(분할납부기간 확대: 2년→4년)</li> <li>- 당해 종합소득세 납부시부터 5년간 세액의 1/5을 매년 납부</li> <li>▪ 일몰 연장: 2018.12.31까지</li> </ul>
2016	조특법 제6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몰 연장: 2018.12.31.까지</li> </ul>

출처: 김재진(2014)을 참고하여 수정

## 2) 성장단계 및 인수·합병단계

가)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46조의7)

- 벤처투자 지원을 위해 2014년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한 비상장기업이나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중이 5%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를 대상으로 주식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의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함

- 전략적 제휴란 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제휴법인과 계약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함

□ 2016년 한 차례 일몰이 연장되어 현행 제도에 따르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도를 적용함

나) 벤처기업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46조의2, 2002년 일몰기한 종료)

□ 2000년 벤처기업 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벤처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벤처기업 주주 간 주식을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는 과세특례가 신설됨

- 전략적 제휴계획에 따라 2000년도에 주식을 교환하여야 하고, 주주 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감면받을 수 있음
- 현행 기업집단 간 특정 계열사의 주식교환을 통한 기업 양수도 시 개인주주의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 교환양도한 주식을 10년 이내 재취득하거나 교환취득한 주식을 5년 이내에 양도 또는 주식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사업이 폐지되거나 해산되었을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함

□ 2002년 제도로 인한 감면실적이 미미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됨

다)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이연(조특법 제46조의2, 2010년 일몰기한 종료)

□ 2004년 건전한 벤처기업의 성장과 부실한 벤처기업의 정리 등을 위해 시장기능에 의한 벤처기업의 M&A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제휴법인의 주주가 제휴법인의 주식을 벤처기업의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을 처분할때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함

-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략적 제휴계획에 따라 주식 등을 교환해야 하고, 제휴법인의 주주 1인과 벤처기업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가 아니어야 함
- 전략적 제휴계획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 벤처기업과 제휴법인이 계약당사자일 것
  - 제휴사업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 제휴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질 것
  - 기술·정보·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 제휴법인의 주주 또는 벤처기업이 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취득 후 1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추정함
  - 제도는 2004년부터 교환 또는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2006.12.31.까지 적용됨
- 2007년 조세지원대상이 코스닥상장 벤처기업으로 확장되었고, 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제도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었음
- 과세이연 대상기업의 범위에 비상장벤처기업 이외에도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이 추가되었고, 일몰기한이 2009.12.31.까지 3년 연장되었음
- 2010년 감면실적이 전무하여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일몰 종료에 따라 제도가 폐지됨
- 라)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이연(조특법 제46조의3)
- 동종 또는 이종 물류기업 간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중소 물류기업의 주주가 다른 물류기업의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함
- 동종 물류기업은 운송업체 간 또는 지역별 창고업체 간을 의미하고, 이종 물류기업은 운송-창고업체 간, 운송-창고, 시스템운영업체 간을 의미함
  - 1년 내 교환이나 현물출자한 주식을 처분하면 이연세액을 추정함
  - 제도는 2005.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2006.12.31.까지 적용됨
- 2007년 물류기업 간 M&A 및 구조조정 지원을 목적으로 적용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2010~2015년까지 감면실적이 전무하여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됨

마) 벤처기업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시 이월결손금 공제(조특법 제47조의3, 2013년 일몰기한 종료)

- 벤처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벤처기업이 일반법인 또는 다른 벤처기업에 합병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완화하는 제도가 신설됨
  - 벤처기업의 경우 본격적인 사업개시에 앞서 연구·개발 등의 비용지출이 선행될 수 있으므로 제도 적용 시 수익발생시점이 아닌 비용지출시점부터 사업영위 기간을 기산함
  - 벤처기업은 규모가 작아 일반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주식의 10%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병 조건을 피합법법인이 받은 교부조식이 합병법인 주식의 3% 이상으로 완화함
  
- 2007년에 제도를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도의 적용기한을 2009.12.31.까지 3년 연장하였고, 2010년 금융위기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제도를 2012.12.31.까지 3년 연장함
  
- 2013년 현행 법인세법상 합병과세특례 규정으로 충분한 세제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일몰종료에 따라 제도가 폐지됨

바)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제12조의3·12조의4)

- 2013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을 촉진하여 벤처창업자 등의 투자금 회수와 채투자 지원을 위하여 합병법인이 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취득에 대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함
  - 기술가치금액은 ① 벤처기업특별법상 평가기관의 평가금액에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 ② 인수가액-[(순자산시가×1.3)×지분비율] 중 하나를 선택함
  - 인수법인은 내국법인, 피인수법인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매출액 대비 R&D비용이 5% 이상인 기업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인수가액이 피인수법인 순자산시가의 150% 이상을 차지해야 하고 지분비율은 50%를 초과해야 하며, 종전 사업영위 및 취득 당시의 지분비율을 유지해야 함

- 2015년 기업인수형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도의 요건 및 사후관리의 예외 사유를 신설함
  - 인수가액이 피인수법인 순자산시가의 130% 이상을 차지해야 하고,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지분의 30%를 초과하여 인수함과 동시에 경영권을 인수해야 하는 요건이 포함됨
  - 스톡옵션 행사, 우리사주 취득, 벤처캐피탈 출자로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사후관리의 예외사유로 보아 기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사)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조특법 제31조)

- 1998년 기업구조조정 당시 양도세를 전액 과세이연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도세 50% 감면에서 이월과세 방법으로 전환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사후관리제도를 폐지함
  - 부동산 취득에 대한 양도세에 대해 50% 세액감면제도에서 이월과세로 전환하고 사후관리를 폐지함
  - 사업전환 및 대도시로의 공장 이전 시에도 양도세를 50% 감면하지 않고 과세이연방법으로 단일화하여 사후관리제도 폐지
  -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50% 세액감면을 유지
  
- 2007년 조세감면제도를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라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일몰을 신설하였고, 이후 2010년에 한 차례 더 일몰기한을 연장함
  - 조특법상 감면제도는 일몰 설정 후 일몰 도래 시마다 제도의 타당성, 지원수준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조정하여 재원배분을 효율화해야 함
  - 2010년에는 2012.12.31.까지로 3년 더 제도를 연장함
  
- 2013년에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몰 기한을 삭제하였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함
  - 통합 후 5년 내 50% 이상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표 III-4> 성장 및 인수·합병 단계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변천과정

시행연도	조항	변천내용
1998	조특법 제3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개정</li> <li>- 부동산취득에 대한 양도세·사업전환 및 대도시 공장 이전 시의 양도세를 이월과세로 전환하고 사후관리제도 폐지</li> <li>-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50% 세액감면</li> </ul>
2000	조특법 제46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신설</li> <li>- 벤처기업의 주주와 다른 벤처기업의 주주가 주식 맞교환 시 양도소득세 50% 감면</li> <li>- 일몰 기한: 2001.12.31까지</li> </ul>
2001	조특법 제46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개정</li> <li>- 벤처기업 개인주주가 다른 벤처기업에 소유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함</li> <li>- 교환하면서 양도한 주식을 10년 내 다시 취득하거나, 교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5년 내에 양도할 시에 주식교환으로 얻은 주식을 1년 내에 양도해야 함</li> <li>▪ 일몰 연장: 2001.12.31.까지</li> </ul>
2002	조특법 제46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기한 종료로 인하여 폐지</li> </ul>
2004	조특법 제47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신설</li> <li>- 벤처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비합병법인이 받은 교부주식이 합병법인 주식의 3% 이상 주식 취득 이상일 경우로 완화됨</li> </ul>
2004	조특법 제46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신설</li> <li>- 제휴법인의 주주가 제휴법인의 주식을 벤처기업의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li> <li>▪ 일몰 연장: 2006.12.31.까지</li> </ul>
2005	조특법 제46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신설</li> <li>- 중소기업의 주주가 다른 물류기업의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li> <li>- 일몰 기한: 2006.12.31까지</li> </ul>
2007	조특법 제46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개정</li> <li>- 과세이연 대상기업 범위에 비상장 벤처기업 외에 코스닥상장 벤처기업을 추가함</li> <li>▪ 일몰 연장: 2009.12.31.까지</li> </ul>
2007	조특법 제31조, 제46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몰 연장: 2009.12.31.까지</li> </ul>

시행연도	조항	변천내용
2007	조특법 제47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 합병의 경우에도 구분경리 예외규정을 허용하여 벤처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함</li> </ul> </li> <li>▪ 일몰 신설: 2009.12.31.까지</li> </ul>
2010	조특법 제46조의2, 제46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기한 종료로 인하여 폐지 또는 잔류하고 있으나 실적이 전무하여 실효성이 없음</li> </ul>
2010	조특법 제47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몰 연장: 2012.12.31.까지</li> </ul>
2013	조특법 제12조의3, 제12조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법인이 기술혁신형 합병, 주식취득에 대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함</li> </ul> </li> </ul>
2013	조특법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몰 폐지 및 사후관리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주가 일정기간 내에 주식을 처분하거나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 추정</li> </ul> </li> </ul>
2013	조특법 제47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기한 종료로 인하여 폐지</li> </ul>
2014	조특법 제46조의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한 비상장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amp;D비중이 5% 이상인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주는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주식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li> </ul> </li> </ul>
2015	조특법 제12조의3, 제12조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 및 사후관리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가액이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30% 이상일 것</li> <li>- 사후관리의 예외사유 신설</li> </ul> </li> </ul>
2016	조특법 제46조의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몰 연장: 2018.12.31까지</li> </ul>

## 나.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 1) 투자단계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6조)

□ 1999년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면서,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조항이 추가됨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투자자에 대해 출자액의 20%를 종합소득에서 공제함

- 이후 2011년까지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벤처기업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 일몰이 연장되었으나,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과 이미 지원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꾸준히 인하됨
  - 2002년에는 소득공제율이 30%에서 15%로 인하되었고, 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70%에서 50%로 인하됨
  - 2007년에는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인하되었고, 2009년 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에서 30%로 인하됨
  
- 2012년에 개인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여 창업벤처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하였고, 공제한도 또한 종합소득금액의 30%에서 40%로 확대함
  - 2013년에도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하였음
  - 또한, 의무보유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여 3년 내로 출자지분을 이전 및 회수하는 경우 추정함
  
- 2014년부터 출자액 크기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차등적용되었고, 2015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소득공제율이 확대됨
  - 2014년에 5천만원 이하의 출자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50%, 5천만원 이상의 출자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함
  - 2015년에는 출자액 1,500만원 이하 출자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100%, 1,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율 50%,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함

나)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6조의4)

-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개인이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이연 선택을 허용함

〈표 III -5〉 투자단계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변천과정

시행연도	조항	변천내용
1999	조특법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에 대한 조세지원 추가</li> <li>- 1999.1.1부터 개인투자자가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액의 20%를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함</li> <li>▪ 소득공제율 인상(20%→30%)</li> <li>- 1999.8.31.이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출자액의 30%를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함</li> <li>▪ 공제한도: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70%(조특령 제14조)</li> <li>▪ 의무보유기간 5년 내 출자지분 등을 이전 및 회수시 추정</li> <li>▪ 일몰 기한: 2000.12.31까지</li> </ul>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몰 연장: 2003.12.31까지</li> </ul>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공제율 인하(30%→15%)</li> <li>- 2002.1.1.이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종합소득 소득공제율을 15%로 인하함</li> <li>▪ 공제한도 인하(종합소득금액의 70%→50%)</li> <li>-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소득공제함</li> <li>▪ 거주자의 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되는 경우 주된소득자의 소득에서 공제함</li> </ul>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몰 연장: 2006.12.31까지</li> </ul>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대상에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추가함</li> <li>- 2005.7.13.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함</li> </ul>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공제율 인하(15%→10%)</li> <li>- 2007.1.1.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출자액의 10%를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함</li> <li>▪ 일몰 연장: 2008.12.31까지</li> </ul>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한도 인하(종합소득금액의 50%→30%)</li> <li>- 2009.1.1.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소득공제함</li> <li>▪ 일몰 연장: 2010.12.31까지</li> </ul>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몰 연장: 2012.12.31까지</li> </ul>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공제율 확대(10%→20%)</li> <li>- 2012.1.1.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출자액의 20%를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함</li> <li>▪ 공제한도 인상(종합소득금액의 30%→40%)</li> <li>- 2012.1.1.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소득공제함</li> <li>▪ 의무보유기간 축소(5년→3년)</li> <li>- 2012.1.1.이후 3년 내 출자지분 등을 이전 및 회수하는 경우 추정함</li> </ul>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공제율 확대(20%→30%)</li> <li>- 2013.1.1.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출자액의 30%를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함</li> <li>▪ 일몰 연장: 2014.12.31까지</li> </ul>

시행연도	조항	변천내용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공제율 확대(30%→30%, 50%)</li> <li>- 2014.1.1.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5천만원 이하 출자액의 50%, 5천만원 초과 출자액의 30%를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함</li> <li>▪ 공제한도 인상(종합소득금액의 40%→50%)</li> <li>- 2014.1.1.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소득공제함</li> </ul>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공제율 확대(30%,50%→30%,50%,100%)</li> <li>- 2015.1.1.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1,500만원 이하 출자액의 100%, 1,500만원~5,000만원 출자액의 50%, 5,000만원 초과 출자액의 30%를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함</li> <li>▪ 일몰 연장: 2017.12.31까지</li> </ul>
2016	조특법 제16조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신설</li> <li>- 개인이 산업재산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 허용</li> </ul>

## 2) 보유단계

가) 벤처기업등 투자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조특법 제13조 제4항)

- 1999년 9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조특법」 제13조 제2항에 벤처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 2000년에는 창투사 등이 창투조합 등을 설립 및 운용하는 것이 법에 의한 고유업무로 직·간접투자 모두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효과가 동일하므로 세제지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본 제도가 일반법인에 대한 특례규정이므로 일몰제도를 신설함
  - 일몰 시한이 2001년부터 2001.12.31.로 적용됨
  - 2007년에는 제도의 항구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몰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지정하였으나, 이후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를 세 차례 연장하여 현재 제도의 일몰 기한은 2017.12.31까지임
- 2005년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을 투자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차익을 비과세함

□ 2014년에는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자본확충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 제도 신설 시 관련 조항은 「조특법」 제13조 제2항이었으나, 2001년에는 제2항에서 제3항, 2014년에는 제3항에서 제4항으로 변경됨

나) 투자조합 등의 배당소득·귀속소득 원천징수/소득금액 계산 특례(조특법 제14조 제4~6항)

□ 1999년 특수관계가 없고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주식 등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및 경영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조특법」 제14조 제4~6항의 지원대상에 벤처기업이 포함됨

○ 제4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 제5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분배금에 대해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 제6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소득의 경우 투자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함

□ 「조특법」 제14조 제4항~6항의 초기 일몰 기간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이후 중소기업창업투자 등의 활성화를 통한 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일몰이 연장되어 현행 제도에 따르면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도가 적용됨

○ 2004, 2007, 2010, 2013, 2015년에 약 2~3년간 제도가 연장되었음

□ 2001년에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2005년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한 투자와 동일하게 세제를 지원하는 제도가 포함됨

<표 III-6> 보유단계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시행연도	조항	변천내용
1999	조특법 제13조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신설(벤처기업 지원 관련, 조특법 제13조 제2항)</li> <li>-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li> <li>▪ 일몰 신설: 2003.12.31.까지</li> </ul>
1999	조특법 제14조 제4-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신설(벤처기업 관련)</li> <li>-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li> <li>-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분배금에 대해 해당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함</li> <li>- 투자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함</li> <li>- 일몰 신설: 2003.12.31.까지(조특법 제14조 제7항에 따름)</li> </ul>
2001	조특법 제13조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투사 등의 간접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추가</li> <li>- 창투사·신기술금융사가 창투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도 직접출자와 동일한 세제지원 적용</li> <li>▪ 조항 변경: 제13조 제2항→제13조 제3항</li> </ul>
2002	조특법 제14조 제4-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한 투자와 동일하게 세제지원</li> </ul>
2004	조특법 제13조 제4항, 제14조 제4-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몰 연장: 2006.12.31까지</li> </ul>
2005	조특법 제13조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 비과세대상 추가</li> <li>-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li> </ul>
2005	조특법 제14조 제4-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천징수특례 대상 추가</li> <li>-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li> </ul>
2007	조특법 제13조 제4항, 제14조 제4-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몰 연장: 2009.12.31까지</li> </ul>
2010	조특법 제13조 제4항, 제14조 제4-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몰 연장: 2012.12.31까지</li> </ul>

시행연도	조항	변천내용
2013	조특법 제13조 제4항, 제14조 제4-6항	▪ 일몰 연장: 2014.12.31까지
2014	조특법 제13조 제4항	▪ 법인세 비과세대상 추가 - 코넥스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 조항 변경: 제13조 제3항→제13조 제4항
2015	조특법 제13조 제4항, 제14조 제4-6항	▪ 일몰 연장: 2017.12.31까지

### 3) 양도단계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제13조 제1항)

- 1999년 9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1999년부터 벤처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 2001년 창투사들이 창투조합 등을 설립·운영하는 것은 법에 의한 고유 업무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효과가 동일하여 직·간접투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세제지원을 적용하였고, 2005년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설립 이후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 및 출자지분도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
- 2007년에는 제도의 항구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의 일몰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지정하였고 이후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를 세 차례 연장하여 현재 제도의 일몰 기한은 2017년까지임
- 2014년에는 코넥스 상장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 ① 해당기업 상장 후 2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 증자대금 납입, ② 해당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 ③ 해당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주식 및 출자지분을 취득함

나) 창업자 등への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4조제1항)

- 특수관계가 없고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벤처기업투자 활성화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하여 1999년 개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제도 신설됨
  
- 2001년부터 창투조합 등을 설립·운영하는 것은 법에 의한 고유 업무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효과와 동일하므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도 직접출자와 동일한 세제지원을 적용함
  
- 2003년에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과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한 투자와 동일하게 세제를 지원하였고, 2005년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제도를 적용함
  
- 2009년 제도의 항구화를 방지하고, 일몰 도래 시 연장 여부를 일관되게 검토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로 적용하였고, 이후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세 차례에 걸쳐 일몰이 연장되어 현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도가 적용됨
  
- 2012년 투자금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비과세 의무보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고, 코넥스시장 상장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도 양도차익 비과세

다)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 제117조제1항)

- 2000년에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를 양도함
  - 창업자 외에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도 포함함
  - 신설 당시 일몰기한이 2003년까지로 지정되었고, 이후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

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일몰이 다섯차례 연장되어 현재 제도의 적용 기한은 2017년까지임

라)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46조의8)

- 벤처 재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4년에 기업을 매각한 이후 벤처기업 등에 재 투자한 경우에 재투자주식 및 출자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함
  - 기업의 매각요건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또는 본인보유 주식의 80% 이상을 양도해야 하고, 재투자 기한은 기업매각을 위해 주식을 양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임
  - 제도의 적용기한은 2015년 12월 31일로, 2016년에 한차례 연장되어 현재 2018년까지로 연장됨

<표 III-7> 양도단계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시행연도	조항	변천내용
1999	조특법 제13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신설(벤처기업 지원 관련)</li> <li>-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li> </ul>
1999	조특법 제14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신설</li> <li>- 벤처기업/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 비과세</li> </ul>
2001	조특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투자 등의 간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추가</li> <li>- 창투자·신기술금융사가 창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간접출자 하는 경우에도 직접출자와 동일한 세제지원 적용</li> </ul>
2001	조특법 제1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신설</li> <li>-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li> <li>- 한시적 지원: 2003.12.31까지</li> </ul>
2003	조특법 제14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한 투자와 동일하게 세제지원</li> </ul>
2004	조특법 제1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몰 연장: 2006.12.31까지</li> </ul>

시행연도	조항	변천내용
2005	조특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에 대해서 양도차익 비과세</li> </ul>
2007	조특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몰 신설: 2009.12.31.까지</li> <li>- 조특법 제14조 제1항의 일몰은 조특법 제14조 제8항에 따름)</li> </ul>
2007	조특법 제1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몰 연장: 2009.12.31까지</li> </ul>
2010	조특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몰 연장: 2012.12.31까지</li> </ul>
2012	조특법 제14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과세 의무보유기간 완화</li> <li>- 비과세 의무보유기간 5년→3년</li> </ul>
2013	조특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몰 연장: 2014.12.31까지</li> </ul>
2014	조특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세 비과세대상 추가</li> <li>- 코스닥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양도차익 비과세</li> </ul>
2014	조특법 제46조의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도 신설</li> <li>-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시 과세특례</li> <li>- 일몰 신설: 2015.12.31까지</li> </ul>
2015	조특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몰 연장: 2017.12.31까지</li> </ul>
2016	조특법 제46조의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몰 연장: 2018.12.31까지</li> </ul>



## IV. 주요국의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





## IV. 주요국의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

-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의 벤처기업은 주로 벤처캐피탈로부터 초기 투자를 얻는 것에 무리가 있는 신생 중소기업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각 국가의 중소기업 및 신생기업 지원제도를 정리함
- 대체로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지원보다는 벤처투자자(개인 및 벤처캐피탈)에 대해서 다양하게 조세지원을 하는 것으로 확인됨

### 1. 미국<sup>28)</sup>

#### 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1) 초과누진 법인소득세율

- 내국세법(IRC) §11의 법인세법은 8개의 소득구간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이 적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해줌

<표 IV-1> 미국의 법인세율(2016)

소득구간	세율	한계세율 적용소득
\$50,000 미만	15%	0
\$50,000 이상 \$75,000 미만	\$7,500 + 25%	\$50,000
\$75,000 이상 \$100,000 미만	\$13,750 + 34%	\$75,000
\$100,000 이상 \$335,000 미만	\$22,250 + 39%	\$100,000
\$335,000 이상 \$10,000,000 미만	\$113,900 + 34%	\$335,000
\$10,000,000 이상 \$15,000,000 미만	\$3,400,000 + 35%	\$10,000,000
\$15,000,000 이상 \$18,333,333 미만	\$5,150,000 + 38%	\$15,000,000
\$18,333,333 이상	35%	0

자료: IRC §11 [Tax Imposed], 2013 Instructions for Form 1120, U.S.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IRS, 2015, p. 17. 참조

28) 김재진(2014), pp.40~48 참고

## 2) S 법인(S Corporation)제도

- 내국세법에서는 일정 규모 미만의 법인을 S 법인으로 정하여, 일반법인인 C 법인(C Corporation)과는 달리 법인소득이 회사 단계가 아닌 주주 단계에서 과세됨
  - S 법인의 설립요건에는 주주가 100명 이하이어야 하고, S 법인이 되기 위한 모든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요건과 내국세법상 자격이 되는 국내 주식회사여야 한다는 것과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이 가능하다는 회사요건이 있음
    - C 법인이나 파트너십은 S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S 법인은 법적으로 C 법인으로 간주되나 과세목적상으로는 파트너십 대우를 받아 사업손익 등이 주주단계로 양도되어 이중과세를 받지 않음
  
- S 법인은 조세목적상 도관 또는 투시단체로 분류되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신에 해당 손익에 대해 주주에게 출자비율로 배분되어 개인소득세가 과세되어 주주가 받을 이윤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담되지 않고,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음
  - 단, S 법인의 소극적 투자소득이 법인 총수입의 25% 초과 시 초과된 부분에 한하여 법인세가 부과됨

### 나. 벤처캐피탈 조세지원

#### 1) 벤처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 가) S법인의 주주에 대한 조세지원제도<sup>29)</sup>

- S 법인에 출자한 주주에 대해 출자비율별로 배분한 S 법인의 손익과 주주 개인의 통상소득을 합산과세하므로 세후 투자이익이 일반기업에 투자할 때보다 크고, 소득세 경감을 통하여 투자 리스크가 감소하고,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 S 법인제도에 따르면 법인세와 S 법인의 배당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주식취득가액을 조정함

29) IRC §1366 [Pass-thru of items to shareholders]

나)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sup>30)</sup>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 SBIC 주식에 투자 시 주식매각이익 과세경감, 주식매각손실과 통상소득의 합산, SSBIC 투자에 대한 세제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주식매각이익 과세경감<sup>31)</sup>: SBIC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매각 시 발생한 주식매각이익의 50%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

- C 법인 이외의 납세자가 다음의 공제혜택을 받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조건으로는 ① 적격 중소기업으로서 총자산 5천만달러 미만, ② 총자산 80% 이상을 적격사업에 투자, 보유한 유가증권·부동산 합계가 총자산 10% 이하, ③ 주식 발행 전후로 1년 동안 자기주식에 대한 환매 비율이 전체 발행한 주식의 5% 이하 등으로 이를 모두 만족해야 함

- 엔젤 투자자의 경우 비과세 한도 금액은 당해 연도에 매각한 주식 취득가액의 10배와 1천만달러에서 전년도까지 과세되지 않은 적격주식에 대한 매각이익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합산 한도는 5만달러로 제한하되, 부부 공동신고의 경우 10만달러까지 허용

○ 주식매각손과 통상소득의 합산<sup>32)</sup>: SBIC에 투자한 주식매각 시 매각손이 발생한 경우 통상손실로 인정받으므로 주식매각손실 전액에 대해 납세자의 통상소득과 합산 가능함

- 이를 받기 위한 중소기업의 요건으로는, ① 동 제도가 적용되는 주식 발행 직후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합계액이 100만달러 이하 ② 주식매각손실 발생 직전 5년 동안 임대료, 로열티 등의 이익 합계가 총수입의 50% 미만이어야 함

○ SSBIC(Specialized SBIC)투자에 대한 세제우대 조치<sup>33)</sup>: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30) 적격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및 용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1958년에 제정되어 시행된 중소기업투자법을 설립 근거로 함

31) IRC §1202 [Partial exclusion for gain from certain small business stock] (a) Exclusion

(1) In general: In the case of a taxpayer other than a corporation, gross income shall not include 50 percent of any gain from the sale or exchange of 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held for more than 5 years.

32) IRC §1242 [Losses on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stock]

(2) such loss would (but for this section) be a loss from the sale or exchange of a capital asset, then such loss shall be treated as an ordinary loss.

33) IRC §1044 [Rollover of publicly traded securities gain into specialized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

(a) Nonrecognition of gain: In the case of the sale of any publicly traded securities with respect to which the taxpayer elects the application of this section, gain from such sale shall be recognized only to the extent that the amount realized on such sale exceeds—

(1) the cost of any common stock or partnership interest in a specialized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purchased by the taxpayer during the 60-day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of such sale, reduced by

(2) any portion of such cost previously taken into account under this section.

This section shall not apply to any gain which is treated as ordinary income for purposes of this subtit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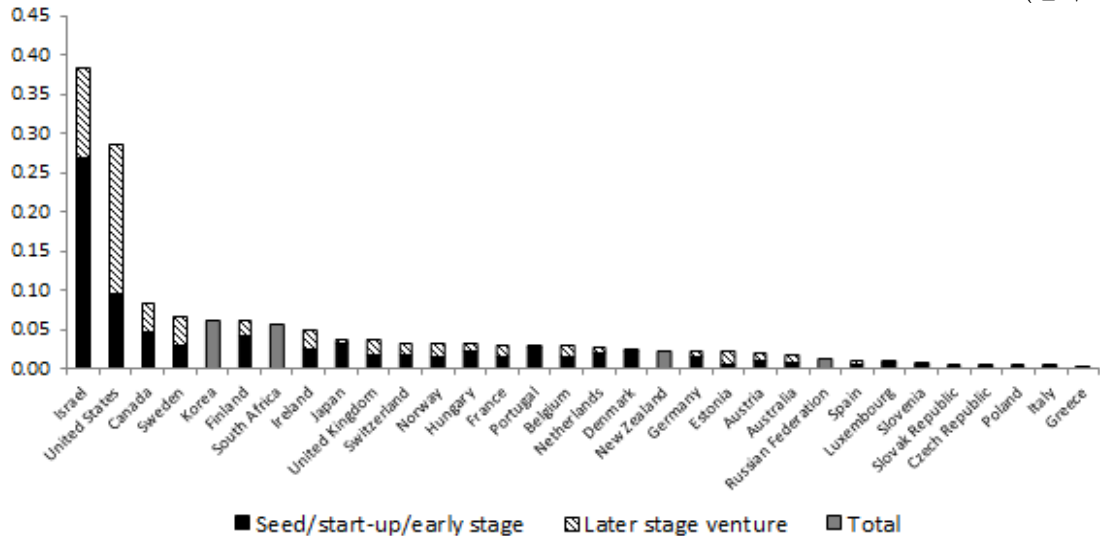
을 매각하여 얻은 대금으로 SSBIC의 주식이나 파트너십 지분을 60일 이내에 매수하는 경우, 매수금액을 초과하는 매각대금에 한해서만 과세함

## 2. 이스라엘<sup>34)</sup>

- 이스라엘은 GDP 대비 벤처캐피탈에 대한 투자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국가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림 IV-1] 연도별 회수 비중 현황 각국별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 비율

(단위: %)



자료: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5 - OECD 2015

### 가.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 자본투자촉진법(Law for the Encouragement of Capital Investment)은 이스라엘의 국 내외 자본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법률로, 이 법에 의하여 승인된 기업인 AE (Approved Enterprise)는 다양한 형태의 혜택을 부여받음
  - 새로운 시설이나 확장에 대한 자본투자를 하여 AE로 승인받은 기업은 현금 보조금의 수취 또는 미배분 이익에 대하여 2~10년간 법인세 기간면제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34) 김재진·홍범교(2014) 참고

- 특정 우선개발 지역에 있는 승인받은 기업은 외국인 주주에 대한 배분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금에 대한 원천세 총합 15%만 과세하고, 투자 및 수익 수준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기업에 10년간 법인세 및 배당금에 대한 원천세를 면제함<sup>35)</sup>
  - 2011년부터 대형 다국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 또는 8%의 법인세율이 적용됨<sup>36)</sup>

## 나. 벤처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 1)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우대

- 이스라엘의 벤처캐피탈 펀드 투자 촉진 세제우대는 일반적으로 비거주자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이스라엘 기술회사에 대한 투자를 실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 이스라엘 사기업의 비거주자 주주들은 해당 주식을 2009년 이후에 매입하였고, 비거주자에 의해 운영 및 유지되는 이스라엘의 고정사업장을 통해 소유하지 않았어야 하고, 부동산 자산 주식이 아니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경우가 아닌 경우여야 함
- 벤처캐피탈 펀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펀드 내 모든 투자자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모든 외국 파트너십은 이스라엘 내에서 모든 과세를 면제받음
  - 펀드 총액이 최소 1천만달러로, 이 중 최소 절반을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받은 것이어야 함
  - 펀드의 최소 50% 이상이 이스라엘 내의 기업, 산업 및 정보·의료·바이오 기술 또는 연구개발 관련 활동을 주로 하는 사업에 관여하는 기업의 공장 설립 및 확장을 목적으로 투자되어야 함
  - 펀드에 의해 조성된 펀드 총액의 최소 30%가 이스라엘에서 설립된 회사이고, 이스라엘 내에서 사업활동을 해야 함

35) Israel Track

36) Strategic Investment Track

### 3. 영국

#### 가. 벤처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 1) VCT(Venture Capital Trust) 투자자에 대한 세제우대<sup>3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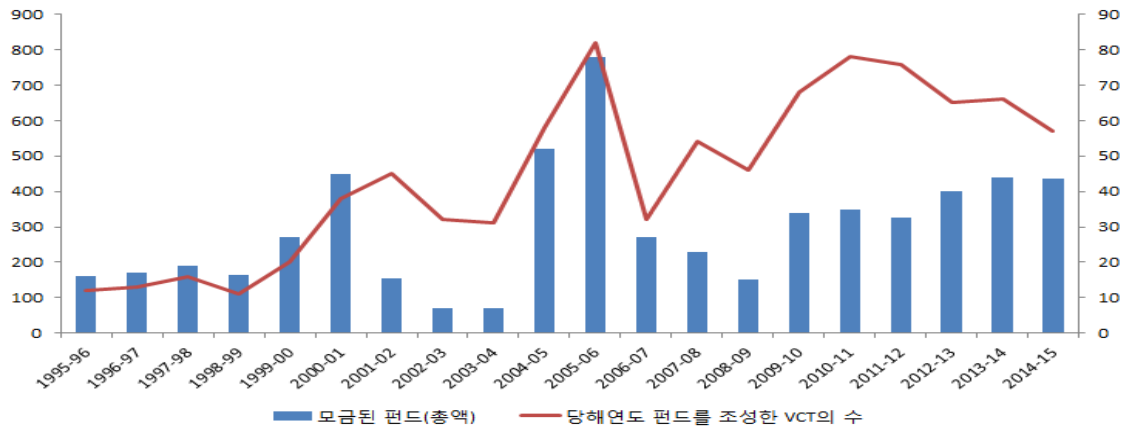
- 일종의 투자신탁과 유사한 VCT는 개인 투자자가 규모가 작고 위험이 큰 비상장 회사에 간접적인 투자 유도를 위하여 1995년에 제도 형식으로 도입되었고,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VCT는 반드시 주식 거래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VCT는 투자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기업세를 면제받음
  - VCT 투자를 받는 기업은 정규직 직원 250명 이하, 투자 이전의 전체 자산 1,500만유로 미만, 투자 직후의 전체 자산이 1,600만유로 미만이어야 하고, 조건이 맞는 기업은 12개월 동안 500만유로의 VCT 투자를 받을 수 있음
  
- VCT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회사, 수탁자 등은 해당되지 않음)는 다음과 같은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18세 이상의 개인 투자자들은 최소 5년 동안 지분을 투자하면 매년 투자액의 30%를 20만유로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VCT의 보통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VCT 보통주를 처분했을 때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 VCT를 통하여 조성된 펀드는 2014-15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4억 3,500만유로로 2013~14 회계연도보다는 감소하였으나 2008년 이후로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펀드를 관리하는 VCT의 수는 2014-15 회계연도 기준 97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각 회계연도에서 펀드를 조성한 VCT의 수는 2014-15년 57개로, 2010년 이래로는 감소하는 추세임

37) HMRC, *Venture Capital Trust: Introduction to National and Official Statistics*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67531/150930\\_OS\\_VCT\\_Intro\\_Note\\_draft\\_v0.2.pdf](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67531/150930_OS_VCT_Intro_Note_draft_v0.2.pdf)

- 소득세액공제율은 95년부터 2004년까지는 20%였다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40%로 인상되었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30%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IV-2] 펀드총액 및 펀드를 관리하는 VCT 수의 회계연도별 추이

(단위: 백만유로, 개)



자료: HMRC, *Venture Capital Trusts Statistics Table 8.6, 2015*

<표 IV-2> VCT를 통해 조성된 펀드 크기 및 VCT의 수

(단위: 백만유로, 개, %)

회계연도	모금된 펀드	당해연도 펀드를 조성한 VCT의 수	펀드를 관리하는 VCT의 수	소득세액공제율
1995~96	160	12	12	20
1996~97	170	13	18	20
1997~98	190	16	26	20
1998~99	165	11	34	20
1999~00	270	20	43	20
2000~01	450	38	61	20
2001~02	155	45	70	20
2002~03	70	32	71	20
2003~04	70	31	71	20
2004~05	520	58	98	40
2005~06	780	82	108	40
2006~07	270	32	121	30
2007~08	230	54	131	30
2008~09	150	46	129	30
2009~10	340	68	122	30
2010~11	350	78	128	30
2011~12	325	76	124	30
2012~13	400	65	118	30
2013~14	440	66	97	30
2014~15	435	57	94	30
총계	5,940	-	-	-

자료: 김재진(2014)를 바탕으로 업데이트, HMRC, *Venture Capital Trusts Statistics Table 8.6*

## 2) EIS(Enterprise Investment Scheme) 투자자에 대한 세제우대

- EIS는 소규모 고위험 기업의 보통주 투자자에게 세액공제를 통하여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하여 1994년에 도입되었고, 2013~14년에 EIS를 받기 위한 기업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함
  - 기업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다른 기업에 의하여 통제되거나 보조를 받으면 안 됨
  - VCT 투자를 받는 기업은 정규직 직원 250명 이하, 투자 이전의 전체 자산 1,500만유로 미만, 투자 직후의 전체 자산이 1,600만유로 미만이어야 하고, 조건이 맞는 기업은 12개월 동안 500만유로의 VCT 투자를 받을 수 있음
  - 모든 펀드는 반드시 주식발행 후 2년 내에 적격 사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 발행회사를 위하여 이용되어야 함
  - 주식발행 기업은 영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져야 함
  
- 2013~14년도의 EIS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투자 혜택은 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이 있음
  - 투자자는 100만유로를 한도로 30%의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투자회사와 특수관계가 없어야 하고, 최소 3~5년간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소득공제혜택을 받은 주식의 처분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 소득공제혜택을 받은 주식 처분 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른 소득세 혜택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이 아닌 일반 소득으로 상쇄할 수 있음
  - EIS 적격 주식에 양도차익을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음
    - 차익은 어떠한 자산 처분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차익이 발생하기 1년 전이나 차익이 발생한 3년 후에 투자되어야 함
    - 이 차익의 규모는 제한이 없고, 투자자가 기업과 관련되어 있어도 무관하고, 관련이 없는 투자자는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음

### 3) SEIS(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me) 투자자에 대한 세제우대

- SEIS는 EIS를 보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창업 기업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하여 투자자에게 EIS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보장하여 투자를 유도함
  - 총자산이 20만유로 이하 및 정규직 직원이 25명 이하여야 하고, VCT나 EIS 투자자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받지 말아야 함
  - 해당 기업은 SEIS를 통하여 15만유로 이상을 투자받지 못하고, 적격 사업 목적을 위하여 모집된 금액을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함
  
- 2013~14년도의 SEIS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음
  - 매년 10만유로 한도로 투자금액의 50%의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음
  - SEIS 소득공제를 받은 주식을 3년 동안 보유한 후 처분하면,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2013~14년에 자산 처분 후 발생한 차액을 SEIS하의 적격 주식에 재투자될 경우 재투자된 금액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 4. 캐나다<sup>38)</sup>

-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사업개발은행(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 및 지역의 비영리기구를 통하여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을 지원하고, 벤처캐피탈 투자자에게 세금혜택을 제공함
  - 캐나다 내의 창업초기 기업의 운영자금은 형식적으로는 다양한 금융기관으로의 용자보다는 창업자 및 창업자의 지인을 중심으로 자금을 얻게 되고, 이후에 엔젤투자자 및 벤처캐피탈로부터 자금을 얻게 됨

### 가.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 내국인 소유의 비상장기업<sup>39)</sup>(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s, CCPCs)은 조세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38) KOTRA 해외비즈니스포털, 캐나다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사업(<http://tradedoctor.kotra.or.kr>)

Venture capital investment in Canada: market and regulatory overview 참고 (<http://ca.practicallaw.com>)

39) 1971.6.18. 이후 설립된 기업으로 외국인에게 경영권이 귀속되지 않으며 주요 의결권은 자국인 소유여야 함

- 영업수입에 대하여 50만캐나다달러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과학연구 및 실험 개발에 대해서는 강화된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최고 300만캐나다달러까지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35%의 세금공제를 제공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20%의 환급 불가 세금공제 제공
- 스톡옵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에 대하여 과세이연받음
- 적격 중소기업 주식 처분 시 자본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

#### 나.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 연방정부와 몇몇의 주정부는 노동지원 벤처캐피탈 기업(labour-sponsored venture capital corporation, LSVCCs)에 투자하는 거주자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줌
  - 노동지원 벤처캐피탈 기업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에 제한이 있고, 그 외 사모펀드에 대해서 강경하게 규제함
  - LSVCCs는 캐나다 내의 벤처캐피탈 시장에서만 효력이 있음

### 5. 스웨덴<sup>40)</sup>

#### 가.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 스웨덴의 벤처캐피탈 자금은 주로 벤처캐피탈펀드와 사모펀드를 통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둘 다 가변적인 성격을 지녀 차이가 매우 적음
  - 벤처캐피탈회사는 능률보다는 기업의 팽창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 투자를 함
  - 사모펀드 투자는 자금유입이 안정적이고, 매출량이 크거나 비용절감을 중요시하는 기업에서 만들어짐
- 2012년 기준으로 43%의 벤처캐피탈 투자금액은 공공분야에서 출자되었고, 57%의 투자금액은 개인 및 기업투자로부터 출자되었고, 공공분야에서의 투자는 주로 투자자 부족한 신생기업의 초기 단계에 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음

40) Venture capital investment in Sweden:market and regulatory overview 참고  
(<http://global.practicallaw.com>)

## 1) 벤처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 2013년 12월부터 설립 단계의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매년 1.3백만크로나만큼의 투자액을 한도로 자본소득의 5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
  - 즉, 최대 소득공제는 65만크로나를 받을 수 있고, 19만 5천크로나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 스웨덴 기업의 주주는 주식 소유기간과 상관없이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양도차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함
  
- 스웨덴 유한회사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될 때는 30%의 세율이 적용되나, 이중과세제도로 인하여 세율이 0~15% 감소하고, EU 국가 내에 위치한 기업의 비상장주식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비과세함

## 2) 벤처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회사의 최대 총투자 금액은 2천만크로나이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자본소득금액의 50%를 소득공제받음
  - 직원에게 매년 30만크로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직원의 수가 50명 이내여야 함
  - 재무제표상 기업의 순매출액이 8천만크로나 이내여야 하고, 기업의 주식을 5년 이상 유지해야 함

〈표 IV-3〉 주요국의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 비교표

미 국	영 국
<p><b>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구간에 따른 법인세 인하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 구간 35%, 중소기업 15%</li> </ul> </li> <li>• S 법인제도를 통하여 법인소득이 회사 단계가 아닌 주주 단계에서 개인소득세로 과세됨</li> </ul>	<p><b>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적인 조세지원으로 R&amp;D 세액공제</li> <li>• 법인세 인하</li> </ul>
<p><b>조세지원제도 조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000달러 미만의 기업</li> <li>• S법인 설립요건은 100명 이하의 모든 주주의 동의를 얻은 국내 주식회사여야 하고,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하는 것임</li> </ul>	<p><b>조세지원제도 조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지원 항목이 미미함</li> </ul>
<p><b>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법인제도로 인하여 소득세 경감 및 사회보장세 면제</li> <li>• SBIC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5년 이상 보유 후 매각 시 주식매각이익의 50% 과세경감</li> <li>2) 손실은 통상손실로 인정받아 통상소득과 합산가능</li> </ol> </li> <li>• SSBIC 투자에 대한 세제우대</li> </ul>	<p><b>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CT 투자자에 대한 세제우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업세 면제 및 12개월 간 500만 유로의 VCT를 투자받을 수 있음</li> <li>2) 보통주 배당금에 대하여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li> </ol> </li> </ul>
<p><b>조세지원제도 조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와 배당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주식취득가액을 조정</li> <li>• 1) 총자산 5,000만달러 미만, 총자산 80% 이상을 적격사업에 투자, 보유 유가증권·부동산 합계가 총자산의 10% 이하, 주식발행 전후로 1년간 자기 주식에 대한 환매 비율이 5% 이하</li> <li>• 2) 주식 발행 직후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합계가 100만달러 이하, 손실발생 직전 5년 간 임대료 등의 이익 합계가 총수입의 50% 미만</li> <li>• 주식매각 대금으로 SSBIC 주식이나 지분을 60일 이내에 매수하는 경우, 매수금액 초과하는 대금에 한하여 과세함</li> </ul>	<p><b>조세지원제도 조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주식거래소에 등록되어있는 VCT이 투자하는 기업은 정규직 직원 250명 이하, 투자 이전 전체 자산 1,500만 유로 미만, 투자 이후 전체 자산 1,600만유로 미만이 경우</li> <li>• 2) 18세 이상 개인 투자자가 최소 5년 간 지분투자 시 매년 투자액의 30%를 20만유로 한도 내에서 공제받음</li> </ul>

영국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투자촉진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금보조금 또는 법인세 면제 중 선택가능</li> <li>2) 우선개발 지역의 기업은 외국인 주주 배분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금에 대해 원천세 총합 15% 과세/면제</li> </ol> </li> </ul>	조세지원제도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IS 투자자에 대한 세제우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통주 투자자에게 제액공제 및 12개월 간 500만유로의 VCT를 투자 제공</li> <li>2)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li> </ol> </li> <li>• SEIS 투자자에 대한 세제우대: 소득공제와 감면 혜택 및 최대 15만유로의 SEIS 투자 제공</li> </ul>	조세지원제도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기업이 상장사가 아니며, 투자 이전 전체 자산 1,500만유로 미만, 투자 이후 전체 자산 1,600만유로 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펀드는 주식발행 후 2년 내에 적격 사업활동을 하는 영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주식발행회사를 위하여 이용되어야 함</li> </ul> </li> <li>• 2) 3~5년간 주식 보유한 투자자는 100만유로를 한도로 30%의 소득공제 신청가능 및 양도소득세 면제</li> <li>• 총자산 20만유로 이하, 정규직 직원 25명 이하, VCT/EIS 투자자를 통한 자금조달이 없는 경우, SEIS 투자자에게 매년 10만유로 한도로 투자금액의 50% 소득공제 제공, 주식처분 시 양도소득세 감면받음</li> </ul>
이스라엘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확장 및 자본투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은 보조금 또는 미배분 이익에 대하여 2~10년간 법인세 면제</li> <li>• 2) 투자 및 수익 수준이 높은 지역의 기업은 원천세 면제, 다국적기업의 경우 5~8% 법인세 적용</li> </ul>	조세지원제도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투자 외국인 투자자 대상 벤처캐피탈 펀드 투자 촉진 세제우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인 투자자 양도소득세 비과세</li> <li>2) 권리 양도·이전하는 외국 파트너십의 모든 과세 면제</li> </ol> </li> </ul>	조세지원제도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2009년 이후 기술회사 주식 매입하였고, 부동산 자산 주식이 아닐 경우</li> <li>• 2) 펀드 총액이 최소 1,000만달러로, 이 중 최소 50%는 외국인 투자자이며, 최소 50% 이상이 이스라엘 내 산업·기술·연구 관련 기업의 공장 설립 및 확장 목적의 투자, 최소 30%가 사업환경이 이스라엘이어야 함</li> </ul>

캐나다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국인 소유 비상장 기업(CPCs) 조세혜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업수입 소득공제</li> <li>R&amp;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li> <li>스투업선에 대한 과세이연</li> <li>직격 기업주식 처분 시 자본소득에 대하여 비과세</li> </ol> </li> </ul>	조세지원제도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업수입에 대하여 50만캐나다달러까지 소득공제</li> <li>최고 300만캐나다 달러까지 R&amp;D 세액공제 가능, 그 이상은 20%의 환급불가 세금공제 제공</li> </ul>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지원 벤처캐피탈 기업(LSVCCs)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제공</li> </ul>	조세지원제도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지원 벤처캐피탈 기업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의 제한이 있고, 사모펀드에 대한 강경규제가 있으며, LSVCCs는 캐나다 내의 벤처캐피탈 시장에서만 효력이 있음</li> </ul>
스웨덴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지원 항목이 미미하며 벤처캐피탈을 통한 조세지원을 가지고 있음</li> </ul>	조세지원제도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지원 항목이 미미함</li> </ul>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기간계 중소기업 주식투자자에 매년 1,300만크로나를 한도로 자본소득금액의 50%를 소득공제 제공</li> <li>스웨덴 기업의 주주는 비상장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li> <li>벤처캐피탈의 벤처기업 투자 시 자본소득금액의 50%를 소득공제, 최대 2,000만크로나 투자가 한도</li> </ul>	조세지원제도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대 소득공제로 65만크로나를 받을 수 있고, 19만 5천크로나의 세액감면 가능</li> <li>배당금이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 시 30% 세율이 적용되나, 이중과세제도로 인하여 세율이 0~15% 감소하고, EU 국가 내 위치한 기업의 비상장주식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비과세함</li> <li>직원 수가 50명 이내로 매년 30만크로나 이상 임금을 지급하며, 기업의 순매출액이 8,000만크로나 이내여야 하고, 해당기업 주식을 5년 이상 유지해야 함</li> </ul>

## V. 타당성 평가





## V. 타당성 평가

### 1.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 가. 벤처산업의 특수성

##### 1) 경제성장 신동력으로서의 벤처산업

- 벤처산업은 매출액 증가 및 고용창출의 측면에서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나, 고위험·고수익의 산업특성상 정부가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벤처산업의 지원에 찬성하는 입장은 벤처산업이 수익성이 높으나, 시장실패로 인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사회적 최적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반면, 반대 입장은 벤처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포함
  - 따라서 양쪽 입장의 의견을 모두 고려하여, 정부지원이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선상에서 벤처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벤처기업의 숫자는 1998년 처음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도입되고 2,042개에서 시작하여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2년 벤처버블 시기에 약 3,000여개로 감소하고,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5년에 3만개를 초과함
  - 1998년 약 2천여 개의 벤처기업이 설립된 후 정부의 적극적인 벤처지원 정책으로 인하여 기업의 숫자가 크게 증가한 추이를 살펴보면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함
  
- 벤처캐피탈의 숫자는 2015년 기준으로 등록된 창업투자회사의 수가 115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운영하는 LLC가 8개, 신기술금융사 3개이며, 투자재원은 창투사가 약 14조원, LLC가 9,385억원, 신기술금융사가 2,500억원에 이룸

○ 벤처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세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필요함

□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통하여 벤처기업의 조세부담을 낮추고, 벤처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통하여 자금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2)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sup>41)</sup>

□ 정부는 1997년 8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후로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금융, 세제상 혜택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벤처기업은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이므로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 달리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나타나게 됨

○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첫째, 새로운 지식·기술을 이용하여 시장에 도전하여 나타나는 사업적 불확실성, 둘째, 시장 내 정보의 비대칭성, 셋째, 기존 기업과의 경쟁에서 나타나는 경쟁의 한계, 넷째,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를 포함하는 외부효과의 발생 등이 있음

□ 첫째,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이용하여 시장에 도전하기 때문에 사업적 불확실성이 크므로 위험 회피적 성향을 가진 시장 자본의 투자를 받기 어려워 시장실패가 발생함

○ 벤처기업의 신기술 등이 성공할 확률은 중소기업·대기업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투자받기가 어려워 충분한 자본 확보가 어려움

○ 따라서 시장자본의 경우 위험 회피적 성향을 가지므로 벤처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시장실패가 발생함<sup>42)</sup>

□ 둘째, 벤처기업과 잠재적 외부투자자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정보의 격차가 존재하므로 외부에서 효율적으로 투자를 유인하기 어려워 시장실패가 나타남<sup>43)</sup>

41) 국회예산정책처(2010) p. 13. 참고

42) Albert N.Link and Jamie R.Link(2009), 국회예산정책처(2010) 재인용

- 외부투자자의 입장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벤처기업이 자체적으로 성과를 부풀리거나 위험을 축소하는 등 정보를 왜곡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할 경우 거짓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하게 됨
  - 이러한 행태가 지속되는 경우 전반적인 벤처기업 시장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 외부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실패가 발생함
- 셋째, 벤처기업은 성장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 기업과 경쟁하는데 한계를 지니므로 시장실패가 나타남<sup>44)</sup>
- 벤처기업은 기존 기업보다 토지·자본 등의 유형자산 및 금융자본이 부족하고, 담보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물적자산 및 신용거래를 위한 대외적 신뢰도 또한 부족하여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기 어려움
  - 그러므로 벤처기업이 추가적인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자본을 효율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발생함
- 넷째, 벤처기업은 독자적인 신기술 및 아이디어 개발이라는 산업의 특성상 긍정적 외부효과(Externality)인 외부경제를 가지고 있어 시장실패가 나타나므로, 벤처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외부효과(Externality)는 생산자나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시장거래에 의하지 않고 직접적 또는 부수적으로 제3자의 경제활동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영향이 이익이면 외부경제(Positive Externality), 손해면 외부불경제(Negative Externality)임
  - 행위에 따르는 비용이나 수익이 시장을 통해 의사 결정자에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시장실패의 원인이 됨
  - 개인적·사회적 비용 및 편익을 고려하였을 때, 시장실패에서 벗어나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특히, 2014년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가운데 가장 실효성이 높은 정책으로 조세지원제도가 선택되었으나, 2016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금융지원정책 다음으로 조세지원제도가

43) 이인찬 외(2002), 국회예산정책처(2010) 재인용

44) 이인찬 외(2002), 국회예산정책처(2010) 재인용

선택되어 정책분석을 바탕으로 정부의 실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지원이 필요하고, 정부지원은 시장실패의 원인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하나, 지원 대상 기업을 정확하게 가려낼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모태 펀드<sup>45)</sup>에 출자하여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창업자금 융자·보완 사업 등을 통하여 자본이 부족한 벤처기업을 지원해야 함
  - 단, 이와 같은 정부지원은 벤처기업의 신기술 및 지식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외부경제의 과소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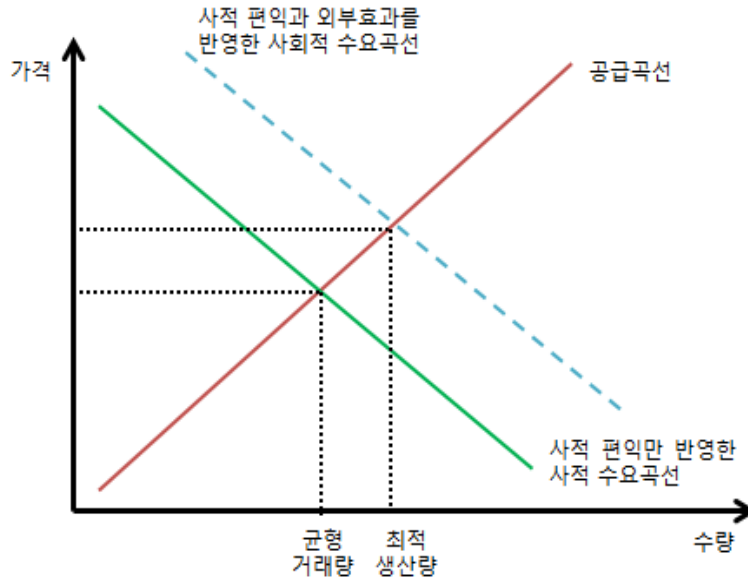
#### 나.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로 인한 과소공급 문제

- 벤처산업의 특성상 독자적인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성공할 경우, 해당 산업 전반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는 벤처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줌
  - 긍정적 외부효과란 한 기업의 생산활동이 다른 기업에 혜택을 주지만 이에 대해 이 기업이 보상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함
  -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을 경우, 사회적 한계편익(Social Marginal Benefit)이 사적인 한계편익(Private Marginal Benefit)보다 크지만, 사적인 한계비용(Private Marginal Cost)이 사회적 한계비용(Social Marginal Cost)보다 높아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 미달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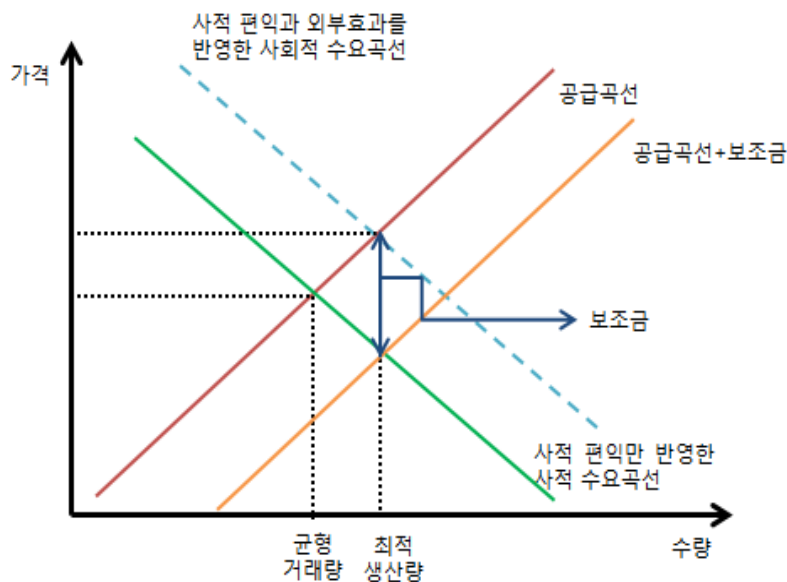
45) 투자자가 불특정 개인이나 기업(단체)이 아닌 일반펀드로 구성된 펀드를 말함. 펀드가 가입하는 펀드(fund of funds)인 셈으로 '재간접펀드'라고도 함. 재간접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재투자를 하는 펀드로,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추구함

[그림 V-1] 긍정적 외부효과



- 벤처산업에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벤처기업의 사적 한계비용을 낮춤으로써, 기존의 시장에서 벤처기업의 사업으로 결정되었던 균형생산량을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정부는 조세제도 외에도 보조금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사적 한계비용을 줄이고 긍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방식으로 생산량을 조절할 수도 있음

[그림 V-2] 긍정적 외부효과의 해결



## 2. 벤처산업 투자 현황 국제비교

### 가. 우리나라의 조세지원 및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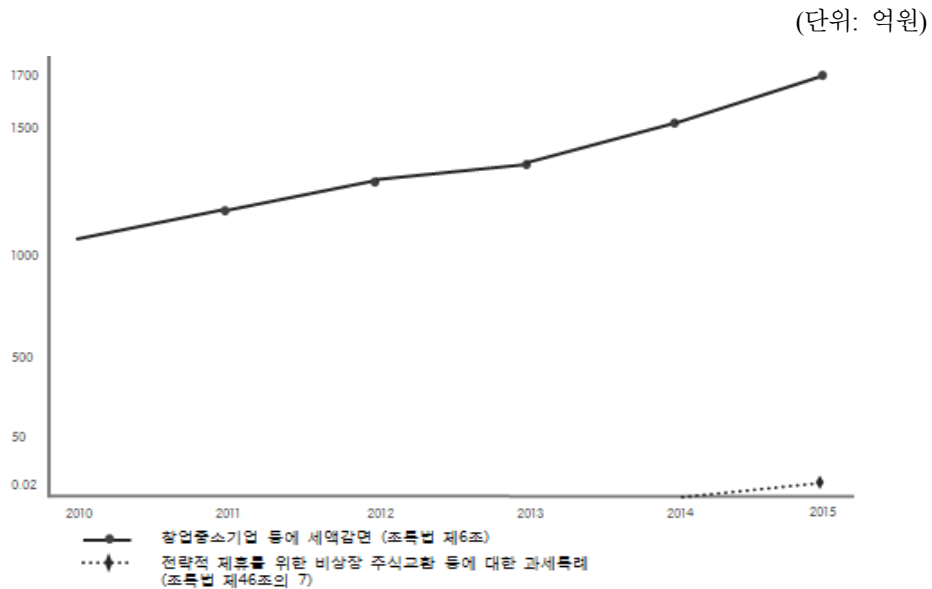
#### 1) 현행 조세지출실적 내역

#####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실적]

- 창업기업의 생존 및 창업기반 확충을 위해 제정된 「조특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세액감면이 2010~2015년까지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실적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 나타남
  - 지식기반산업 등 「조특법」 적용업종에 대한 정의를 2001~2014년까지 추가 신설하고, 2016년 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매출액 100억원 미만이라는 기준으로 일원화함
  
- 「조특법」 제16조 2,3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과세특례가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으나, 2015년까지 조세지출실적이 없음
  
- 「조특법」 제16조 4의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에 신설되었으나, 아직 조세지출실적이 집계된 바 없음
  
- 「조특법」 제31조의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은 기업의 구조조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생성되었으며, 조특법 제31조, 32조에 대한 지출의 합을 보면 2014년을 기점으로 지출실적이 미미하거나 감소로 돌아섬
  - 지출내역이 2011년의 94억원에서 2012년의 168억원 2013년 205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의 206억원을 거치면서 2015년 109억원으로 감소함
  - 단, 이 조항은 합산되어 있는 실적을 나누고 실제 벤처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법인끼리의 통합에 대한 부분만 살펴보면 1억원 미만에 해당하며 실적분석의 의의가 미미하여 추가하지 않음

- 벤처 투자 지원을 위하여 「조특법」 제46조 7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2013년 신설되었으나 2015년까지 관련 조세지출실적이 미미한 수준임

[그림 V-3]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실적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요약]

- 벤처기업을 위한 조세지원 항목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세액감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과세특례」,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있음
- 위 항목 중 2014년까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1개에 불과하며, 2015년에 1개 항목에서 미미하게나마 적용실적이 나타남
- 2015년 기존 창업중소기업 등에 세액감면액이 총 1,670억원,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액이 200만원 정도의 조세지출실적이 있음
-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의 인지도가 낮아 미활용되거나 장기간 조세지출실적이 미미한 조세지원세제에 대한 재검토 및 실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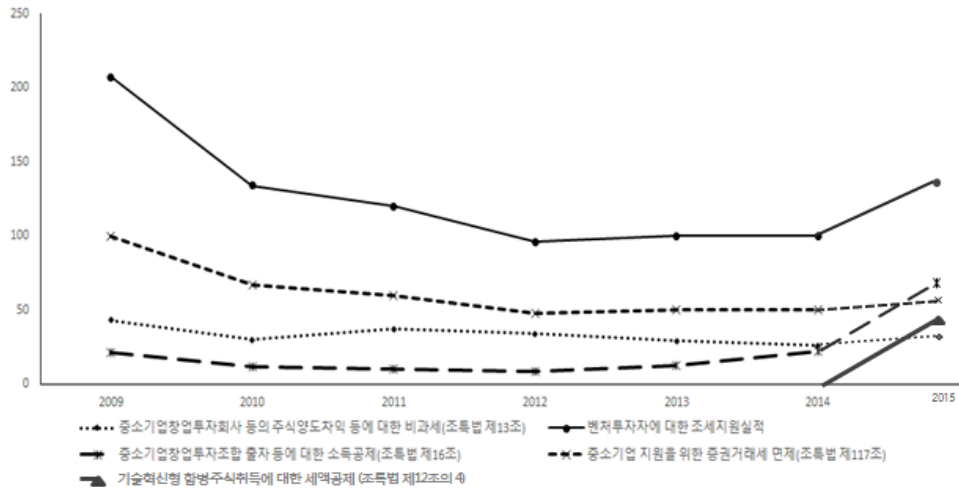
### [벤처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출실적]

- 「조특법」 제12조 3,4의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신기술 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를 활성화하고자 2013년 신설되어 2015년에 최초 조세지출실적이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체 조세지출실적의 1.4%에 해당함
  
- 「조특법」 제13조의 중소기업창업투자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는 기관 투자자의 지속적인 조합출자 참여 유도를 통해 벤처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2009~2015년까지 평균 30% 정도의 꾸준한 조세지출실적이 집계됨
  
- 「조특법」 제14조의 창업자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벤처투자 확대에 벤처기업의 자금애로 해소, 벤처캐피탈 및 엔젤투자 수익과 손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9년 신설되었으나, 양도소득세 등 비과세하는 제도의 특성상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므로 2009년 이후 실적이 집계·산출되지 않음
  
- 「조특법」 제16조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벤처투자시장의 저변 확대 및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된 2009년부터 꾸준한 조세지출실적이 있으며 2015년 급격히 증가함
  
- 「조특법」 제46조 3의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이연은 동종 또는 이종 물류기업 간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었고, 아직 법령이 남아 있으나 2010년 감면실적이 전무하여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됨
  
- 「조특법」 제46조 7, 8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벤처 투자 지원 및 재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신설되어 2015년까지 조세지출실적이 매우 미미함
  
- 「조특법」 제47조 3의 벤처기업 합병 후 이월결손금의 승계 시 이월결손금 공제는 벤처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목적으로 2004년 벤처기업이 일반법인 또는 다른 벤처기업에 합병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완화하는 제도가 신설됨
  - 2011~2013년 실적이 전무하며, 2013년 현행 법인세법상 합병과세특례 규정으로 충분한 세제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일몰종료에 따라 제도가 폐지됨

- 「조특법」 제117조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는 주식거래비용을 낮춰줌으로써 벤처기업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0년 신설되어, 매년 전체 조세지출실적의 약 30% 이상을 차지함

[그림 V-4] 벤처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출실적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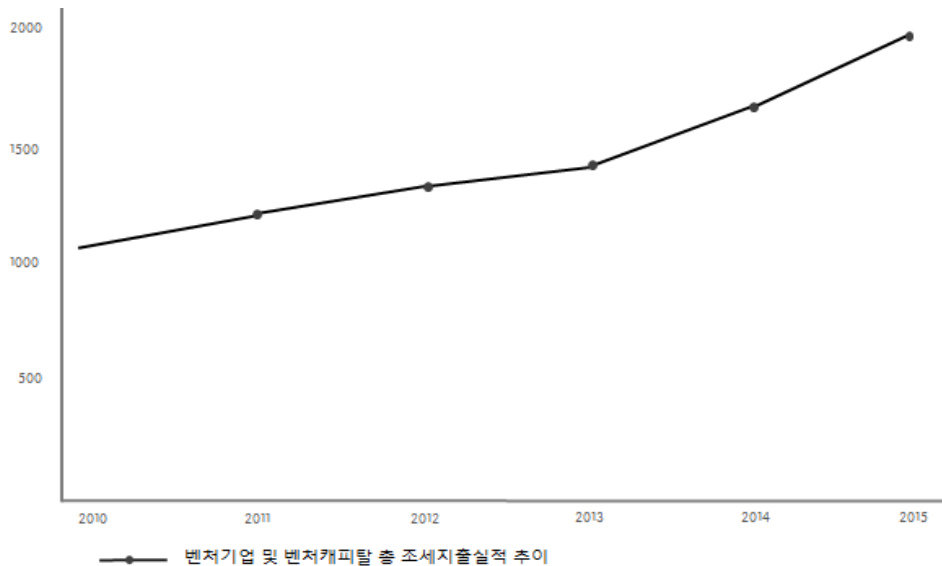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요약]

- 벤처캐피탈을 위한 지원세제는, 「창업자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9가지 항목이 있음
  - 이 외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면제」,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이연」의 지원세제가 있음
  - 2009년 이후 창업자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비롯한 4개 항목의 경우 조세지원 실적이 전무하거나 미미하여 해당 지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2015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66억원,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23억원, 「중소기업창업투자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16억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면제」 43억원의 조세지출실적이 있음

[그림 V-5]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총조세지출실적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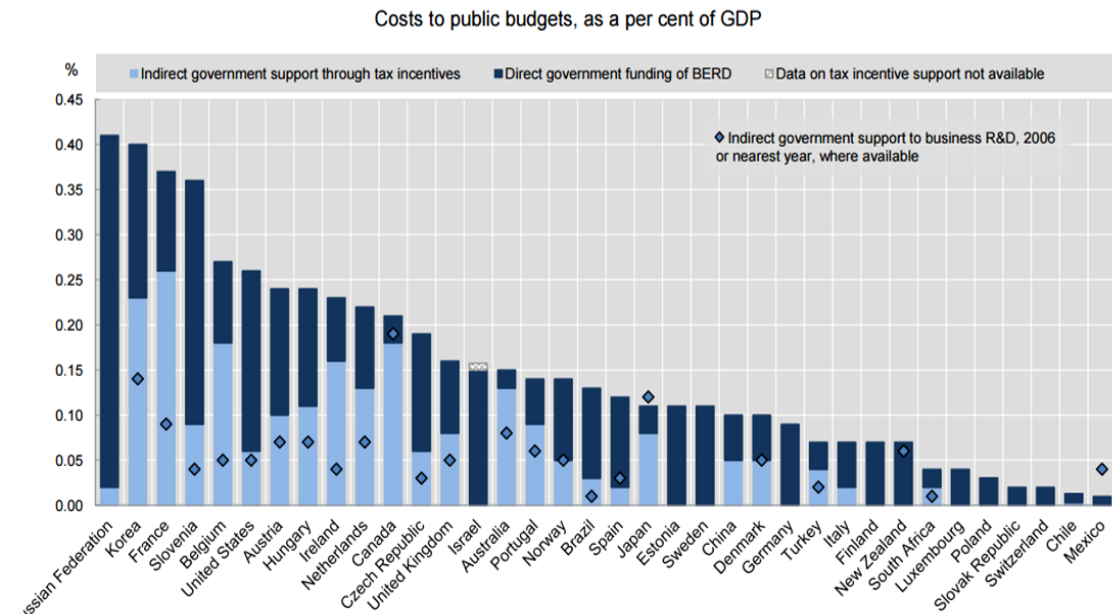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2) 직접·간접적인 조세지원 혜택

- 우리나라 벤처기업 환경 및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음
  - 현재 벤처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세제상 혜택은 크게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지원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그리고 벤처캐피탈 투자자에 대한 간접적인 조세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우리나라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주요 특징은 주로 벤처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임
    - 그러나 최근에는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이 벤처투자자에 대한 간접지원을 앞지르고 있음
  -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지원제도는 일정한 자격요건 충족 시에만 적용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부가하여 추가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원수준이 미미한 것은 아님
    - 벤처기업에 대한 간접적 세제지원으로 R&D에 대한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있음

- 2014년 우리나라는 창업초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초기단계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자의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세제상 혜택을 확대함

[그림 V-6] R&D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자본조달(Government Funding)과 세제지원(Tax Incentives), 2006년 및 201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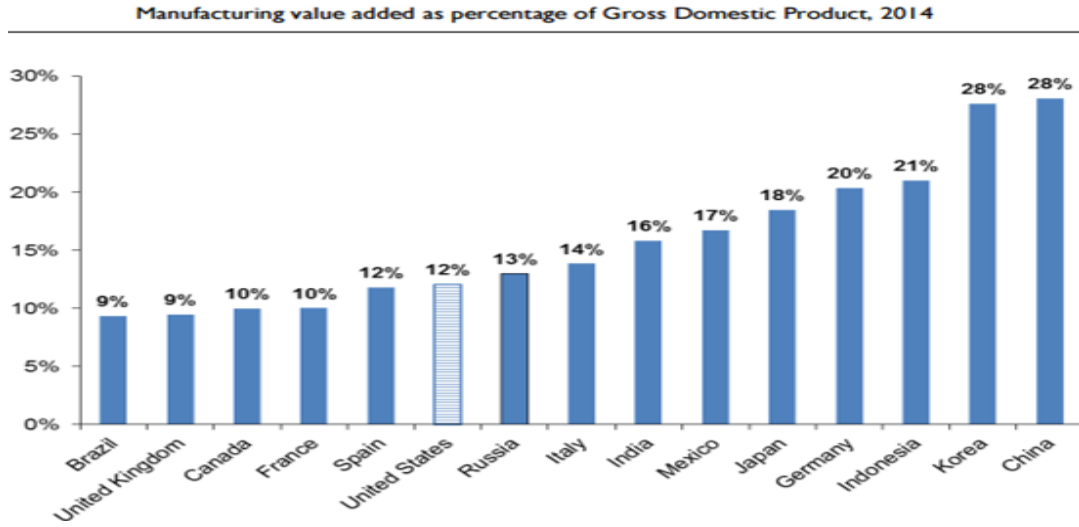
자료: OECD R&D Tax Incentive Indicators, [www.oecd.org/sti/rd-tax-stats.htm](http://www.oecd.org/sti/rd-tax-stats.htm) and OECD. National Accounts an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15 Dec. 2014. Direct funding estimates for Brazil based on national sources. BERD란 Business enterprise expenditure on R&D을 의미함

### 3) 업종 및 투자단계별 투자 현황

#### 가) 국가별 산업구조 비교

-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산업구조를 비교했을 때, 한국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면 벤처기업에서도 제조업의 비중이 높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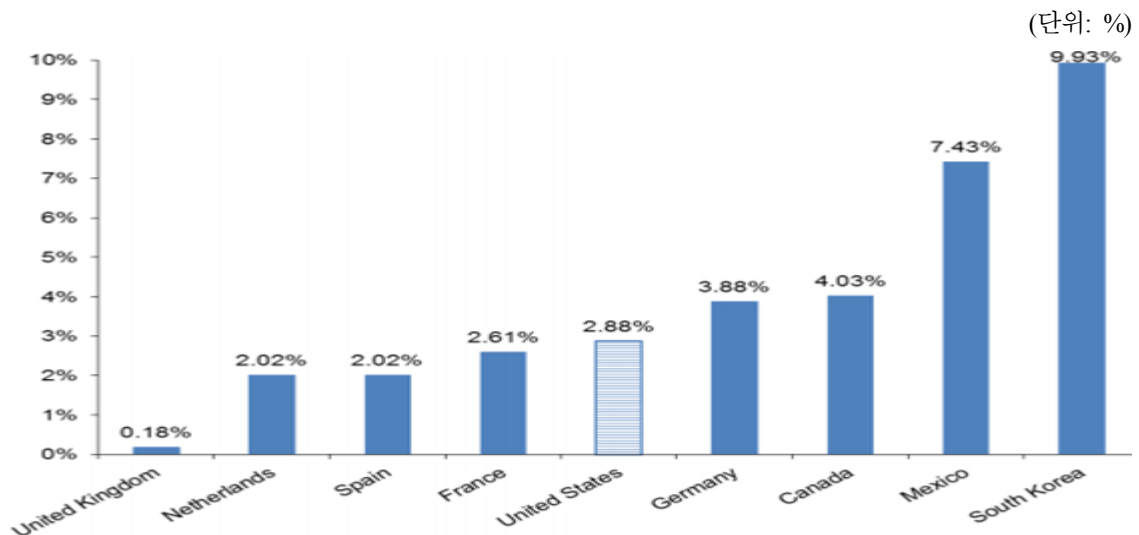
[그림 V-7] 국가별 산업 내 제조업 비중



자료: United Nations National Accounts Main Aggregates Database, value added by economic activity and gross domestic product, at current prices-national currency

-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은 전체 산업 대비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2008년~2014년의 제조업의 부가가치 변화의 추이 측면에서도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두드러지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 세계적 산업구조의 추세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상당 부분 이전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산업구조는 아직 제조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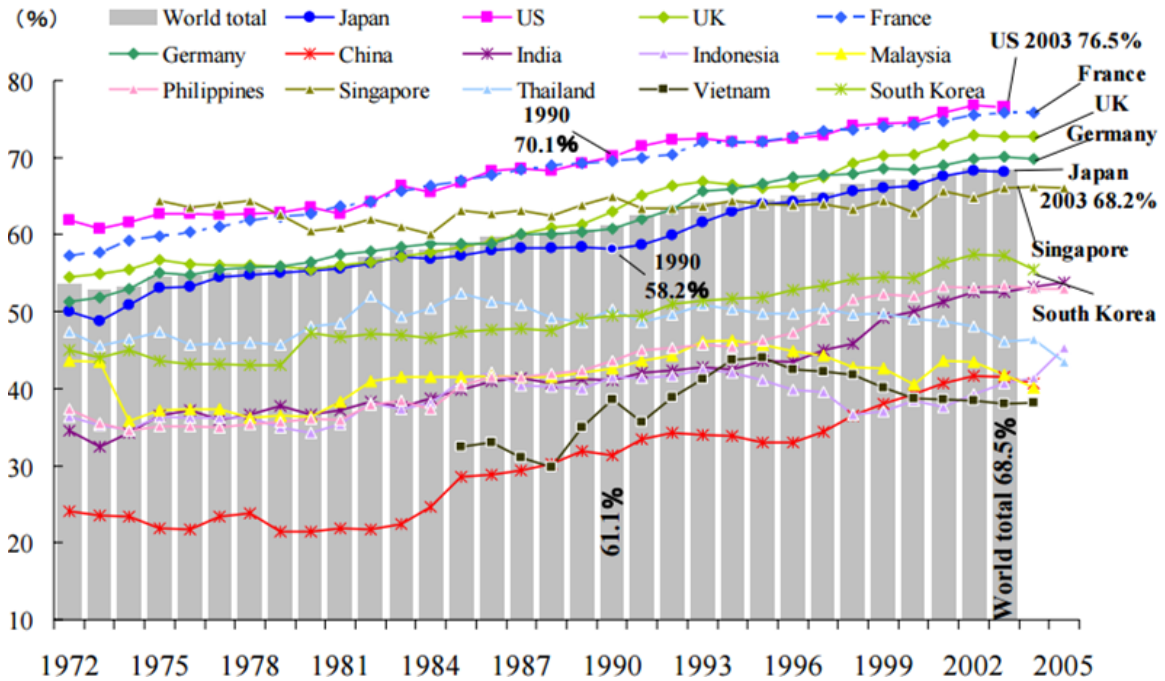
[그림 V-8] GDP 대비 제조업에 대한 고정자본투자



자료: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Capital Formation by Activity  
 Note: Data for Mexico pertain to 2012, South Korea to 2013

- 위와 같이 제조업에 꾸준한 투자가 있었던 반면, 1970~2005년 기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GDP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이 작을 뿐만 아니라 인도와 중국의 성장세에 못 미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V-9] 명목 GDP 대비 서비스업의 명목 부가가치 변화의 추이



Note: The "World" here refers to "World" in WDI(World Development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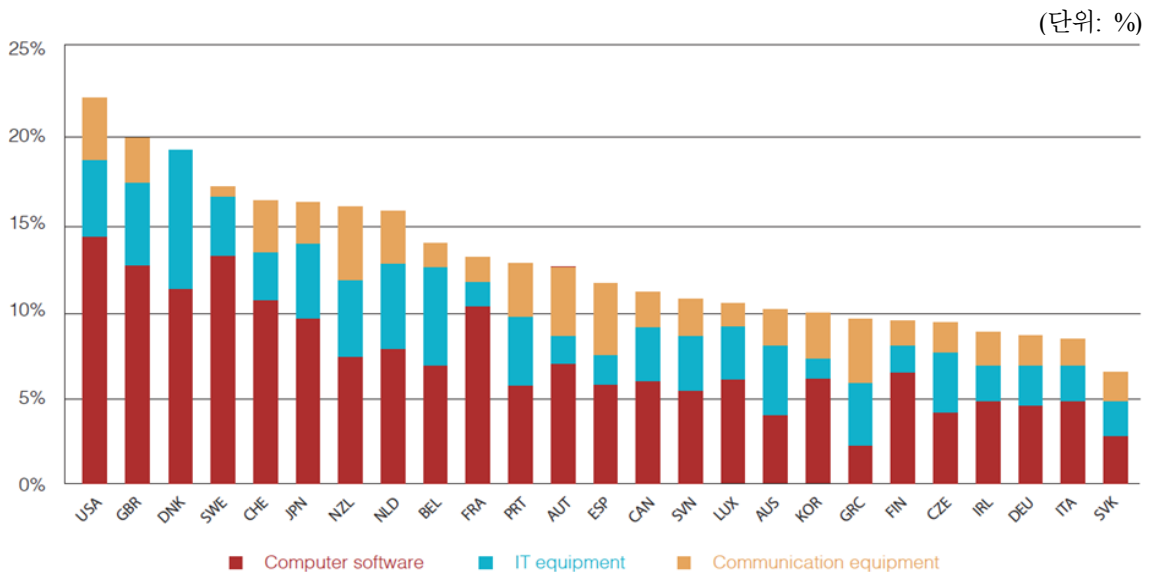
Source: WDI (World Development Bank)

#### 나) ICT 분야

- 업종별 투자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대두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관심업종으로 부상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현황 분석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ICT의 측면에서 세계에서 브로드밴드 네트워크가 가장 좋은 나라이자 전체 R&D사업 대비 IT 제조업 R&D의 비중이 세계 2위일 만큼 앞선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나, [그림 V-10]에서 보듯이 2011년에 전체 사업투자 대비 ICT 투자가 10%에 머물렀다는 이중구조(Dualism)를 가지고 있음

- 2005~2010년까지 IT산업이 한국의 총성장률에 0.2% 기여하고 산업전반에 8%를 기여한 반면, 미국은 IT산업이 미국의 총성장률에 0.3%를 기여했으며 산업전반에는 30% 기여하였음
- OECD 20개 국가 중 독일, 일본, 미국을 포함한 12개 국가에서는 ICT 이외의 투자보다 ICT 투자가 더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한국은 ICT 관련 투자가 ICT 이외 투자의 40% 정도에 그침
- 2014년 *Global Innovation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GDP 대비 software 소비에서 미국은 물론이고 자메이카, 짐바브웨, 터기에 밀린 30위에 랭크됨

[그림 V-10] OECD 국가 대상 자산을 통한 총고정자본형성 중 ICT 투자비중(2011)



자료: The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and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위와 같은 ICT 분야 투자의 필요성에 따라 ICT 서비스의 신규투자가 2015년 크게 증가하였고, 바이오·의료, 유통/서비스의 투자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전기/기계/장비의 신규투자는 감소하는 추세임
  - 전기/기계/장비 분야에 대한 신규투자는 2011년 3천억원대에서 2015년 1,600억원대로 하락함
  - ICT 서비스의 신규투자는 2014년 약 2천억원대에서 2015년 4천억원으로 2배 증가하였고, 바이오/의료 분야 투자도 2013년 1,400억원대에서 2014년 약 3천억원대로 2배 이상 증가함

○ ICT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현황은 2015년 ICT 관련 업종이 전체 신규투자자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6년에는 21%로 다소 감소하였음

<표 V-1> 업종별 신규투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6
ICT제조	1,860	1,754	2,099	2,955	1,951	1,463	413
ICT서비스	804	892	918	1,553	1,913	4,019	1,624
전기/기계/장비	2,141	2,966	2,433	2,297	1,560	1,620	933
화학/소재	1,064	1,266	1,395	989	827	1,486	820
바이오/의료	840	933	1,052	1,463	2,928	3,170	1,945
영상/공연/음반	1,733	2,083	2,360	1,963	2,790	2,706	1,127
게임	945	1,017	1,126	940	1,762	1,683	645
유통/서비스	954	1,270	608	1,092	2,046	3,043	1,479
기타	569	427	342	593	616	1,668	502
합계	10,910	12,608	12,333	13,845	16,393	20,858	9,488

주: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창투자 및 투자조합이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 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임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enture Capital Market Brief」(2016.6)

□ 벤처캐피탈의 분야별 투자기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의료 등 첨단산업 분야의 신규등록 기업에서 벤처캐피탈의 투자비중이 높음

<표 V-2>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신규 IPO기업의 업종별 분포(2015년 기준)

(단위: 개)

구분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수	벤처캐피탈 비투자기업수	합계
ICT 제조	11	0	11
ICT 서비스	6	2	8
전기/기계/장비	12	3	15
화학/소재	1	3	4
바이오/의료	9	0	9
영상/공연/음반	1	0	1
유통/서비스	4	1	5
기타	2	2	4
합계	46	11	57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6 KVCA YEARBOOK』, 2016.4.

#### 다) 투자단계별 투자현황

- 2003년에는 업력이 중기인 회사의 신규투자 금액이 가장 높았던 반면, 점차적으로 업력이 초기·후기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
  - 업력이 초기인 기업에 대한 투자는 2004년 2천억원대에서 2015년 6천억원대로 증가하였고, 업력이 후기인 기업에 대한 투자는 2003년 500억원대에서 2015년 8,500억원대로 10배 이상 증가함
  - 그리하여 전체 신규투자금액 중에서 후기 기업에 투자되는 비중이 2013년에 약 50%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시 초·중기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비중이 감소함
  
- 조성숙·박정서(2009)는 벤처캐피탈회사의 운용행태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성과를 분석하였는데, 성숙기의 벤처캐피탈이 초기단계의 벤처캐피탈보다, 일반 벤처캐피탈이 전문 벤처캐피탈보다 수익성이 높았음<sup>46)</sup>
  -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해산된 318개의 베너 투자조합들의 실제 해산자료를 기초로 투자조합의 투자성과를 산출함
  
- 서병철·김건우(2011)는 벤처캐피탈 자금투자 유형별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초기투자기업이 후기투자기업보다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보였으나, 공동투자나 단독투자나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조달방식(보통주 투자 vs. 주식연계형 채권투자)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 보통주 투자와 주식연계형채권 투자 간에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음
  - 투자시점(초기투자기업 vs. 후기투자기업)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 성장성 지표에서 초기투자기업이 후기투자기업보다 높은 기업성과를 나타냈으며, 수익성 지표 중 총자산이익률에서 초기투자기업이 보다 높은 기업성과를 나타냄
  - 투자방법(단독투자 vs. 공동투자)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 공동투자가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46) 본 연구는 운용회사의 최대주주, 투자조합 결성 당시 투자조합 운용사의 업력, 투자종목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의 유형을 구분함. 운용회사의 최대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형', 기업, 대학, 협회 등인 경우에는 '기업형',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금융형'으로 분류함. 투자조합 결성 당시 투자조합 운용사의 업력을 기준으로 업력이 2년 미만이면 '초기', 2년이면 '중기', 3년 이상이면 '성숙기'로 구분함. 일반 VCF는 규정상 제한된 투자제의 대상 외에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조합을, 전문 VCF는 특정 업종, 특정 지역, 문화/컨텐츠, 창업초기 기업에 집중하여 투자하는 투자조합을 말함.

〈표 V-3〉 업력별 신규투자 금액

(단위: 억원)

구분	초기(Start-up)	중기(Later Stage)	후기(Growth)
2003	2,460	3,281	565
2004	1,940	3,343	761
2005	1,972	4,162	1,439
2006	2,224	3,721	1,388
2007	3,650	3,774	2,493
2008	2,908	2,553	1,786
2009	2,476	2,601	3,594
2010	3,192	2,904	4,814
2011	3,722	3,296	5,590
2012	3,696	3,137	5,500
2013	3,699	3,259	6,887
2014	5,045	4,069	7,279
2015	6,472	5,828	8,558
2016.6	3,754	2,889	2,845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enture Capital Market Brief」(2016.6)

#### 4) 공적 투자자 및 사적 전문투자자

- 김건우·서병철(2010)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성장성이 비투자기업에 비하여 높고, 복수의 벤처캐피탈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은 벤처기업일수록 성장성이 더 높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함
  -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04년도 벤처캐피탈 투자리스트를 확보해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 간 성장성(매출증가율, 자산증가율)과 수익성(매출액이익률, 총자산이익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
- 김영훈(2011)과 김영훈 등(2013)은 PSM기법을 사용해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유사한 성향점수를 가진 비투자기업을 대응기업으로 선정한 후, 양 기업 간 경영성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비투자기업에 비하여 성장성·생산성·혁신성이 높지만, 안정성과 수익성은 낮다고 주장함

- 벤처캐피탈 투자는 성장성 측면에서 4년간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고용증가율을 26.7% 향상시키고, 42.5%의 자산증가 효과와 49.7%의 매출증가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 생산성 측면에서 벤처캐피탈 투자는 1년 후 종업원 1인당 3,296만원의 매출증가 효과가 있지만, 투자 후 3년이 지나면 벤처캐피탈 투자로 인한 1인당 매출증가효과는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혁신성 측면에서는 벤처캐피탈 투자로 인하여 4년 후 2억 7,457만원의 추가적인 연구개발 투자효과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은 비투자기업에 비하여 부채비율이 높고, 총자산이익률 및 총자본이익률이 낮아 기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sup>47)</sup>
- 김재진·양동우(2014)는 벤처캐피탈 투자지분율이 높을수록 특허등록 건수가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벤처캐피탈 투자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
- 벤처캐피탈 투자지분율이 높을수록, 여러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일수록, 투자지분율이 월등하게 높은 leading 투자자가 있는 기업일수록 특허등록 건수가 많았음
- 김영훈·임소진(2015)은 정부와 민간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재무성과를 비교분석한 후, 정부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의 시장실패 극복에 도움을 주고, 금융시장에 대한 인증효과를 가지지만, 벤처기업의 수익성 및 생산성 개선효과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함
- 고용창출 및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정부 벤처캐피탈 투자는 민간투자자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민간투자기업에 비하여 생산성이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정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은 민간투자기업에 비하여 업력이 짧고, 규모가 작았으며, 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장기대출을 받고 있었음

47) 그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벤처캐피탈 투자로 인하여 무리한 차입이 이어졌고, 높은 이자비용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함

- 해외 선행연구에서 정부 벤처캐피탈의 유효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연구결과도 도출됨
  - Brander *et al.*(2010)에 따르면 다른 투자자와 비교해 정부 주도의 벤처캐피탈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약간의 정부지원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이거나 너무 과도한 지원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Alperovych, Hubner and Lobet(2015)도 정부 주도의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에서 상당한 생산성 감소가 있었음을 보임
    - 또한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과 민간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성과의 효율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선행연구 결과도 이와 유사한바, 정부와 민간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재무 성과를 비교한 김영훈 외(2015)는 투자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효과가 차별적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투자기업의 생산성 개선 측면에서는 민간 벤처캐피탈보다 더 열악함을 보였음
  - 성하역 외(2014)에서도 성장성, 수익성, 혁신활동, 생산성 관련지표에서 두 벤처캐피탈 사이의 큰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음
  - 그러나 정부 벤처캐피탈은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등의 긍정적인 역할도 담당하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시장은 정부와 민간 벤처캐피탈이 조화를 이루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음

### 5) 엔젤투자자를 포함한 비전문투자자

- 엔젤투자자의 투자액은 2000년에 약 5,500억원대에 다다랐고 엔젤투자를 받은 기업의 수도 1천여개에 달하였으나, 벤처버블 이후 300억원대 초반까지 투자액이 감소하였다가 벤처 활성화 정책 등으로 다시 엔젤투자규모가 점차 증가함
  - 2015년 엔젤투자자의 투자액은 약 1,400억원으로 2014년에 비하여 약 500억원 가량이 증가하였고, 엔젤투자를 받은 기업의 수 또한 약 300개에 달해 작년보다 100개 가까이 증가함
  - 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가 엔젤투자 증가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한 이후 엔젤투자 규모가 급증함

## 6) PEF

- 사모집합투자기구(Private Equity Fund, PEF)란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 집합투자증권을 사모<sup>48)</sup>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며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것을 말함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제를 개편하였으며, 2015년 10월 이후로 시행되고 있음
    - 1) 유형 단순화 2) 투자금액 차등 3) 운용자 진입규제 완화 4) 펀드 설립규제 완화 5) 펀드 운용규제
  - 대표적인 개편사항을 살펴보면, 기존의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는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및 재무안정 PEF의 4가지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2개로 규율체계를 단순화시켰음
    - 기존의 일반사모펀드 및 헤지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PEF와 재무안정 PEF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통합되었음
  
- 우리나라의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2004년 2개(약정액 0.4조원)로 출범하여 10년이 지난 2015년 12월말 기준 316개(약정액 약 58.5조원)가 운용중인 산업으로 성장하였음<sup>49)</sup>
  - 글로벌 차원에서도 사모펀드는 높은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2003~2012년 기간중 사모펀드의 글로벌 성장률은 연평균 17%로, 공모펀드의 10%를 크게 웃돌고 있음<sup>50)</sup>
  - PEF는 기업구조조정 촉진 및 Buy-out(기업 경영권인수) 펀드를 통한 국내자본 육성을 위해 도입되었음<sup>51)</sup>
    - 그러나 우리나라의 PEF는 제한된 PEF 운용자만이 기업인수(Buyout)가 가능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전략적 투자보다는 재무적 투자에 집중됨

48)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49) 금융감독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보고현황』, 2015.11.

50) 최원근, 「사모펀드시장의 활성화 과제」, 『하나금융포커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5. p. 6

51) 금융감독원(2015), p. 7

- 2004~2014년 동안 PEF가 전략적 투자자로서 투자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한 투자비중은 690개사 중 177개사인 25.7%에 그침<sup>52)</sup>
  - 따라서 PEF가 당초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시장의 특징은 2005년 모태펀드가 운용된 이후로 양적으로 커다란 성장을 보이면서 정부 벤처캐피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조합에 가장 많은 금액을 출자한 모태펀드는 출범 이후 327개 조합에 2조 4,779억원을 출자, 10조 1,132억원을 결성하여 24.5%의 출자비중을 나타냄<sup>53)</sup>
- 그러나 수익률을 성과지표로 하는 모태펀드 평가방식으로 인하여 창업 초기 기업(창업 3년 이내)보다는 후기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비중이 더 높아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sup>54)</sup>
- 2005년 이후로 전체 투자금액의 46%가 7년 초과 후기기업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표 V-4> 업력별 펀드 투자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기업수		투자금액	
		비율		비율
창업초기 단계(3년 이하)	3,032	44	26,031	29
중기 단계(3년~7년)	1,978	29	21,955	25
후기 단계(7년 초과)	1,784	27	40,439	46
계	5,010	100	47,986	100

주: '05.6월 ~ '15.10월 누계 기준  
 자료: 중소기업청 내부자료

- 벤처캐피탈 시장의 자본조달구조의 다양성 및 정부 벤처캐피탈과의 균형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창업·벤처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바, PEF에 대하여도 조세지원을 벤처캐피탈 투자자와 유사하게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52) 금융감독원(2015), p. 7

53) 한국벤처캐피탈협회(2015), p. 26

54) 송원근 외, 『중소기업 모태펀드 운용실태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4.

- 다만,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목표를 명확히 하려면 창업·벤처투자 PEF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먼저 마련한 이후에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우리나라에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벤처캐피탈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아 출자유인책이 미흡한 실정임
  - 조특법상 벤처투자기관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명시되어 있음
  - 특히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유일하게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재무구조개선기업 중 정해진 기업에 직접 투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음<sup>55)</sup>
  
- PEF에 조세지원을 해 준다면 우선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도는 조세지출규모 측면에서 실효성과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2017년부터 창업·벤처전문 PEF제도 도입 및 세제지원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가 기대됨
  - 종전에는 여타의 투자기구 대비 벤처투자 기구로서의 PEF는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가 부족했음
  - 창업·벤처전문 PEF를 활용한 투자자에 대해 취득가액의 5%의 법인세 공제, 투자금액의 10%의 소득 공제, 증권거래세 면제의 혜택이 부여됨
  
- 클라우드 펀딩 투자를 제고하기 위한 유인으로 2017년부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 시행됨
  - 이를 통해 2016년 11월에 개설한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RX Startup Market)에 등록된 기업의 증권은 매매제한 기간 중에도 KSM을 통해 투자자금 회수가 용이해져 클라우드 펀딩 투자의 매력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55)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 나. OECD 주요국의 세제지원 및 투자 현황

### 1) 직접·간접적인 조세지원 혜택

- OECD 주요국에서도 제IV장에서 언급한 조세지원제도뿐만 아니라, 창업초기단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모색하여 시장실패를 보정하고 자금조달 시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있음
  - 주요 수단으로는 조세지원, 규제완화, 금융·재정·특허지원제도 등이 있음<sup>56)57)</sup>
  - 간접적인 세제지원으로 R&D에 대한 세액공제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일본, 대만의 6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인화된 법인세율을 통한 지원제도는 영국, 이스라엘, 대만의 3개국에서 시행 중임
  - 이 외에도 대만과 한국의 투자세액공제, 일본과 한국의 특정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있음
  
- OECD(2013)의 연구<sup>58)</sup>에 따르면, 주요 회원국에서도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 조세지원보다는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및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조달 및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간접적 조세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남
  
- 대다수의 국가들이 창업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고할 목적으로 벤처투자자에게 다양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초기의 벤처기업에 투자할 시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tax deduction)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아일랜드,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터키 등 15개국으로 나타남
    -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주요 조세지원유형은 소득공제임
  - 투자 및 재투자를 제고할 목적으로 주식 매각으로 인한 자본이득 및 손실(capital gains and losses)의 과세이연(carry forward) 및 손실상계와 같은 조세감면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덴마크, 이스라엘,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12개국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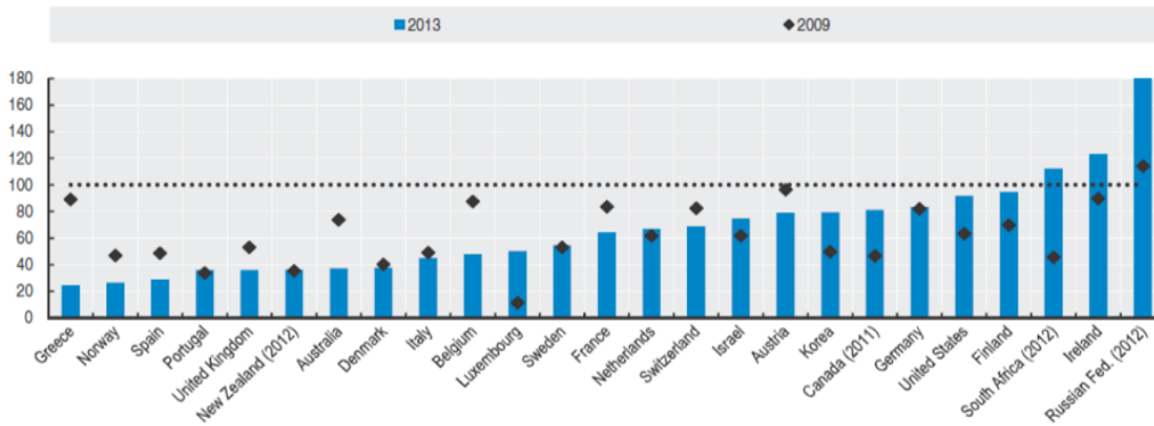
56) 임길환·정유훈(2014)

57) 김재진(2013), p. 52

58) OECD(2013), p. 16, 김재진(2013), pp. 52~53을 발췌하여 요약·정리하였음

- 2014년 기준 초기단계에 있는 벤처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포함하여 세제상으로 혜택을 확대한 국가는 한국, 벨기에, 아일랜드, 영국, 일본 5개국으로 나타남

[그림 V-11] 벤처캐피탈의 숫자 추이(Index 2007=100)



자료: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OECD, 2014(c.f. pp. 90-91)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벤처캐피탈의 투자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R&D 세액공제(Tax Credit)로 조세지원을 하고 있음
  -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EIS(Enterprise Investment Schemes),<sup>59)</sup> VCTs(Venture Capital Trusts),<sup>60)</sup> SEIS(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sup>61)</sup> 투자자에 대한 세제우대 조치를 시행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조세지원을 받음
- 이스라엘의 경우 벤처캐피탈 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그 투자 실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일본의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 촉진 세제우대를 운영 중임
  - 대만은 일몰한 촉진산업승급에서 신흥·주요·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우대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2010년에 산업창신조례를 제정하여 광범위한 산업군에 대하여 모두 세제지원을 해주는 정책으로 전환함

59) 고위험·중소기업의 투자자들에 대해 다양한 세제우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위험·중소기업이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에 도입되었음

60) 개인투자자로 하여금 고위험·비상장 중소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1995년에 도입되었음

61) SEIS는 EIS를 보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창업 기업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하여 투자자에게 EIS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보장하여 투자를 유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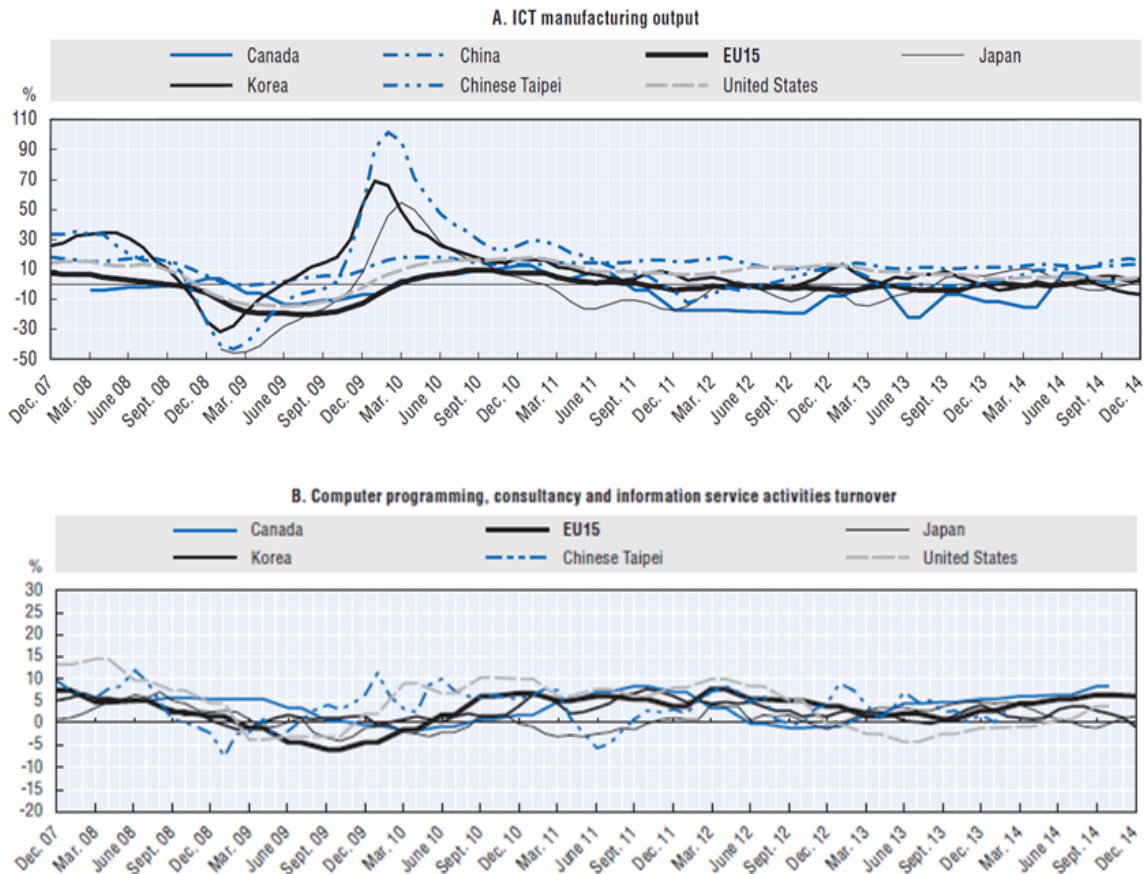
## 2) 업종 및 투자단계별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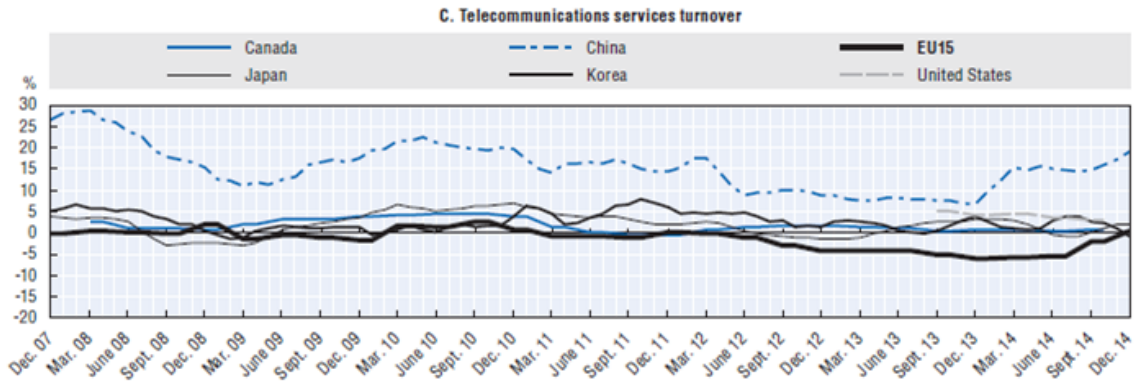
### 가) ICT 분야

- ICT 분야는 상대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보이나 2014년까지는 아직 종전의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함
  - 2014년 4분기 미국의 벤처캐피탈 투자금액은 약 150억달러로 벤처버블 이후 최대금액이며, 2011~2014년의 총신규투자 대비 ICT 분야 투자가 48%에서 67%로 상승하여 전체 벤처캐피탈 투자금액의 40%를 차지함
  - 2007~2014년의 ICT 제조업 분야 성장률을 국제 비교한 결과, 2009년 높은 성장률을 보이던 한국이 2014년 4분기에 최하의 성장률을 보임

[그림 V -12] 2007년~2014년 ICT분야의 성장률

Year-on-year percentage change, three-month moving average





Notes: Data are seasonally adjusted. The EU15 comprise the following 15 countries: Austria, Belgium,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reland, Italy, Luxembourg, the Netherlands, Portugal, Spain,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For Canada and Chinese Taipei, data correspond to Computer Systems Design and Data processing services. For Korea, data refer to the aggregate for Information serv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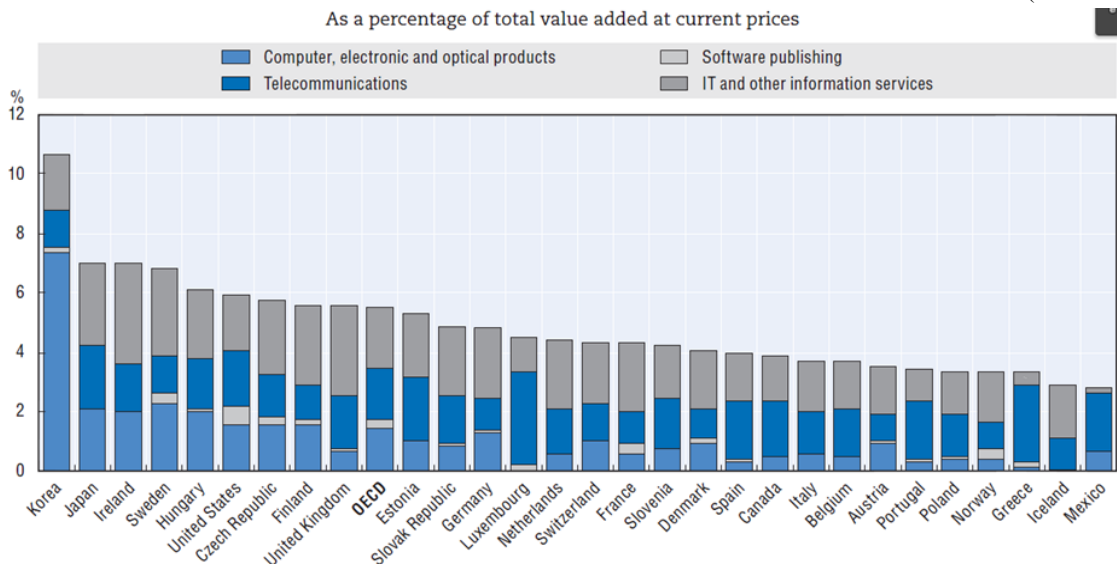
Sources: Based on data from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short-term indicators and Eurostat Short-term business statistics database, May 2015.

□ 2013년 OECD 국가의 ICT 분야의 실적이 전체 부가가치의 5.5%에 이르렀으며, 그 가치가 2.4조달러에 이룸

- 전체 산업 대비 전자제품 및 software, 통신서비스를 포함한 ICT 분야의 비중은 한국의 경우 10.7%, 아이슬란드와 멕시코의 경우 3% 미만으로 변화의 폭이 크며, 아일랜드와 일본이 7%로 2위, 스웨덴과 헝가리가 6%를 초과하여 3위임

[그림 V-13] ICT 분야 및 관련 분야의 부가가치 국제 비교

(단위: %)



Notes: The ICT sector is defined here as the sum of industries ISIC rev.4 26, 582, 61 and 62-63. For Germany, Iceland, Ireland, Japan, Mexico, Poland, Spain, Sweden, Switzerland and the United Kingdom, data refer to 2012. For Canada and Portugal, data refer to 2011. For Ireland and the United Kingdom, data refer to SNA 93 and were extracted in October 2014. For the rest of countries, data refer to SNA 2008. For Canada, Iceland, Ireland, Japan and Mexico, data for Software publishing are not available, and are therefore not included in the definition. The figure for Switzerland shows the ICT sector share as defined by the OECD (2011a). In this particular case, the share is not totally comparable with the rest of the countries.

Source: Based on OECD, National Accounts Database; Eurostat,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and national sources, April 2015.

- OECD 국가 ICT 분야의 3분의 2가 IT와 기타 정보서비스 관련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외 통신사업과 컴퓨터 및 전자기기, 소프트웨어 관련업이 있지만, 국가의 특성에 따라 특화 분야가 다름
  - 한국의 경우 컴퓨터 및 전자기기에 특화되어 전체 부가가치의 7%를 차지하며, 룩셈부르크는 통신사업이 3%, 아일랜드와 스웨덴, 영국은 IT 및 정보서비스 사업에 특화되어 3%를 차지함
  
- IT 서비스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ICT 분야의 비중이 달라지는 주요 이유는 해당 국가에서의 ICT 제조업 및 소프트웨어의 중요도 차이 때문임
  - 2013년 ICT 분야의 고용이 1,40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OECD 국가 전체 고용의 약 3%에 해당함
  - 아일랜드와 한국의 경우 전체 고용 대비 ICT 분야의 고용이 4%를 초과하고, 그리스, 포르투갈과 멕시코에서는 2% 이하임

나) 투자단계별 투자현황

- 투자단계에 따라 구분 시 OECD 회원국 중 영국과 아일랜드가 모든 단계에서 투자금액이 EU의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거나, 중앙 및 동유럽의 경우 준비(seed), 창업(start-up)단계에 있어 다른 유럽국가와 차이가 큼

<표 V-5> 2010~2014년 4개의 투자단계별 평균 투자금액-지역비교

(단위: £1,000)

EU region	창업 준비(Seed)	초기(Start-up)	중기(Later Stage)	후기(Growth)
Central & Eastern Europe	221,000	808,000	1,238,000	5,062,000
DACH <sup>1)</sup>	292,000	1,490,000	1,644,000	5,047,000
France & Benelux	466,000	1,742,000	2,536,000	7,420,000
Nordics	300,000	1,018,000	2,286,000	6,959,000
Southern Europe	811,000	1,113,000	1,889,000	6,433,000
UK & Ireland	608,000	2,090,000	4,019,000	11,489,000
<b>EU average</b>	<b>357,000</b>	<b>1,458,000</b>	<b>2,341,000</b>	<b>7,164,000</b>

주: 1) Germany, Austria, Switzerland

자료: Invest Europe. Note - includes VC funding, but excludes funding from "other sources", such as friends and families, and business angels

### 3) 공적 투자자 및 사적 전문투자자

- Invest Europe 자료 분석결과, 경기상승과 하강의 국면에서 오버슈팅이 일어나 벤처캐피탈의 투자수익이 줄어들면서, 개인투자자와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s, LPs)<sup>62)</sup>의 유럽의 벤처캐피탈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감소함
  - 창업단계에 있는 기업들의 낮은 성장률과 수익률로 인하여 전체 투자자 대비 개인투자자의 비율이 줄고, 이를 대신하여 공적 자본금이 유입됨
  - 이에 따라 시장으로부터의 충격과 경기변동으로 초기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공적 투자의 필요성이 제기됨
  - 최근 자료에 따르면<sup>63)</sup> 정부당국의 자본금이 2014년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투자금의 30%를 차지하였으며(7%에서 30%로 확대), EIF<sup>64)</sup>를 포함하는 투자에는 7.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Invest Europe 데이터에 따르면, 2000년대 초기에 벤처캐피탈을 포함한 많은 사적 투자자들이 시장을 빠져나갔으나, 2014년 자료에 의하면 지난 2~3년간의 투자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다시 사적 투자자들이 유럽시장에 모이고 있음
  - 특히, 기관투자자(전문투자자)의 투자금액 중 40%가 유럽 밖의 지역에서 이루어짐
  - 그러나 국경에 대한 제약 없이 전반적인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실행하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국내외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과도한 정부 주도의 벤처캐피탈 중심으로 시장구조가 편중되는 것은 벤처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음

### 4) 엔젤투자자를 포함한 비전문투자자

- 전체투자자 대비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액 비중이 줄어들면서, 엔젤투자자와 크라우드펀딩을 포함하는 비전문투자자의 중요도가 높아짐

62) 투자대상을 고르고 투자기업을 관리하는 운용사(무한책임사원, General Partners)가 만든 펀드 등에 돈을 맡기는 투자자를 말함

63) *Invest Europe Yearbook*, 2015

64) European Investment Fund

- 2014년 기준으로 창업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한 총투자금액인 75억유로 중에서 엔젤투자자의 투자금액이 55억유로를 차지하여, 초기 및 창업단계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면 벤처캐피탈(20억유로)보다 엔젤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기적 관점에서 양질의 벤처기업에 대한 접근성과 고수익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비중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높은 편임

<표 V-6> 엔젤투자자를 비롯한 비전문투자자의 초기단계 벤처기업 투자금

(단위: 백만파운드, %)

Year	2011	2012	2013
Angel networks(formal)	427	509	554
Visible %	9	10	10
Total(visible and invisible)	4,317	4,590	4,989

자료: EBAN55)

- EBAN은 2011~2013년까지 엔젤투자자와 여타의 개인투자자로 인하여 모인 투자금액이 대략 40~50억파운드가 될 것이라고 추정함<sup>65)</sup>

- 엔젤투자자에 대한 자료가 전국엔젤투자자협회에서 보고되고 있음

- 일본에서도 엔젤투자자의 투자를 제고하기 위한 엔젤세제를 운영 중임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sup>66)</sup>은 전체 equity finance를 고려하면 아직 그 비중이 미미하나 이의 중요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음

- EBAN<sup>67)</sup>은 크라우드펀딩의 규모를 8천만유로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5년

65) 엔젤투자자들의 시장 규모가 추정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자료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함

66) 증권형 크라우드펀딩(Equity crowdfunding)은 온라인으로 기업이 자신의 주식을 제공하여 사람들에게 투자받는 방법을 말함. 최근 이 방법이 초기 자본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start-up 회사에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다수의 투자자들이 소규모 seed money를 투자하여 목표금액이 달성될 경우 start-up 회사에 모금된 투자금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이러한 조건으로 인하여 개인투자자는 투자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start-up은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자와 달리 손쉬운 절차로 투자를 신청 및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67) EBAN은 유럽을 기반으로 한 초기단계의 투자자의 모임으로 국제비영리단체이다. 초기에는 엔젤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전 분야의 초기단계 투자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되었다.

출간된 보고서에 의하면,<sup>68)</sup> 2014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8,256만파운드로 성장하였으며 증가 추세에 있다고 전망함

- 유럽의 초기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매년 약 65억파운드에 달하나, 전문투자자의 자금은 이것의 4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투자자금 대부분은 비전문투자자로부터 나옴

## 5) PEF

□ 또한 해외사례의 <표 V-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유럽은 미국에 비하여 전체 PEF 시장 규모가 절반 수준이며, 벤처캐피탈 규모도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함

- 주요 투자자 유형에서도 미국은 개인/민간펀드가 전체 시장의 92.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유럽은 정부투자기관이 4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유럽은 정부 주도형 벤처캐피탈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상반된 특징을 보이는 두 국가에 대하여 분석한 톱슨로이터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유럽 벤처캐피탈의 연평균 수익률은 2.1%로 동 기간 미국벤처캐피탈의 연평균 투자수익률 13%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sup>69)</sup>

<표 V-7> 미국과 유럽의 벤처캐피탈 비교 요약(2013년 기준)

		미국	유럽
시장규모	PEF 전체	1,470억달러	739억달러
	벤처캐피탈	167.7억달러	55.4억달러
주요 투자 업종		IT(51.6%), 생명과학(23.6%)	생명과학(37.1%), IT(34.7%)
주요 투자자 유형		개인/민간펀드(92.9%)	정부투자기관(45.7%), 개인/민간펀드(28.8%), 연기금(10.2%)

자료: 김동우, 『EIF(유럽투자펀드)를 통해 본 정부 주도 벤처캐피탈의 명과 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4, p. 6.

68) [www.ey.com/Publication/vwLUAssets/EY-and-university-of-cambridge/\\$FILE/EY-cambridge-alternative-finance-report.pdf](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EY-and-university-of-cambridge/$FILE/EY-cambridge-alternative-finance-report.pdf)

69) 김동우, 『EIF(유럽투자펀드)를 통해 본 정부주도 벤처캐피탈의 명과 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4, p.6.

## 다. 요약

-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측면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은 조세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벤처기업을 위한 조세지원 항목이 4개로 그 중 연구개발 관련 항목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많은 편인 반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2개 항목에 불과하여 조세지원 항목의 숫자 대비 실효성은 낮은 수준임
  - R&D에 대한 세액공제는 한국,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일본, 대만의 6개국에서 시행중이며, 투자세액공제는 한국과 대만에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한국과 일본에서 시행 중임
  - 2011년 한국의 전체 산업투자 대비 ICT 투자가 10%에 머물러 다른 국가들보다 ICT 분야에 대한 투자가 낮은 편이나, 2014~2015년 신규투자가 급증하여 2015년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신규 IPO기업 중 ICT 분야가 33%를 차지함
  - ICT 제조업 분야 성장률을 국제 비교한 결과, 전제제품 및 IT 분야의 영향으로 2009년에 높은 성장률을 보이던 한국이 2014년 4분기에 최하의 성장률을 보임
  
-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측면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의 조세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벤처캐피탈을 위한 조세지원 항목은 7개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4개 항목에 불과함
  - 특히,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이 활성화되어,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할 시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영국, 아일랜드, 이스라엘 등 15개국으로 나타남
  - 투자 및 재투자 제고를 위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및 손실상계와 같은 조세감면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한국, 덴마크, 이스라엘, 영국 등 12개국으로 나타남
  - 벤처캐피탈의 투자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R&D 세액공제로 조세지원을 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법인세 감면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하는 제도를 한국 및 이스라엘에서 운영 중임

- 엔젤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측면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의 투자규모를 보이고 있어 엔젤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2014년 유럽의 경우, 창업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한 총투자금액인 75억유로 중에 엔젤투자자의 투자금액이 55억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EBAN에 따르면 2011~2012년까지 엔젤투자자 및 개인투자자로 인한 투자금액이 40~50억파운드가 될 것이라고 추정됨
  - 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가 엔젤투자 증가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엔젤투자자에 대한 직접적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한 이후 엔젤투자 규모가 급증함

## Ⅵ. 효과성 평가





## VI. 효과성 평가

### 1.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효과

#### 가. 선행연구

- 기존 선행연구는 창업벤처기업의 유효세율과 세전이익률이 다른 기업에 비하여 낮은지를 살펴봄으로써 창업벤처기업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분석함
  - 창업벤처기업의 유효세율이 다른 기업에 비하여 낮다면 조세지원이 벤처기업의 세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창업벤처기업의 세전이익률이 다른 기업에 비하여 낮다면 조세지원이 신규 벤처기업의 창업유도수단으로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신규 벤처기업의 창업이 늘어나면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벤처기업의 세전이익률이 하락함
  
- 김동훈(2012)은 창업벤처기업이 일반벤처기업 및 비벤처 대기업에 비하여 유효세율이 유의하게 낮다는 *t-test* 결과를 바탕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창업벤처기업의 세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함
  - 동 연구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 중 코스닥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전체 기업을 ①창업벤처기업 ②일반벤처기업 ③비벤처 중소기업 ④비벤처 대기업 등 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 간 유효세율의 비교분석을 통해 창업벤처기업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분석함
  - 창업벤처기업은 일반벤처기업 및 비벤처 대기업보다는 유효세율이 유의하게 낮지만, 비벤처 중소기업의 유효세율과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 이형수·김갑순(2010)은 창업벤처기업이 코스닥 상장 일반벤처 또는 코스닥 상장 비벤처 중소기업에 비하여 많은 조세혜택을 받고 있지만, 신규 벤처기업의 창업유도수단으로서 조세지원이 가지는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 동 연구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코스닥상장기업을 3개의 그룹(①창업벤처기업 ②비벤처 중소기업 ③비벤처/비중소기업)으로 구분한 후, 각 그룹 간 조세혜택 및 세전이익률을 비교함
- 분석결과 창업벤처기업의 조세혜택이 코스닥 상장 비벤처중소기업 또는 비벤처/중소기업에 비하여 유의하게 더 크지만, 세전이익률의 그룹 간 차이는 대체로 유의하지 않음
- 그들은 창업벤처기업과 다른 기업 간 세전이익률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므로 조세지원이 신규 벤처기업의 창업유도수단으로서 가지는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혜기업 특성 분석

- <표 VI-1>~<표 VI-5>는 「조특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의 지역별·규모별·업종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임
  - 외감/비외감 구분 없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의 지역별·규모별·업종별 분포에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살펴봄<sup>70)</sup>
-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은 총 9,292개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25,422개)의 약 37% 수준임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의 수는 2007년 802개에서 2014년에는 1,577개로, 2배 가까이 증가함

70) 전체 법인세 신고 자료를 제공받아 조세지원기업과 비조세지원기업을 매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거나, 조세지원기업의 법인세 신고자료 일부만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비외감 비조세지원기업을 매칭을 위해 사용할 수 없었음

<표 VI-1> 세액감면 창업벤처기업 및 창업중소기업 수

(단위: 개, %)

연도	세액감면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업체 수	비중	업체 수	비중
2007	802	9	2,315	9
2008	923	10	2,242	10
2009	974	10	2,615	10
2010	1,019	11	3,065	12
2011	1,111	12	3,254	13
2012	1,365	15	3,643	14
2013	1,521	16	3,940	15
2014	1,577	17	4,348	17
합계	9,292	100	25,422	100

주: 법인 신고 자료만을 집계한 수치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 (지역별 분포)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서울·인천·경기 소재법인이 총 6,919개로 전체 감면법인의 약 74%를 차지함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 중 수도권 소재법인의 비중은 74%임
  - 반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 중 수도권 소재법인의 비중은 30%에 불과함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수도권 소재기업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몰리는 쏠림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판단됨

<표 VI-2> 세액감면 창업벤처기업의 지역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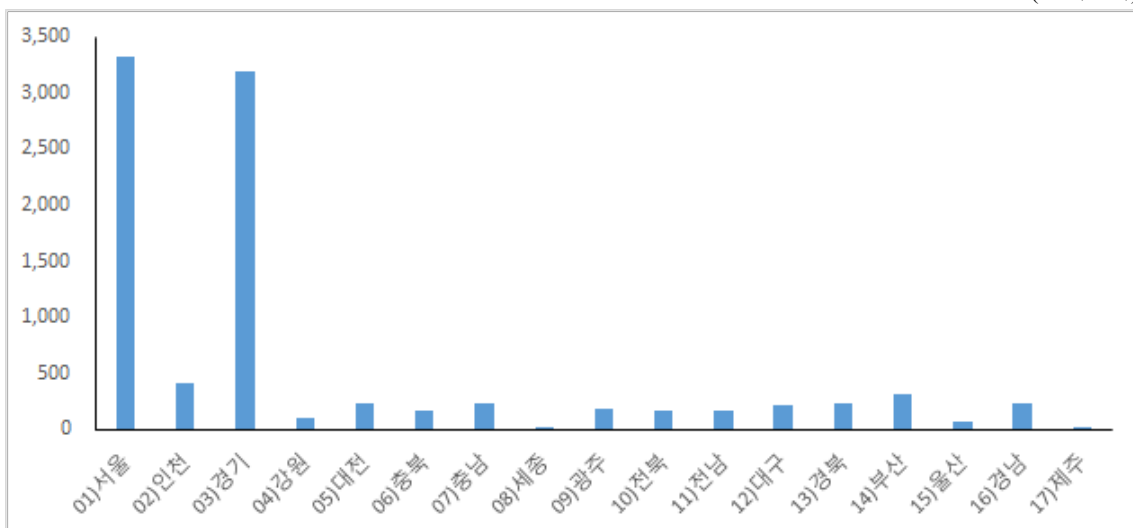
(단위: 개, %)

지역	세액감면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업체 수	비중	업체 수	비중
01) 서울	3,317	36	911	4
02) 인천	412	4	500	2
03) 경기	3,190	34	5,994	24
04) 강원	100	1	541	2
05) 대전	240	3	1,010	4
06) 충북	173	2	1,534	6
07) 충남	238	3	1,699	7
08) 세종	6	0	85	0
09) 광주	191	2	782	3
10) 전북	173	2	1,187	5
11) 전남	167	2	1,137	4
12) 대구	221	2	1,173	5
13) 경북	232	2	2,077	8
14) 부산	315	3	2,189	9
15) 울산	72	1	695	3
16) 경남	226	3	3,607	13
17) 제주	19	0	301	1
합계	9,292	100	25,422	100

주: 2007~2014년 법인 신고 자료를 집계한 수치임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그림 VI-1] 세액감면 창업벤처기업의 지역별 분포

(단위: 개)



주: 2007~2014년 법인 신고 자료를 집계한 수치임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 (규모별 분포)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의 기업규모에 따른 분포를 살펴본 결과, 총자산 5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들이 주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었으며, 자산규모 50억원 이하에서 구간별로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보임
- 총자산 50억원 이하 구간에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의 비중은 25%,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의 비중은 37%로, 전반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의 규모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 창업 후 일정 수준의 규모와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벤처 인증을 시도하기 때문에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에 비하여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생각됨

<표 VI-3> 세액감면 창업벤처기업의 규모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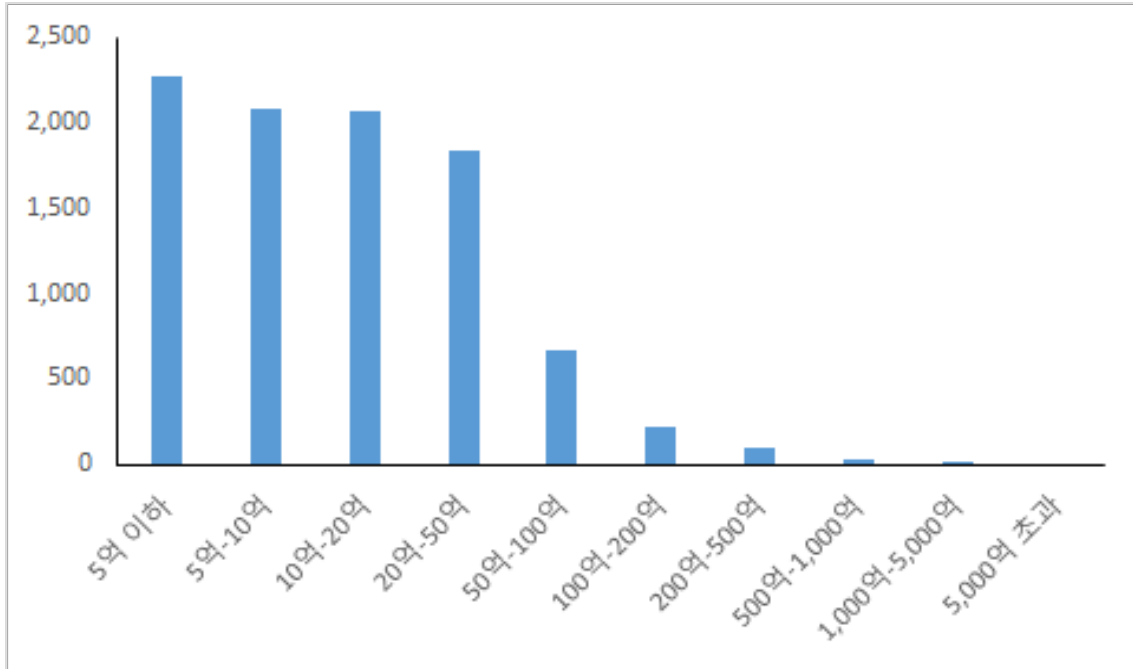
(단위: 개, %)

총자산	세액감면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업체 수	비중	업체 수	비중
5억 이하	2,266	25	9,601	37
5~10억	2,077	23	4,782	19
10~20억	2,064	22	4,214	17
20~50억	1,839	20	4,318	17
50~100억	672	7	1,771	7
100~200억	224	2	476	2
200~500억	104	1	199	1
500~1,000억	32	0	52	0
1,000~5,000억	14	0	7	0
5,000억 초과	0	0	2	0
합계	9,292	100	25,422	100

주: 2007~2014년 법인 신고 자료를 집계한 수치임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그림 VI-2] 세액감면 창업벤처기업의 기업규모별 분포

(단위: 개)



주: 2007~2014년 법인 신고 자료를 집계한 수치임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 (업종별 분포)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감면기업 중 53%가 제조업이고, 그다음이 서비스업으로 전체 감면기업의 약 33%를 차지함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과 비교했을 때 제조업과 건설업의 비중은 낮은 반면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임
  - 서비스업에 대한 벤처 인증요건 완화기조와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IT업체 중 창업벤처기업이 많은 것이 이러한 업종 분포상의 특징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됨

<표 VI-4> 세액감면 창업벤처기업의 업종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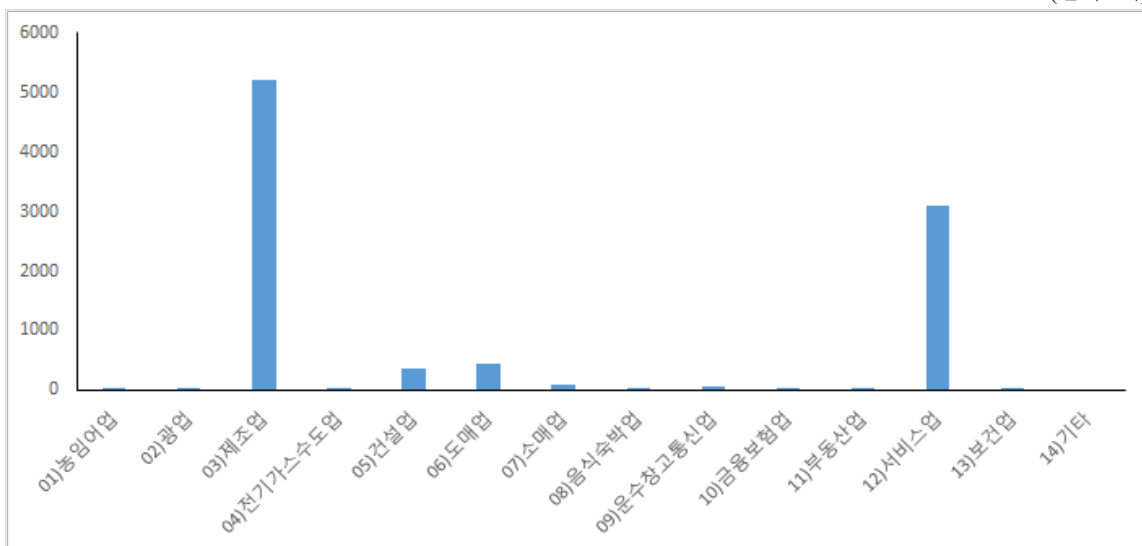
(단위: 개, %)

업종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체 수	비중	업체 수	비중
01) 농림어업	8	0	58	0
02) 광업	4	0	66	0
03) 제조업	5,217	56	16,103	63
04) 전기가스수도업	7	0	26	0
05) 건설업	349	4	3,892	16
06) 도매업	450	5	1,191	6
07) 소매업	89	1	109	0
08) 음식숙박업	4	0	124	0
09) 운수창고통신업	56	1	954	4
10) 금융보험업	1	0	2	0
11) 부동산업	3	0	30	0
12) 서비스업	3,102	33	2,845	11
13) 보건업	2	0	18	0
14) 기타	0	0	4	0
합계	9,292	100	25,422	100

주: 2007~2014년 법인 신고 자료를 집계한 수치임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그림 VI-3] 세액감면 창업벤처기업의 업종별 분포

(단위: 개)



주: 2007~2014년 법인 신고 자료를 집계한 수치임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 (창업중소기업 vs. 창업벤처기업) <표 VI-5>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로, 창업벤처기업이 창업중소기업에 비하여 기업규모(총자산)와 매출, 과세소득이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다만,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일 것이라는 요건 이외에 ‘벤처기업 인증 획득’을 추가로 요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창업 후 일정 규모에 도달한 후 벤처 인증을 시도하기 때문에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에 비하여 규모가 크고, 과세소득이 높은 특징을 가진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재무비율 비교 결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에 비하여 수익성과 재무건전성(부채비율)이 높지만, 유효세율에 있어서는 두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표 VI-5> 세액감면 창업벤처기업과 창업중소기업의 특성 비교<sup>1)</sup>

(단위: 억원)

항목		창업벤처기업 (N=9,292)	창업중소기업 (N=25,422)	차이(t-test) <sup>5), 6)</sup>
신고 항목	총자산	2,400	2,000	400***
	총부채	1,300	1,300	***
	매출액	3,500	2,900	600***
	세전이익	330	230	100***
	당기순이익	310	210	100***
	과세표준	350	240	110***
	산출세액	63	41	22***
	총부담세액	22	20	2***
	감면세액	27	17	10***
재무 비율	세전이익률 <sup>2)</sup>	0.157	0.146	0.011***
	부채비율 <sup>3)</sup>	0.571	0.543	0.029***
	유효세율 <sup>4)</sup>	0.170	0.174	-0.003

주: 1) 2007~2014년 법인 신고 자료를 집계한 수치임

2) 세전이익률 = 세전이익/총자산

3) 부채비율 = 총부채/총자산

4) 유효세율 = 총부담세액/세전이익

5)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두 집단의 평균차이를 비교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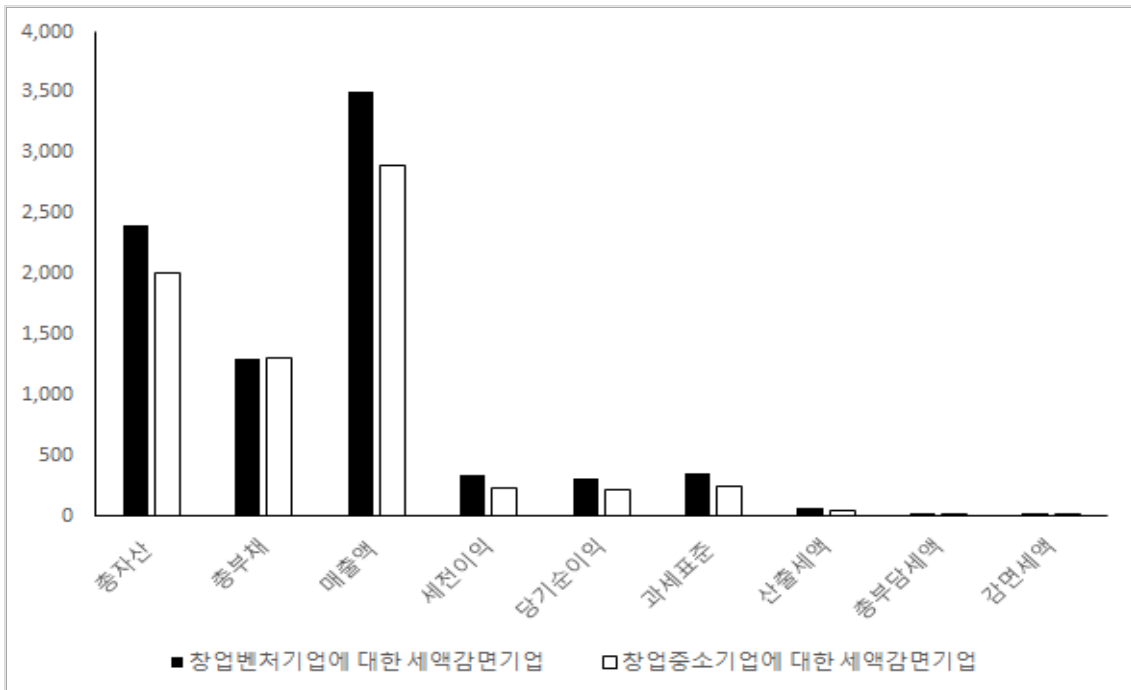
6)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 이러한 분석결과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에 비하여 과세소득이 높지만, 법인세 50% 감면 이후에는 유효세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VI-4] 세액감면 창업벤처기업과 창업중소기업의 특성 비교

(단위: 억원)



주: 2007~2014년 법인 신고 자료를 집계한 수치임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 다. 벤처기업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효과성 분석

### 1) 분석방법

- 벤처기업과 관련된 조세지원의 정책적 목표는 벤처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해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것임
  - 벤처기업과 관련된 조세지원이 이러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창업벤처기업이 유사기업에 비하여 유효세율이 낮고, 우수한 경영성과를 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그룹구분]**

- 본 연구는 외부감사대상법인(이하 ‘외감법인’)을 5개의 그룹 즉, 창업벤처기업과 창업중소기업, 일반벤처기업, 비벤처 일반중소기업, 대기업으로 나눈 후, 5개 그룹 간 유효세율 및 경영성과를 비교함
  - ‘창업벤처기업’이 다른 4개 그룹에 비하여 유효세율이 낮고, 경영성과가 우수하면 창업벤처기업과 관련된 조세지원이 창업벤처기업의 세부담 완화 및 벤처기업 성장에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표 VI-6> 창업벤처기업과 벤치마크 그룹의 정의**

구분기준		그룹명	정의
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	A. 창업벤처기업 → 감면기업
		비벤처	B. 창업중소기업
	창업 후 3년 경과	벤처	C. 일반벤처기업
		비벤처	D. 비벤처 일반중소기업
대기업		E. 대기업	대기업

**[성향점수매칭기법]**

- 창업벤처기업과 비교대상이 되는 대응기업은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이하 ‘PSM’)기법을 이용해 추출함
  - 창업벤처기업은 기업 수명주기, 기술력 등에 있어 다른 4개 집단과 이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룹 간 단순비교는 창업벤처기업의 성과를 과대 추정할 가능성이 있음
  - 본 연구는 선택편의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PSM모형을 이용해 창업벤처기업과 가장 유사한 성향을 가진 비조세지원기업을 대응기업으로 매칭시킨 후, 조세지원기업과 비조세지원기업의 유효세율 및 기업성과를 비교하는 방식을 채택함
    - PSM모형은 로짓 확률에 기반한 모형으로, 로짓모형의 확률값을 점수화하여 유사한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를 갖는 관측치끼리 묶는 방법임

- 본 연구는 김영훈(2011)의 연구를 참조해 성향점수 산출을 위한 로짓모형(logit model)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 김영훈(2011)은 기업규모(총자산, 종업원 수), 성장성(매출증가율), 수익성(세전이익률), 재무건전성(부채비율), 업종, 연도 등을 고려하여 성향점수를 산정함
  - PSM기법을 사용하면 창업벤처기업과 규모, 성장성, 수익성, 재무건전성이 가장 유사한 법인을 대응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음

$$TAX_{it} = \alpha_0 + \alpha_1 LTA_{it} + \alpha_2 LEMP_{it} + \alpha_3 SG_{it} + \alpha_4 ROA_{it} + \alpha_5 LEV_{it} + \sum IND + \sum YD + \epsilon_{it}$$

---식 (1)

**변수의 정의**

종속변수

*TAX*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았으면 1, 아니면 0;

설명변수

- LTA* =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 LEMP* = 종업원수의 자연로그 값;
- SG* = 매출증가율;
- ROA* = 세전이익률(=세전이익/총자산);
- LEV* =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 IND* = 업종더미
- YD* = 연도더미

- 식 (1)에서 종속변수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았으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임
  - 설명변수는 창업벤처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로, *LTA*와 *LEMP*는 기업 규모, *SG*는 성장성, *ROA*는 수익성, *LEV*는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변수임
  - 아울러 업종별, 연도별로 감면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종더미(*IND*)와 연도더미(*YD*)를 설명변수에 추가함
  - <표 VI-5>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업규모가 크고, 성장성 및 수익성, 재무건전성이 높을수록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2) 표본구성

### [표본선정기준]

- 본 연구는 기업재무자료가 외부에 공개되는 외감법인을 대상으로 벤처기업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함<sup>71)</sup>
  - 2016년 9월 현재 벤처 인증기업 수는 총 32,468개에 달하는바, 상당수 기업의 재무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어 벤처 인증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조세 지원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함
  
- 2016년 9월말 현재 외감법인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표본으로 선정함<sup>72)</sup>
  - 「조특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벤처기업인증업종 또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표본에서 제외함
  - 세전이익이 0보다 큰 법인
    - 세전이익이 0보다 적은 기업은 유효세율의 경제적 해석이 곤란하므로 표본에서 제외함
  - 분석에 필요한 재무자료를 이용 가능한 법인
    - 분석에 필요한 재무자료는 NICE 신용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NewKisValue에서 추출함
  
- 최초 표본은 214,112개 기업-연도이나, 앞서 설명한 표본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39,953개를 제외한 후 최종 74,159개를 대응기업 추출을 위한 표본으로 사용함
  - 2016년 9월말 현재 외감법인 수는 총 26,674개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개년을 분석했기 때문에 최초 표본 수는 26,674개×8년=214,112개임
  - 업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관측치 51,384개와 세전이익이 0보다 적은 관측치 55,896개, 분석에 필요한 재무자료가 없는 관측치 32,673개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74,159개를 사용해 창업벤처기업과 가장 유사한 성향점수를 가진 대응기업을 선정함

7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외부의 독립된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를 감사받아 외부에 공시하여야 함

72) 개인사업자 및 비외감법인은 재무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유효세율 계산이 불가능한바, 분석대상을 외감법인으로 한정함

<표 VI-7> 대응기업 추출을 위해 사용된 외감법인 표본추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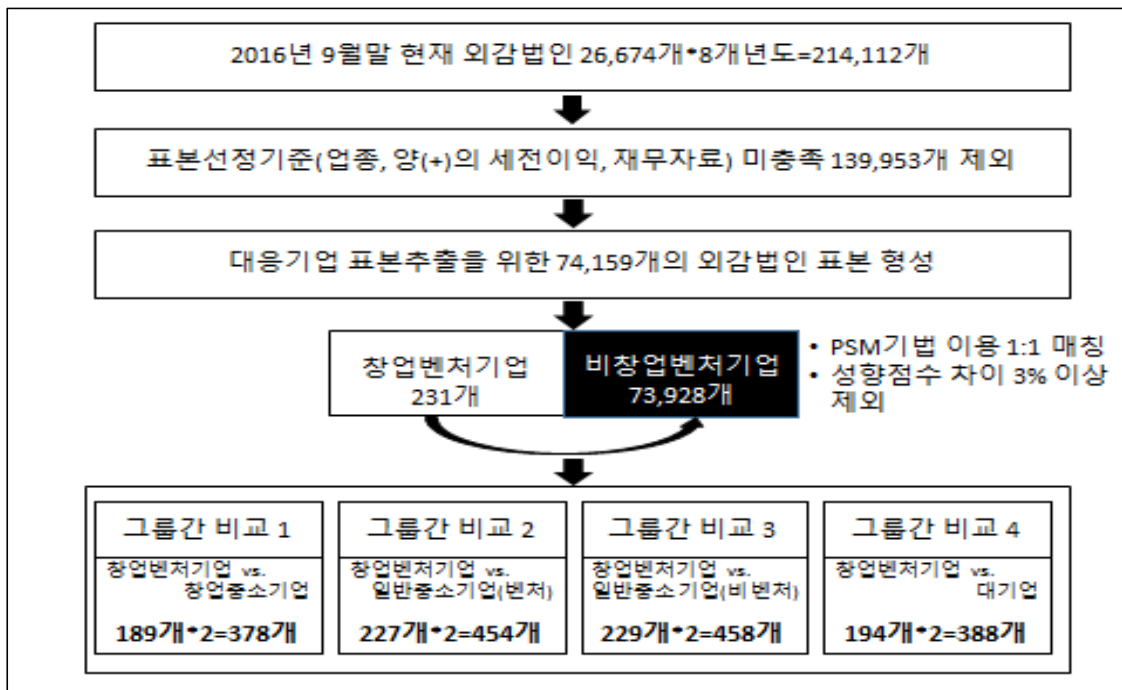
(단위: 개)

표본추출과정	개수
가. 최초 표본 (26,674개 법인×8개 연도)	214,112
나. 차감	(139,953)
-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51,384)
- 세전이익이 0 이하인 기업-연도	(55,896)
- 분석에 필요한 재무자료가 없는 기업-연도	(32,673)
다. 대응기업 추출을 위해 사용된 외감법인 표본	74,159

[표본추출과정]

- 벤처기업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표본추출과정은 [그림 VI-5]에 요약되어 있음
- 74,159개의 외감법인 중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실험군)을 우선 추출한 후, 해당 기업과 가장 유사한 성향점수를 가지는 비조세지원기업을 대조군으로 선정하는 2단계로 구성됨

[그림 VI-5]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효과성 분석을 위한 표본추출과정



- (1단계 - 창업벤처기업 추출) 1단계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 중 외감법인을 추출함
  - 국세청 제공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중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총 9,292건으로, 이 중 외감법인 감면건수는 231건임
  
- (2단계 - 1:1 매칭) 2단계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외감법인(실험군)과 가장 유사한 성향점수를 지닌 비조세지원기업을 1:1 매칭을 통해 대응기업으로 추출함
  - 식 (1)의 로짓모형을 이용해 74,159개 표본 각각의 성향점수를 계산한 후, 성향점수가 가장 유사한 기업끼리 매칭시킴
  - 단, 실험군(조세지원기업)과 대조군(비조세지원기업)이 유사한 속성을 지닐 수 있도록 성향점수 차이가 3% 이상이면 표본에서 제외함
  
- 2단계의 표본추출 과정을 거쳐 각각의 비교그룹별로 378~458개의 최종표본이 선정됨
  - 창업벤처기업(실험군) 숫자가 231개이고, 각각의 창업벤처기업에 유사한 성향점수를 가진 대조군(비조세지원기업) 1개를 1:1 매칭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최종 표본 수는 462개(=231개\*2)가 되어야 함

<표 VI-8>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효과성 분석을 위한 표본 개수

(단위: 개)

비교 그룹	조세지원 창업벤처기업 (실험군) <sup>1)</sup>	비조세지원기업 (대조군) <sup>2)</sup>	최종 표본 개수
창업벤처기업 vs. 창업중소기업	189	189	378
창업벤처기업 vs. 일반 벤처기업	227	227	454
창업벤처기업 vs. 비벤처 일반중소기업	229	229	458
창업벤처기업 vs. 대기업	194	194	388

주: 1) 실험군: 외감기업 중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

2) 대조군: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외감기업 중 감면업종을 영위하고, 양(+)의 세전이익을 가졌으며, 필요한 재무자료를 이용 가능한 기업으로 실험군과 가장 유사한 성향점수를 가진 기업

- 그러나 실험군과 대조군 간 성향점수 차이가 3% 이상이면 표본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실제 표본 개수는 462개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됨
- 창업벤처기업과 비벤처 창업중소기업과 차이 분석을 위해 378개(=189개\*2), 창업벤처기업과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벤처기업 간 차이 분석을 위해 454개(=227개\*2), 창업벤처기업과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비벤처기업 간 차이 분석을 위해 458개(=229개\*2), 창업벤처기업과 대기업 간 차이 분석을 위해 총 388개(=194개\*2)의 표본이 사용됨

### [기술통계량]

- <표 VI-9>는 벤처기업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의 기술통계량을 요약한 결과로, 기업규모나 성장성, 수익성, 재무건전성 등에 있어 5개 그룹 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비교대상 집단이 창업벤처기업과 이질적 특성을 가진 표본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룹 간 유효세율 또는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두 그룹을 구성하는 표본의 근본적인 기업특성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세지원의 효과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움
  - 따라서 창업벤처기업과 비교대상 집단의 유효세율 또는 경영성과 차이가 조세지원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창업벤처기업과 비교대상 집단이 기업규모나 성장성, 수익성, 재무건전성 등에 있어 유사한 속성을 지녀야 함
  - 창업벤처기업과 비교대상 집단을 유사한 속성을 가진 기업들로 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PSM기법을 사용하였으며, PSM기법의 사용 결과 유사한 성향을 가진 기업들이 비교대상 집단으로 선정되었음을 <표 VI-9>에서 제시한 기술통계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 표본기업의 총자산은 평균 195억원, 종업원 수는 61명, 세전이익률은 평균 17.2%로 표본기업은 총자산 대비 약 17.2%의 세전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매출증가율 평균이 87.3%로 일반기업에 비하여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부채비율은 47.4%로 자기자본을 통한 자금조달과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VI-9>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효과성 분석을 위한 표본의 기술통계량<sup>1)</sup>

(단위: 억원, 명)

그룹	총자산	매출액	종업원 수	종업원 1인당 매출액	매출 증가율	부채 비율 <sup>2)</sup>	세전 이익률 <sup>3)</sup>	
실험군	창업벤처기업	247.067	266.774	72.645	5.198	0.867	0.477	0.155
대조군	창업중소기업	226.390	233.218	64.443	7.126	1.173	0.509	0.158
	일반벤처기업	169.395	204.767	54.128	5.042	0.806	0.450	0.189
	비벤처 일반중소기업	161.360	201.737	49.616	5.786	1.039	0.468	0.201
	대기업	176.316	259.407	66.562	8.745	0.470	0.471	0.154
전체		195.766	232.437	61.236	6.274	0.873	0.474	0.172

주: 1) PSM기법을 이용해 1:1 매칭한 창업벤처기업 및 비창업벤처기업 표본의 기술통계량(평균값)임

2) 부채비율 = 총부채/총자산

3) 세전이익률 = 세전이익/총자산

### 3) 분석결과

#### 가) 창업벤처기업과 대응기업의 유효세율 비교

□ <표 VI-10>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과 대응기업의 유효세율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본 결과로, 2014년을 제외하고 그 외 모든 연도에서 창업벤처기업의 유효세율이 가장 낮았음

- 기업그룹별 유효세율은 창업벤처기업이 9.4%, 창업 후 3년이 경과한 벤처기업이 13.1%, 창업 후 3년 이내의 비벤처 중소기업이 16.1%, 창업 후 3년이 경과한 비벤처 중소기업이 16.2%, 대기업이 18%로 창업벤처기업이 가장 낮았음
- 그러나 2014년도에는 창업 후 3년이 경과한 비벤처 중소기업의 유효세율이 12%로 가장 낮았고, 창업벤처기업이 15.8%로 3순위를 차지하여 유효세율의 역전 현상이 발생함

<표 VI-10> 기업그룹별 유효세율 기술통계량

연도	기업그룹	평균	최솟값	최댓값	중간값	표준 편차
2007	창업중소기업(벤처)	0.090	0.000	0.498	0.076	0.088
	창업중소기업	0.191	0.022	0.529	0.200	0.106
	일반벤처기업	0.130	0.000	0.307	0.124	0.089
	비벤처 일반중소기업	0.184	0.000	0.461	0.199	0.096
	대기업	0.202	0.000	0.413	0.211	0.093
2008	창업중소기업(벤처)	0.108	0.000	0.412	0.112	0.100
	창업중소기업	0.181	0.016	0.560	0.163	0.104
	일반벤처기업	0.150	0.000	0.703	0.140	0.111
	비벤처 일반중소기업	0.162	0.000	0.596	0.170	0.110
	대기업	0.158	0.000	0.305	0.161	0.101
2009	창업중소기업(벤처)	0.086	0.000	0.333	0.093	0.073
	창업중소기업	0.138	0.000	0.350	0.136	0.074
	일반벤처기업	0.109	0.000	0.260	0.111	0.076
	비벤처 일반중소기업	0.153	0.000	0.416	0.142	0.077
	대기업	0.171	0.000	0.505	0.200	0.115
2010	창업중소기업(벤처)	0.082	0.000	0.483	0.075	0.094
	창업중소기업	0.164	0.000	0.560	0.151	0.116
	일반벤처기업	0.106	0.000	0.319	0.108	0.085
	비벤처 일반중소기업	0.152	0.000	0.315	0.147	0.079
	대기업	0.172	0.000	0.626	0.162	0.133
2011	창업중소기업(벤처)	0.068	0.000	0.169	0.061	0.045
	창업중소기업	0.130	0.004	0.234	0.125	0.062
	일반벤처기업	0.136	0.019	0.242	0.133	0.066
	비벤처 일반중소기업	0.150	0.000	0.248	0.167	0.080
	대기업	0.211	0.000	0.513	0.205	0.121
2012	창업중소기업(벤처)	0.057	0.000	0.099	0.064	0.037
	창업중소기업	0.153	0.022	0.215	0.165	0.065
	일반벤처기업	0.149	0.023	0.239	0.166	0.091
	비벤처 일반중소기업	0.096	0.000	0.229	0.098	0.076
	대기업	0.174	0.049	0.218	0.202	0.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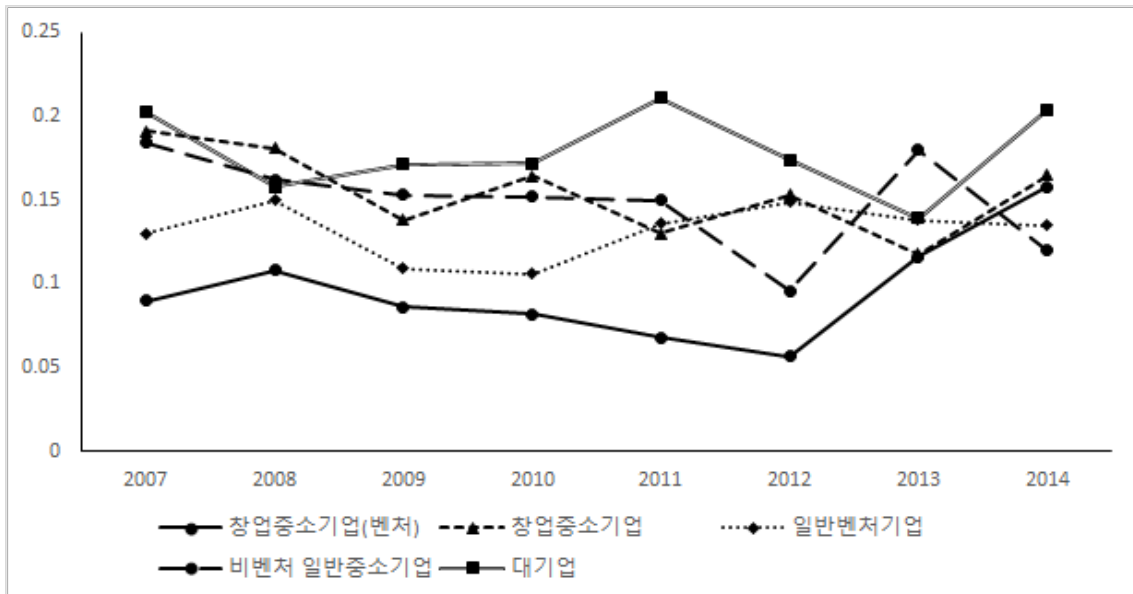
연도	기업그룹	평균	최솟값	최댓값	중간값	표준 편차
2013	창업중소기업(벤처)	0.116	0.021	0.486	0.093	0.123
	창업중소기업	0.118	0.000	0.242	0.144	0.096
	일반벤처기업	0.138	0.000	0.246	0.161	0.098
	비벤처 일반중소기업	0.180	0.168	0.209	0.174	0.016
	대기업	0.139	0.000	0.251	0.169	0.092
2014	창업중소기업(벤처)	0.158	0.000	0.742	0.077	0.218
	창업중소기업	0.165	0.023	0.275	0.179	0.076
	일반벤처기업	0.135	0.008	0.282	0.121	0.119
	비벤처 일반중소기업	0.120	0.000	0.221	0.155	0.095
	대기업	0.204	0.000	0.482	0.210	0.134
2007 ~ 2014	창업중소기업(벤처)	0.094	0.000	0.742	0.081	0.101
	창업중소기업	0.161	0.000	0.560	0.159	0.096
	일반벤처기업	0.131	0.000	0.703	0.125	0.094
	비벤처 일반중소기업	0.162	0.000	0.596	0.170	0.093
	대기업	0.180	0.000	0.626	0.197	0.108

주: 1. 창업벤처기업과 PSM를 통해 추출한 대응기업의 유효세율의 기술통계량임  
 2. 극단치로 인한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하위 1%를 초과하는 값은 1% 또는 99%에 해당하는 값으로 조정하는 winsorizing을 실시

- [그림 VI-6]은 기업그룹별 유효세율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로, 대체로 창업벤처기업의 유효세율이 가장 낮고, 그다음이 비벤처 중소기업, 대기업의 순서로 나타남
-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연구기간 동안 유효세율은 ‘창업벤처기업<일반벤처기업<비벤처 일반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대기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5개 기업그룹 중 창업벤처기업이 가장 많은 조세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2013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창업벤처기업의 유효세율은 최저한세율 수준에 근접함

[그림 VI-6] 기업그룹별 유효세율의 추이

(단위: %)



□ 2012년 이후 창업벤처기업의 유효세율이 높아지면서 창업벤처기업과 다른 기업그룹과의 유효세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

○ 창업벤처기업의 과세소득에서 감면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됨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벤처 인증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5년간 세액감면이 가능함
- 2014년 법인세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1,577개 기업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394개 기업의 감면비율이 30% 미만으로 나타남
- 감면기간 중 벤처 인증을 받은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소득(예: 이자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창업벤처기업의 유효세율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됨

□ (**t-test 결과**) <표 VI-11>은 창업벤처기업과 대응기업 간 유효세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t-test를 실시한 결과로, 창업벤처기업이 다른 4개 기업그룹과 비교했을 때 유의하게 유효세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a)창업벤처기업과 창업중소기업, (b)창업벤처기업과 일반벤처기업, (c)창업벤처

기업과 비벤처 일반중소기업, (d)창업벤처기업과 대기업의 유효세율 차이를 검증한 4개의 t-test 결과 모두 1% 수준에서 유의미한 값이 관찰됨

- 이러한 분석결과는 창업벤처기업이 유사한 특성을 지닌 다른 그룹의 기업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현행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유효성을 갖는다고 판단됨

<표 VI-11> 기업그룹 간 유효세율 차이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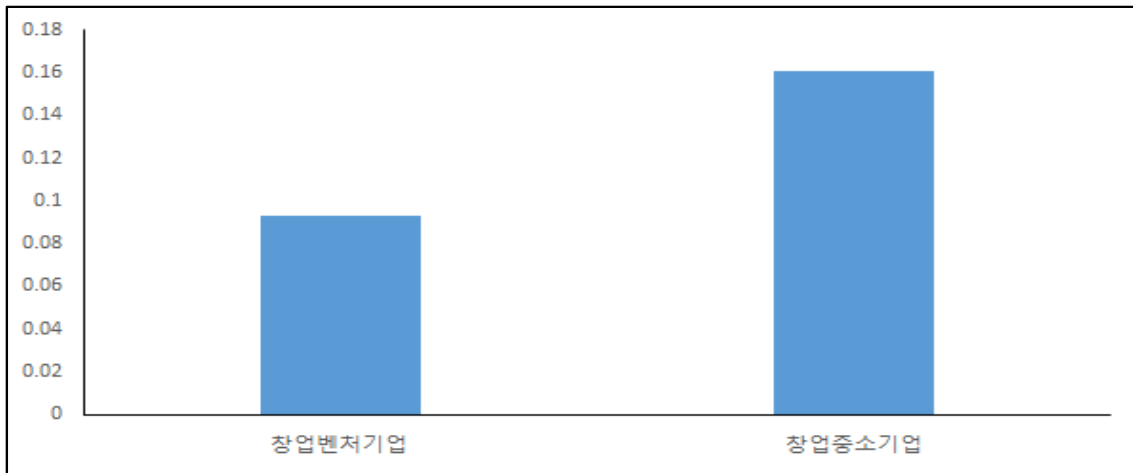
기업그룹	구분	표본수	평균	차이 (t-test)
창업벤처기업 vs.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189	0.093	-0.068***
	창업중소기업	189	0.161	
창업벤처기업 vs. 일반벤처기업	창업벤처기업	227	0.095	-0.036***
	일반벤처기업	227	0.131	
창업벤처기업 vs. 비벤처 일반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229	0.094	-0.068***
	비벤처 일반중소기업	229	0.162	
창업벤처기업 vs. 대기업	창업벤처기업	194	0.096	-0.084***
	대기업	194	0.180	

- 주: 1) 창업벤처기업과 PSM를 통해 추출한 대응기업 간 유효세율을 비교한 결과임  
 2) 극단치로 인한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하위 1%를 초과하는 값은 1% 또는 99%에 해당하는 값으로 조정하는 winsorizing을 실시함  
 3) 각 그룹의 정의는 <표 VI-6> 참조  
 4)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 (창업벤처기업 vs.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과 창업중소기업의 유효세율을 비교한 결과, 창업벤처기업이 창업중소기업에 비하여 유효세율이 6.8%p 더 낮고, 이러한 결과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중 창업벤처기업의 유효세율 평균은 9.3%, 창업중소기업의 유효세율 평균은 16.1%로, 창업벤처기업이 창업중소기업에 비하여 세부담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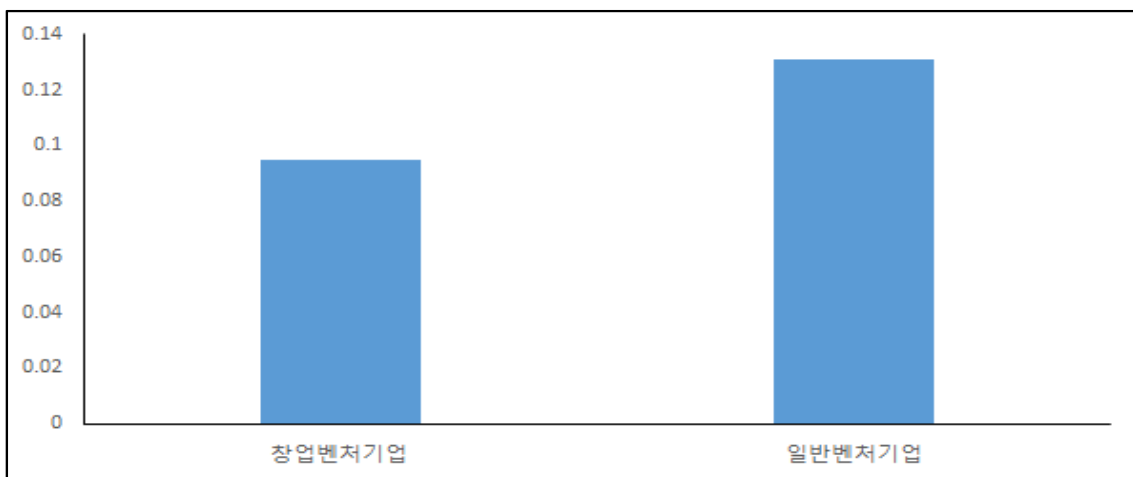
[그림 VI-7] 유효세율 비교: 창업벤처기업 vs. 창업중소기업



- 주: 1) 창업벤처기업과 PSM를 통해 추출한 대응기업 간 유효세율을 비교한 결과임  
 2) 극단치로 인한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하위 1%를 초과하는 값은 1% 또는 99%에 해당하는 값으로 조정하는 winsorizing을 실시함

- (창업벤처기업 vs. 일반벤처기업) 창업벤처기업과 창업 후 3년이 경과한 일반벤처기업의 유효세율을 비교한 결과, 창업벤처기업이 일반벤처기업에 비하여 유효세율이 3.6%p 더 낮고, 이러한 결과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중 창업벤처기업의 유효세율 평균은 9.5%, 창업 후 3년이 경과한 일반벤처기업의 유효세율 평균은 13.1%로, 창업벤처기업이 일반벤처기업에 비하여 세부담이 낮음

[그림 VI-8] 유효세율 비교: 창업벤처기업 vs. 일반벤처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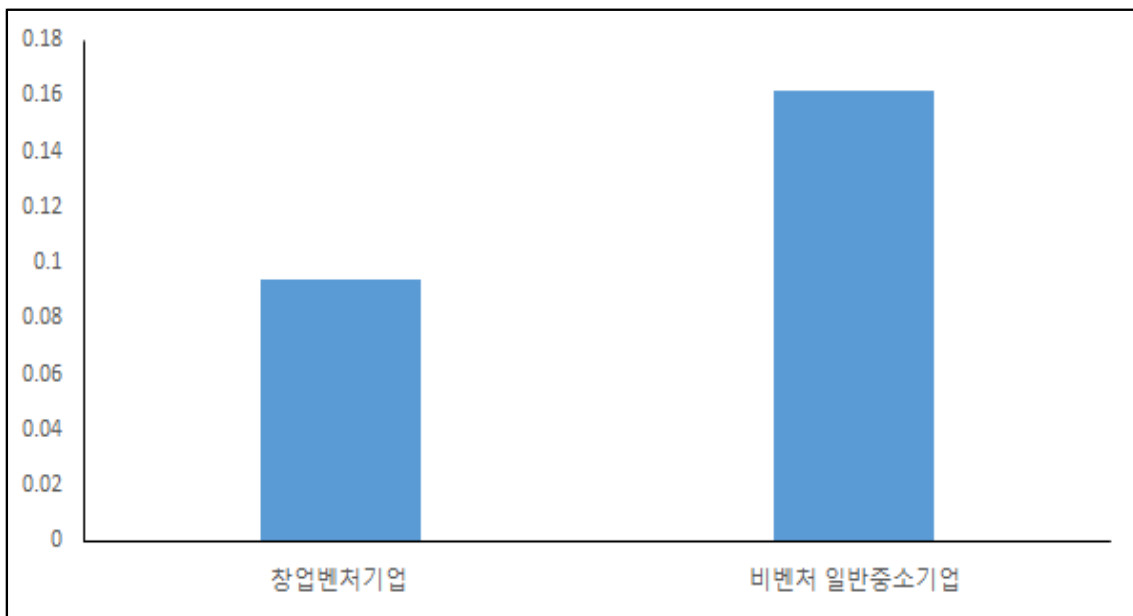
- 주: 1) 창업벤처기업과 PSM를 통해 추출한 대응기업 간 유효세율을 비교한 결과임  
 2) 극단치로 인한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하위 1%를 초과하는 값은 1% 또는 99%에 해당하는 값으로 조정하는 winsorizing을 실시함

○ 이러한 분석결과는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에 주어지는 50%의 세액감면 혜택이 다른 공제·감면혜택에 비하여 기업의 세부담 완화에 상대적으로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함

□ (창업벤처기업 vs. 비벤처 일반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과 창업 후 3년이 경과한 비벤처 중소기업의 유효세율을 비교한 결과, 창업벤처기업이 창업 후 3년이 경과한 비벤처 중소기업에 비하여 유효세율이 6.8%p 더 낮고, 이러한 결과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분석기간 동안 창업벤처기업의 유효세율 평균은 9.4%, 창업 후 3년이 경과한 일반 비벤처 중소기업의 유효세율 평균은 16.2%로, 창업벤처기업이 비벤처 일반중소기업에 비하여 세부담이 낮았음

[그림 VI-9] 유효세율 비교: 창업벤처기업 vs. 비벤처 일반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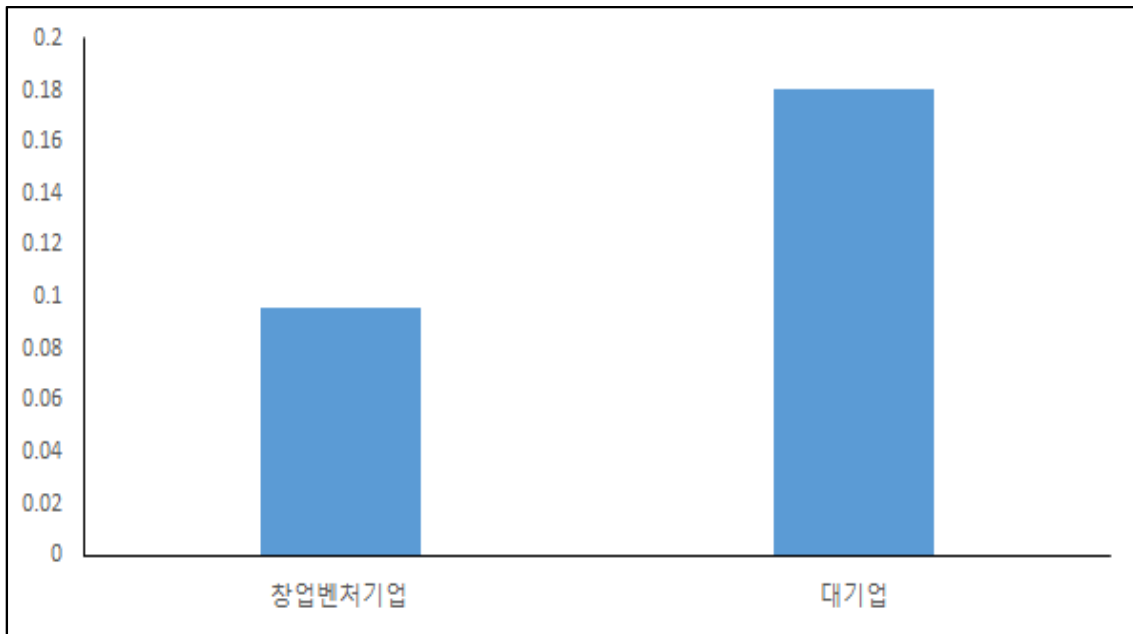


주: 1) 창업벤처기업과 PSM를 통해 추출한 대응기업 간 유효세율을 비교한 결과임  
 2) 극단치로 인한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하위 1%를 초과하는 값은 1% 또는 99%에 해당하는 값으로 조정하는 winsorizing을 실시함

□ (창업벤처기업 vs. 대기업) 창업벤처기업과 대기업의 유효세율을 비교한 결과, 창업벤처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유효세율이 8.4%p 더 낮고, 이러한 결과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분석기간 동안 창업벤처기업의 유효세율 평균은 9.6%, 대기업의 유효세율 평균은 18%로, 창업벤처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세부담이 낮음
- 4개 그룹을 비교한 결과, 창업벤처기업과 대기업 간 유효세율 차이가 8.4%p로 그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남

[그림 VI-10] 유효세율 비교: 창업벤처기업 vs. 대기업



- 주: 1) 창업벤처기업과 PSM를 통해 추출한 대응기업 간 유효세율을 비교한 결과임  
 2) 극단치로 인한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하위 1%를 초과하는 값은 1% 또는 99%에 해당하는 값으로 조정하는 winsorizing을 실시함

#### 나) 창업벤처기업과 대응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 <표 VI-12>와 [그림 VI-11]은 창업벤처기업과 대응기업 간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로, 창업벤처기업은 다른 기업그룹에 비하여 성장성이 높지만, 수익성과 생산성이 낮은 특징을 가진 것으로 분석됨
  - 창업벤처기업의 자산증가율과 고용증가율이 다른 기업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수익성 측면에서는 창업 후 3년이 경과한 비벤처 중소기업의 세전·세후 이익률이 4개 그룹 중 가장 높았고, 생산성(종업원 1인당 매출액) 측면에서는 대기업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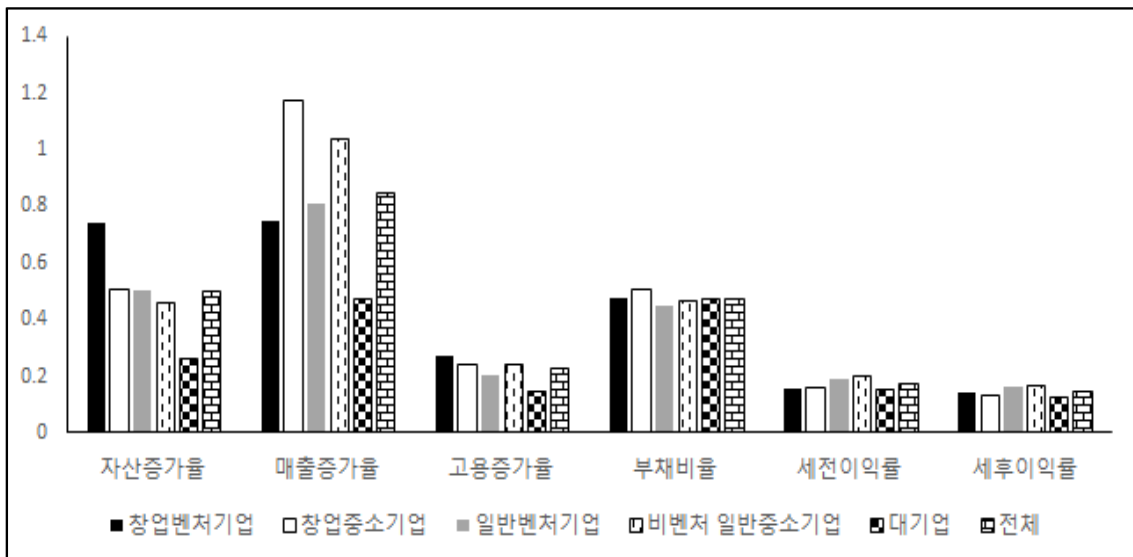
<표 VI-12> 기업그룹별 경영성과 비교

(단위: 억원, 명)

변수명	창업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일반벤처기업	비벤처 일반중소기업	대기업	전체
총자산(억원)	238	226	169	161	176	194
매출액(억원)	266	233	205	202	259	232
종업원수(명)	71	64	54	50	67	61
종업원 1인당 매출액(억원)	5.346	7.126	5.042	5.786	8.745	6.306
자산증가율	0.738	0.508	0.504	0.461	0.259	0.502
매출증가율	0.748	1.173	0.806	1.039	0.47	0.847
고용증가율	0.273	0.243	0.206	0.24	0.147	0.224
부채비율	0.477	0.509	0.45	0.468	0.471	0.474
세전이익률	0.156	0.158	0.189	0.201	0.154	0.173
세후이익률	0.143	0.134	0.164	0.167	0.126	0.148

- 주: 1) 창업벤처기업과 PSM를 통해 추출한 대응기업 간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임  
 2) 극단치로 인한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하위 1%를 초과하는 값은 1% 또는 99%에 해당하는 값으로 조정하는 winsorizing을 실시함  
 3) 각 그룹의 정의는 <표 VI-6> 참조

[그림 VI-11] 기업그룹별 경영성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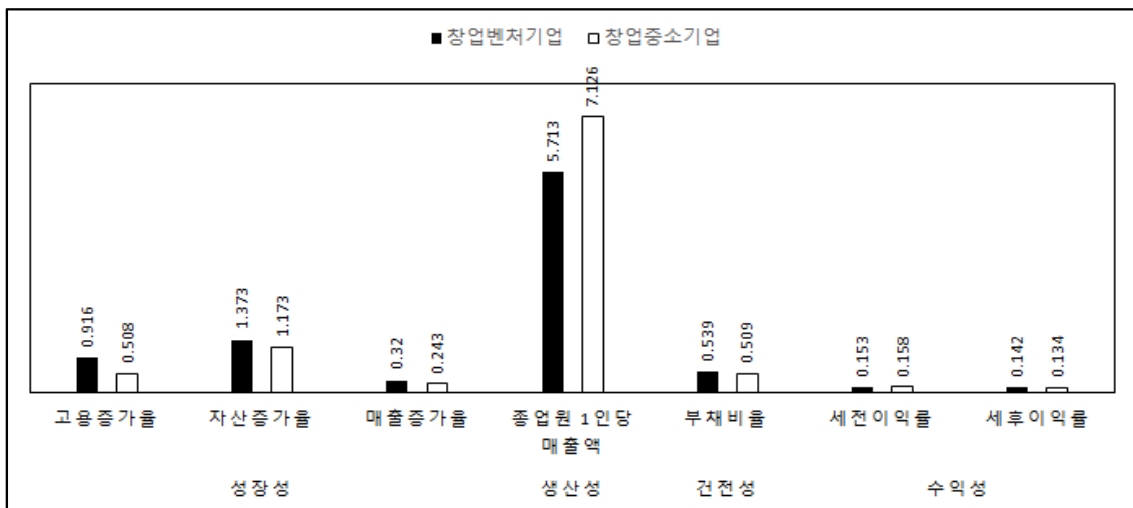
□ (창업벤처기업 vs. 창업중소기업) <표 VI-13>은 창업벤처기업과 벤처 인증을 받지 못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로, 독립표본 t-test 결과 창업벤처기업이 벤처 인증을 받지 못한 창업중소기업에 비하여 고용증가율이 유의하게 더 높지만, 그 외 경영지표에 있어서는 두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표 VI-13> 창업벤처기업과 창업중소기업 경영성과 비교

지표		창업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평균차이 (t-test)
성장성	고용증가율	0.916	0.508	0.409***
	자산증가율	1.373	1.173	0.200
	매출증가율	0.320	0.243	0.077
생산성	종업원 1인당 매출액	5.713	7.126	-1.414
건전성	부채비율	0.539	0.509	0.029
수익성	세전이익률	0.153	0.158	-0.005
	세후이익률	0.142	0.134	0.007

주: 1) 창업벤처기업과 PSM를 통해 추출한 대응기업 간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임  
 2) 극단치로 인한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하위 1%를 초과하는 값은 1% 또는 99%에 해당하는 값으로 조정하는 winsorizing을 실시함  
 3)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그림 VI-12] 경영성과 비교: 창업벤처기업 vs. 창업중소기업



주: 1) 창업벤처기업과 PSM를 통해 추출한 대응기업 간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임  
 2) 극단치로 인한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하위 1%를 초과하는 값은 1% 또는 99%에 해당하는 값으로 조정하는 winsorizing을 실시함

- 창업벤처기업의 고용증가율은 91.6%로, 벤처 인증을 받지 못한 창업기업의 고용증가율 50.8%에 비하여 40.9%p가 높고, 이러한 차이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함
- 자산증가율, 매출증가율, 종업원 1인당 매출액, 부채비율, 세전·세후이익률에 있어서는 두 기업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 (창업벤처기업 vs. 일반벤처기업) <표 VI-14>는 창업벤처기업과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로, 독립표본 t-test 결과 창업벤처기업이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일반벤처기업에 비하여 고용증가율은 높지만, 자산증가율과 수익성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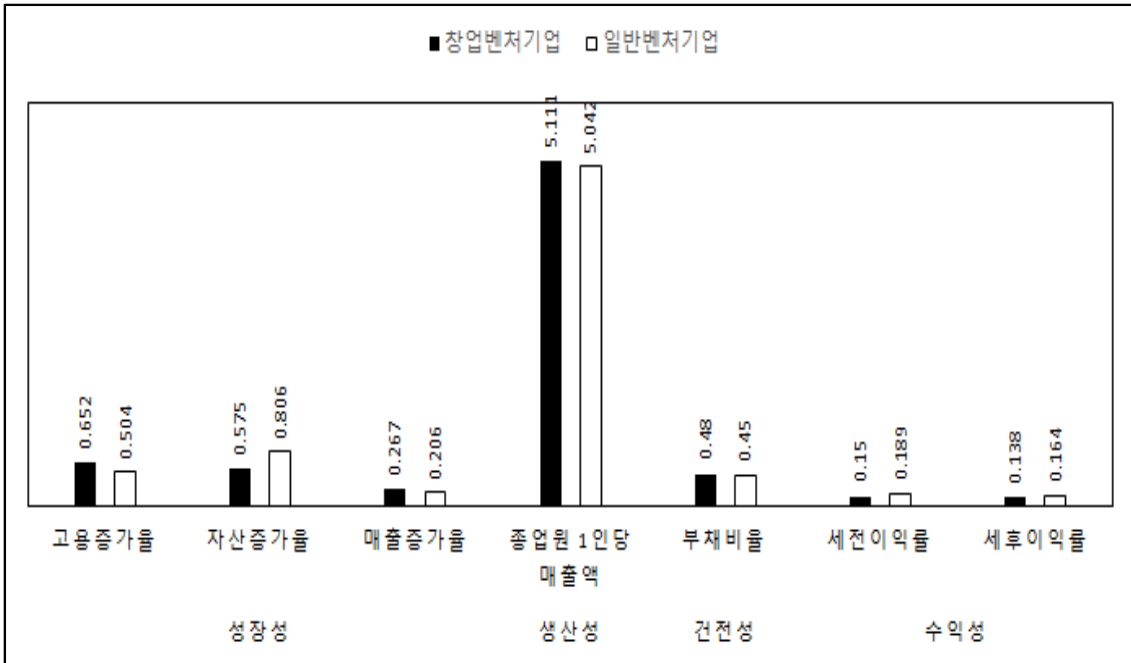
- 창업벤처기업의 고용증가율은 65.2%로, 일반벤처기업 50.4%에 비하여 14.8%p가 더 높고, 이러한 결과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함
- 반면 창업벤처기업의 자산증가율은 57.5%로, 일반벤처기업의 자산증가율 80.6%에 비하여 23.1%p가 더 낮음
- 또한 창업벤처기업의 세전·세후이익률은 각각 15%와 13.8%로, 일반벤처기업의 18.9% 및 16.4%와 비교해 4%p와 2.6%p가 더 낮음
- 그 외 경영지표들에 있어서는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표 VI-14> 창업벤처기업과 일반벤처기업 경영성과 비교

지표		창업벤처기업	일반벤처기업	평균차이 (t-test)
성장성	고용증가율	0.652	0.504	0.148***
	자산증가율	0.575	0.806	-0.231***
	매출증가율	0.267	0.206	0.061
생산성	종업원 1인당 매출액	5.111	5.042	0.068
건전성	부채비율	0.480	0.450	0.030
수익성	세전이익률	0.150	0.189	-0.040***
	세후이익률	0.138	0.164	-0.026***

주: 1) 창업벤처기업과 PSM를 통해 추출한 대응기업 간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임  
 2) 극단치로 인한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하위 1%를 초과하는 값은 1% 또는 99%에 해당하는 값으로 조정하는 winsorizing을 실시함  
 3)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그림 VI-13] 경영성과 비교: 창업벤처기업 vs. 일반벤처기업



주: 1) 창업벤처기업과 PSM를 통해 추출한 대응기업 간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임  
 2) 극단치로 인한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하위 1%를 초과하는 값은 1% 또는 99%에 해당하는 값으로 조정하는 winsorizing을 실시함

□ (창업벤처기업 vs. 비벤처 일반중소기업) <표 VI-15>는 창업벤처기업과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비벤처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로, 독립표본 *t*-test 결과 창업벤처기업이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비벤처 중소기업에 비하여 고용증가율은 높지만, 자산증가율과 수익성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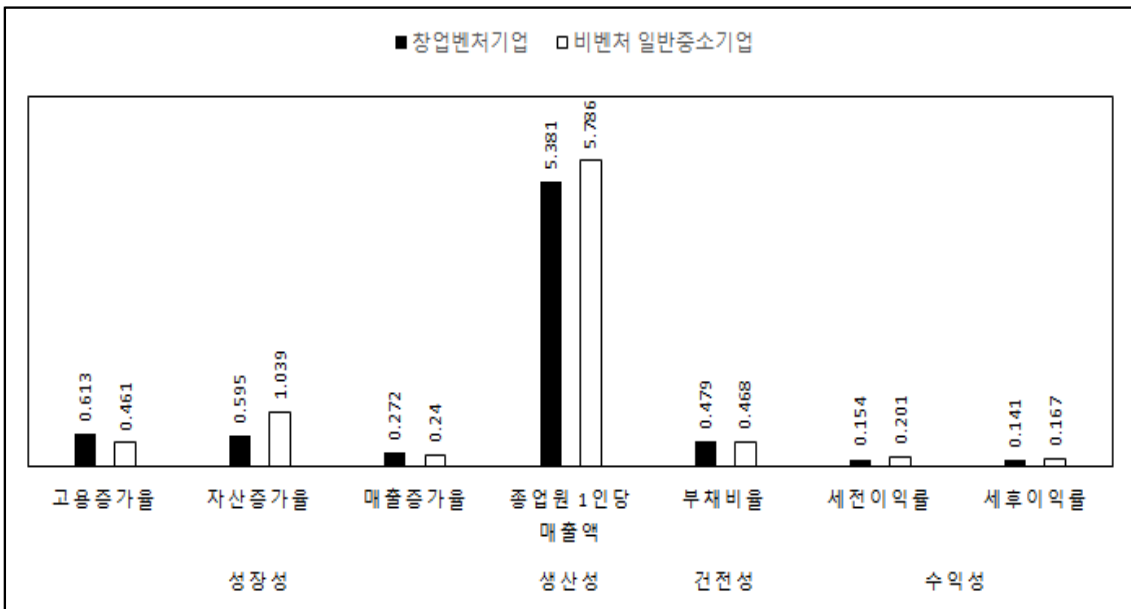
- 창업벤처기업의 고용증가율은 61.3%로,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비벤처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율 46.1%에 비하여 15.2%p가 더 높고, 이러한 결과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함
- 반면 창업벤처기업의 자산증가율은 59.5%로, 비벤처 일반중소기업의 자산증가율 103%에 비하여 44.4%p가 더 낮음
- 또한 창업벤처기업의 세전이익률과 세후이익률은 각각 15.4%와 14.1%로, 비벤처 중소기업의 20.1%와 16.7%에 비하여 각각 4.6%p와 2.6%p가 더 낮음
- 그 외 경영지표들에 있어서는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표 VI-15> 창업벤처기업과 비벤처 일반중소기업 경영성과 비교

지표		창업벤처기업	비벤처 일반중소기업	평균차이 (t-test)
성장성	고용증가율	0.613	0.461	0.152***
	자산증가율	0.595	1.039	-0.444***
	매출증가율	0.272	0.240	0.032
생산성	종업원 1인당 매출액	5.381	5.786	-0.405
건전성	부채비율	0.479	0.468	0.012
수익성	세전이익률	0.154	0.201	-0.046***
	세후이익률	0.141	0.167	-0.026***

주: 1) 창업벤처기업과 PSM를 통해 추출한 대응기업 간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임  
 2) 극단치로 인한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하위 1%를 초과하는 값은 1% 또는 99%에 해당하는 값으로 조정하는 winsorizing을 실시함  
 3)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그림 VI-14] 경영성과 비교: 창업벤처기업 vs. 비벤처 일반중소기업



주: 1) 창업벤처기업과 PSM를 통해 추출한 대응기업 간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임  
 2) 극단치로 인한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하위 1%를 초과하는 값은 1% 또는 99%에 해당하는 값으로 조정하는 winsorizing을 실시함

□ (창업벤처기업 vs. 대기업) <표 VI-16>은 창업벤처기업과 대기업의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로, 독립표본 t-test 결과 창업벤처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성장성은 높은 반면 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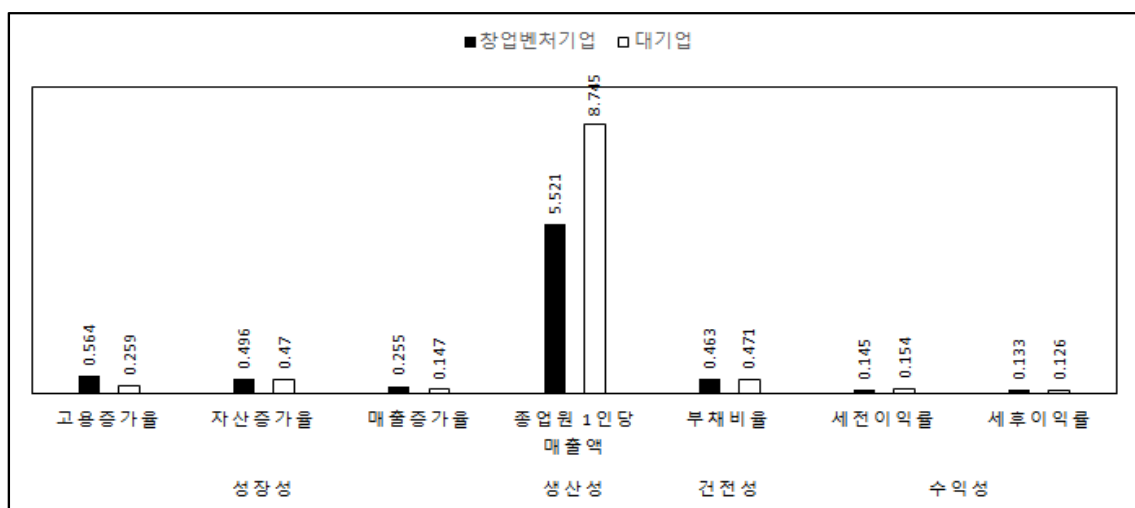
○ 창업벤처기업의 고용증가율과 매출증가율은 각각 56.4%와 25.5%로, 대기업의 25.9%와 14.7%에 비하여 30.4%p와 10.9%p가 더 높음

<표 VI-16> 창업벤처기업과 대기업 경영성과 비교

지표		창업벤처기업	대기업	평균차이 (t-test)
성장성	고용증가율	0.564	0.259	0.304***
	자산증가율	0.496	0.470	0.026
	매출증가율	0.255	0.147	0.109***
생산성	종업원 1인당 매출액	5.521	8.745	-3.224**
건전성	부채비율	0.463	0.471	-0.007
수익성	세전이익률	0.145	0.154	-0.009
	세후이익률	0.133	0.126	0.007

주: 1) 창업벤처기업과 PSM를 통해 추출한 대응기업 간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임  
 2) 극단치로 인한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하위 1%를 초과하는 값은 1% 또는 99%에 해당하는 값으로 조정하는 winsorizing을 실시함  
 3)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그림 VI-15] 경영성과 비교: 창업벤처기업 vs. 대기업



주: 1) 창업벤처기업과 PSM를 통해 추출한 대응기업 간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임  
 2) 극단치로 인한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하위 1%를 초과하는 값은 1% 또는 99%에 해당하는 값으로 조정하는 winsorizing을 실시함

- 반면 창업벤처기업의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5억 5,200만원으로, 대기업의 8억 7,400만원에 비하여 3억 2,200만원이 더 낮고, 이러한 결과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함
  - 그 외 경영지표들에 있어서는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대체로 창업벤처기업은 PSM기법을 이용해 1:1 매칭한 대응기업과 비교했을 때, 고용증가율은 높은 반면 생산성과 수익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열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창업벤처기업은 다른 어떤 기업그룹보다 고용증가율이 유의하게 높음
  - 반면 창업벤처기업은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에 비하여 자산증가율과 수익성(세전/세후이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성장성(고용증가율과 매출증가율)은 높지만, 생산성(종업원 1인당 매출액)이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음

<표 VI-17> 창업벤처기업과 대응기업 경영성과 비교결과 요약

지표		창업벤처기업 vs.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vs. 일반벤처기업	창업벤처기업 vs. 비벤처 일반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vs. 대기업
성장성	고용증가율	우위	우위	우위	우위
	자산증가율	무차별	열위	열위	무차별
	매출증가율	무차별	무차별	무차별	우위
생산성	종업원 1인당 매출액	무차별	무차별	무차별	열위
건전성	부채비율	무차별	무차별	무차별	무차별
수익성	세전이익률	무차별	열위	열위	무차별
	세후이익률	무차별	열위	열위	무차별

주: 1) 창업벤처기업과 PSM를 통해 추출한 대응기업 간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로, <표 VI-13>~<표 VI-16>을 요약한 결과임  
 2) 창업벤처기업 입장에서 우위, 무차별, 열위를 정리한 결과임

다) 업종별 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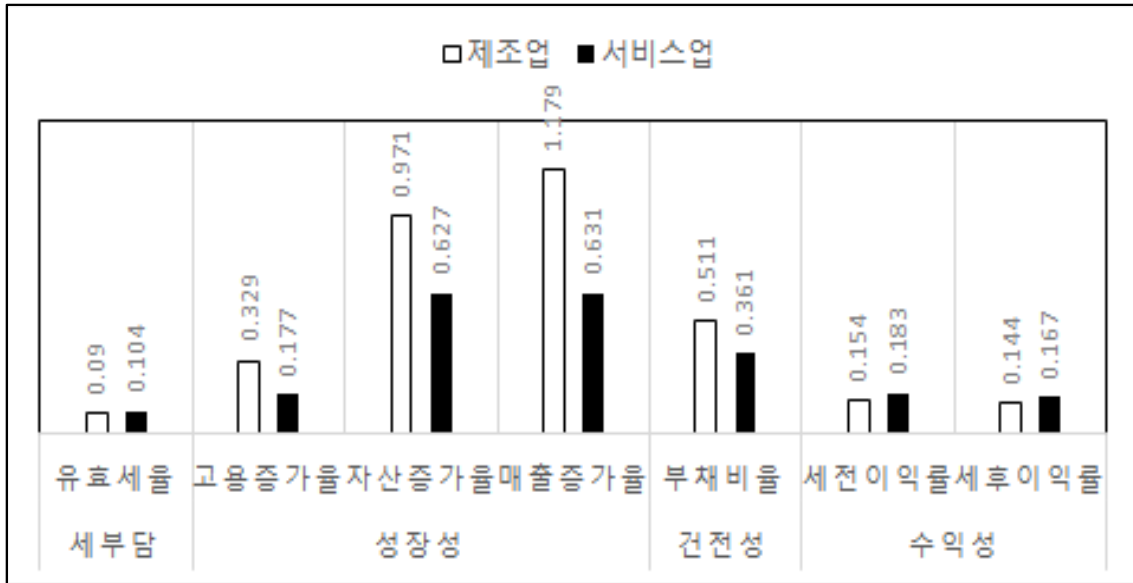
- 본 절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은 외감기업 231개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 ICT기업과 비ICT기업 간 조세부담 및 경영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함
  - <표 VI-18>과 [그림 VI-16]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비교한 결과이고, <표 VI-19>와 [그림 VI-17]이 ICT기업과 비ICT기업을 비교한 결과임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외감기업 중 73%가 제조업, 24%가 서비스업에 해당했고,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생산성이 높은 반면 재무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세부담 수준, 성장성, 수익성에 있어서는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표 VI-18> 업종별 효과 분석(제조업 vs. 서비스업)

지표		제조업 (N=169)	서비스업 (N=55)	평균차이 (t-test)
세부담	유효세율	0.090	0.104	-0.014
성장성	고용증가율	0.329	0.177	0.152*
	자산증가율	0.971	0.627	0.344
	매출증가율	1.179	0.631	0.548
생산성	종업원 1인당 매출액	6.109	2.741	3.368***
건전성	부채비율	0.511	0.361	0.150***
수익성	세전이익률	0.154	0.183	-0.029
	세후이익률	0.144	0.167	-0.022

주: 1)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은 외감기업 231개 중 제조업에 속한 기업 169개와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 55개의 평균차이를 비교한 결과임  
 2) 극단치로 인한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하위 1%를 초과하는 값은 1% 또는 99%에 해당하는 값으로 조정하는 winsorizing을 실시함  
 3)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그림 VI-16] 업종별 효과 비교: 제조업 vs. 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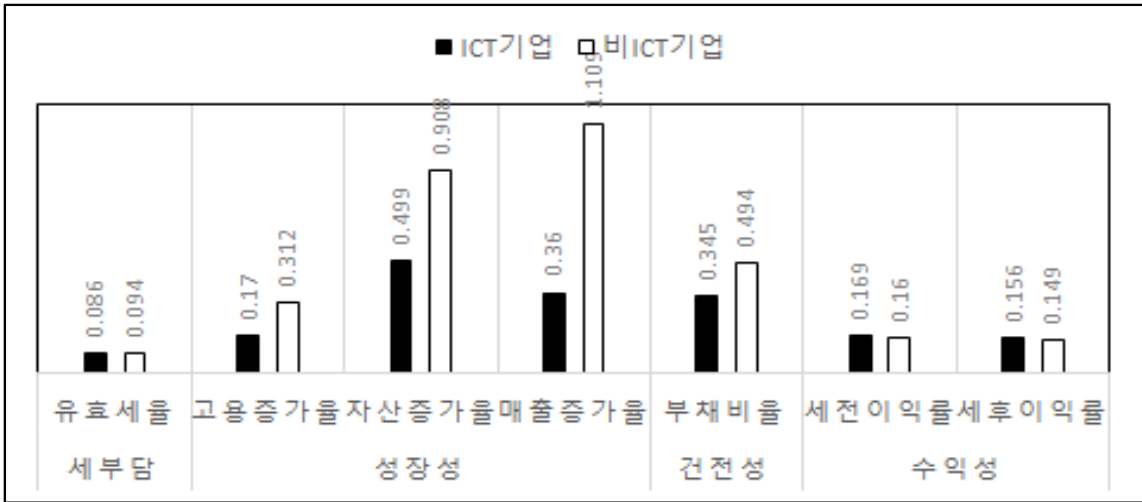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외감기업 중 ICT기업의 비중은 12%에 불과하였으며, ICT기업이 비ICT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대신 재무건전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세부담 수준, 성장성, 수익성에 있어서는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표 VI-19> 업종별 효과 분석(ICT기업 vs. 기타)

지표		ICT (N=28)	기타 (N=203)	평균차이 (t-test)
세부담	유효세율	0.086	0.094	-0.008
성장성	고용증가율	0.170	0.312	-0.141
	자산증가율	0.499	0.908	-0.409
	매출증가율	0.360	1.109	-0.749
생산성	종업원 1인당 매출액	2.090	5.709	-3.619***
건전성	부채비율	0.345	0.494	-0.149***
수익성	세전이익률	0.169	0.160	0.009
	세후이익률	0.156	0.149	0.008

주: 1)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은 외감기업 231개 중 제조업에 속한 기업 169개와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 55개의 평균차이를 비교한 결과임  
 2) 극단치로 인한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하위 1%를 초과하는 값은 1% 또는 99%에 해당하는 값으로 조정하는 winsorizing을 실시함  
 3)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그림 VI-17] 업종별 효과 비교: ICT기업 vs. 비ICT기업



## 2. 벤처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효과

### 가. 선행연구

- 김건우·서병철(2010)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성장성이 비투자기업에 비하여 높고, 복수의 벤처캐피탈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은 벤처기업일수록 성장성이 더 높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함
  - 동 연구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04년도 벤처캐피탈 투자리스트를 확보해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 간 성장성(매출증가율, 자산증가율)과 수익성(매출액이익률, 총자산이익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
- 김영훈(2011)과 김영훈 등(2013)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비투자기업에 비하여 성장성·생산성·혁신성이 높지만, 안정성과 수익성은 낮다고 주장함
  - 동 연구는 PSM기법을 사용해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유사한 성향점수를 가진 비투자기업을 대응기업으로 선정한 후,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대응기업 간 경영성과를 비교 분석함
  - 구체적으로 벤처캐피탈 투자는 성장성 측면에서 4년간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고용증가율을 26.7% 향상시키고, 42.5%의 자산증가 효과와 49.7%의 매출증가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생산성 측면에서 벤처캐피탈 투자는 1년 후 종업원 1인당 3,296만원의 매출증가 효과가 있지만, 투자 후 3년이 지나면 벤처캐피탈 투자로 인한 1인당 매출 증가효과는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혁신성 측면에서는 벤처캐피탈 투자로 인하여 4년 후 2억 7,457만원의 추가적인 연구개발 투자효과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은 비투자기업에 비하여 부채비율이 높고, 총자산이익률 및 총자본이익률이 낮아 기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sup>73)</sup>

□ 서병철·김건우(2011)는 벤처캐피탈 자금투자 유형별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비투자기업에 비하여 성장성 지표가 확연히 높았고, 초기투자기업이 후기투자기업보다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보였으나, 공동투자나 단독투자인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조달방식(보통주 투자 vs. 주식연계형 채권투자)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 보통주 투자와 주식연계형채권 투자 간에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음
- 투자시점(초기투자기업 vs. 후기투자기업)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 성장성 지표에서 초기투자기업이 후기투자기업보다 높은 기업성과를 나타냈으며, 수익성 지표 중 총자산이익률에서 초기투자기업이 보다 높은 기업성과를 나타냄
- 투자방법(단독투자 vs. 공동투자)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 일반적 기대와 달리 공동투자가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김영훈·임소진(2015)은 정부와 민간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재무성과를 비교분석한 후, 정부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의 시장실패 극복에 도움을 주고, 금융시장에 대한 인증효과를 가지지만, 벤처기업의 수익성 및 생산성 개선효과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함

- 고용창출 및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정부 벤처캐피탈 투자는 민간투자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민간투자기업에 비하여 생산성이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73) 그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벤처캐피탈 투자로 인하여 무리한 차입이 이어졌고, 높은 이자비용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함

- 또한 정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은 민간투자기업에 비하여 업력이 짧고, 규모가 작았으며, 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장기대출을 받고 있었음
- 조성숙·박정서(2009)는 벤처캐피탈회사의 운용행태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성과를 분석하였는데, 금융형이 개인형보다, 성숙기의 벤처캐피탈이 초기단계의 벤처캐피탈보다, 일반 벤처캐피탈이 전문 벤처캐피탈보다 수익성이 높았음<sup>74)</sup>
  -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해산된 318개의 베너 투자조합들의 실제 해산자료를 기초로 투자조합의 투자성과를 산출함
- 조성숙·이희우(2012)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벤처캐피탈 투자가 기업 투명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함
  - 본 연구는 닷컴 버블이 꺼진 이후인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327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직전 벤처캐피탈 투자지분율과 상장연도의 재량적 발생액 간 관계를 살펴봄
  - 벤처캐피탈이 고위험 초기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경영감시 및 자문기능을 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상장 직전 벤처캐피탈 투자와 기업의 이익조정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음
- 김재진·양동우(2014)는 벤처캐피탈 투자지분율이 높을수록 특허등록 건수가 많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벤처캐피탈 투자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
  - 벤처캐피탈 투자지분율이 높을수록, 여러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일수록, 투자지분율이 월등하게 높은 leading 투자자가 있는 기업일수록 특허등록 건수가 많았음

74) 본 연구는 운용회사의 최대주주, 투자조합 결성 당시 투자조합 운용사의 업력, 투자종목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의 유형을 구분함. 운용회사의 최대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형’, 기업, 대학, 협회 등인 경우에는 ‘기업형’,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금융형’으로 분류함. 투자조합 결성 당시 투자조합 운용사의 업력을 기준으로 업력이 2년 미만이면 ‘초기’, 2년이면 ‘중기’, 3년 이상이면 ‘성숙기’로 구분함. 일반 VCF는 규정상 제한된 투자제의 대상 외에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조합을, 전문 VCF는 특정 업종, 특정 지역, 문화/컨텐츠, 창업초기 기업에 집중하여 투자하는 투자조합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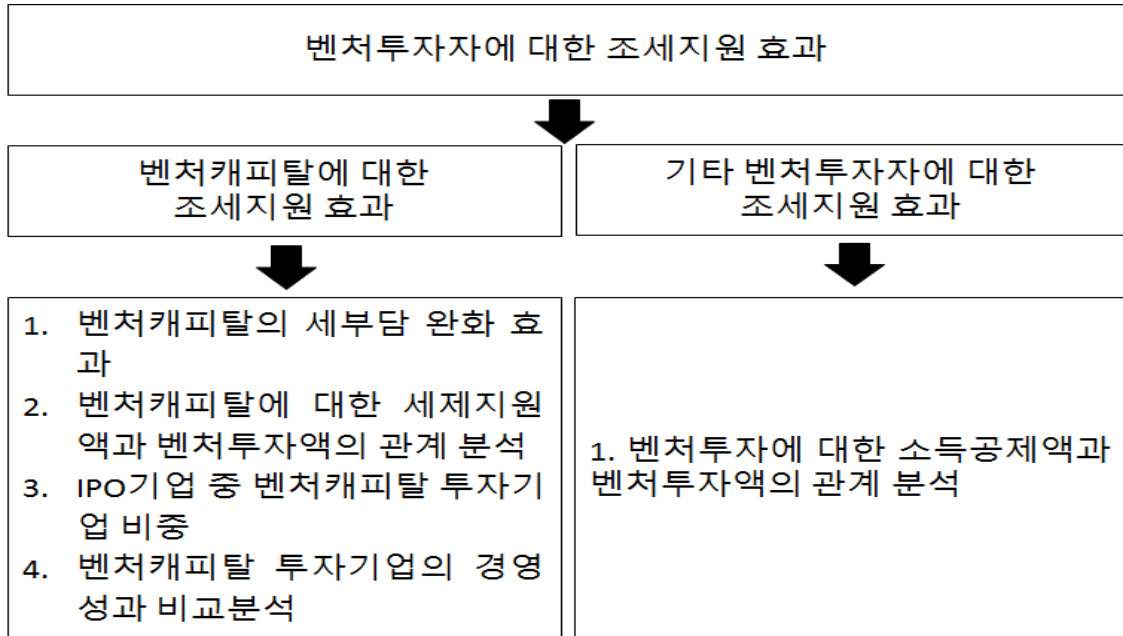
## 나. 벤처투자자와 관련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평가

### 1) 분석방법

- 벤처캐피탈에 대한 세제지원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벤처캐피탈이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창업초기 벤처기업에 자금지원 및 경영지도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벤처산업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임
- 벤처캐피탈에 대한 세제지원의 효과는 I) 세제지원이 벤처투자자의 세후이익을 늘려 벤처투자 여력을 높였는지 ii) 세제지원액과 벤처투자액이 비례적 관계에 있는 지 iii)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비투자기업에 비하여 경영성과가 우수한지 여부 등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는 ‘벤처캐피탈’과 ‘기타 벤처투자자’로 구분해 벤처캐피탈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함
  - 벤처투자자는 벤처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에 따라 ‘전문투자자’와 ‘비전문투자자’로 구분할 수 있음
    - ‘전문투자자’는 벤처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로, 벤처캐피탈이 대표적 형태임
  - ‘벤처캐피탈’에 대한 세제지원은 회수이익에 대한 비과세가 주를 이루는 반면 벤처캐피탈 이외의 기타 벤처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지원방식에 차이가 있음
- 벤처캐피탈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은 다음의 네 가지 방법으로 검증함
  - 조세지원이 벤처캐피탈의 세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었는지 *t*-test
  - 벤처캐피탈에 대한 세제지원액과 벤처투자액이 비례적 관계에 있는지 추세 분석
  - 신규 IPO건 중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계산
  -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비투자기업에 비하여 경영성과가 우수한지 *t*-test와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

- 기타 벤처투자자와 관련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은 세제지원액과 벤처투자액이 비례적 관계에 있는지를 통해 평가함
- 벤처캐피탈 이외의 기타 벤처투자자는 조세지원 세부내역을 입수할 수 없어 벤처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총액과 벤처투자액 간의 관계를 단순 분석함

[그림 VI-18] 벤처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효과성 분석방법 개요



## 2) 벤처캐피탈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분석

### 가) 벤처캐피탈의 세부담 완화 효과

#### [분석방법]

- 벤처캐피탈의 법인세 신고 자료를 입수해 해당 벤처캐피탈이 「조특법」 제13조에 따른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았을 때의 유효세율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유효세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
-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했다고 가정했을 때 유효세율이 비과세 혜택 적용 후 유효세율보다 낮다면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이 벤처캐피탈의 세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본구성]

-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중 「조특법」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은 60개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벤처캐피탈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가 벤처캐피탈의 세부담 완화에 실질적 효과가 있었는지 검증함
  - 국세청으로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은 60개 벤처캐피탈의 법인세 신고 자료를 입수해 재무현황 및 비과세 신청금액을 파악함
  
- <표 VI-20>은 「조특법」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비과세 혜택을 받은 벤처캐피탈의 연도별 현황자료로, 매년 10개 내외의 벤처캐피탈이 비과세 혜택 향유
  - 수혜대상 벤처캐피탈 수는 2011년이 4개로 가장 적었으며, 2010년과 2012년이 10개로 가장 많았음

<표 VI-20> 비과세 수혜 벤처캐피탈의 재무현황

(단위: 개, 억원)

year	표본 개수	자산 총액	부채 총액	매출액	세전 이익	당기 순이익	ROA	LEV
2007	9	3,528	2,990	373	71	54	0.060	0.466
2008	6	12,175	11,120	1,163	26	19	-0.025	0.555
2009	8	9,295	8,022	1,038	132	102	0.038	0.476
2010	10	26,443	11,736	2,036	227	160	0.046	0.563
2011	4	56,506	22,315	3,763	-435	-438	0.028	0.350
2012	10	23,782	8,926	1,631	64	79	0.024	0.386
2013	6	310	69	63	16	12	0.041	0.269
2014	7	507	66	90	47	38	0.095	0.260
전체	60	15,214	7,576	1,189	57	40	0.040	0.428

주: 1) 변수의 정의

ROA = 당기순이익/총자산

LEV =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2) 조특법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를 적용받은 벤처캐피탈의 재무현황 평균임

3) 조합을 제외한 창투사 자료만을 집계한 것임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분석결과]**

- <표 VI-21>은 벤처캐피탈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조항이 벤처캐피탈의 유효세율을 낮추어 세후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는지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로, t-test 결과 비과세 적용 후 유효세율이 비과세 적용 전 유효세율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아 벤처캐피탈에 대한 세제지원이 벤처캐피탈의 세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당 비과세 신청금액은 평균 13억원이고, 이를 세액(=비과세 신청금액\*한계세율)으로 환산하면 기업당 2억 8천만원의 세금절감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비과세 적용 후 유효세율은 16.5%로, 비과세 조항이 없었다면 부담했어야 할 유효세율 17.8%에 비하여 1.3%p가 더 낮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함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과 2009년, 2014년에 특히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로 인한 유효세율 인하 효과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남

**<표 VI-21> 벤처캐피탈 유효세율 인하 효과**

(단위: 개, 억원)

연도	비과세금액	비과세금액 세금효과	비과세 적용 후 유효세율 (A)	비과세 적용 전 유효세율 (B)	B-A (t-test)
2007	17.685	4.421	0.223	0.232	0.009
2008	15.192	3.798	0.224	0.228	0.004*
2009	10.638	2.631	0.164	0.173	0.009*
2010	13.002	2.860	0.156	0.160	0.004
2011	29.017	6.384	0.170	0.217	0.047
2012	9.612	1.216	0.111	0.122	0.011
2013	4.043	0.809	0.130	0.165	0.035
2014	11.797	2.359	0.160	0.165	0.005**
전체기간 평균	13.074	2.855	0.165	0.178	0.013***

주: 1) 조특법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배당소득 및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은 벤처캐피탈의 비과세금액 및 유효세율 평균임

2) 비과세금액 세금효과 = 비과세 신청금액\*한계세율

3) 비과세 적용 전 유효세율 = (비과세 적용 후 부담세액+비과세 신청금액\*한계세율)/(비과세 적용 전 과세소득+비과세신청금액)

4)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 엄격한 비과세 요건 적용으로 인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벤처캐피탈 수는 많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는 벤처캐피탈에 있어서는 비과세 조항이 유효세율 경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15년 기준 등록 창투자 수가 115개이고, 비과세를 신청한 창투자 수가 매년 10개 내외임을 감안하면 전체 창투사의 10% 미만이 비과세 혜택을 향유하고 있는 추정됨

나) 벤처캐피탈에 대한 세제지원액과 벤처투자액의 관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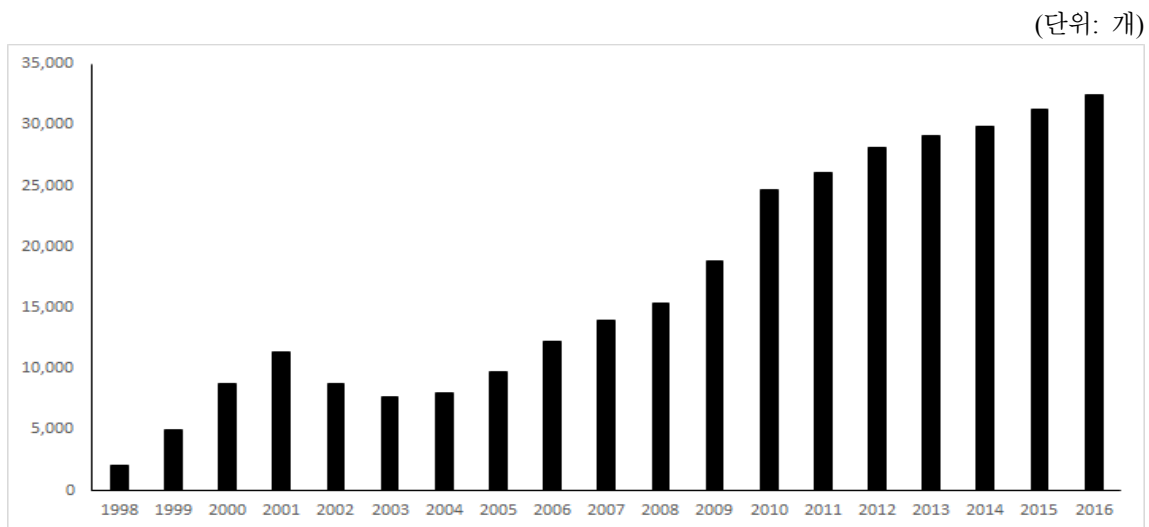
**[분석방법]**

- 본 절은 벤처캐피탈에 대한 세제지원액이 벤처투자액과 비례적 관계에 있는지 살펴봄
  - 벤처캐피탈에 대한 세제지원액이 증가할 때 벤처투자액도 비례해 증가한다면 벤처캐피탈에 대한 세제지원이 벤처산업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벤처산업 현황]**

- 2016년 9월 현재 한국의 벤처기업 수는 총 32,468개로, 벤처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시작된 1999년의 4,934개 대비 약 6.6배가 증가함

[그림 VI-19] 벤처기업 수



-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을 시작한 1999년 벤처기업 수는 4,934개로, 전년 대비 약 2.4배가 증가함
  - 닷컴기업 거품 붕괴시기인 2002년과 2003년을 제외하고, 벤처기업 수는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0년에 2만개, 2015년에는 3만개를 돌파함
- 창투사 및 창투조합의 벤처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 501억원이던 신규투자금액이 2015년에는 2,120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함
- 2000년 닷컴버블 시기를 정점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벤처투자는 2008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회복되어 2015년에는 신규투자금액이 2조원을 넘어섬
  - 창투사 및 창투조합의 숫자 역시 1999년 145개에서 시작해 2015년에는 531개로, 17년 만에 2.7배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창투사보다 창투조합의 증가가 두드러짐
    - 창투조합 숫자는 1999년 90개에서 2015년에는 460개로, 5배가 넘는 성장세를 보임

<표 VI-2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의 투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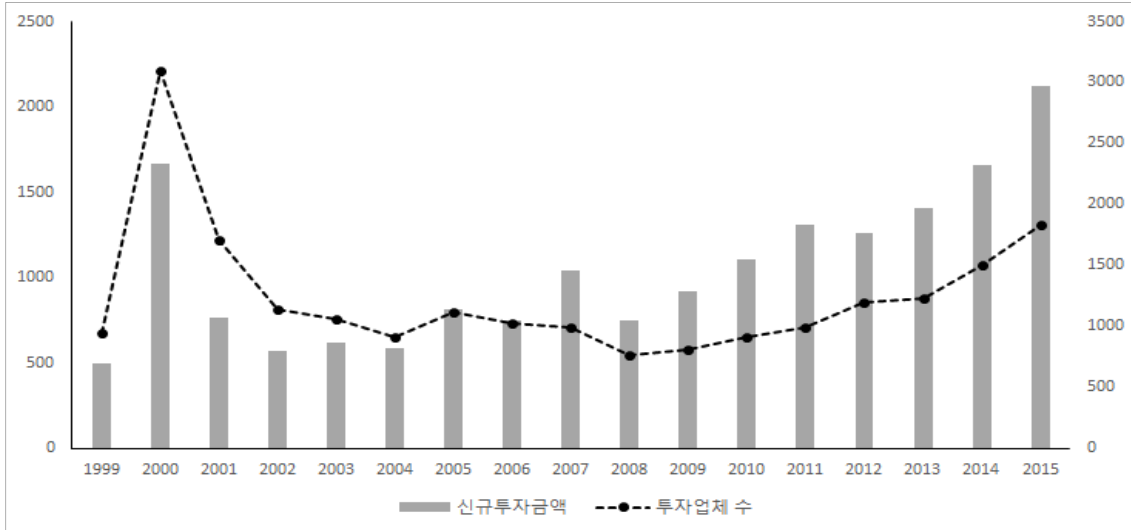
(단위: 개, 십억원)

연도	창투사 및 창투조합 수			투자실적	
	창투조합	창투사	합계	피투자업체 수	신규투자금액
1999	90	55	145	949	501
2000	253	94	347	3,099	1,670
2001	298	95	393	1,705	767
2002	347	96	443	1,143	573
2003	341	94	435	1,060	624
2004	358	94	452	911	585
2005	383	92	475	1,119	812
2006	354	96	450	1,024	752
2007	329	88	417	997	1,040
2008	281	83	364	767	748
2009	305	78	383	808	917
2010	320	83	403	917	1,110
2011	341	76	417	990	1,310
2012	352	69	421	1,194	1,260
2013	359	60	419	1,232	1,410
2014	401	61	462	1,509	1,660
2015	460	71	531	1,836	2,120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제공자료 가공

[그림 VI-20] 창투사 및 창투조합의 신규투자실적

(단위: 개, 십억원)



□ <표 VI-23>은 창투사 보유자산의 세부내역으로,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투자 비중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 VI-23> 창투사 투자실적자산 규모

(단위: 개, 십억원, %)

연도	개수	총자산(A)	창업투자 자산(B)	투자실적 자산(C)	총자산 대비 투자실적 자산(C/A)	창업투자 자산 대비 투자실적 자산(C/B)
2000	9	247	77	41	17	53
2001	20	1,020	499	164	16	33
2002	93	2,670	1,340	424	16	32
2003	91	2,420	1,400	789	33	56
2004	94	2,210	1,280	620	28	48
2005	90	2,300	1,280	704	31	55
2006	89	2,170	1,150	670	31	58
2007	80	2,210	1,060	782	35	74
2008	79	1,920	1,050	861	45	82
2009	74	1,870	1,030	894	48	87
2010	77	1,770	917	766	43	84
2011	67	1,840	1,020	818	44	80
2012	66	1,610	898	651	40	72
2013	59	1,550	884	690	45	78
2014	58	1,710	917	779	46	85
2015	69	2,170	1,280	1,110	51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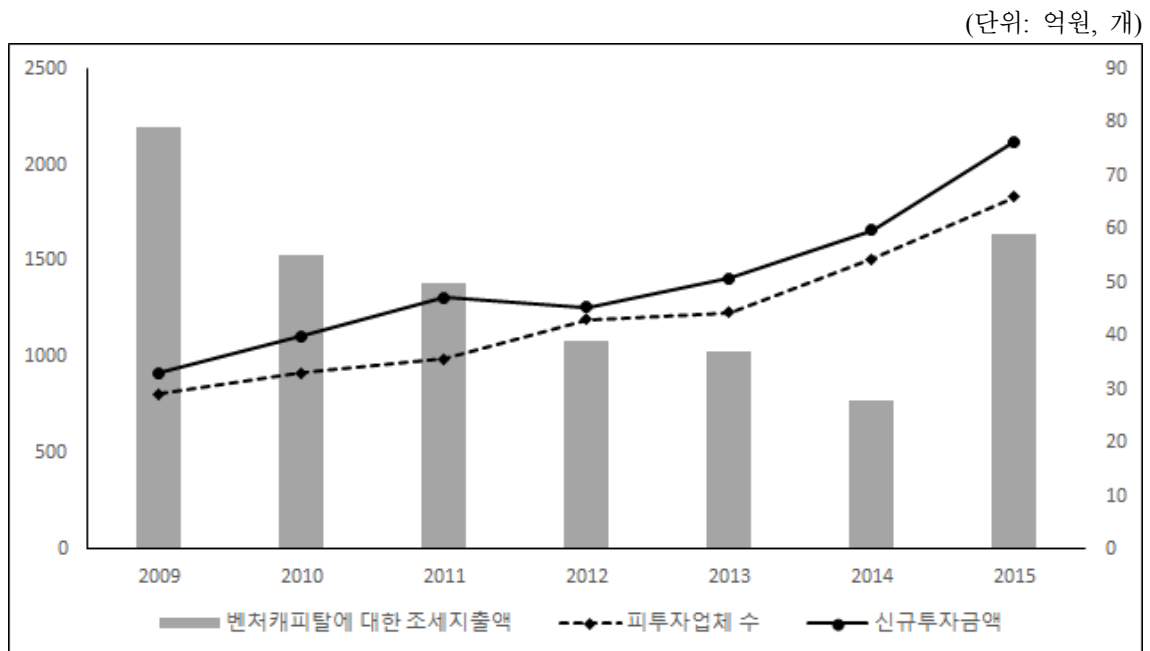
주: 창투사 실적만을 집계함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제공자료 가공

- 창투사의 총자산에서 투자실적자산(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투자)<sup>75)</sup>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창투사가 본연의 업무인 스타트업 기업의 자금 제공 역할에 보다 충실하고 있음을 의미함

**[분석결과]**

- [그림 VI-21]은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출액과 벤처캐피탈 신규투자금액의 변동 추이를 비교한 결과로,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출액은 2009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 2015년 회복세로 돌아선 반면 벤처캐피탈의 신규투자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상반된 움직임을 보임
- 벤처캐피탈의 신규투자금액은 분석기간 내내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출액은 2015년을 제외하고 둔화 또는 정체상태에 있음

[그림 VI-21]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출액과 벤처캐피탈 신규투자금액 추이



주: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출액=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제13조)+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 제117조)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제공자료 가공, 『조세지출예산서』, 2007-2016, 대한민국정부

75) 창투사는 고유 업무를 목적으로 투자한 자산을 ‘창업투자자산’의 계정과목으로 하여 투자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함. 창업투자자산’은 다시 ‘투자실적자산’과 ‘경영지원자산’으로 구분되며, 이때 ‘투자실적자산’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투자(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의 기업에 대한 투자)를 말함.

- [그림 VI-21]에서 보듯이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출액과 벤처캐피탈의 신규투자금액(또는 피투자업체 수)이 비례적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림 VI-19] 그리고 [그림 VI-20]에서 관찰된 벤처시장의 성장이 벤처캐피탈과 관련된 조세지원의 효과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음
  - 벤처캐피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로 투자이익을 회수하는 단계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액과 벤처캐피탈 신규투자금액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관찰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 다) IPO기업 중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비중

##### [연구방법]

- 코스닥시장에 신규등록한 기업 중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벤처캐피탈이 우수 벤처의 발굴 및 육성에 전문성을 가졌다는 의미로,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이 벤처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간접적 증거가 될 수 있음
  - IPO는 벤처캐피탈의 가장 대표적인 투자금 회수방안 중 하나임
  - <표 II-10> ‘벤처캐피탈 투자금 회수 현황’을 살펴보면 장외매각 및 상환을 통하여 회수하는 비율이 52%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IPO로 27%(2015년 기준)을 차지함

##### [분석결과]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중 코스닥시장에 신규등록한 기업은 모두 295개로, 이 중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은 174개로 59%를 차지함
  -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비중은 2013년까지 60~70%대를 유지하였으나, 2014년에 50% 아래로 떨어짐
  - 2014년과 2015년의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비중 감소는 스펙상장이 대폭 늘었기 때문으로, 스펙상장·재상장·이전상장을 제외하면 신규 IPO기업의 97% 이상이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임

<표 VI-24>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IPO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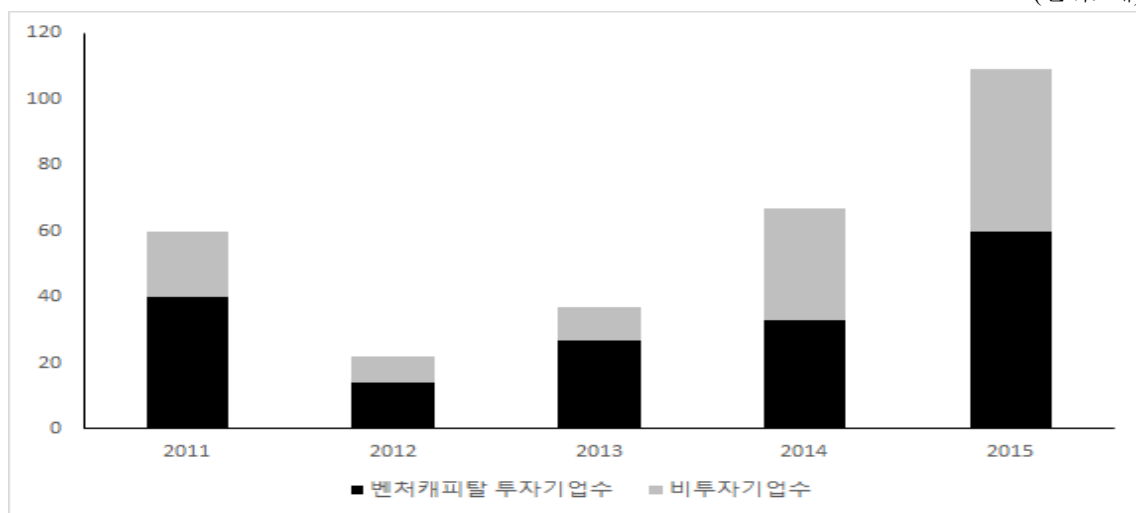
(단위: 포인트, 개,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코스닥지수	500.18	496.32	499.99	542.97	682.35
신규 IPO수(A)	60	22	37	67	109
벤처기업 IPO 수	35	17	23	26	4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수(B)	40	14	27	33	60
비중 (B/A)	67%	64%	73%	49%	55%

주: 신규 IPO 수는 펀드(투자회사) 제외, 재상장·이전상장·스펙상장 포함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6 KVCA YEARBOOK』, 2016.4.

[그림 VI-22] 신규 IPO기업 중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수

(단위: 개)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6 KVCA YEARBOOK』, 2016.4.

- 업종별로 살펴보면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의료 등 첨단산업 분야의 신규등록 기업에서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비중이 높았음
- 화학·소재 등 전통적인 산업 분야를 제외하고, 전 업종에서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VI-25>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신규 IPO기업의 업종별 분포(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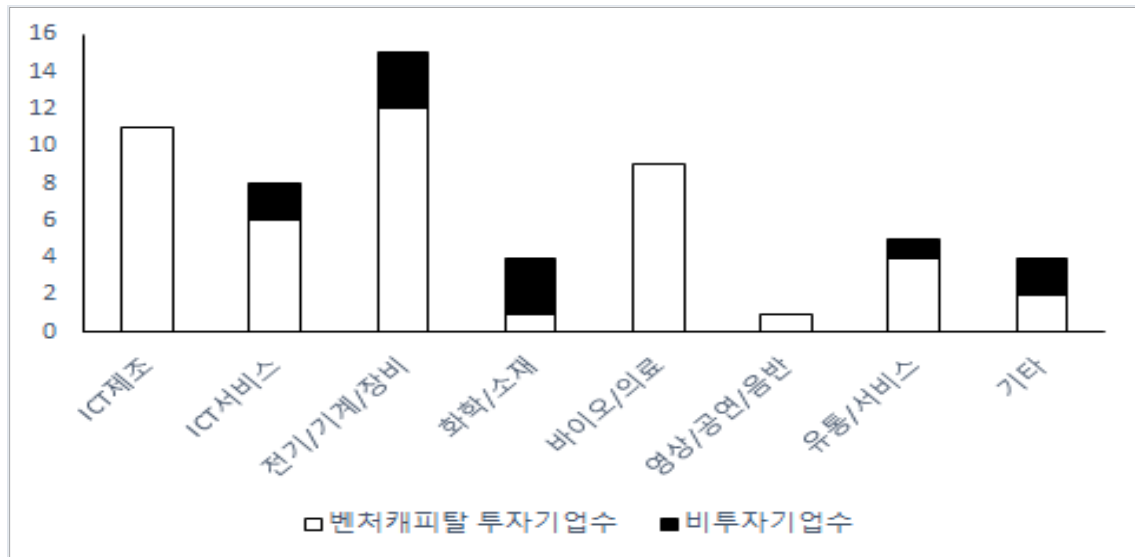
(단위: 개)

구분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수	벤처캐피탈 비투자기업수	합계
ICT 제조	11	0	11
ICT 서비스	6	2	8
전기/기계/장비	12	3	15
화학/소재	1	3	4
바이오/의료	9	0	9
영상/공연/음반	1	0	1
유통/서비스	4	1	5
기타	2	2	4
합계	46	11	57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6 KVCA YEARBOOK』, 2016.4.

[그림 VI-23]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신규 IPO기업의 업종별 분포(2015년 기준)

(단위: 개)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6 KVCA YEARBOOK』, 2016.4.

- 신규상장기업의 IPO까지 소요기간 역시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비투자기업에 비하여 짧은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기준으로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은 IPO까지 평균 12.9년이 소요된 반면 비투자기업은 15.4년이 걸려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IPO 소요기간이 2.5년이 더 짧았음

<표 VI-26> IPO 소요기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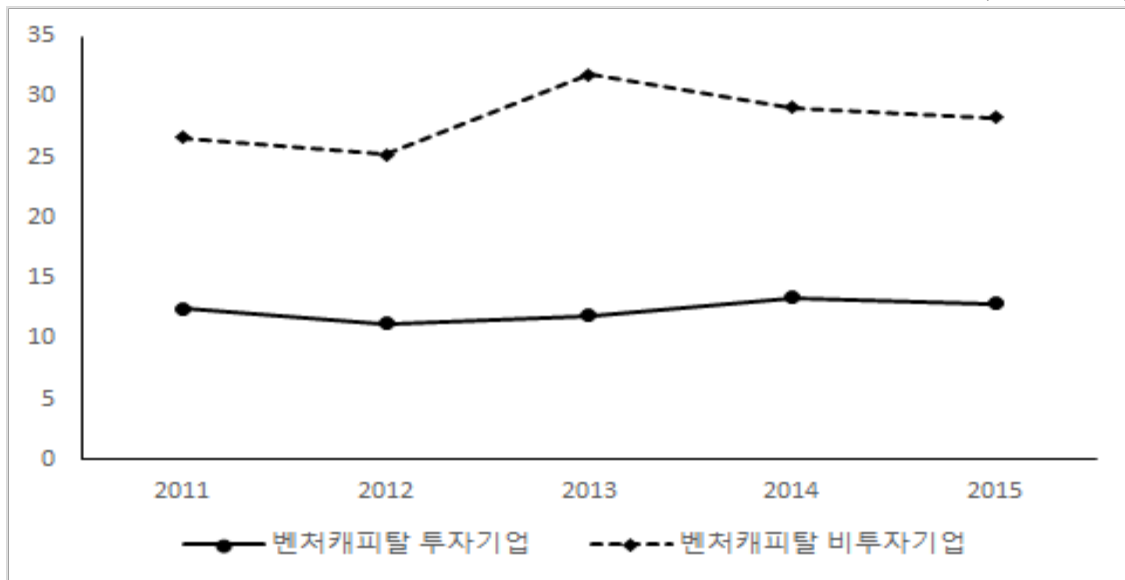
(단위: 개, 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업 수	기간	기업 수	기간	기업 수	기간	기업 수	기간	기업 수	기간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37	12.5	14	11.3	27	11.9	26	13.4	46	12.9
벤처캐피탈 비투자기업	19	14.1	7	13.9	8	19.9	14	15.7	11	15.4
전체	56	13.0	21	12.2	35	13.8	40	14.2	57	13.4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6 KVCA YEARBOOK』, 2016.4.

[그림 VI-24] IPO 소요기간 추이

(단위: 개, 년)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6 KVCA YEARBOOK』, 2016.4.

-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최근 5년간 코스닥시장에 신규등록한 기업 중 60%가량이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고,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비투자기업에 비하여 IPO 소요기간이 짧기 때문에 벤처캐피탈이 우수 벤처의 발굴과 육성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벤처캐피탈의 투자시점에 따라 결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벤처캐피탈 투자시점이 IPO 직전이면 이러한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기 어려울 것임

## 라)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 [연구방법]

-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 간 IPO 이후 경영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함
  -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비투자기업에 비하여 IPO 이후 탁월한 경영성과를 보인다면 벤처캐피탈이 자금제공 기능뿐 아니라 우수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경영지원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벤처캐피탈에 대한 간접적 세제지원이 벤처산업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중 코스닥시장에 신규등록한 기업을 대상으로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의 성과를 비교분석함
  -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명단이 외부에 공개되고 있지 않아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 구분에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함
  - 본 연구는 코스닥등록기업이 IPO 당시에 제출한 투자설명서에 기초해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해당 여부를 판별함
  
-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의 IPO 이후 경영성과는 t검정과 회귀분석, 두 가지 분석방법을 이용해 비교함
  - 첫째, PSM기법을 이용해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실험군)과 가장 유사한 성향점수를 가진 비투자기업(대조군)을 1:1로 매칭한 후,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의 IPO연도 경영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함
    - 매칭기준은 식 (1)을 원용함
  - 둘째, IPO기업을 대상으로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의 IPO 이후 경영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회귀분석을 실시함
  
- IPO 이후 경영성과는 성장성과 수익성, 재무건전성, 생산성의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함
  - 성장성은 고용증가율과 자산증가율, 매출증가율의 세 가지 지표를 이용해, 생산성은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재무건전성은 부채비율, 수익성은 세전·세후이익률로 측정함

<표 VI-27>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의 경영성과 비교분석 방법

구분	분석방법	표본
t-test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의 IPO 이후 성과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SM기법을 이용해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가장 유사한 성향점수를 가진 비투자기업을 1:1 매칭</li> <li>•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PSM기법을 사용해 매칭한 비투자기업에 비하여 IPO 이후에 더 좋은 성과를 내는지 독립표본 t-test 실시</li> </ul>	코스닥 신규등록기업
	(2) 복수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단일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IPO 이후 성과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수의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벤처기업이 단일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에 비하여 IPO 이후에 더 좋은 경영성과를 내는지 독립표본 t-test 실시</li> </ul>	코스닥 신규등록기업 중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회귀분석	(1) 벤처캐피탈 투자 여부가 IPO 이후 피투자기업의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비투자기업에 비하여 IPO 이후에 더 좋은 경영성과를 내는지 회귀분석 실시</li> </ul>	코스닥 신규등록기업
	(2) 벤처캐피탈지분율이 IPO 이후 피투자기업의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캐피탈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IPO 이후에 더 좋은 경영성과를 내는지 회귀분석 실시</li> </ul>	코스닥 신규등록기업 중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표본구성]

-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중 코스닥시장에 신규등록한 1,169개 기업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906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 비금융업
  - 재상장, 이전상장, 스펙상장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기업공개시 투자설명서를 공시하였을 것
  - NewKisValue에서 필요한 재무자료를 구할 수 있는 기업-연도

<표 VI-28>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 성과비교를 위한 표본추출과정

(단위: 개)

연도	신규등록 개수	요건 미충족 표본 제외	최종 표본
2000	174	62	112
2001	171	27	144
2002	153	35	118
2003	71	7	64
2004	52	6	46
2005	70	9	61
2006	56	4	52
2007	67	10	57
2008	38	3	35
2009	55	8	47
2010	76	28	48
2011	60	7	53
2012	22	4	18
2013	37	10	27
2014	67	43	24
합계	1,169	263	906

□ <표 VI-29>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5년간 코스닥시장에 신규등록한 기업 중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비중을 살펴본 결과로, 코스닥 신규등록기업 중 절반 정도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에 해당함

-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은 전체의 46%에 해당하는 419개로, 2개 이상의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는 기업은 25%임
- 투자설명서상 주식소유현황에 지분율 5% 이상 주요 주주가 주로 기록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비중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sup>76)</sup>
  - 지분율 5% 미만의 벤처캐피탈은 투자설명서상 주주내역에 누락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76)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벤처캐피탈이 우수 벤처기업을 잘 발굴·육성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업들이 IPO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IPO 직전 유리한 조건으로 벤처캐피탈 투자를 유인했기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표 VI-29>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 성과비교를 위한 표본구성

(단위: 개, %)

연도	IPO 기업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투자		다수의 벤처캐피탈 투자	
	업체수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2000	112	78	70	47	42	14	13
2001	144	119	83	57	40	22	15
2002	118	85	72	35	30	15	13
2003	64	53	83	34	53	20	31
2004	46	39	85	29	63	14	30
2005	61	55	90	34	56	20	33
2006	52	42	81	28	54	14	27
2007	57	50	88	37	65	25	44
2008	35	29	83	21	60	12	34
2009	47	37	79	23	49	15	32
2010	48	38	79	18	38	15	31
2011	53	43	81	22	42	18	34
2012	18	15	83	8	44	7	39
2013	27	20	74	15	56	10	37
2014	24	17	71	11	46	6	25
전체	906	720	79	419	46	227	25

주: 재상장이나 스펙상장, 투자설명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필요한 재무자료를 갖추지 못한 신규등록 기업은 표본에서 제외함

**[회귀분석 모형]**

-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의 IPO 이후 경영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회귀분석모형은 식 (2)로, 식 (2)의 종속변수는 IPO 1년 후, 2년 후, 3년 후 기업의 경영성과(성장성, 수익성, 생산성)임
  - 성장성은 매출증가율과 고용증가율로, 수익성은 세후이익률로, 생산성은 종업원 1인당 매출액으로 측정함
  - 관심변수는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에 해당하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 VC와 벤처캐피탈지분을 VCS로, 벤처캐피탈 투자가 피투자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VC 또는 VCS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 기타 통제변수는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 변수들로, 김영훈과 임소진(2015)을 참조하여 설정함

$$PERF_{it+1,t+2,t+3} = \alpha_0 + \alpha_1 VC_{it} (VCS_{it}) + \alpha_2 AGE_{it+1,t+2,t+3} + \alpha_3 SALES_{it+1,t+2,t+3} + \alpha_4 EMP_{it+1,t+2,t+3} + \alpha_5 ROA_{it+1,t+2,t+3} + \alpha_6 LEV_{it+1,t+2,t+3} + \sum IND + \sum YD + \epsilon_{it}$$

식 (2)

### 변수의 정의

#### 종속변수

- PERF<sub>t+1,t+2,t+3</sub> = 신규등록 1년 후, 2년 후, 3년 후 경영성과 (SG, EG, ROA, SPE로 측정)
- SG<sub>t+1,t+2,t+3</sub> = 신규등록 1년 후, 2년 후, 3년 후 매출증가율
- EG<sub>t+1,t+2,t+3</sub> = 신규등록 1년 후, 2년 후, 3년 후 고용증가율
- ROA<sub>t+1,t+2,t+3</sub> = 신규등록 1년 후, 2년 후, 3년 후 총자산이익률
- SPE<sub>t+1,t+2,t+3</sub> = 신규등록 1년 후, 2년 후, 3년 후 종업원 1인당 매출액

#### 관심변수

- VC<sub>t</sub> = 신규등록 당시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면 1, 아니면 0
- VCS<sub>t</sub> = 신규등록 당시 벤처캐피탈 투자지분을

#### 통제변수

- AGE<sub>t,t+1,t+2</sub> = 신규등록연도, 신규등록 1년 후, 2년 후 기업연령의 자연로그 값
- SALES<sub>t,t+1,t+2</sub> = 신규등록연도, 신규등록 1년 후, 2년 후 매출액의 자연로그 값
- EMP<sub>t,t+1,t+2</sub> = 신규등록연도, 신규등록 1년 후, 2년 후 종업원 수의 자연로그 값
- ROA<sub>t,t+1,t+2</sub> = 신규등록연도, 신규등록 1년 후, 2년 후 총자산이익률
- LEV<sub>t,t+1,t+2</sub> = 신규등록연도, 신규등록 1년 후, 2년 후 부채비율 (=총부채/총자산)
- IND = 업종더미
- YD = 연도더미

### [분석결과: t-test]

□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vs. 비투자기업) <표 VI-30>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의 IPO 이후 기업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t-test를 실시한 결과로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성장성은 높은 반면 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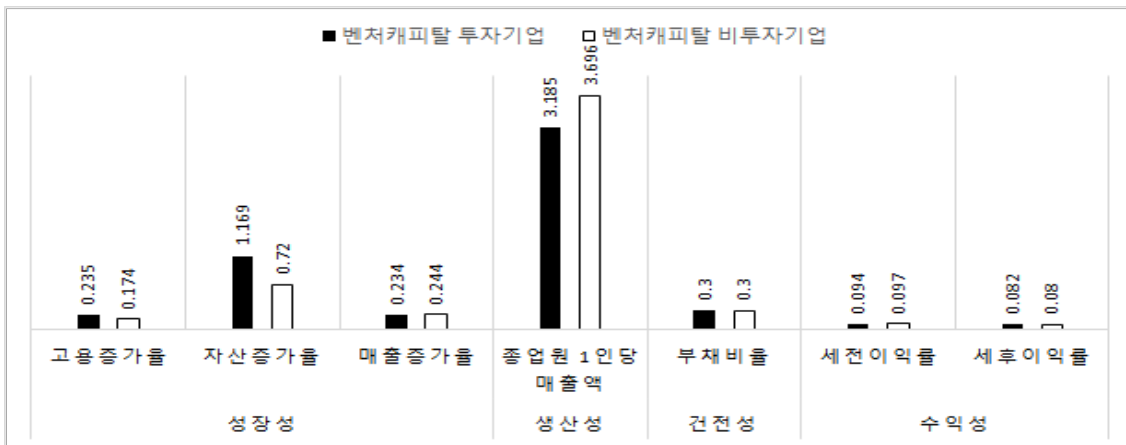
-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고용증가율은 23.5%로, 비투자기업의 고용증가율 17.4%에 비하여 6.1%p가 더 높고, 이러한 결과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함
-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의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각각 3.185억원과 3.696억원으로,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비투자기업에 비하여 500만원가량 낮음

<표 VI-30>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지표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N=324)	벤처캐피탈 비투자기업 (N=324)	평균차이 (t-test)
성장성	고용증가율	0.235	0.174	0.061**
	자산증가율	1.169	0.720	0.449
	매출증가율	0.234	0.244	-0.009
생산성	종업원 1인당 매출액	3.185	3.696	-0.512**
건전성	부채비율	0.300	0.300	0.000
수익성	세전이익률	0.094	0.097	-0.003
	세후이익률	0.082	0.080	0.002

주: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PSM을 통해 추출한 대응기업간 경영성과 비교결과임  
 2) 극단치로 인한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하위 1%를 초과하는 값은 1% 또는 99%에 해당하는 값으로 조정하는 winsorizing을 실시함  
 3)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그림 VI-25]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 (복수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vs. 단일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표 VI-31>은 2개 이상의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코스닥등록기업과 단일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간 IPO 이후 기업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t-test를 실시한 결과로, 두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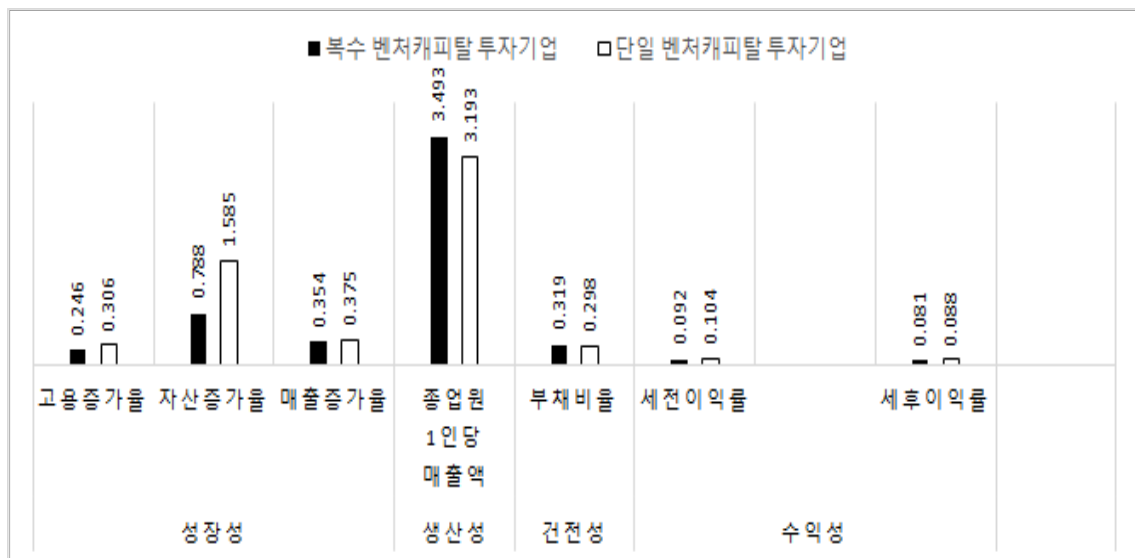
- 이러한 분석결과는 복수의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는다고 해서 그 기업의 경영성과가 우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함

〈표 VI-31〉 복수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단일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지표		복수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N=192)	단일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N=192)	평균차이 (t-test)
성장성	고용증가율	0.246	0.306	-0.060
	자산증가율	0.788	1.585	-0.797
	매출증가율	0.354	0.375	-0.021
생산성	종업원 1인당 매출액	3.493	3.193	0.300
건전성	부채비율	0.319	0.298	0.021
수익성	세전이익률	0.092	0.104	-0.012
	세후이익률	0.081	0.088	-0.006

- 주: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PSM을 통해 추출한 대응기업 간 경영성과 비교결과임  
 2) 극단치로 인한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하위 1%를 초과하는 값은 1% 또는 99%에 해당하는 값으로 조정하는 winsorizing을 실시함  
 3)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그림 VI-26] 복수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단일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분석결과: 회귀분석]

- (벤처캐피탈 투자와 기업의 성장성) <표 VI-32>는 벤처캐피탈 투자가 IPO 이후 피투자기업의 성장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회귀분석 결과로, 매출증가율과 고용증가율에 있어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 모형 1, 2, 3은 IPO 1년 후, 2년 후, 그리고 3년 후 매출증가율(SG)을, 모형 4, 5, 6은 IPO 1년 후, 2년 후, 그리고 3년 후 고용증가율(EG)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임
  - 분석결과 VC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지 못해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의 IPO 이후 성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VI-32> 벤처캐피탈 투자가 IPO 이후 피투자기업의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

변수명	종속변수 = 매출증가율(SG)			종속변수 = 고용증가율(EG)		
	모형 1 (SG <sub>t+1</sub> )	모형 2 (SG <sub>t+2</sub> )	모형 3 (SG <sub>t+3</sub> )	모형 4 (EG <sub>t+1</sub> )	모형 5 (EG <sub>t+2</sub> )	모형 6 (EG <sub>t+3</sub> )
상수항	1.905*** (4.272)	3.506*** (7.077)	6.817*** (9.278)	0.030 (0.097)	0.276 (0.889)	0.192 (0.456)
VC <sub>t</sub>	0.008 (0.280)	-0.000 (-0.001)	0.041 (0.798)	0.005 (0.284)	-0.023 (-1.133)	0.023 (0.784)
AGE <sub>t,t+1,t+2</sub>	0.006 (0.251)	-0.077** (-2.306)	-0.000 (-0.002)	-0.032* (-1.770)	-0.041* (-1.952)	-0.026 (-0.778)
SALES <sub>t,t+1,t+2</sub>	-0.091*** (-4.267)	-0.160*** (-6.834)	-0.310*** (-9.044)	0.014 (0.937)	0.001 (0.099)	0.012 (0.615)
EMPLOY <sub>t,t+1,t+2</sub>	0.057** (2.533)	0.145*** (5.350)	0.149*** (3.563)	-0.065*** (-4.074)	-0.033* (-1.932)	-0.103*** (-4.291)
ROA <sub>t,t+1,t+2</sub>	0.455** (2.294)	0.327*** (3.151)	0.065 (0.543)	0.956*** (6.824)	0.369*** (5.674)	0.225*** (3.315)
LEV <sub>t,t+1,t+2</sub>	0.229** (2.464)	0.099 (1.094)	0.045 (0.339)	0.035 (0.538)	0.021 (0.377)	0.033 (0.433)
업종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N	904	865	814	900	853	806
Adj. R2	0.029	0.088	0.107	0.077	0.055	0.096
F-value	1.840***	3.677***	4.264***	3.337***	2.607***	3.850***

주: 1) 변수의 정의는 식 (2) 참조

2)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 (벤처캐피탈 투자와 기업의 수익성) <표 VI-33>은 벤처캐피탈 투자가 IPO 이후 피투자기업의 수익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회귀분석 결과로,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비투자기업에 비하여 IPO 1년 후 총자산이익률이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모형 1, 2, 3은 각각 IPO 1년, 2년, 3년 후 총자산이익률(ROA)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로, 모형 1에서 벤처캐피탈 투자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 VC의 회귀계수가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냄
- 이러한 분석결과는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비투자기업과 비교했을 때, IPO 직후 수익성이 유의하게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함

<표 VI-33> 벤처캐피탈 투자가 IPO 이후 피투자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변수명	모형 1 (종속변수=ROAt+1)	모형 2 (종속변수=ROAt+2)	모형 3 (종속변수=ROAt+3)
상수항	-0.211 (-1.106)	-0.636** (-2.402)	-0.370 (-0.938)
VC <sub>t</sub>	-0.023** (-2.028)	0.010 (0.599)	-0.012 (-0.418)
AGE <sub>t,t+1,t+2</sub>	0.042*** (3.823)	0.057*** (3.196)	0.054* (1.724)
SALES <sub>t,t+1,t+2</sub>	-0.002 (-0.193)	0.012 (0.935)	-0.003 (-0.165)
EMPLOY <sub>t,t+1,t+2</sub>	0.017* (1.788)	0.043*** (2.943)	0.060*** (2.687)
ROA <sub>t,t+1,t+2</sub>	1.177*** (13.870)	0.575*** (10.363)	0.522*** (8.178)
LEV <sub>t,t+1,t+2</sub>	-0.040 (-0.998)	-0.177*** (-3.663)	-0.277*** (-3.855)
업종더미	포함	포함	포함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905	865	816
Adj. R2	0.294	0.340	0.247
F-value	12.767***	15.344***	9.924***

주: 1) 변수의 정의는 식 (2) 참조

2)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 (벤처캐피탈 투자와 기업의 생산성) <표 VI-34>는 벤처캐피탈 투자가 IPO 이후 피투자기업의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회귀분석 결과로, 두 그룹 간 종업원 1인당 매출액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모형 1, 2, 3은 각각 IPO 1년, 2년, 3년 후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로, 벤처캐피탈 투자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 VC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VI-34> 벤처캐피탈 투자가 IPO 이후 피투자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변수명	모형 1 (종속변수=SPE <sub>t+1</sub> )	모형 2 (종속변수=SPE <sub>t+2</sub> )	모형 3 (종속변수=SPE <sub>t+3</sub> )
상수항	-68.178*** (-27.720)	-62.804*** (-26.048)	-61.093*** (-18.544)
VC <sub>t</sub>	-0.123 (-0.823)	-0.040 (-0.251)	0.172 (0.746)
AGE <sub>t,t+1,t+2</sub>	0.062 (0.444)	-0.185 (-1.136)	-0.028 (-0.106)
SALES <sub>t,t+1,t+2</sub>	3.713*** (31.605)	3.446*** (30.166)	3.398*** (22.111)
EMPLOY <sub>t,t+1,t+2</sub>	-3.678*** (-29.403)	-3.371*** (-25.584)	-3.581*** (-19.190)
ROA <sub>t,t+1,t+2</sub>	-3.307*** (-3.002)	-0.882* (-1.747)	-0.021 (-0.040)
LEV <sub>t,t+1,t+2</sub>	-0.478 (-0.929)	-0.274 (-0.622)	0.009 (0.015)
업종더미	포함	포함	포함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899	853	804
Adj. R2	0.626	0.598	0.441
F-value	48.054***	41.895***	22.153***

주: 1) 변수의 정의는 식 (2) 참조

2)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 (벤처캐피탈지분율과 피투자기업의 경영성과) <표 VI-35>~<표 VI-37>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만을 따로 분리해, 벤처캐피탈지분율이 높은 IPO기업이 IPO 이후에 더 나은 경영성과를 내는지 살펴본 회귀분석 결과로, 대체로 벤처캐피탈 투자지분율이 IPO 이후 피투자기업의 성장성·수익성·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일한 예외로, <표 VI-35>의 모형 2에서 벤처캐피탈지분율이 높을수록 IPO 2년 후 매출증가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VI-35> 벤처캐피탈지분율이 IPO 이후 피투자기업의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

변수명	종속변수 = 매출증가율(SG)			종속변수 = 고용증가율(EG)		
	모형 1 (SGt+1)	모형 2 (SGt+2)	모형 3 (SGt+3)	모형 4 (EGt+1)	모형 5 (EGt+2)	모형 6 (EGt+3)
상수항	3.633*** (4.486)	4.893*** (5.698)	7.843*** (6.391)	-0.286 (-0.518)	0.985* (1.928)	-0.287 (-0.386)
VCS <sub>t</sub>	-0.145 (-0.649)	0.484* (1.823)	-0.257 (-0.620)	0.064 (0.424)	0.191 (1.214)	0.366 (1.441)
통제변수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업종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N	418	398	372	414	389	368
Adj. R2	0.054	0.124	0.138	0.050	0.083	0.140
F-value	1.794***	2.945***	3.124***	1.728**	2.216***	3.141***

주: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만을 대상으로 회귀분석 실시  
 2) 변수의 정의는 식 (2) 참조  
 3)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표 VI-36> 벤처캐피탈지분율이 IPO 이후 피투자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변수명	모형 1 (종속변수=ROAt+1)	모형 2 (종속변수=ROAt+2)	모형 3 (종속변수=ROAt+3)
상수항	0.325 (0.943)	-0.548 (-1.285)	-0.794 (-1.150)
VCSt	-0.049 (-0.517)	0.136 (1.027)	0.036 (0.152)
통제변수	포함	포함	포함
업종더미	포함	포함	포함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418	398	373
Adj. R2	0.295	0.355	0.202
F-value	6.802***	8.522***	4.372***

주: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만을 대상으로 회귀분석 실시  
 2) 변수의 정의는 식 (2) 참조  
 3)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표 VI-37> 벤처캐피탈지분율이 IPO 이후 피투자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변수명	모형 1 (종속변수=SPEt+1)	모형 2 (종속변수=SPEt+2)	모형 3 (종속변수=SPEt+3)
상수항	-57.051*** (-14.390)	-55.154*** (-14.686)	-49.303*** (-8.707)
VCSt	0.086 (0.079)	0.648 (0.560)	-0.251 (-0.131)
통제변수	포함	포함	포함
업종더미	포함	포함	포함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414	389	367
Adj. R2	0.556	0.515	0.338
F-value	18.216***	15.184***	7.663***

주: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만을 대상으로 회귀분석 실시  
 2) 변수의 정의는 식 (2) 참조  
 3)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은 비투자기업에 비하여 성장성 측면에서 다소 우위에 있지만, 생산성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비교열위에 있거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복수의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벤처캐피탈 지분율이 높은 기업이 IPO 이후에 더 좋은 경영성적을 내는 것을 아니었음

<표 VI-38>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의 경영성과 비교결과 요약

지표		t-test <sup>1)</sup>	회귀분석 <sup>2)</sup>		
			IPO 1년 후	IPO 2년 후	IPO 3년 후
성장성	고용증가율	우위	무차별	무차별	무차별
	매출증가율	무차별	무차별	무차별	무차별
생산성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열위	무차별	무차별	무차별
건전성	부채비율	무차별	n.a.	n.a.	n.a.
수익성	세전이익률	무차별	n.a.	n.a.	n.a.
	세후이익률	무차별	열위	무차별	무차별

- 주: 1) 창업벤처기업과 PSM를 통해 추출한 대응기업 간 경영성적을 비교한 결과로, <표 VI-29>를 요약한 결과임  
 2) <표 VI-30> ~ <표 VI-32>의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임  
 3)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입장에서 우위, 무차별, 열위를 정리한 결과임

**[분석결과: 업종별 효과]**

- <표 VI-39>와 <표 VI-40>은 벤처캐피탈 투자가 IPO 이후 피투자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이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회귀분석 결과임
  - <표 VI-39>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표 VI-40>은 ICT 업종과 기타 업종으로 구분해 업종별 효과를 살펴봄
  - 표현의 간결성을 위해 요약된 결과표만 보고함
- 전체 표본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서비스업은 VC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 간 IPO 이후 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 반면 제조업은 VC투자기업이 IPO 직후에는 비투자기업에 비해 수익성이 낮지만 그 다음 연도에는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성장성과 생산성에 있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VI-39> 업종별 효과 비교(제조업 vs. 서비스업)

지표		제조업		서비스업	
		IPO 1년 후	IPO 2년 후	IPO 1년 후	IPO 2년 후
성장성	고용증가율	0.009	0.011	-0.005	-0.072
	매출증가율	0.034	0.036	-0.013	-0.067
생산성	종업원 1인당 매출액	-0.112	-0.205	-0.031	0.160
수익성	세후이익률	-0.023**	0.026*	-0.032	-0.002

주: 1) 전체 표본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눈 후, 벤처캐피탈 투자가 IPO 이후 피투자기업의 성장성, 생산성,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요약한 표임  
 2) 식 (2)에서 VC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값을 가지는지 표시함

- 전체 표본을 ICT기업과 그 외 기업으로 나누어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ICT기업은 VC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 간 IPO 이후 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 반면 ICT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VC투자기업이 IPO 직후에 비투자기업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성장성과 생산성에 있어서는 ICT기업과 그 외 기업,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VI-40> 업종별 효과 비교(ICT기업 vs. 비ICT기업)

지표		ICT		비ICT기업	
		IPO 1년 후	IPO 2년 후	IPO 1년 후	IPO 2년 후
성장성	고용증가율	0.043	-0.067	0.007	-0.014
	매출증가율	-0.008	-0.003	0.014	0.006
생산성	종업원 1인당 매출액	0.348	0.376	-0.180	-0.099
수익성	세후이익률	0.009	0.010	-0.025**	0.009

주: 1) 전체 표본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눈 후, 벤처캐피탈 투자가 IPO 이후 피투자기업의 성장성, 생산성,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요약한 표임  
 2) 식 (2)에서 VC의 회귀계수 값과 통계적 유의성을 표시함. \*, \*\*, \*\*\*는 각각 10%, 5%, 그리고 1% 수준에서 유의함.

-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VC투자기업의 수익성이 비투자기업에 비해 낮은 현상은 제조업, 그리고 ICT 이외의 업종에서만 관찰됨
  - 이러한 분석결과는 벤처캐피탈의 투자대상 선별능력이 ICT 이외의 업종 그리고 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시사함

### 3) 벤처캐피탈 이외의 기타 벤처투자자와 관련된 조지원제도의 효과성 분석

- 벤처캐피탈 이외의 기타 벤처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 비과세,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일정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로서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2017년부터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 펀드에 출자 시 출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 정부는 민간투자의 벤처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인투자자의 소득공제율을 매년 인상해 오고 있음
  - 2011년 10%에서 출발해 4차례 소득공제율 인상이 있었으며, 현재는 투자금액 1,500만원 미만이면 투자액의 100%를 소득공제 가능함
  - 2014년부터 공제 가능한 투자액의 범위가 벤처기업뿐 아니라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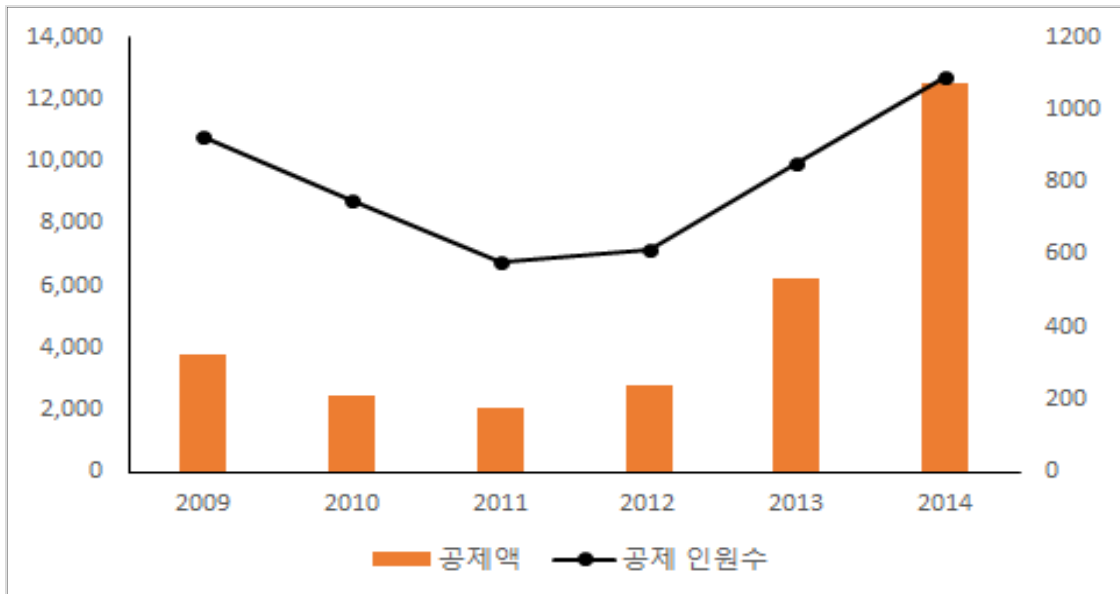
〈표 VI-41〉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개정연혁

구분	소득공제액						공제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	투자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의 50% - 2012~13년: 40% - 2009~11년: 30%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	투자금액	2011	2012	2013	2014	2015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	-1,500	10%	20%	30%	50%	100%	
	1,500~5,000					50%	
	5,000-					30%	30%

- 2009년 이후 감소세에 있던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자는 소득공제율 인상이 시작된 2012년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
  - 2009년 925명이던 공제신청자가 2011년에는 절반 수준인 578명까지 떨어짐
  - 그러나 소득공제율 인상과 함께 공제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에는 종전 수준을 뛰어넘는 1,090명까지 증가함
  - 소득공제액 역시 2009년 37억원에서 2011년에는 21억원까지 감소하였다가 2014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125억원을 기록함

[그림 VI-27]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연도별 추이

(단위: 명, 백만원)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자 수는 총급여 5천만원~1억원 구간의 근로소득자가 가장 많았으나, 소득공제액은 총급여 1억원~3억원 구간의 근로소득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2014년 기준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전체 신청자 수(1,090명)의 약 41%에 해당하는 447명이 총급여 5천만원~1억원 구간에 속한 것으로 분석됨
  - 2014년 기준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액’은 총 125억원으로, 이 중 48%에 해당하는 61억원이 총급여 1억원~3억원 구간의 근로소득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남

〈표 VI-42〉 과세대상근로소득(총급여) 규모별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금액

(단위: 명, 백만원)

과세대상근로소득 (총급여)규모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 천만원 이하	0	0	0	0	0	0	2	0	1	0	0	0
3 천만원 이하	147	94	106	82	64	55	71	54	95	135	60	58
5 천만원 이하	215	217	134	178	90	98	131	173	152	404	198	426
8 천만원 이하	283	647	263	509	207	456	202	583	240	1,033	309	2,300
1 억원 이하	87	393	89	461	84	323	82	462	113	967	138	1,425
3 억원 이하	168	1,430	145	1,063	113	819	115	1,259	219	2,530	337	6,108
5 억원 이하	9	369	10	149	11	85	6	111	14	441	26	834
10 억원 이하	8	206	5	33	8	234	3	141	14	703	19	906
10 억원 초과	8	420	0	0	1	20	0	0	1	18	3	462
합계	925	3,776	752	2,475	578	2,090	612	2,783	849	6,231	1,090	12,519

주: 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의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금액 집계자료임  
 2) 과세미달자 제외  
 자료: 『국세통계연보』, 2010~2015, 국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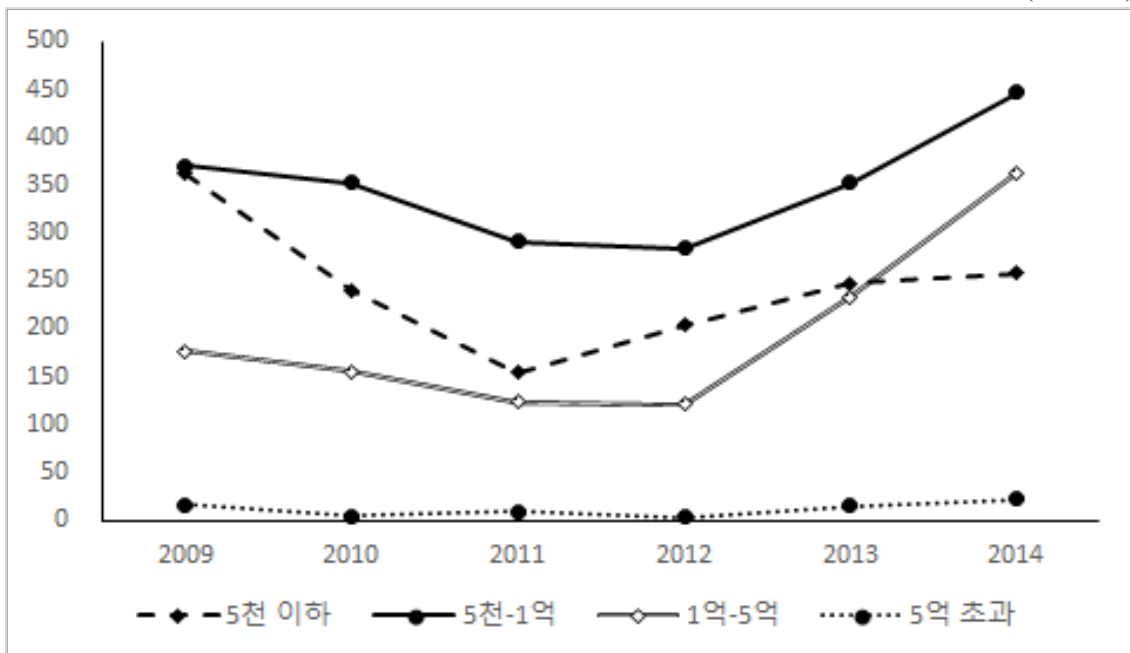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율’ 인상 후 모든 소득구간에서 공제신청자 수가 고르게 증가하였으나, 특히 총급여 1억~3억원 구간의 근로소득자층이 소득공제율 인상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얻은 것으로 추정됨

○ 총급여 1억~3억원 구간의 신청자 수는 2011년 113명에서 2014년에는 337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함

○ 총급여 1억~3억원 구간의 소득공제액은 이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여 2011년 8억 2천만원에서 2014년에는 61억원으로, 3년간 무려 7.45배가 증가함

[그림 VI-28] 총급여 규모별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자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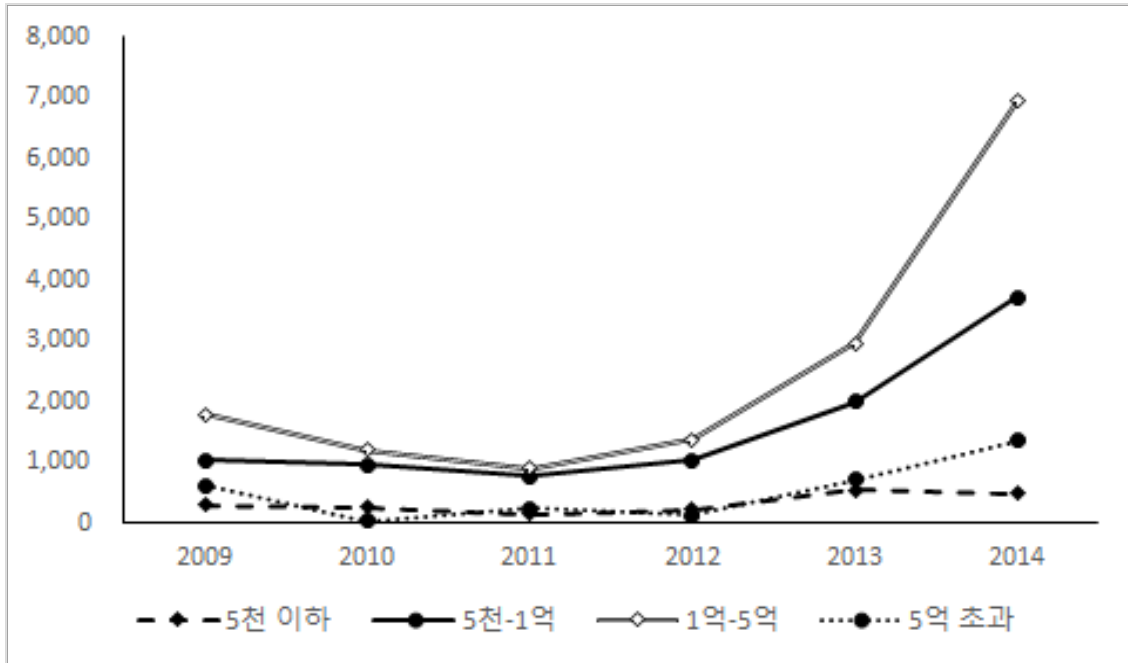


주: 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의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금액 집계자료임  
2) 과세미달자 제외

자료: 『국세통계연보』, 2010~2015, 국세청.

[그림 VI-29] 총급여 규모별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금액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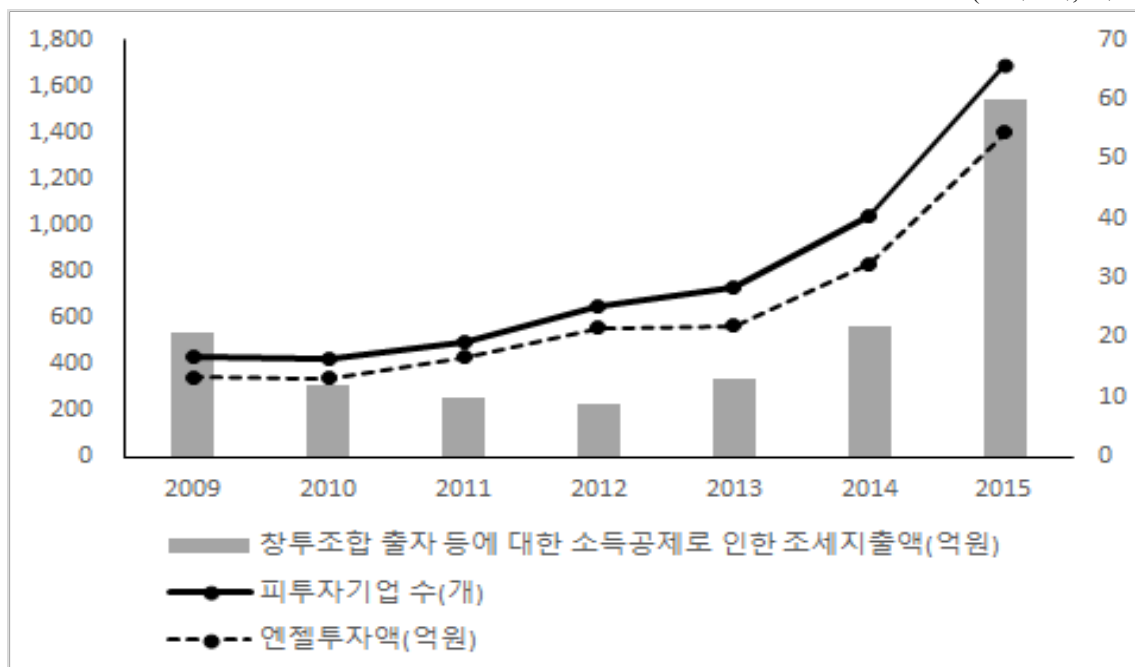


주: 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의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금액 집계자료임  
 2) 과세미달자 제외  
 자료: 『국세통계연보』, 2010~2015, 국세청.

- [그림 VI-30]은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액’과 엔젤투자액의 추이로, 2010년 이후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액’과 엔젤투자액이 대체로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2015년 엔젤투자액(소득공제 신청 기준)은 1,399억원으로 전년 대비 67.7%가 증가함
  -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세제개편으로 소득공제율이 전년에 비하여 크게 확대되었고, 벤처산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된 것이 2015년의 신규엔젤투자 증가를 이끈 것으로 평가됨
    - 2014년 1월 「조특법」 개정으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투자금액 5천만원 이하 50%, 투자금액 5천만원 초과 30%로 확대됨
    - 2014년 12월 「조특법」 개정으로 투자금액 1,500만원 이하의 소득공제율이 100%로 확대됨

[그림 VI-30] 창투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엔젤투자액

(단위: 개, 억원)



-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율’ 인상은 엔젤투자 증가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소득공제율 인상 후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
  - 아울러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액’과 엔젤투자액이 대체로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소득공제율 인상 후 엔젤투자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투자액에 따른 소득공제율 차등적용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율 인상의 효과가 일부 고소득 근로자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벤처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중 최근 신설된 규정으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음
  - 본 조세특례는 2014년 1월 1일 법 개정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거래를 촉진하여 벤처 창업자 등이 투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함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4년도 신설된 벤처지원세제 중 유일하게 지원 실적이 발생한 항목임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이연,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등도 2014년 1월 1일 신설되었으나, 지원 실적이 전무함
  
- 2015년도에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3건이 발생해, 총 23억원의 조세지출이 있었음
  - 기술혁신형 주식을 취득한 3개 기업 중 1개 기업은 총자산이 1조원이 넘는 대기업이었고, 나머지 2개 기업은 총자산 500억~1,000억원 사이의 기업이었음
  - 23억원 중 82%에 해당하는 19억원이 총자산 1조원 초과 대기업에 귀착되었고, 나머지 2개 기업에 4억의 혜택이 돌아감
  - 3개 기업 중 2개 기업이 동 공제혜택으로 세금이 각각 49%와 25%가 줄어 주식취득기업에 상당한 세부담 절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 발생건수가 3건에 불과해 정확한 정책효과 판단은 어렵지만, 동 조세특례가 과세이연 형태의 다른 지원규정들과 달리 기업에 실질적 감면 효과를 가지므로 기업 선호도가 높고, 정책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2017년부터 시행 예정인 법인의 벤처기업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즉각적 효과가 기대됨

### 3. 벤처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

- 벤처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조세지원항목은 총 7가지로, 대부분 항목의 조세지원 실적이 전무하거나 미미한 수준임
  -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109억원(2015년 기준)으로 가장 많지만, 이는 「조특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조세지출액이 합산되어 공시되기 때문이며 실제 지원실적은 1억원 미만으로 미미함

〈표 VI-43〉 벤처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조세지원 현황

(단위: 억원)

규정	13	14	15	일몰
중소기업 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조특법 §31, §32) <sup>1)2)</sup>	205	206	109	없음
벤처기업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7의 3)	-	-	-	종료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이연(조특법 §46의 2)	0	0	0	없음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6의 7)		신설	0.02	2018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이연(조특법 §46의 3) <sup>1)</sup>	0	0	0	없음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이연(조특법 §46의 8)	-	신설	0	2018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2의 3) <sup>2)</sup>	-	신설	0 <sup>3)</sup>	2018

주: 1) 벤처기업뿐 아니라 비벤처 중소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항들임

2) 조세지출예산서에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실적과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실적이 합산되어 기록되어 있음. 이 중 대부분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서 발생한 것임.

3) 조세지출예산서에는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실적이 합산되어 기록되어 있음. 2015년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23억 있었고,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은 없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13~2016.

- 위 표에서 보듯이 벤처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조세지원제도는 항목 수는 많지만, 조세지출 실적이 미미해 사실상 효과성 분석이 의미가 없음
  - 조세지원 실적이 없거나 몇 건 되지 않아 통계적 분석이 불가능함
  - 지원 실적이 미미한 이유를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조특법 §31)]**

- 「조특법」 제31조는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분류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상 모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적용되는 일반규정으로, 벤처기업에 특화된 규정은 아님

- 조세지출 실적이 「조특법」 제32조와 합산 집계되어 그 규모가 연 200억원 이상으로 나타난 것일 뿐 대부분의 지원실적이 「조특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서 발생한 것임
  -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지원실적은 연 1억원 미만으로 추산됨
- 「조특법」 제31조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사업의 동일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적격합병 규정과 차별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동 조세특례는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받을 수 있는바, 사실상 흡수합병과 큰 차이가 없음

**[벤처기업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7의 3)]**

- 동 조세특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을 합병한 경우에 적용되었던 조항으로, 현재는 일몰 종료된 규정임
- 2010년 7월 1일 이전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 주식을 10% 이상 받아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었음
  - 벤처기업은 규모가 작아 일반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 따라서 「조특법」 제47조의 3을 신설해 벤처기업에는 10% 대신 3%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였음
-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합병법인 주식을 10% 이상 받아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하다’는 요건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조특법」 제47조 3이 그 존재 의미를 잃음
- 관련된 법인세법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특례를 규정한 「조특법」 제47조의 3 역시 일몰 종료된 것임

**[벤처기업 및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6의 2, §46의 3)]**

- 「조특법」 제46조의 2 및 제46조의 3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 중소기업 간 주식교환에 적용되었던 규정으로 현재는 일몰 종료된 규정임

- 아울러 「조특법」 제46조의 3은 아직 법령이 남아 있으나,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벤처기업에 특화된 규정은 아님
- 「조특법」 제46조의 2, 그리고 제46조의 3은 사실상 지원 실적이 없어 2009년 일몰기한 종료와 함께 사라졌으며, 2014년 1월 1일 법 개정시 「조특법」 제46조의 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생겨났지만 여전히 지원실적이 전무한 실정임
  - 「조특법」 제46조의 2, 제46조의 3의 수혜대상은 벤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제휴상대법인의 주주임
  - 반면 「조특법」 제46조의 7은 동 조세특례의 수혜대상을 전략적 제휴를 맺는 ‘벤처기업의 주주’로 특정하고 있어 두 그룹 간 차이가 있음
- 그동안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와 관련해 세 차례나 조세특례항목이 개설되었으나, 조세지원 실적이 전무해 전략적 제휴와 관련한 조세지원은 사실상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이들 조항의 실효성이 부족한 이유는 실무에서 이러한 유형의 전략적 제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법인세법상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됨
  - 주식의 포괄적 이전 또는 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별다른 요건 없이 조세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복잡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면서까지 이들 조항을 활용할 이유가 부족함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이연(조특법 §46의 8)]**

- 본 조의 과세특례는 2014년 1월 1일 법 개정시 벤처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2014년 1월 1일 이후 매각대상기업의 보유주식을 매각한 후 재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함
  - 2015년 12월 15일 법 개정시 본 조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2014년 신설되었으나, 그 이후 지원 실적이 전무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 본 조는 재투자의 기한, 대상 그리고 방법 등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 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재투자자로 취득한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에는 가산세부담이 발생함
  - 혜택에 비해 엄격한 감면요건이 동 조세특례의 감면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조가 조세감면이 아닌 과세이연 규정임을 감안하였을 때, 불확실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재투자를 하면서 3년간 의무 보유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음

#### 4. 벤처기업 임직원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

-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활용도를 제고하여 벤처기업을 지원하고자 조특법 제16조의 2와 제16조의 3, 두 가지 특례규정을 운영 중에 있음
  -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5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하며(「조특법」 제16조의 2), 근로(기타)소득과 양도소득 중 납세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과세 가능함(조특법 제16조의 3)
- 벤처기업 임직원에 대한 두 가지 과세특례의 지난 3년간 조세지원 실적은 전무함
  - 「조특법」 제16조의 2는 2013년 8월 13일 이후 부여받은 스톡옵션부터, 「조특법」 제16조의 3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부여받은 스톡옵션부터 적용됨
  - 일반적으로 스톡옵션 행사조건으로 의무근로조항이 따라붙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까지 본 조세특례의 적용대상 스톡옵션의 행사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지원 실적이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벤처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연구개발자에 대한 조세특례로, 「조특법」 제16조의 4 ‘산업재산권 현물 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있음

- 본 조의 과세특례는 2015년 12월 15일 법 개정시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됨
- 동 신설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아직까지 지원 실적이 집계되지 않아 그 효과를 살펴볼 수가 없었음

<표 VI-44> 벤처기업의 임직원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조세지원 현황

(단위: 억원)

규정	13	14	15	일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특법 §16의 2)	신설	0	0	201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6의 3)	-	신설	0	없음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6의 4)	-	-	신설	없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13~2016.

## 5. 소결

- 본 연구는 벤처기업과 벤처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나누어 그 효과성을 살펴봄
  - 이 중 벤처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벤처캐피탈’과 ‘기타 벤처투자자’로 나누어 그 효과를 분석함
    - 벤처캐피탈 이외의 기타 벤처투자자는 투자시점에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 공제받기 때문에 세제지원액이 벤처투자액과 연계되어 결정되는 특징이 있음

### [벤처기업과 관련된 세제지원 효과]

- 벤처기업과 관련된 세제지원의 효과는 창업벤처기업이 PSM기법을 이용해 선정한 대응기업과 비교하였을 때, 유효세율이 낮고, 경영성과가 우수한지로 평가함
  - 외감법인을 ① 창업벤처기업 ② 창업중소기업 ③ 일반 벤처기업 ④ 비벤처 일반중소기업 ⑤ 대기업의 5개 기업그룹으로 나눈 후, 창업벤처기업이 다른 4개

그룹보다 유효세율이 낮고, 경영성과가 우수한지 검증함

- 선택편의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창업벤처기업과 유사한 성향을 가진 비조세지원기업을 1:1 매칭하는 PSM기법을 사용함

□ 벤처기업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분석 결과, 세제지원이 창업벤처기업의 세부담 완화에는 효과가 있지만, 이것이 창업벤처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남

□ *t*-test 결과 창업벤처기업은 벤처 인증을 받지 못한 창업중소기업이나 창업 후 3년이 경과한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비하여 유효세율이 유의하게 낮았음

- 이러한 분석결과는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창업벤처기업의 세부담 완화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함

□ 한편 창업벤처기업은 PSM기법을 이용해 1:1 매칭한 대응기업에 비하여 성장성은 높지만, 생산성이나 수익성, 재무건전성 등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분석결과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함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외감기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 ICT업종과 그 외 업종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서비스업과 ICT업종이 비교대상 업종에 비해 부채비율과 생산성이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성장성이나 수익성에 있어서는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 [벤처캐피탈과 관련된 세제지원 효과]

□ 벤처캐피탈과 관련된 세제지원의 효과는 세제지원이 벤처캐피탈의 세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었는지, 벤처캐피탈에 대한 세제지원액이 벤처투자액과 비례적 관계에 있는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비투자기업에 비하여 경영성과가 우수한지로 평가함

- 국세청으로부터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혜택을 받은 60개의 벤처캐피탈 법인세 신고 자료를 입수해 비과세 혜택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유효세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함

- 코스닥시장이 개장한 2000년부터 2014년 사이에 코스닥시장에 신규등록한 기업을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으로 구분해,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의 IPO 이후의 경영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
- 벤처캐피탈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분석 결과, 세제지원이 벤처캐피탈의 세부담 완화에는 효과가 있지만, 벤처산업의 성장이나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직접적 증거는 찾을 수 없었음
- 엄격한 비과세 요건으로 인하여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벤처캐피탈 숫자는 예상보다 적었지만, 비과세를 적용받는 벤처캐피탈에 있어서는 비과세 조항이 유효세율 경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투자이익을 실현한 벤처캐피탈 중 5분의 1 정도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세제 혜택을 받고 있었고, 벤처캐피탈이 실현한 투자이익 중 비과세를 적용받은 비율이 4%에 불과함
-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액은 2009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 2015년 회복세로 돌아선 반면 벤처캐피탈의 신규투자금액은 분석기간 내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벤처캐피탈의 신규투자 증가가 조세지원의 효과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음
- 최근 5년간 코스닥시장에 신규등록한 기업 중 60%가량이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고,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비투자기업에 비하여 IPO 소요기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분석결과는 벤처캐피탈이 우수 벤처의 발굴과 육성에 기여하였다는 증거로 볼 수도 있지만, 벤처캐피탈이 IPO기업에 투자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결과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음
    - 벤처캐피탈이 IPO기업에 투자한 시점이 벤처기업 설립 초기가 아닌 IPO 직전이라고 한다면 벤처캐피탈 투자가 벤처산업 육성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임
-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의 IPO 이후 성과를 비교한 결과,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성장성 측면에서는 다소 우위에 있지만, 생산성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는 오히려 열위에 있거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분석결과는 벤처캐피탈의 두 가지 기능, 즉 자금제공과 경영지원 기능 중 경영지원 기능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함

- 제조업과 서비스업, ICT업종과 그 외 업종으로 나누어 벤처캐피탈 투자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IPO 이후 비투자기업에 비해 수익성이 더 낮은 현상이 제조업과 ICT 이외 업종에서만 관찰되고, 서비스업과 ICT 업종에서는 나타나지 않음
  -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서비스업과 ICT 업종에 속한 투자기업 선별에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기타 벤처투자자와 관련된 세제지원 효과]

- 벤처캐피탈 이외의 기타 벤처투자자와 관련된 세제지원의 효과는 최근의 세제개편이 벤처투자액에 유의한 변동을 초래했는지를 통해 평가함
  - 정부는 민간투자의 벤처시장 유입을 위해 2012년부터 ‘투자조합 등 소득공제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옴
  - 소득공제율은 2011년 10%에서 출발해 현재는 30~100%로 확대됨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율’ 인상 후 소득공제 신청자 수와 엔젤투자액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 소득공제율 인상이 민간투자의 벤처시장 유입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투자액에 따른 소득공제율 차등적용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율 인상의 효과가 일부 고소득 근로자층에 집중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소득공제율 인상은 총급여 3~5억원, 총급여 10억원 초과 구간에 속한 고소득 자산가층의 벤처투자 유인에 특히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 2014년도 신설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4년도 신설된 벤처지원세제 중 유일하게 지원 실적이 발생한 항목으로, 동 공제조항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기업의 세부담 절감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분석됨
  - 과세이연 형태의 다른 지원규정들과 달리 주식취득기업에 실질적 감면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책효과가 높은 것으로 사료됨

#### [벤처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

- 벤처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7가지 조세지원항목이 존재하나, 대부분 항목의 조세지원 실적이 전무하거나 미미한 수준임
  - 이들 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첫 번째 이유는 M&A나 전략적 제휴를 통한 투자금 회수비율이 낮아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발생건수 자체가 적기 때문임
  - 또한 대부분 규정이 과세이연 형태로 그 혜택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적용요건으로 인하여 기업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움
    - 기업 입장에서 보면 동 규정들이 아니라도 기업구조조정에 적용되는 일반특례 규정을 이용해 세부담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굳이 복잡한 적용요건을 요구하는 벤처기업 특례에 집착할 필요가 없음

#### [벤처기업 임직원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

- 벤처기업 임직원에 대한 세제지원은 2015년까지 지원 실적이 전무하나, 스톡옵션의 특성상 제도시행 후 정책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현재의 지원 실적으로 제도의 효과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음
  - 스톡옵션 행사를 위한 의무근로기간을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 조세지원 대상 스톡옵션의 행사가능시점이 도래하지 않아 조세지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추정됨
- 2015년 신설된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2016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이 잡히지 않아 구체적 정책효과 판단이 불가능함

#### [실증분석의 한계]

- 본 연구는 외감법인 또는 코스닥등록기업을 대상으로 벤처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를 분석한바, 외감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벤처기업에는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PSM를 이용해 감면기업과 가장 유사한 속성을 가진 대응기업을 찾고자 시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PSM 모형이 얼마나 타당하냐에 따라 본 연구결과의 신뢰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투자설명서를 참조해 벤처캐피탈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을 구분하였으나, 투자설명서상 표시되는 주주내역은 지분율 5% 이상의 주요주주이므로 벤처캐피탈 지분율이 5% 미만인 경우 비투자기업으로 잘못 분류될 가능성이 있음



## Ⅶ. 제도 개선방안 분석





## VII. 제도 개선방안 분석

### 1. 기본방향

#### 가. 벤처기업 위주의 세제지원에서 벤처투자자 위주의 세제지원으로 전환

- 벤처 관련 조세지원은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지원과 벤처투자자에 대한 간접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은 벤처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해 벤처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반면 벤처투자자에 대한 간접지원은 벤처투자자의 세후수익률을 높여 투자수단으로서 벤처기업이 가진 매력도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조세지출 실적을 살펴보면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이 ‘벤처투자자에 대한 간접지원’ 규모를 크게 앞지르고 있음
  - 2014년 기준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규모는 513억원으로, ‘벤처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50억원의 약 10배 수준에 달함
  - ‘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으로 2015년 ‘벤처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규모가 14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여전히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벤처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큰 폭으로 앞지르고 있음
  
- 벤처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정책적 목표가 불확실한 미래 전망으로 인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창업 초기 벤처기업 지원에 있다면 정부지원의 형태는 ‘조세지원’보다는 ‘재정지원’이,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지원’보다는 ‘벤처투자자에 대한 간접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조세지원은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의미가 있으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의미가 없음
  - 창업 후 이익을 실현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며, 이익을 실현한 이후

에는 불확실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외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줄어들

- 이러한 관점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시기는 창업 후 이익을 실현하기 전까지, 기업의 수익창출능력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시점이라 판단되며, 이 시기에는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 조세지원보다 ‘재정지원’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또한 창업 후 이익실현까지 장기간을 요하는 벤처기업은 법인세 감면 등 직접적 세제지원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지만,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경우 간접적 경로로 혜택을 얻을 수 있음

□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역시 벤처기업 지원정책 중 가장 확대지원이 필요한 정책으로 ‘금융지원제도’를 꼽음

- 벤처기업의 경우 가장 확대지원이 필요한 벤처기업 정책으로 49.1%가 ‘금융지원제도’를 선택했으며, 그다음으로 ‘조세지원제도’(23.1%), ‘창업지원제도’(1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조세지원’이 벤처기업 지원정책으로 중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지원’보다는 중요도와 선호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줌
-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금융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조세지원에 비해 높았는데,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규모가 영세하고, 이익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일수록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여줌

□ 한편 조세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지원’보다 ‘벤처투자자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 세제지원은 성장잠재력이 없는 벤처기업을 무분별하게 양산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벤처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sup>77)</sup>

□ OECD(2013) 연구결과 역시 대다수 국가들이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 조세지원보다 벤처투자자에 대한 간접적 조세지원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남

77) 김재진·김진수(2002), p. 267

- 조사에 참여한 32개 OECD 회원국 중 벤처기업에 직접적으로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9개국에 불과한 반면 대다수 국가들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고할 목적으로 벤처투자자에게 다양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sup>78)</sup>
- 국제적 추세나 효과성 분석결과에 기초해 판단해 보았을 때,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은 현상유지 또는 축소하되, 벤처투자자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효과성 분석결과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은 창업벤처기업의 세부담 완화에는 효과가 있지만,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창업벤처기업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비벤처 대응기업에 비해 수익성이나 생산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벤처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은 벤처산업 성장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법인세 감면을 받은 창업벤처기업이 대응기업에 비해 고용증가율이 유의하게 더 높았고, 벤처 인증이 없더라도 창업중소기업이면 50%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현행 수준에서 대폭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비벤처중소기업도 창업 후 5년 내 이익을 내면 세금을 50%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수준 이하로 벤처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낮추기는 어려움
  - 효과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감면을 받은 벤처기업이 조세지원을 받지 못한 비벤처 대응기업에 비해 고용증가율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분석결과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고용증대 측면에서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현행 수준에서 지나치게 줄이기보다 현상유지 또는 약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78) OECD(2013), p. 16, 김재진(2013), pp. 52~53을 발췌하여 요약·정리하였음

## 나.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

- 최근 6년간 조세지출 실적을 살펴보면 벤처 관련 지원항목의 숫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항목이 적고, 일부 항목에 편중된 양상을 보임
  - 벤처기업과 관련된 세제지원의 경우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조세지출 실적이 미미하거나 벤처와 관련된 지원액이 따로 분리 집계되고 있지 않아 벤처산업 성장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불분명함
  - 벤처투자자와 관련된 세제지원 역시 ‘증권거래세 면제’와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전체 조세지출액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일부 항목에 편중된 양상을 보임
  - 특히, 벤처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세제지원 항목들의 조세지출 실적이 기대보다 미미한 수준임
  
- <표 VII-1>은 최근 6년간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실적’으로, 조세지출 실적이 집계·공표되고 있는 항목은 모두 3개이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전체 조세지출의 95% 이상을 차지함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조세지출 실적이 전무하거나 미미해 사실상 그 효과성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됨

<표 VII-1>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실적

(단위: 억원)

규정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창업벤처기업 등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sup>1)</sup>	소득세	127	165	284	312	375	520
	법인세	959	979	987	968	1,102	1,15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과세특례(조특법 16조의 2, 3)		n.a.	n.a.	n.a.	신설	<sup>2)</sup>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46조의 7)		n.a.	n.a.	n.a.	신설	-	0.02

주: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합계

2) 2014년부터 집계 시작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07~2017.

□ <표 VII-2>는 최근 6년간 ‘벤처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실적으로, 벤처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실적은 2009년 이후 감소 혹은 정체 상태에 있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섬

- 벤처투자자에 대한 8가지 조세지원 중 지출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로, 2015년 기준 전체 조세지출의 45%가량을 차지함
- 그다음이 ‘증권거래세 면제’로, ‘증권거래세 면제’와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벤처투자자에 대한 전체 조세지출액의 75%를 차지함
- 2009년 이후 조세지원 실적이 없는 ‘창업자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비롯해 8개 항목 중 4개 항목의 조세지출 실적이 전무하거나 1억원 미만임

<표 VII-2> 벤처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출실적

(단위: 억원)

규정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창업자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4조) <sup>1)</sup>	7	-	-	-	-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6조)	21	12	10	9	13	22	66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46조의 8)	n.a.	n.a.	n.a.	n.a.	신설	-	-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2조의 4)	n.a.	n.a.	n.a.	n.a.	신설	-	2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제13조)	22	18	27	25	16	4	16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46조의 7)	n.a.	n.a.	n.a.	n.a.	신설	-	0.02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이연(조특법 제46조의 3)	-	-	-	-	-	-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 제117조)	57	37	23	14	21	24	43
합계	107	67	60	48	50	50	148

주: 1) 양도소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제도의 특성상,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므로 2009년 이후 실적이 집계·산출되지 않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07~2017.

- 우리나라는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 및 벤처투자자에 대해 광범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벤처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특히,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중소기업 및 연구개발비 관련 조세지원에 추가해 제공되는 부가적 혜택이기 때문에 이들 항목까지 고려하면 벤처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미하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러나 실효성 있는 지원항목이 많지 않고, 최근에 도입된 제도들의 조세지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규모나 지원항목의 숫자를 계속해 늘리기보다는 실효성 있는 항목들을 위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벤처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폐지하고, 실효성이 높은 제도의 지원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벤처기업 66.5%, 벤처캐피탈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벤처기업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의 경우, 납세자의 인지·활용도가 가장 높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위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국세 관련 조세지원제도 중 그다음으로 납세자의 인지·활용도가 높은 감면조항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소득세 분할납부 및 과세방식 선택’임
  - ‘벤처기업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이익 과세특례’는 조세지원 실적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의 인지·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항목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감면요건을 완화하거나 감면내용을 강화하는 등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표 VII-3〉 벤처기업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 인지·활용도 순위

항목	조세지출 실적	설문조사 결과	
		인지	활용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1	1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미집계	2	2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소득세 분할납부 및 과세방식 선택	3	3	3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2	5	4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미집계	4	5

- ‘벤처투자자와 관련된 조세지원제도’의 경우 납세자의 인지·활용도가 높은 ‘증권거래세 면제’와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창투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3개 항목을 위주로 집중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조세지원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sup>79)</sup>
  -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조세지출 실적과 인지·활용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나치게 복잡한 감면요건과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한 홍보 부족이 그 원인으로 사료되는바, 감면요건을 단순화하고 동 조세특례에 대한 납세자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벤처투자자와 관련된 조세지원제도’ 중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높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특성상 조세지출실적이 산출·집계되지 않아,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벤처기업 출자의 범위를 점검하고, 사후관리요건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
    - 다만, 2016년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보다 과세이연 및 사후관리요건이 완화되었으므로 동 세법개정의 효과가 나타나는 2018년 이후에 지원 실적을 보고, 추가확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VII-4〉 벤처투자자와 관련된 조세지원제도 인지·활용도 순위

항목	조세지출 실적	설문조사 결과	
		인지	활용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4	2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	4	4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4	5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3	2	3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2	1	1

79)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장 높은 조세지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인지·활용도가 낮게 나타난 이유는 설문조사 대상자가 벤처캐피탈이기 때문으로 판단됨. 동 제도는 근로소득자 등 개인에 적용되며, 벤처캐피탈은 동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님.

## 2. 벤처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의 실효성 제고

- 벤처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벤처캐피탈을 비롯한 ‘벤처투자전문기관에 대한 세제지원’과 ‘비전문투자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가. 벤처캐피탈을 비롯한 벤처투자전문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효과성 분석 결과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비투자기업에 비하여 경영성과가 우수하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
  -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벤처캐피탈의 역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자금투자 외에는 경영에 그다지 관여하지 않은 등 거의 역할이 없었다’는 응답이 84.6%로 가장 많았음
  - 이러한 설문결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선별해 성장시키는 기능은 약하다는 것을 시사함
- 그러나 자금 제공원으로서 벤처캐피탈의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고, 최근 5년간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 실적이 정체 상태에 있어 지원 실적이 부진한 이유 파악과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조특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최근 5년간 양도소득세 등의 비과세라는 제도의 특성상, 조세지원 실적이 집계·산출되지 않음
  - 「조특법」 제13조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로 인한 조세지출액은 2014년 4억원까지 떨어졌다가 2015년 16억원으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였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임
  - 2017년부터 일반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출자금의 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바, 「조특법」 제13조가 5% 세액공제에 준하는 만큼의 혜택을 보장해 주지 못할 경우 벤처캐피탈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음
- 벤처투자전문기관에 대한 조세지원 실적이 미진한 이유는 투자조합을 통한 간접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임
  - 창투조합의 숫자는 1999년 90개에서 2015년에는 460개로, 5배가 넘는 성장세를 보임

- 세법상 투자조합은 도관으로 보기 때문에 조합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합에는 과세하지 않는 대신 조합에서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납세의무를 부담함<sup>80)</sup>
  - 투자조합은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므로<sup>81)</sup> 창투조합이 「조특법」 제14조를 적용받아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되더라도 이것이 조세감면 실적으로 잡히지 않음
  - 현실적으로 창투조합이 실현한 주식양도차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조특법」 제14조에 따른 조세감면 실적이 최근 5년간 전무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로 사료됨
- 아울러 창투사 회수이익 중 감면요건 충족 분 비중이 낮은 것도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 실적이 부진한 또 다른 원인으로 보임
-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혜택을 받은 벤처캐피탈의 숫자는 총 60개로, 회수이익이 발생한 전체 벤처캐피탈의 약 18%에 불과함

<표 VII-5> 벤처캐피탈 비과세 수혜현황

(단위: 개, 억원, %)

연도	회수이익을 실현한 VC 중 비과세 혜택을 받은 VC 비중			회수이익 대비 비과세신청금액 비중		
	(a) 회수이익 실현 VC개수	(b) 비과세 신청VC 개수	비과세 신청비율 (=b)/(a)	(c) 회수이익	(d) 비과세 신청금액	비과세 신청비율 (=d)/(c)
2007	49	9	18	500	18	4
2008	45	6	13	265	15	6
2009	48	8	17	425	11	3
2010	44	10	23	730	13	2
2011	42	4	10	550	29	5
2012	37	10	27	235	10	4
2013	31	6	19	193	4	2
2014	29	7	24	306	12	4
전체기간 평균	41	8	18	401	14	3

주: 조합을 제외한 창투사 자료만을 집계한 것임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및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80) 구경철·오문성(2009)

81) 구경철·오문성(2009)

- 2014년 기준 58개 벤처캐피탈 중 29개에서 회수이익이 발생했고, 이 중 7개사가 「조특법」 제13조에 따른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혜택을 받음
  - 2014년도에 벤처캐피탈이 거둔 회수이익 총액은 206억원이고, 이 중 비과세 신청금액은 12억원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금액이 전체 회수이익의 4%에 불과함
- 벤처캐피탈 회수이익 중 비과세 적용분 비중이 낮다는 것은 벤처캐피탈이 ‘설립 후 7년 이내 벤처기업’에 원시 투자한 비중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함
- 「조특법」 제13조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하거나 설립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에 참여해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해야 함
  - 벤처캐피탈의 막대한 회수이익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비중이 낮다는 것은 승계취득에서 발생한 회수이익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벤처전문투자기관에 대한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과세 대상 투자의 범위’를 늘리기보다 ‘비과세 적용가능 기관투자자의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료됨
- 「조특법」 제14조는 모험자본의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금조달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창업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 그 법 취지가 있음
  - 이러한 조세정책상 목적을 고려했을 때 설립 후 7년이 경과한 벤처기업 투자나 승계취득으로까지 비과세 대상 투자의 범위를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됨
- ‘증권거래세 면제’ 또는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할 경우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현재는 ‘증권거래세 면제’ 또는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범위가 20개의 기금법인과 공제사업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적용대상이 제한적임

## 나. 중간 규모 벤처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우리나라의 벤처투자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민간참여 저조로, 정부 의존도가 높다는 점임<sup>82)</sup>
  - 정부기관 출자비중은 2007년 26.9%, 2009년 35.8%, 2011년 34.4%, 2013년 45.2%, 2014년 40.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민간금융의 벤처시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그 동안 정부는 ‘투자조합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 등 다양한 조세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그 결과 엔젤투자 규모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5년 엔젤투자 규모는 1,399억원으로 닷컴버블이 꺼진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현행 벤처투자자 관련 조세지원제도는 대규모 벤처캐피탈과 소규모 엔젤투자자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간 규모의 벤처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규정을 신설하거나 확충할 필요성이 있음
  - 양영석 등(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창업초기투자그룹의 seed 단계 1기업당 평균 투자 규모는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제외하고 나면 1~2억원 규모이고, 엔젤투자매칭펀드를 포함시킬 경우 5억원 미만임
  - 이에 반해 벤처캐피탈이 주도하는 초기 투자의 경우 기업당 평균 3년 미만 기준 10억원, 창업초기투자조합 기준 3년 미만 벤처캐피탈 투자 12.8억원, 3~7년 기준 15.2억원 수준으로 나타남
  - 따라서 국내 창업초기투자는 2~10억원 또는 5~10억원, 10~15억원 사이에서 기업들이 초기투자 및 추가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함
  
- 2017년부터 시행 예정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시 세액공제’ 규정을 이용해 내국법인이 ‘중간 규모의 벤처투자자’ 역할을 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인의 벤처투자액에 대한 5% 세액공제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의 효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벤처기업(51.8%)보다 벤처캐피탈(64.9%)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남

82)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2015.7.

-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벤처기업의 업력 및 투자규모에 따라 세액공제율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5%의 세액 공제율이 일률 적용됨
  - 양영석 등(2014)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설립 후 3년 미만’+‘투자금 2~15억’ 구간이 벤처투자의 사각지대로 나타남
  - 엔젤투자자와 전통적 VC투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투자공백 구간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에 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자금여력이 있는 내국법인이 벤처시장에서 ‘중간 규모 벤처투자자’ 역할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개인투자자는 소득공제와 더불어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동시에 적용되는바, 법인투자자에 대해서도 세수여건 및 세제지원의 효과를 보아가면서 점차 혜택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벤처 투자에 보다 높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한다거나 주식양도차익의 일부를 익금불산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다.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제도의 과세형평성 제고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율’ 인상 후 소득공제 신청자 수와 엔젤투자액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 소득공제율 인상이 민간투자의 벤처시장 유입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 세제혜택과 벤처투자액이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세법개정의 효과가 즉각적임
  
- 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효과성은 높지만, 2011년 이후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율을 인상해 왔기 때문에 추가적 지원의 필요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고 판단됨
  - 세제지원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기보다 납세자 간 과세형평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됨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는 고소득 자산가 계층의 여유자금을 벤처자금으로 유입함으로써 벤처산업 육성에 기여하였지만, 소득공제 확대의 효과가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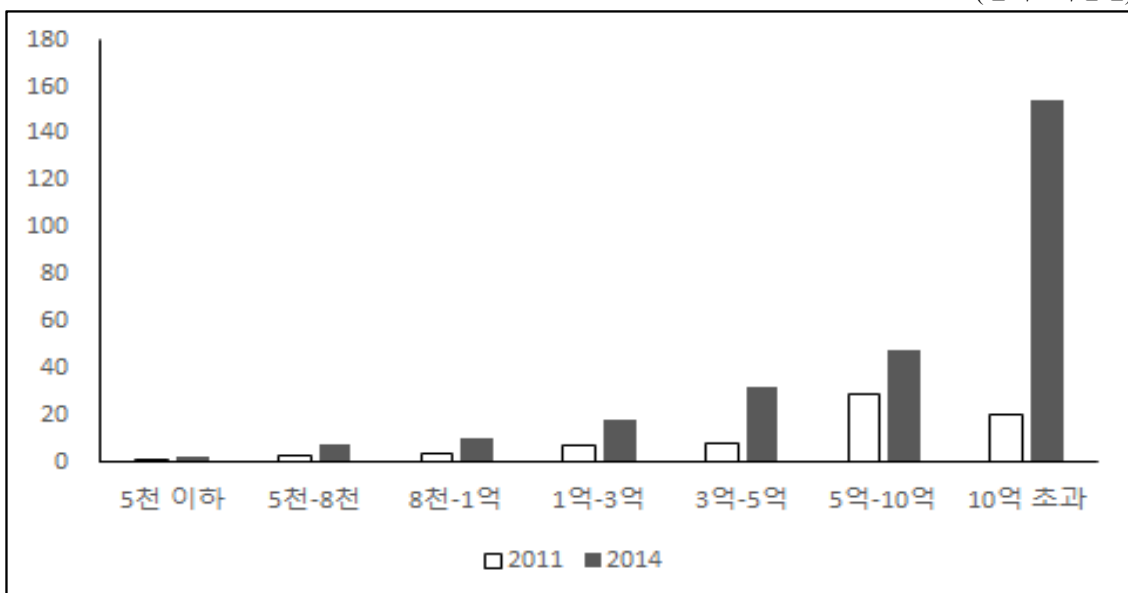
고소득 근로자층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음

○ [그림 VII-1]은 2011년과 2014년, 2개 연도의 ‘투자조합출자 등 1인당 소득공제액’을 비교한 결과로, 소득공제율 인상 후 모든 소득구간에서 1인당 소득공제액이 증가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총급여 3~5억원, 총급여 10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자가 가장 많은 혜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남

- 총급여 3~5억원 구간의 근로소득자의 1인당 소득공제액은 2011년 800만원에서 2014년에는 3,200만원으로 4배가 증가함
- 총급여 10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자의 1인당 소득공제액은 2011년 2천만원에서 2014년에는 1억 5,400만원으로, 무려 7.7배가 증가함
- 반면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의 1인당 소득공제액은 2011년 90만원에서 2014년에는 190만원으로 증가함
- 총급여 수준에 따른 한계세율 차이를 고려하면 실제 소득구간별 수혜규모 차이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됨

[그림 VII-1] 총급여 규모별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의 1인당 소득공제액

(단위: 백만원)



□ 현행 ‘투자조합출자 등에 소득공제’ 규정은 투자금액에 따라 소득공제율에 차등을 두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일부 고소득층에 소득공제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음

- 현재 투자액 1,500만원까지는 100%, 1,500~5,000만원은 50%, 5,000만원 초과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음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의 효과가 전 소득계층에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이 아니라 총급여 구간별로 공제율을 달리 설정하거나 총액한도를 두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총액한도규정을 두거나 소득공제율을 급여구간별로 차등 적용할 경우 고소득 자산가의 벤처투자 유인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한편 최근 5년간 지원 실적이 전무한 「조특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 ‘적격 벤처기업 투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요건(3년 이상 보유)을 완화를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2016년 2월 5일 시행령 개정 시 엔젤투자자의 출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기업을 창업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대하고, 창업 5년 이내에 최초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추가 출자시 지분율에 관계없이 총출자액 10억원 한도로 하여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한바 있음
  - 동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5일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데, 3년의 의무보유기간 요건을 고려하였을 때 동 개정으로 인한 효과는 2018년 이후에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2018년 이후의 지원 실적을 살펴본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실적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면 현재보다 감면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양도소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제도의 특성상 과세당국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실적 집계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함

### 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과의 차별화

#### 가. 기술력과 혁신성에 따른 벤처기업 차등지원

- 현행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감면

내용에 있어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 기술력 높은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책으로서 한계가 있음

-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50% 감면으로, 감면기간 및 감면율이 동일함

〈표 VII-6〉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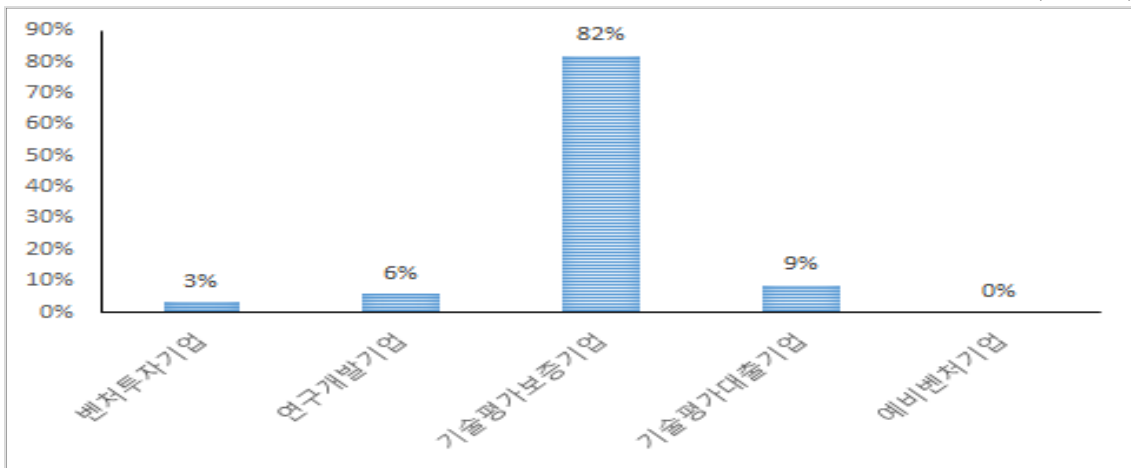
구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내용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벤처 인증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감면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종요건: 제조업 등 법에서 열거한 업종으로 창업</li> <li>• 사업장소재지요건: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요건: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 인증</li> <li>• 업종요건: 제조업 등 법에서 열거한 업종으로 창업</li> <li>• 사업장소재지요건: 없음</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불가</li> </ul>

- 높은 기술력을 가진 벤처기업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창업을 일반 중소기업 창업에 비하여 우대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수도권감면 배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뚜렷한 차별점을 찾기 어려움
  - 벤처 창업에 일반 중소기업 창업에 비해 더 긴 감면기간,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야 스타트업 기업이 기술력을 높여 벤처 인증을 획득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 아울러 벤처 인증 유형이나 기술수준에 따라 감면기간 및 감면율에 차등을 둘 경우, 세제지원이 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이끄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행 벤처 인증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전체 벤처 인증 기업 중 90% 이상이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이고, ‘연구개발기업’이 전체의 6%에 불과하다는 점임

- 보증과 대출에 의한 벤처 인증은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에 초점이 맞추어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벤처 인증 과정에서 기술성과 혁신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음
- ‘연구개발기업’으로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기술성 우수평가기업’에 더 긴 감면기간,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제도개선이 필요함

[그림 VII-2] 벤처기업 확인유형별 현황(2016년 6월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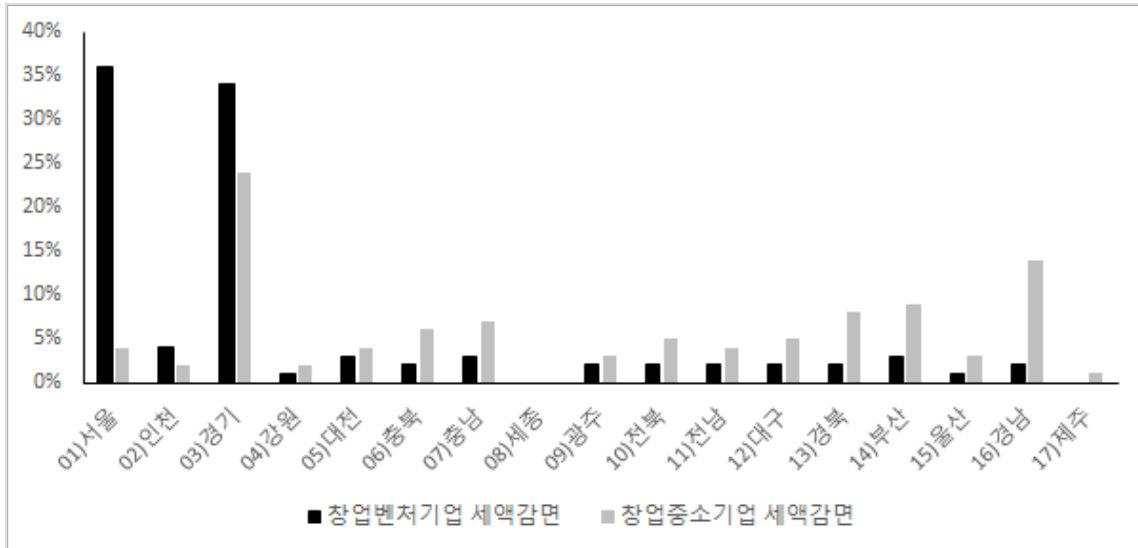


자료: 벤처확인·공시시스템 벤처인

#### 나. 지방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의미가 있는 경우는 사업장소재지가 수도권과 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경우임
  - ‘사업장소재지요건’으로 인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따라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법인세 50%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벤처 인증을 획득해야 함
- 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세제혜택을 위해 벤처 인증을 획득할 유인이 낮음
  - 이 때문에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업’ 중 수도권소재기업의 비율이 74%에 육박함

[그림 VII-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업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업의 지역별 분포 비교



주: 2007~2014년 법인 신고 자료를 집계한 수치임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창업벤처기업에 더 많은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수도권 소재기업과 비수도권 소재기업으로 이원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피투자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2014년 10월 기준 피투자기업 중 약 83.6%가 수도권 소재(서울, 경기)기업임
  - 현행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배제되는 수도권 소재기업에 있어서는 일종의 혜택이나, 비수도권 소재기업에 있어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차별성이 부족해 지방벤처 창업 활성화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수도권 소재기업은 5년보다 짧은 감면기간, 50%보다 낮은 감면율을 적용하되, 비수도권 소재기업은 5년보다 긴 감면기간을 적용함으로써 비수도권 소재기업으로 하여금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추가적 혜택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수도권 소재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감면기간을 5년보다 짧게 설정하더라도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유리함

- 비수도권 소재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이 5년보다 길어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정책효과를 가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기업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비수도권 소재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75%, 2년간 50%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4. 창업 후 3년 이상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벤처기업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창업 후 3년이 지나 벤처 인증을 받거나 벤처 인증을 갱신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부족하다는 점임
  - 창업 후 3년 내 벤처 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로부터 5년 내 이익을 실현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개발과 상품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기업들은 조세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움
  - 감면기간 중에는 벤처 인증을 유지할 유인이 있지만, 감면기간 종료 후에는 벤처 인증에 대한 추가적 세제혜택이 부족함
- 비상장 중소기업은 업력에 관계없이 최초 벤처 인증 획득 시 세금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절세 목적으로 벤처 인증 획득 시점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음
  - 이익실현이 예상되는 시점까지 벤처 인증 시점을 늦추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유인이 있음
- 벤처 인증 갱신 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투자세액공제나 R&D공제 등에 있어 일반 중소기업보다 벤처기업(비상장 중소기업에 한함)을 우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현재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차등만 있을 뿐 비벤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사이에는 세제지원에 차이가 없음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의 설비 및 R&D 투자에 우대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 역시 창업 후 3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중소기업청은 창업 후 3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슬로 매뉴얼」에 의한 2단계에 걸친 혁신성 평가를 통해 이노비즈 인증업체를 선정하고 있음

<표 VII-7> 혁신형 중소기업별 차이 비교

구분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메인비즈기업
1. 혁신역량체계 (R&D체계구축)	◎	X	△
	ㄱ. 기술혁신역량평가 ㄴ. 개별기술평가	개별기술평가	경영혁신역량평가
2. 지속 가능 혁신 (지재권 10건)	◎	◎	△
	9.8건	6.9건	5.0건
3. 안정적 성과창출	◎	△	◎
	매출: 146.9억원	매출: 67.2억원	매출: 154.3억원
4. 기업 건전성	◎	X	X
	부채비율: 124.9%	부채비율: 146.1%	부채비율: 269.7%

자료: <http://www.innobiz.net/intro/intro2.asp>

## 5. ICT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구분분석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율이 비교적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었고, 서비스업에 속한 벤처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에 비해 경영성과가 우수하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함
  - 따라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현행 수준에서 특별히 더 높일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됨
- 다만, ICT산업에 속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이 예상보다 적어 추가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외감기업 중 ICT기업의 비중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효과성 분석 결과 감면기업 중 ICT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경영성과가 유의하게 더 높다는 실증결과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2015년 신규 IPO기업 중 ICT기업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등 성장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산업군으로 나타남
  - ICT 산업에 속한 감면기업의 숫자가 지나치게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음
- 벤처투자자의 경우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산업을 좇아 투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ICT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별도의 추가적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됨
- 다만,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ICT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ICT기업의 감면 개시시점을 다른 산업에 비해 늦추어주거나 감면율을 높여 적용하는 방안(예: 3년간 75%, 2년간 50%)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ICT산업의 특성상 창업 후 벤처 인증까지 걸리는 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이익을 낼 때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이라면 감면개시시점을 다른 업종에 비해 늦추어줄 필요성이 있음

## 6. 벤처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일반규정으로의 통합·단순화

- 벤처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운영 중에 있으나, 감면실적은 미미한 수준임
- ‘중소기업 간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이 208억원으로 가장 많지만, 이 중 대부분은 「조특법」 제32조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실상 벤처기업 구조조정과는 관련성이 약함

- 다양한 조세지원제도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M&A 또는 전략적 제휴를 통한 투자금 회수실적이 여전히 1% 미만(2015년 기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세금이 벤처기업 구조조정 의사결정의 핵심적 고려요인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함
  - 따라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새로운 과세특례 규정의 신설 또는 기존 규정의 확대에 벤처기업의 구조조정을 촉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벤처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i) 혜택에 비해 과도한 과세이연요건 및 사후관리 규정 ii) 대체적 활용이 가능한 보다 범용적 구조조정세제의 존재 iii) 해당 조항에 대한 납세자의 낮은 인지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됨
  - 전략적 제휴를 비롯한 대부분의 과세특례가 과세이연의 형태를 띠고 있어 실질적 감면혜택은 적은 반면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까다로운 과세이연 요건 및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어 실제 활용이 어렵고, 높은 복잡성으로 인해 납세자의 인지도가 낮음
    - 설문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인지·활용도가 낮은 조세지원제도가 대부분 벤처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규정들임
  - 적격합병이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은 몇 가지 일반사항만 충족하면 여러 가지 세금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반면 「조특법」 규정은 복잡한 과세이연요건 및 사후관리규정을 가지고 있어 활용에 제약이 있음
  
- 세금이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원 실적이 없더라도 해당 조항의 삭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일반규정이 있다면 일반규정에 흡수시켜 운영하는 것이 세제의 복잡성을 줄이고 납세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하나의 방안일 수 있음
  - 또한 대부분 규정이 영구적 세금면제가 아니라 단순히 과세시점을 이연하는 효과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과세이연 요건 및 사후관리 규정을 현행보다 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지원 실적이 미미한 「조특법」 제31조는 일반합병 규정에 통합해 운영하고, 「조특법」 제12조의 3과 제46조의 7은 폐지하거나 과세이연 요건 및 사후관리 규정을 대폭 완화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조특법」 제46조의 8은 2016년 세법개정으로 과세이연 요건이 대폭 완화된 바, 추후 세법개정의 효과를 살펴보고 폐지 또는 과세이연 요건의 추가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Ⅷ. 설문조사 결과





## Ⅷ. 설문조사 결과

### 1. 조사개요

#### 가.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조세지원제도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여 향후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나. 조사 내용

- 본 조사의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Ⅷ-1〉 조사 항목

구 분	세부항목
기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캐피탈: 설립연도, 투자업종, 투자수단, 투자기업의 업력, 회수방식, 회수기간</li> <li>- 벤처기업: 창업연도, 벤처기업 최초확인 연도,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경험, 투자받은 벤처캐피탈과의 역할</li> </ul>
벤처기업 지원 정책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전반적 효과 여부</li> <li>- 확대지원이 가장 필요한 벤처기업 지원 정책</li> </ul>
벤처기업 조세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활용정도</li> <li>- 활용에 도움이 된 곳, 활용하지 않은 이유</li> <li>- 벤처기업/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별 인지 여부</li> <li>- 벤처기업/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별 활용 여부</li> <li>- 벤처기업/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효과 여부</li> <li>-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li> <li>-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li> <li>-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중 개선사항</li> <li>-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에 대한 세법 개정안 효과 여부</li> </ul>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종, 자산규모</li> </ul>

## 2. 조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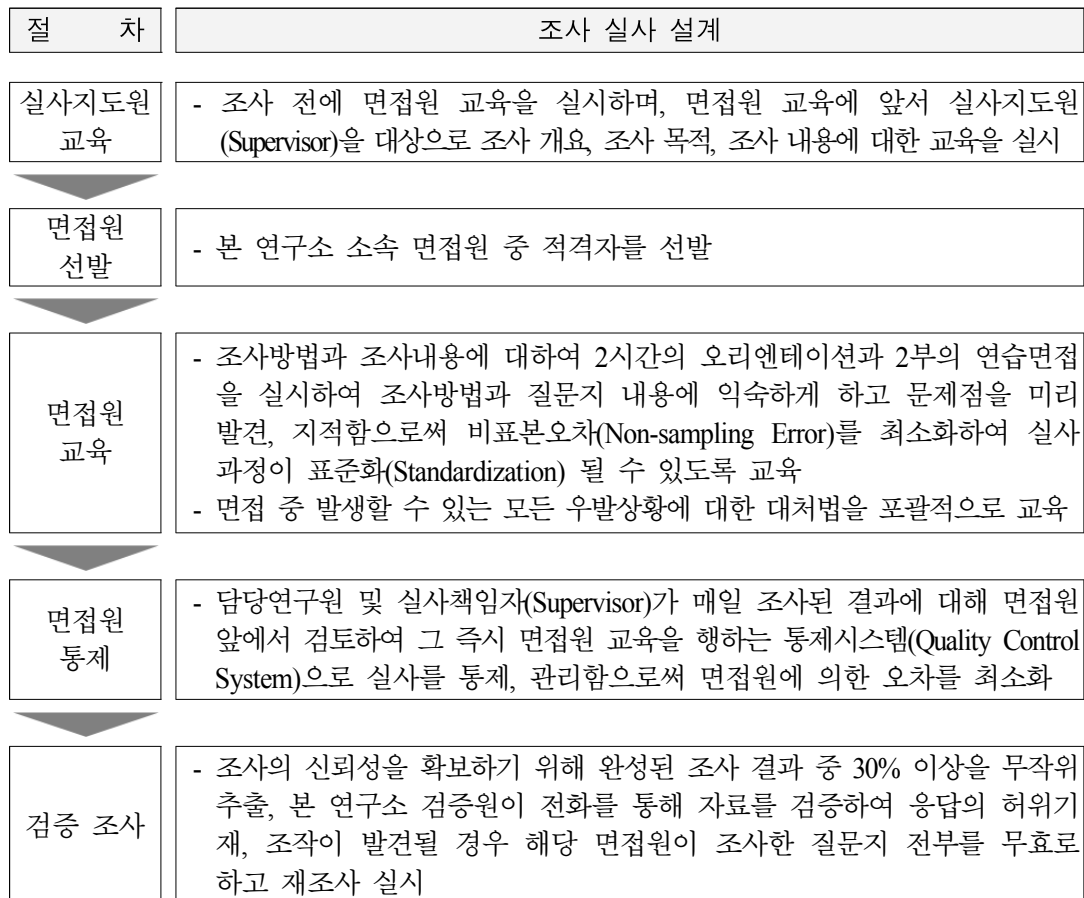
### 가. 표본 설계

<표 VIII-2> 표본 설계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 전국의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조사지역	- 전국 17개 시·도
유효표본	- 벤처기업 975개, 벤처캐피탈 37개
조사방법	-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조사
자료수집도구	-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 나. 실사 설계

[그림 VIII-1] 전화조사 실사설계



### 3. 응답자 특성

- 본 조사의 응답률을 약 16.5%로 나타남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A~S)에 의해 분류된 업종을 다시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기타 업종 4가지로 재분류한 항목임
  - 제조업에는 C 제조업, 도소매업에는 G 도매 및 소매업이 포함되며, 서비스업은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P 교육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포함됨. 기타 업종에는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건설업,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음
- 자산규모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공한 벤처기업/벤처캐피탈 리스트 중 자산 정보가 있는 6,852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산총액 기준으로 정렬한 후 10개 그룹으로 분류한 항목임
  - 분위별 평균자산은 1분위 9,409백만원, 2분위 12,611백만원, 3분위 14,663백만원, 4분위 17,090백만원, 5분위 20,176백만원, 6분위 24,338백만원, 7분위 31,106백만원, 8분위 42,756백만원, 9분위 68,255백만원, 10분위 277,809백만원임

가. 벤처기업

<표 VIII-3> 응답자 특성 - 벤처기업

(단위: 건, %)

구분		사례수	비율
전 체		975	100.0
업종별	제 조 업	761	78.1
	서비스 업	100	10.3
	도소매 업	45	4.6
	기 타	69	7.1
자산 규모별	1 분 위	95	9.7
	2 분 위	98	10.1
	3 분 위	99	10.2
	4 분 위	97	9.9
	5 분 위	97	9.9
	6 분 위	98	10.1
	7 분 위	94	9.6
	8 분 위	99	10.2
	9 분 위	100	10.3
	10 분 위	98	10.1
설립 연도별	2001년 이전	537	55.1
	2001~2005년	190	19.5
	2006~2010년	161	16.5
	2011년 이후	87	8.9
벤처확인 연도별	2001년 이전	94	9.6
	2001~2005년	158	16.2
	2006~2010년	286	29.3
	2011년 이후	279	28.6
	무 응 답	158	16.2
벤처캐피탈 투자 여부별	단일의 벤처캐피탈	46	4.7
	복수의 벤처캐피탈	45	4.6
	투자 받은 경험 없음	884	90.7
벤처캐피탈 역할별	자금투자	77	7.9
	경영 일부분 담당	14	1.4
	투자 받은 경험 없음	884	90.7
코스닥 상장 여부별	상 장	142	14.6
	비 상 장	833	85.4
세제혜택 여부별	수 혜	70	7.2
	비 수 혜	905	92.8

나. 벤처캐피탈

<표 VIII-4> 응답자 특성 - 벤처캐피탈

(단위: 건, %)

구분		사례수	비율
전 체		37	100.0
업종별	기 타	37	100.0
자산 규모별	1 분 위	1	2.7
	2 분 위	3	8.1
	3 분 위	4	10.8
	4 분 위	3	8.1
	5 분 위	3	8.1
	6 분 위	2	5.4
	7 분 위	3	8.1
	8 분 위	5	13.5
	9 분 위	11	29.7
	10 분 위	2	5.4
설립 연도별	2001년 이전	25	67.6
	2001~2005년	4	10.8
	2006~2010년	6	16.2
	2011년 이후	2	5.4
투자 업종별	정보통신	11	29.7
	일반제조	4	10.8
	생명공학	10	27.0
	문화콘텐츠	4	10.8
	서비스/교육	1	2.7
	기 타	7	18.9
투자 수단별	보통주	8	21.6
	우선주	25	67.6
	투자사채	1	2.7
	프로젝트	3	8.1
투자기업 업력별	초기단계-3년 이내	9	24.3
	중기단계-3~7년	25	67.6
	후기단계-7년 초과	3	8.1
회수 방식별	IPO	19	51.4
	프로젝트	3	8.1
	장외매각 및 상환	15	40.5
평균 회수기간별	1년 이내	1	2.7
	1~3년	9	24.3
	3~5년	24	64.9
	5년 이상	3	8.1
코스닥 상장 여부별	상 장	4	10.8
	비 상 장	33	89.2
세제혜택 여부별	수 혜	4	10.8
	비 수 혜	33	89.2

## 4. 벤처기업 조사결과 분석

### 가. 기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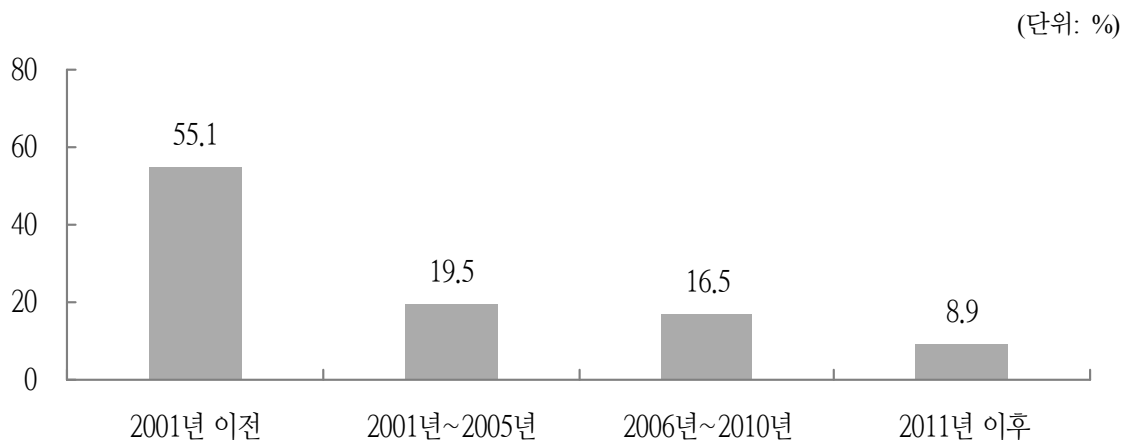
#### 1) 설립연도

□ 본 조사에 참여한 벤처기업은 ‘2001년 이전’ 설립한 업체가 절반 이상(55.1%)이었으며, ‘2001년~2005년’(19.5%), ‘2006년~2010년’(1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VIII-5> 설립연도

문) 귀사의 설립연도는 언제입니까?	
결 과	%
2001년 이전	55.1
2001년~2005년	19.5
2006년~2010년	16.5
2011년 이후	8.9
계(n=975)	100.0

[그림 VIII-2] 설립연도



## 2) 벤처기업 최초 확인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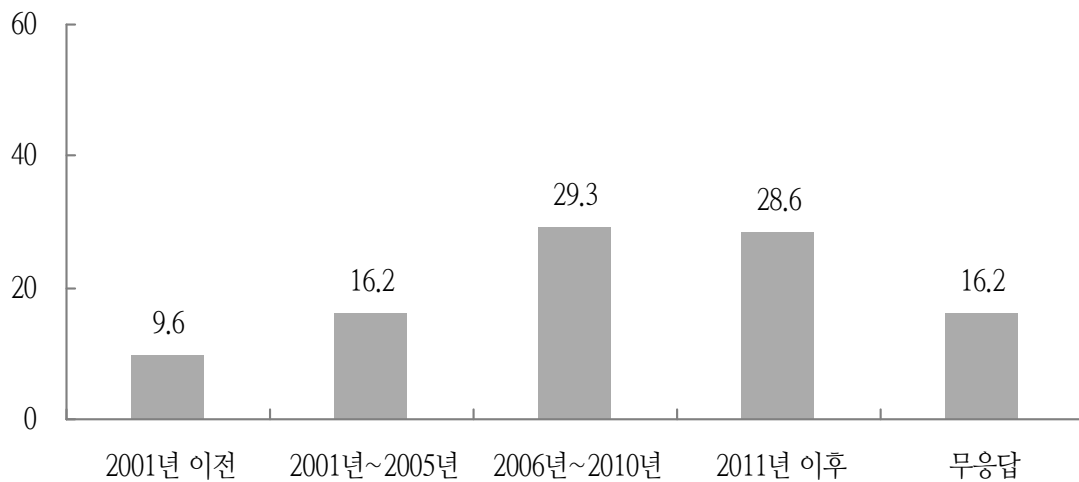
- 벤처기업 최초 확인연도는 ‘2006년~2010년’ 29.3%, ‘2011년 이후’ 28.6%, ‘2001년~2005년’ 16.2% 분포하였으며, ‘2001년 이전’은 9.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표 VIII-6> 벤처기업 최초 확인연도

문) 귀사의 벤처기업 최초 확인연도는 언제입니까?	
결 과	%
2001년 이전	9.6
2001년~2005년	16.2
2006년~2010년	29.3
2011년 이후	28.6
무응답	16.2
계(n=975)	100.0

[그림 VIII-3] 벤처기업 최초 확인연도

(단위 : %)



### 3)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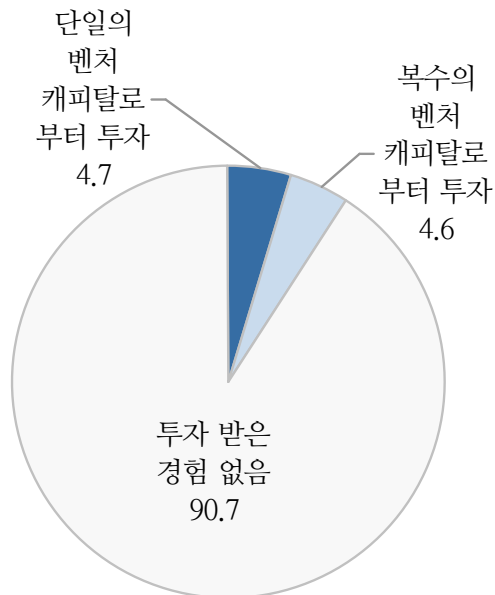
□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업체는 9.3%(단일 + 복수의 벤처캐피탈)였으며, 90.7%는 투자받은 경험이 없었음

<표 VIII-7>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경험 여부

문) 귀사는 벤처캐피탈(투자조합 포함)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결 과	%
단일의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	4.7
복수의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	4.6
투자받은 경험 없음	90.7
계(n=975)	100.0

[그림 VIII-4]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경험 여부

(단위: %)



가) 투자받은 벤처캐피탈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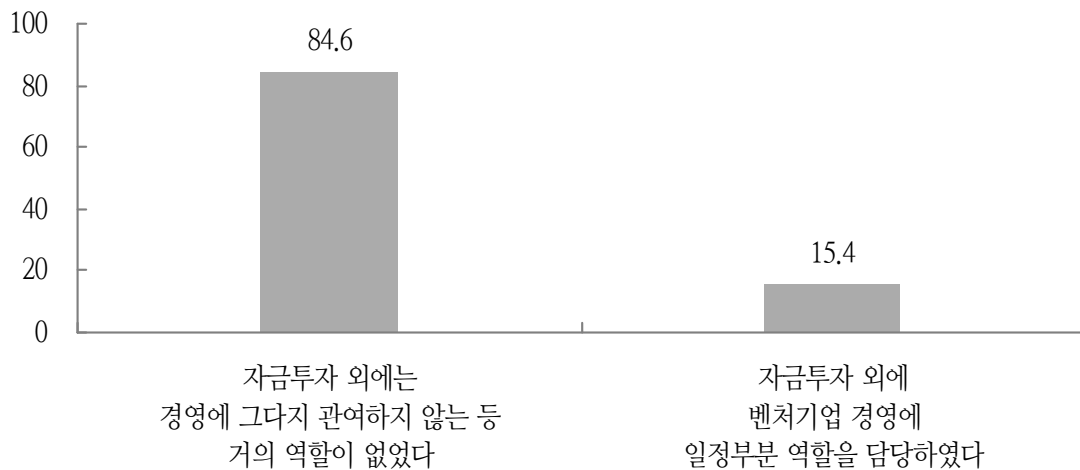
-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업체(n=91)를 대상으로 벤처캐피탈의 역할에 대해 물어본 결과, 단일의 벤처캐피탈(n=46), 복수의 벤처캐피탈(n=45)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모두 ‘자금투자 외에는 경영에 그다지 관여하지 않는 등 거의 역할이 없었다’는 응답이 84%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표 VIII-8> 투자받은 벤처캐피탈의 역할

문) 귀사에 투자한 벤처캐피탈(투자조합 포함)은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결 과	%
자금투자 외에는 경영에 그다지 관여하지 않는 등 거의 역할이 없었다	84.6
자금투자 외에 벤처기업 경영에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하였다	15.4
계(n=91)	100.0

[그림 VIII-5] 투자받은 벤처캐피탈의 역할

(단위: %)



## 나. 벤처기업 지원정책 전반

### 1) 벤처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효과 여부

- 전반적인 벤처산업의 발전에 대한 벤처지원제도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효과가 있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응답이 67.4%로 나타남
- 정부의 벤처지원제도에는 창업지원제도, 금융지원제도, 조세지원제도, 입지지원제도, 특허지원제도, 마케팅지원제도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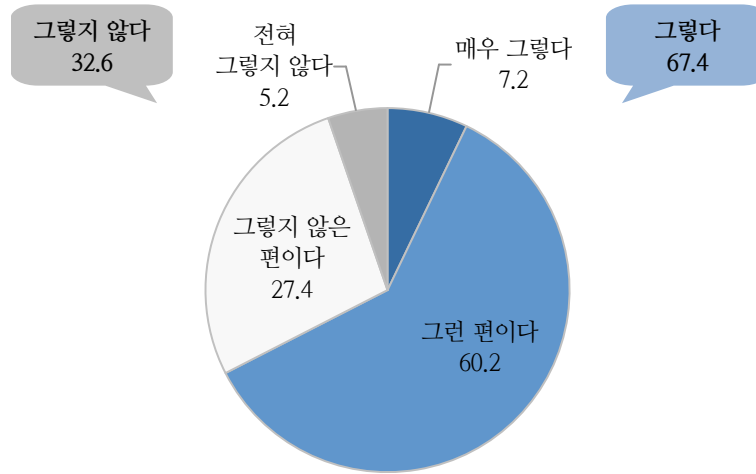
〈표 VIII-9〉 벤처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효과 여부

문) 정부의 벤처지원제도가 전반적인 벤처산업의 발전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
매우 그렇다	7.2
그런 편이다	60.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7.4
전혀 그렇지 않다	5.2
계(n=975)	100.0

- 벤처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효과 여부에 대해 업종, 자산 규모, 코스닥 상장 여부, 세제혜택 여부별로 살펴보면 특별한 차이 없이 긍정적인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남

[그림 VIII-6] 벤처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효과 여부

(단위: %)



## 2) 확대지원이 가장 필요한 벤처기업 지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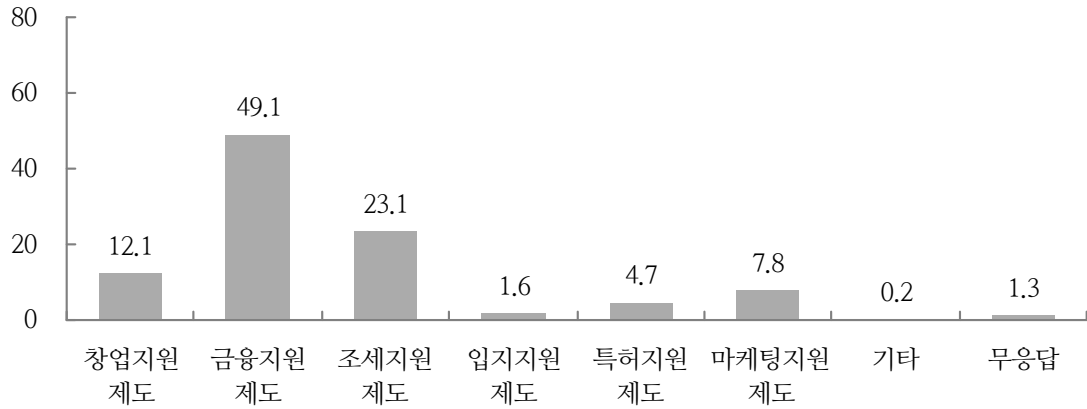
- 벤처기업 지원정책 중 가장 확대지원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 ‘금융지원제도’가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조세지원제도’(23.1%), ‘창업지원제도’(1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VIII-10> 확대지원이 가장 필요한 벤처기업 지원정책

문) 우리나라 벤처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벤처기업 지원 정책 중 가장 확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결 과	%
창업지원제도	12.1
금융지원제도	49.1
조세지원제도	23.1
입지지원제도	1.6
특허지원제도	4.7
마케팅지원제도	7.8
기타	0.2
무응답	1.3
계(n=975)	100.0

[그림 VIII-7] 확대지원이 가장 필요한 벤처기업 지원정책

(단위: %)



- 자산규모별로 보면 1분위인 업체에서 ‘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응답률(63.2%)이 다른 업체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8분위 및 9분위 업체(각각 39.4%)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과 기타 업종에서 ‘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응답률이 각각 35.0%, 39.1%로 낮게 나타남과 동시에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응답률(각각 30.0%, 31.9%)은 다른 업종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 코스닥 상장 여부와 세제혜택 여부별로는 통계적으로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다. 벤처기업 조세지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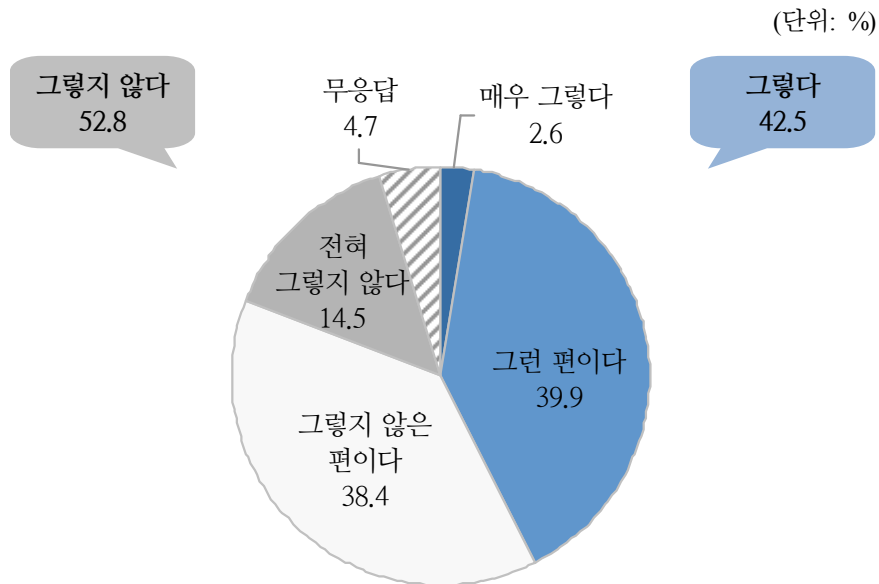
##### 1)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 정도

-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활용도를 물어본 결과, ‘활용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52.8%)으로 나타남
-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로는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소득세 분할납부 및 과세방식 선택,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 및 소득공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 특례 등이 있음

<표 VIII-11>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 정도

문) 귀사는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
매우 그렇다	2.6
그런 편이다	39.9
그렇지 않은 편이다	38.4
전혀 그렇지 않다	14.5
무응답	4.7
계(n=975)	100.0

[그림 VIII-8]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 정도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자산규모별로 4분위인 업체에서 ‘잘 활용하고 있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응답이 53.6%로 다른 업체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업종별로는 도소매업(33.3%)과 기타 업종(29.0%)에서 ‘잘 활용하고 있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응답이 다른 업종에 비해 낮게 나타남

- 반면 코스닥 상장 기업(51.4%)과 세제혜택을 받는 기업(61.4%)에서는 조세지원제도 활용 비율이 높게 나타남

가)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데 도움을 받은 곳

□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업체(n=414)들은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데 주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이 31.6%로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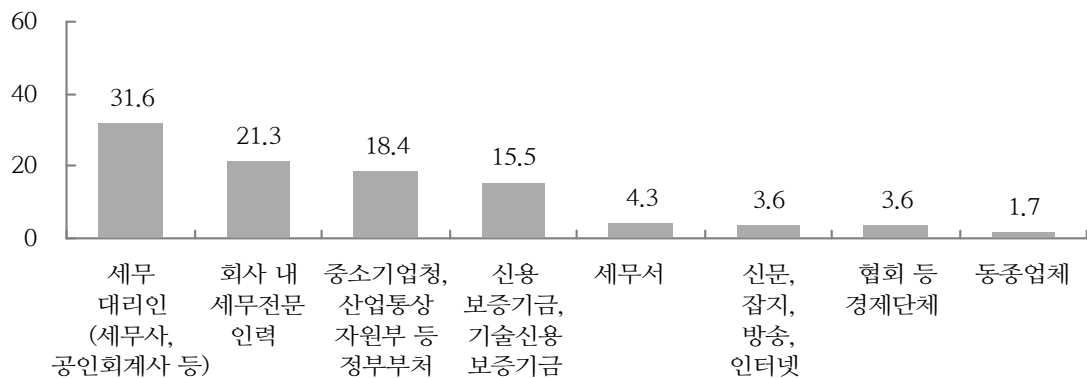
<표 VIII-12>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데 도움을 받은 곳

결 과	%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31.6
회사 내 세무전문인력	21.3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	18.4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15.5
세무서	4.3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3.6
협회 등 경제단체	3.6
동종업체	1.7
계(n=414)	100.0

문) 그렇다면 귀사가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누구의 도움이 가장 컸습니까?

[그림 VIII-9]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데 도움을 받은 곳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 업체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응답(53.3%)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자산규모별로는 9분위인 업체에서는 ‘회사 내 세무전문인력’에 대한 응답(45.7%)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코스닥 상장기업에서는 비상장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9.6%)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8.2%)에 대한 응답이 낮게 나타남
- 세제혜택을 받는 기업에서는 ‘회사 내 세무전문인력’이 14.0%로 나타난 반면,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가 25.6%로 나타나 비수혜 기업과 차이를 보임

나)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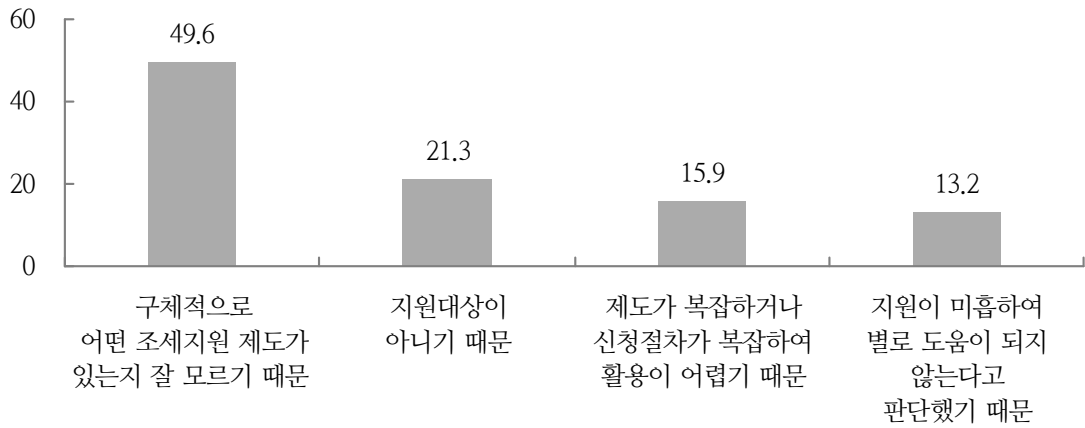
-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업체(n=516)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구체적으로 어떤 조세지원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 49.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이 21.3%로 나타남

<표 VIII-13>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문) 그렇다면 귀사가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 과	%
구체적으로 어떤 조세지원제도가 있는지 잘모르기 때문	49.6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	21.3
제도가 복잡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활용이 어렵기 때문	15.9
지원이 미흡하여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	13.2
계(n=516)	100.0

[그림 VIII-10]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3분위인 업체에서는 ‘제도가 복잡하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활용이 어렵기 때문’(29.1%)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9분위인 업체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45.9%)이라는 응답이 다른 업체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세지원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 40.7%로 낮게 나타난 반면, ‘제도가 복잡하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9.6%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세제 혜택 수혜업체에서 현재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외의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세지원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응답(70.4%)이 높게 나타난 반면,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응답(11.1%)은 낮게 나타남
- 코스닥 상장 여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2)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인지 및 활용 여부

- (인지 여부)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소득세/법인세 50% 감면’이 46.7%로 인지도가 가장 높았음
- 그다음으로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36.8%),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소득세 분할납부 및 과세방식 선택’(23.2%),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2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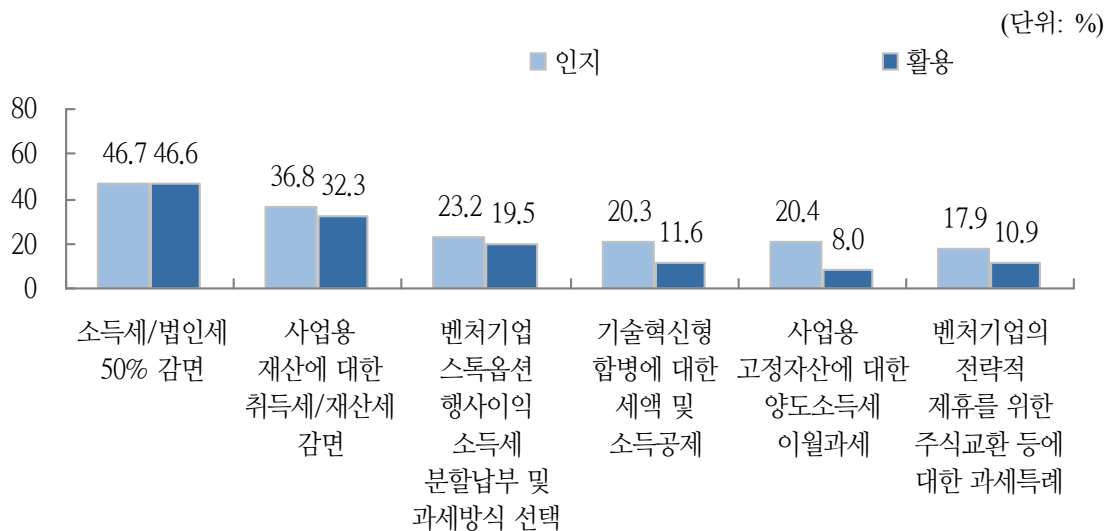
- (활용 여부) 조세지원제도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인지도와 활용도 순위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가운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한 활용도(8.0%)는 다른 제도에 비해 낮게 나타남

<표 VIII-14>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인지 및 활용 여부

문) 귀사는 다음과 같은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오늘 이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또한 다음과 같은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각각의 제도에 대한 인지·활용 여부에 대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결 과	인지 %	활용 %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46.7	46.6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36.8	32.3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소득세 분할납부 및 과세방식 선택	23.2	19.5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 및 소득공제	20.3	11.6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20.4	8.0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17.9	10.9

[그림 VIII-11]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인지 및 활용 여부



- **(인지 여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업체에서 ‘소득세/법인세 50% 감면’과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한 인지도 (각각 63.0%, 27.0%)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자산규모가 3분위인 업체에서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모두 30%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임
  - 세제혜택을 받는 기업에서도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특히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소득세 분할납부 및 과세방식 선택’ 및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 및 소득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도에서 비수혜 기업보다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 코스닥 상장 여부별로는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활용 여부)**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 여부에 대해 도소매업 업체에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50% 감면’ 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제도에서 다른 업체보다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산규모별로는 7분위인 업체에서 다른 업체보다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활용도가 높게 나타남
  - 코스닥 상장기업에서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소득세 분할납부 및 과세방식 선택’(27.3%) 및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16.1%)의 활용도가 비상장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세제혜택 수혜 기업의 활용도는 인지도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소득세/법인세 50% 감면’에 대한 활용도가 82.9%로 높게 나타남 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5.0%),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5.3%)에 대한 활용도는 인지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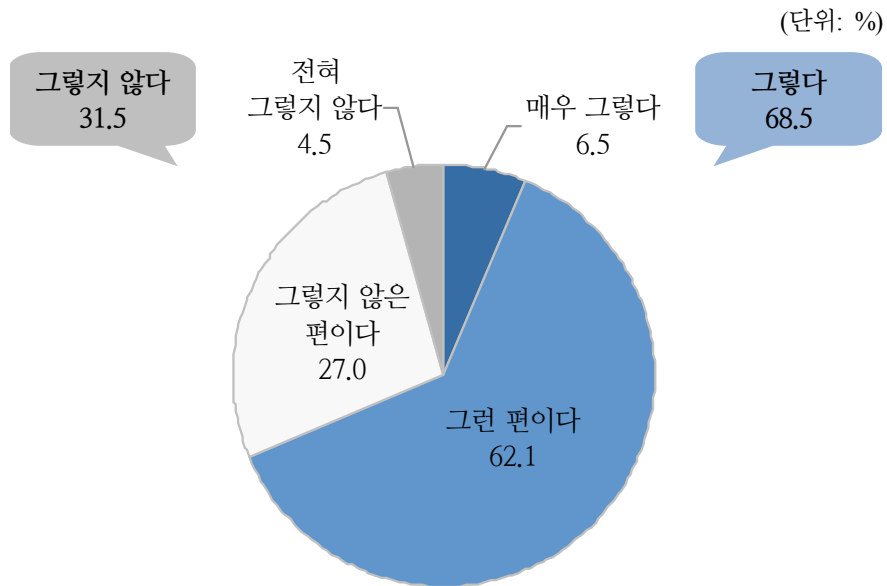
### 3)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효과 여부

-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에 대해 ‘효과가 있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응답이 68.5%로 ‘효과가 없다’(그렇지 않은 편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31.5%)보다 높게 나타남

<표 VIII-15>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효과 여부

문)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전반적인 벤처산업의 발전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
매우 그렇다	6.5
그런 편이다	62.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7.0
전혀 그렇지 않다	4.5
계(n=975)	100.0

[그림 VIII-12]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효과 여부



-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업체에서 다른 업체에 비해 긍정적인 의견(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세제혜택을 받는 기업에서는 ‘효과가 있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응답이 75.7%로 비수혜 기업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자산규모와 코스닥 상장 여부별로는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가)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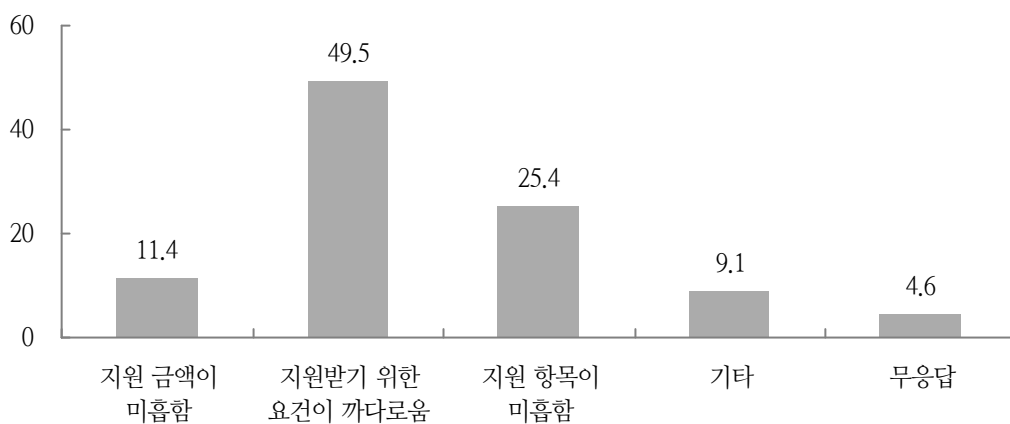
□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없다는 응답자(n=307)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지원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는 의견이 49.5%로 가장 많았으며, ‘지원 항목이 미흡하다’는 의견은 25.4%로 나타남

<표 VIII-16>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문) 귀사가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 과	%
지원 금액이 미흡함	11.4
지원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움	49.5
지원 항목이 미흡함	25.4
기타	9.1
무응답	4.6
계(n=307)	100.0

[그림 VIII-13]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 업종별 특성으로 보면 도소매업 업체에서 ‘지원 항목이 미흡하다’는 응답이 43.3%로 다른 업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산규모별로는 4분위 업체에서 ‘지원 금액이 미흡하다’는 응답이 2.8%로 가장 낮게 나왔으며, 6분위 업체서는 ‘지원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는 응답이 60.7%로 다른 업체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코스닥 상장기업과 세제혜택 수혜기업에서는 ‘지원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는 이유가 각각 36.4%, 35.3%로 비상장, 비수혜 기업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임

#### 4)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

-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폐지하고 실효성이 높은 제도의 지원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6.5%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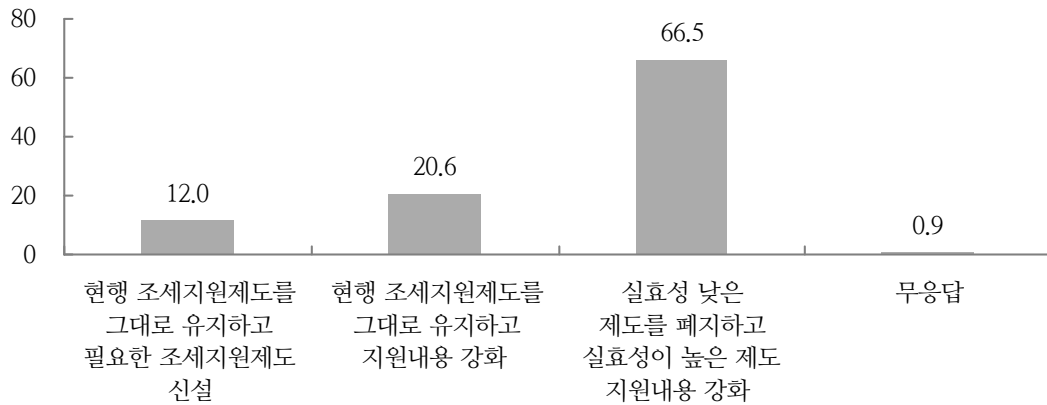
<표 VIII-17>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

문) 귀사는 다음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향 중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하나만 선택해주시시오.	
결 과	%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필요한 조세지원제도 신설	12.0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지원내용 강화	20.6
실효성 낮은 제도를 폐지하고 실효성이 높은 제도 지원내용 강화	66.5
무응답	0.9
계(n=975)	100.0

-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로는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소득세 분할납부 및 과세 방식 선택,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 및 소득공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있음
  -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 업종, 자산 규모, 코스닥 상장 여부, 세제혜택 여부별로는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그림 VIII-14]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

(단위 : %)



가)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중 개선사항

- (1순위 기준)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중 개선사항에 대해 1순위 기준으로는 ‘자격요건 완화 및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가 4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1+2+3순위 기준) 중복 응답 기준으로 보면 1순위 기준과 달리 ‘신청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가 59.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자격요건 완화 및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58.2%), ‘감면율 및 감면기간 확대’(5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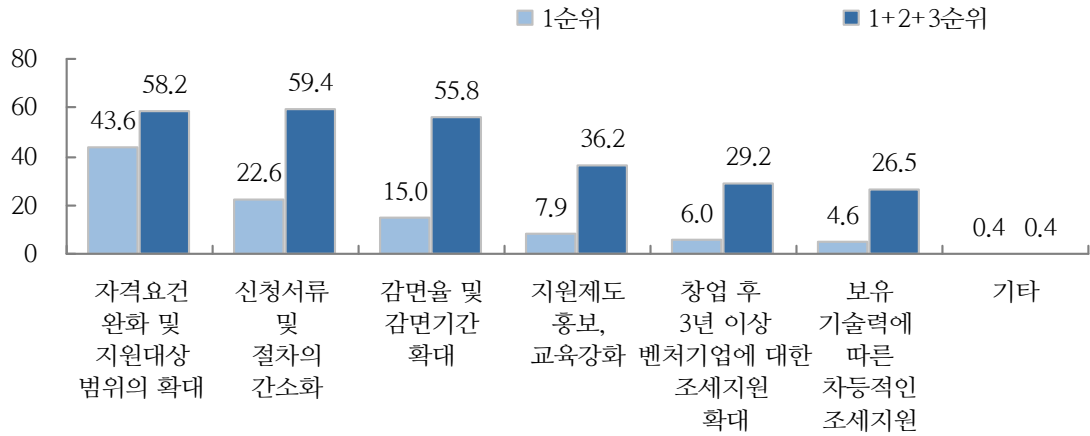
<표 VIII-18>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중 개선사항

문) 귀사는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선 필요성이 높은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주시요.

결 과	1순위 %	1+2+3순위 %
자격요건 완화 및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	43.6	58.2
신청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	22.6	59.4
감면율 및 감면기간 확대	15.0	55.8
지원제도 홍보, 교육강화	7.9	36.2
창업 후 3년 이상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6.0	29.2
보유 기술력에 따른 차등적인 조세지원	4.6	26.5
기타	0.4	0.4

[그림 VIII-15]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중 개선사항

(단위: %)



- **(1순위 기준)**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중 개선사항에 대해 업종, 자산 규모, 코스닥 상장 여부, 세제혜택 여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1+2+3순위 기준)** 자산규모별로 살펴보면, 4분위인 업체에서 ‘신청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와 ‘자격요건 완화 및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에 대한 응답(각각 70.2%, 72.6%)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보유기술력에 따른 차등적인 조세지원’에 대한 응답(15.5%)은 낮게 나타남
  - 10분위인 업체에서는 ‘자격요건 완화 및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와 ‘감면율 및 감면기간 확대’에 대한 응답(각각 76.5%, 70.6%)이 다른 업체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에서 ‘자격요건 완화 및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가 64.8%, ‘창업 후 3년 이상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가 38.9%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감면율 및 감면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46.3%로 다소 낮게 나타남
  - 코스닥 상장기업에서는 ‘신청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66.1%), ‘자격요건 완화 및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64.4%)가 특히 높은 비율을 보임
  - 세제혜택을 받는 기업에서는 ‘보유 기술력에 따른 차등적인 조세지원’에 대한 응답이 18.8%로 비수혜 기업보다 낮게 나타남

### 5)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에 대한 세법 개정안 효과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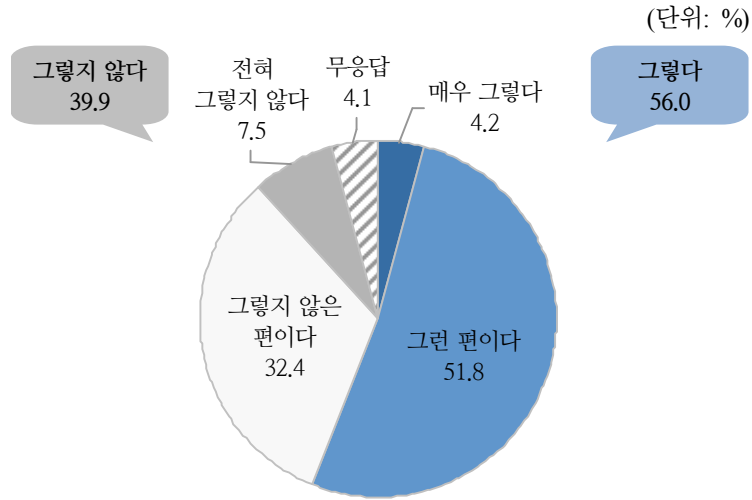
-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에 대한 세법 개정안 효과에 대해 ‘효과가 있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56.0%)으로 나타남
- 위 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20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벤처기업 출자액에 대한 5% 세액공제를 핵심으로 하는 벤처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임

<표 VIII-19>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에 대한 세법 개정안 효과 여부

<p>문) 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벤처기업 출자액에 대한 5% 세액공제를 핵심으로 하는 벤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법 개정안이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에 실질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p>		
결 과	%	
매우 그렇다	4.2	⌈ 56.0
그런 편이다	51.8	
그렇지 않은 편이다	32.4	⌋ 39.9
전혀 그렇지 않다	7.5	
무응답	4.1	
계(n=975)	100.0	

- 자산규모별 특성으로 보면 5분위인 업체에서 긍정적인 응답(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이 70.1%로 다른 업체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업종별로는 기타 업종에서 ‘효과가 있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응답이 49.3%로 다른 업종에 비해 낮게 나타남(단, 무응답 비율이 8.7%)
- 세제혜택을 수혜받는 기업은 64.3%가 ‘효과가 있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고 응답하였으며, 코스닥 상장 여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그림 VIII-16]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에 대한  
세법 개정안 효과 여부



## 5. 벤처캐피탈 조사결과 분석

### 가. 기업개요

#### 1) 설립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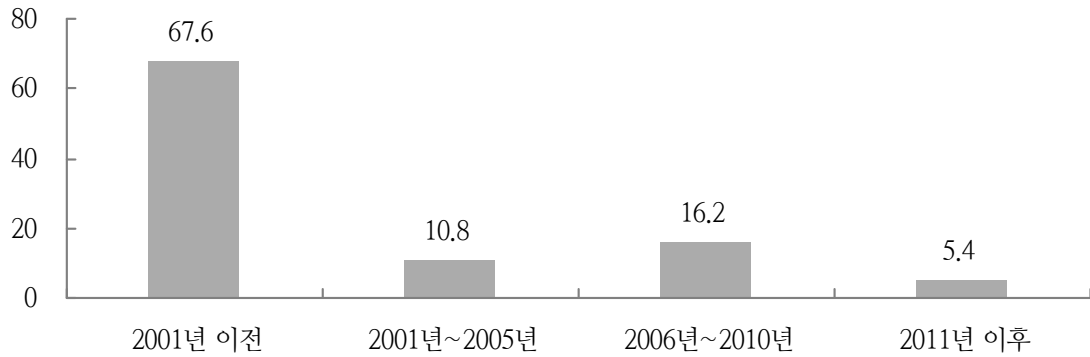
- 본 조사에 참여한 37개 벤처캐피탈 업체의 설립연도는 '2001년 이전'(67.6%)인 업체가 가장 많았음

<표 VIII-20> 설립연도

문) 귀사의 설립연도는 언제입니까?	
결 과	%
2001년 이전	67.6
2001년~2005년	10.8
2006년~2010년	16.2
2011년 이후	5.4
계(n=37)	100.0

[그림 VIII-17] 설립연도

(단위: %)



## 2) 주요 투자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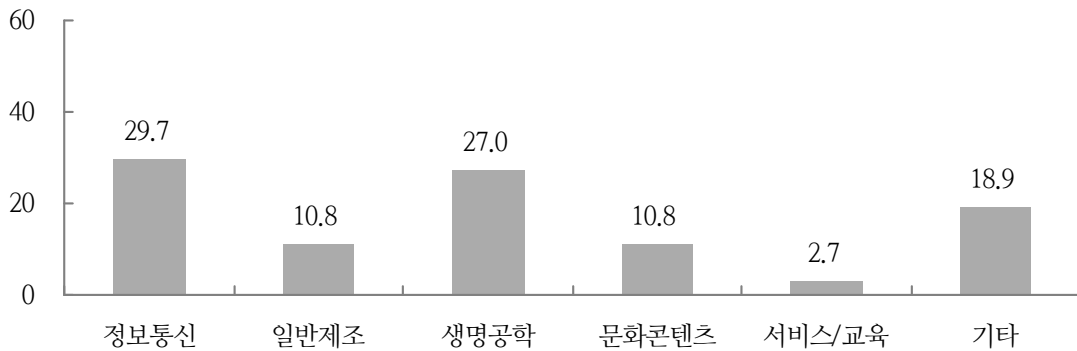
- 주요 투자업종으로는 ‘정보통신’ 업종이 29.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생명공학’(2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VIII-21> 주요 투자업종

문) 귀사의 주된 투자업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결 과	%
정보통신	29.7
일반제조	10.8
생명공학	27.0
문화콘텐츠	10.8
서비스/교육	2.7
기타	18.9
계(n=37)	100.0

[그림 VIII-18] 주요 투자업종

(단위: %)



### 3) 주요 투자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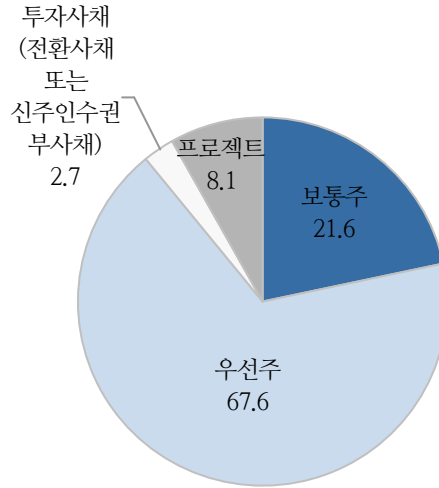
- 주요 투자유형은 ‘우선주’라는 응답이 67.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보통주’가 21.6%로 나타남

<표 VIII-22> 주요 투자수단

문) 귀사의 주된 투자수단(투자유형)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수단이라면 금액이 가장 높은 투자수단)	
결 과	%
보통주	21.6
우선주	67.6
투자사채(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2.7
프로젝트	8.1
계(n=37)	100.0

[그림 VIII-19] 주요 투자수단

(단위: %)



#### 4) 투자하는 기업의 주된 업력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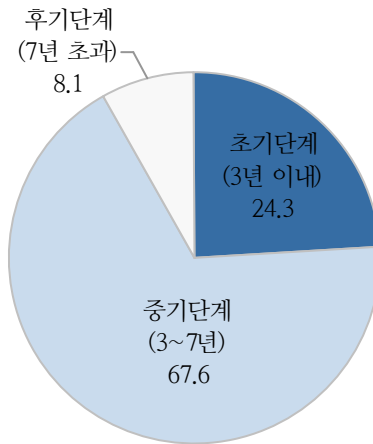
- 벤처캐피탈 업체가 투자하는 기업의 주된 업력은 ‘중기단계(3년~7년)’가 67.6%, ‘초기단계(3년 이내)’가 24.3%, ‘후기단계(7년 초과)’가 8.1%인 것으로 나타남

<표 VIII-23> 투자하는 기업의 주된 업력 단계

문) 현재 귀사가 투자하는 기업들의 주된(투자금액 기준) 업력은 어느 단계에 포함되니까?	
결 과	%
초기단계(3년 이내)	24.3
중기단계(3~7년)	67.6
후기단계(7년 초과)	8.1
계(n=37)	100.0

[그림 VIII-20] 투자하는 기업의 주된 업력 단계

(단위: %)



### 5) 주요 회수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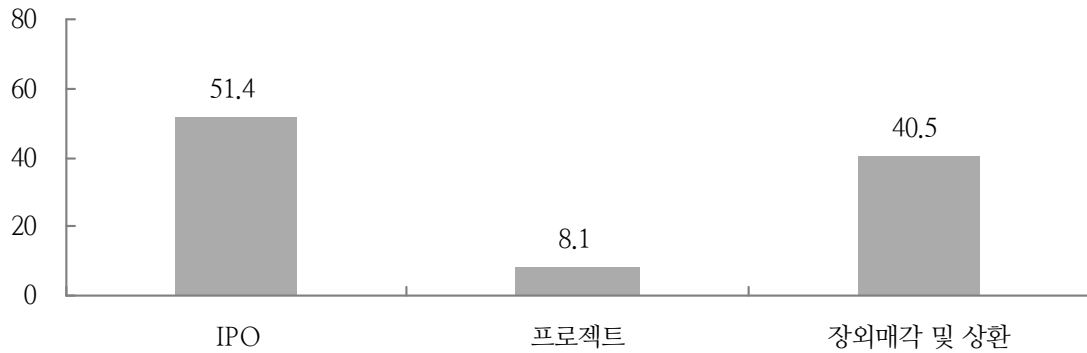
- 주요 회수방식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51.4%)의 벤처캐피탈 업체가 ‘IPO’ 방식으로 회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장외매각 및 상환’(40.5%) 방식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VIII-24> 주요 회수방식

문) 회수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였습니다는가?(회수하지 않은 경우 회수 예정 수단)	
결 과	%
IPO	51.4
프로젝트	8.1
장외매각 및 상환	40.5
계(n=37)	100.0

[그림 VIII-21] 주요 회수방식

(단위: %)



가) 평균 회수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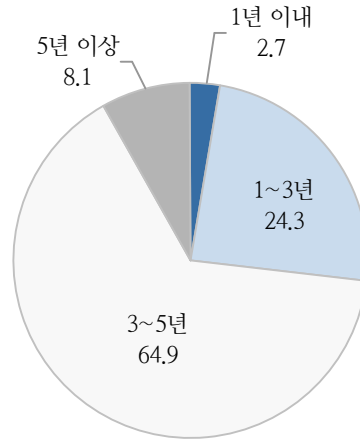
- 투자시점부터의 평균 회수기간은 ‘3년~5년’이 64.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1~3년’이 24.3%, ‘5년 이상’이 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VIII-25> 평균 회수기간

문) 투자시점부터의 평균 회수기간은 얼마입니까?(미회수의 경우 예상기간)	
결 과	%
1년 이내	2.7
1~3년	24.3
3~5년	64.9
5년 이상	8.1
계(n=37)	100.0

[그림 VIII-22] 평균 회수기간

(단위: %)



## 나. 벤처캐피탈 지원정책 전반

### 1) 벤처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효과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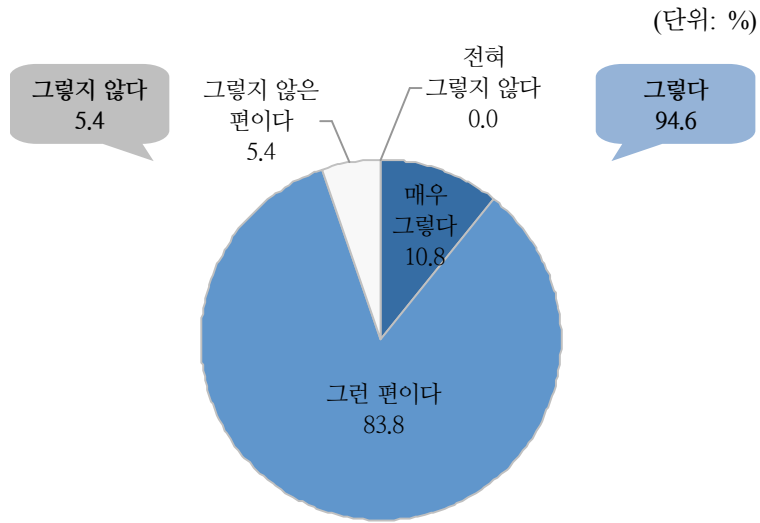
- 벤처캐피탈 업체를 대상으로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효과를 물어본 결과, ‘효과가 있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응답이 대부분(94.6%)으로 나타남

<표 VIII-26> 벤처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효과 여부

문) 정부의 벤처지원제도가 전반적인 벤처산업의 발전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
매우 그렇다	10.8
그런 편이다	83.8
그렇지 않은 편이다	5.4
전혀 그렇지 않다	0.0
계(n=37)	100.0

- 정부의 벤처지원제도에는 창업지원제도, 금융지원제도, 조세지원제도, 입지지원제도, 특허지원제도, 마케팅지원제도 등이 있음

[그림 VIII-23] 벤처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효과 여부



## 2) 확대지원이 가장 필요한 벤처기업 지원정책

- 벤처기업 지원정책 중 가장 확대지원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제도’(40.5%)가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창업지원제도’가 29.7%, ‘조세지원제도’가 2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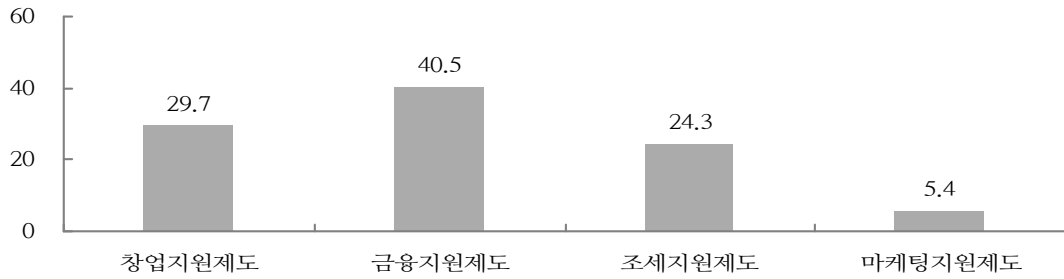
<표 VIII-27> 확대지원이 가장 필요한 벤처기업 지원정책

문) 우리나라 벤처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벤처기업 지원 정책 중 가장 확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결 과	%
창업지원제도	29.7
금융지원제도	40.5
조세지원제도	24.3
입지지원제도	0.0
특허지원제도	0.0
마케팅지원제도	5.4
계(n=37)	100.0

[그림 VIII-24] 확대지원이 가장 필요한 벤처기업 지원정책

(단위: %)



### 다.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정책

#### 1)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활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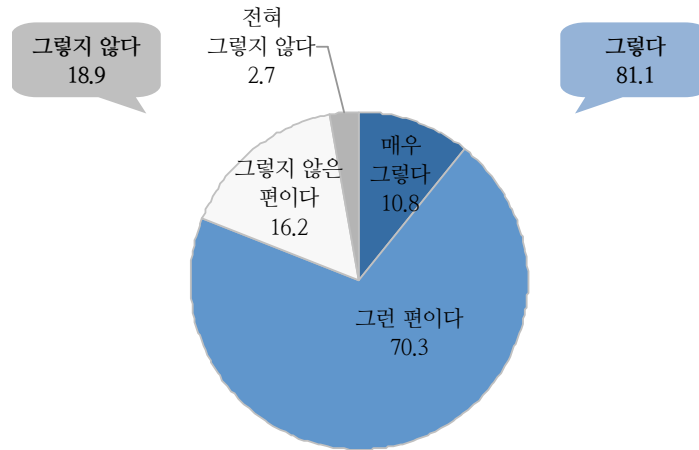
-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활용도를 물어본 결과, ‘활용하고 있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응답이 81.1%로 나타남
-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현물출자이익을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과세, 중소기업창투자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중소기업창투자 등의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소기업창투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한 주식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매각대상 기업의 주식양도차익을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점까지 과세이연 등이 있음

<표 VIII-28>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활용 정도

문) 귀사는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
매우 그렇다	10.8
그런 편이다	70.3
그렇지 않은 편이다	16.2
전혀 그렇지 않다	2.7
계(n=37)	100.0

[그림 VIII-25]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활용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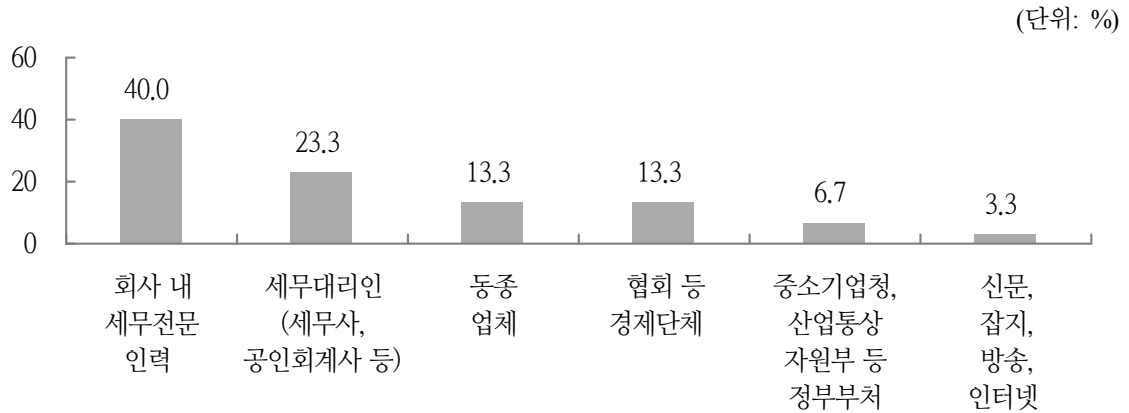
가)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데 도움을 받은 곳

□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업체(n=30)들은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데 주로 ‘회사 내 세무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음

<표 VIII-29>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데 도움을 받은 곳

문) 그렇다면 귀사가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누구의 도움이 가장 컸습니까?	
결 과	%
회사 내 세무전문인력	40.0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23.3
동종업체	13.3
협회 등 경제단체	13.3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	6.7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3.3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0.0
세무서	0.0
계(n=30)	100.0

[그림 VIII-26]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데 도움을 받은 곳



나)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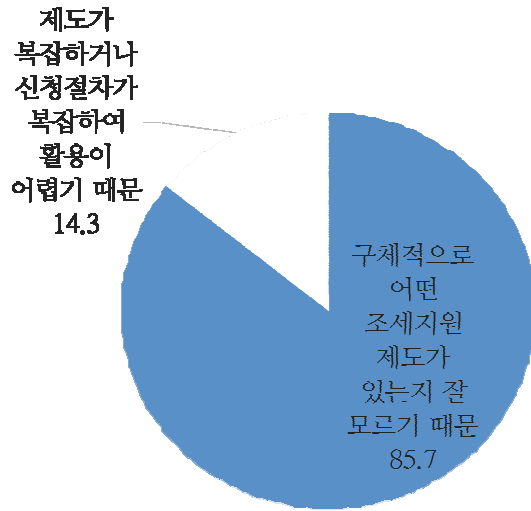
-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업체(n=7)는 그 이유로 ‘구체적으로 어떤 조세지원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의견(85.7%)을 가장 많이 보였음

<표 VIII-30>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문) 그렇다면 귀사가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 과	%
구체적으로 어떤 조세지원제도가 있는지 잘모르기 때문	85.7
제도가 복잡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활용이 어렵기 때문	14.3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	0.0
지원이 미흡하여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	0.0
계(n=7)	100.0

[그림 VIII-27]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2)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인지 및 활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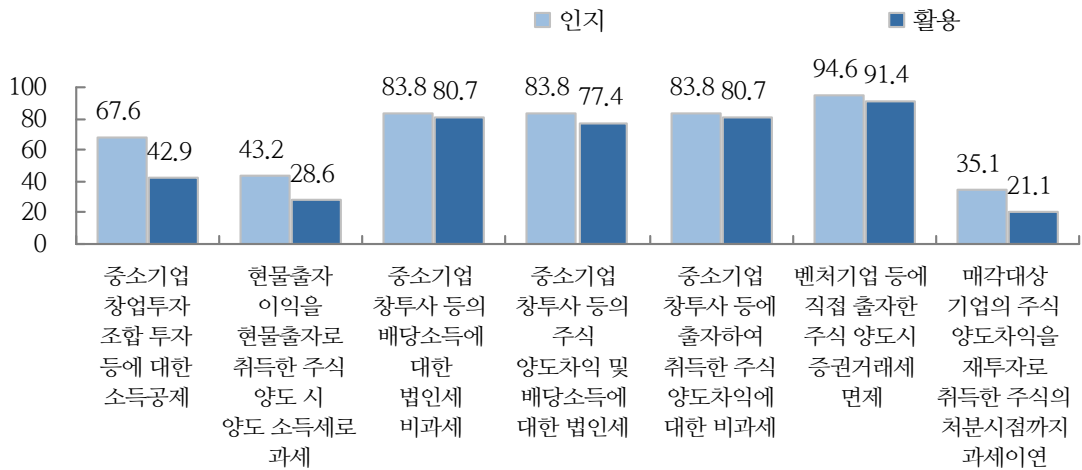
- **(인지 여부)** 벤처캐피탈의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인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한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에 대해서 대부분(94.6%)의 업체 담당자들이 인지하고 있었음
  - 그다음으로 ‘중소기업 창투사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중소기업 창투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소기업 창투사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각각 83.8%로 나타남
  - 반면 ‘매각대상 기업의 주식 양도차익을 재투자자 취득한 주식의 처분’에 대한 인지도(35.1%)는 다른 제도에 비해 낮게 나타남
  
- **(활용 여부)**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활용 여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지 여부 순위와 동일한 경향을 보임
  -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한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는 인지도와 마찬가지로 활용도가 91.4%로 높게 나타났으며, ‘매각대상 기업의 주식 양도차익을 재투자자 취득한 주식의 처분’에 대한 활용도(21.1%) 또한 다른 제도에 비해 낮게 나타남

<표 VIII-31>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인지 및 활용 여부

결 과	인지 %	활용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투자 등에 대한 소득 공제	67.6	42.9
현물출자이익을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과세	43.2	28.6
중소기업창업투자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83.8	80.7
중소기업창업투자 등의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83.8	77.4
중소기업창업투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83.8	80.7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한 주식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94.6	91.4
매각대상 기업의 주식양도차익을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점까지 과세이연	35.1	21.1

[그림 VIII-28]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인지 및 활용 여부

(단위: %)



### 3)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효과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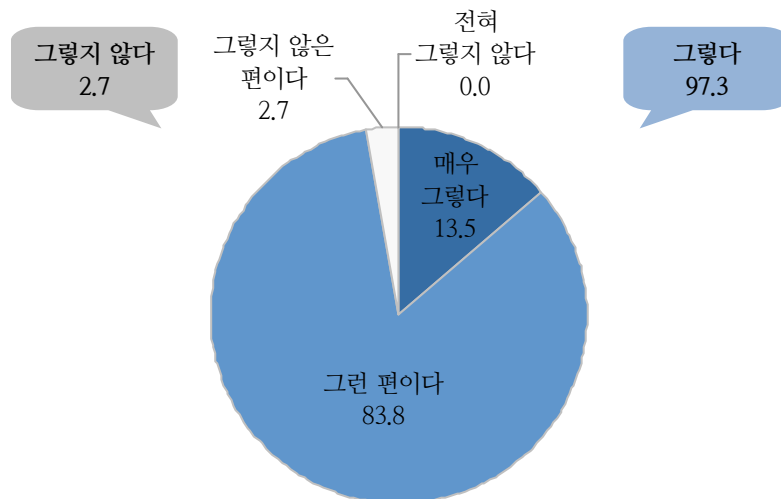
□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에 대해 ‘효과가 있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는 응답이 거의 대부분(97.3%)으로 나타남

<표 VIII-32>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효과 여부

문)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전반적인 벤처산업의 발전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
매우 그렇다	13.5
그런 편이다	83.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7
전혀 그렇지 않다	0.0
계(n=37)	100.0

[그림 VIII-29]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효과 여부

(단위: %)



가)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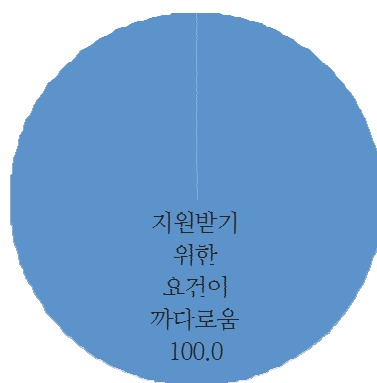
-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없다는 응답자(n=1)는 그 이유로 ‘지원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는 의견으로 보임

<표 VIII-33>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문) 귀사가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 과	%
지원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움	100.0
지원 금액이 미흡함	0.0
지원 항목이 미흡함	0.0
계(n=1)	100.0

[그림 VIII-30]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 4)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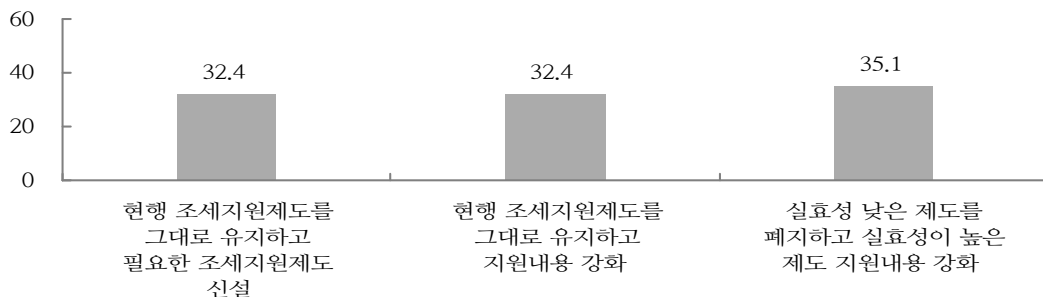
-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폐지하고 실효성이 높은 제도의 지원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5.1%로 나타났으며,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필요한 조세지원제도 신설 또는 지원내용 강화’에 대한 의견은 각각 32.4%로 나타남
-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현물출자이익을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과세, 중소기업창투자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중소기업창투자 등의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소기업창투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한 주식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매각대상 기업의 주식양도차익을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점까지 과세이연 등이 있음

<표 VIII-34>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향

문) 귀사는 다음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향 중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결 과		%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필요한 조세지원제도 신설		32.4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지원내용 강화		32.4
실효성 낮은 제도를 폐지하고 실효성이 높은 제도 지원내용 강화		35.1
계(n=37)		100.0

[그림 VIII-31]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향

(단위: %)



가)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중 개선사항

- (1순위 기준)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중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완화 및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에 대한 응답률이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1+2+3순위 기준) 중복 응답 기준으로는 ‘자격요건 완화 및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와 ‘감면율 및 감면기간 확대’가 각각 88.0%로 나타났으며, ‘신청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는 76.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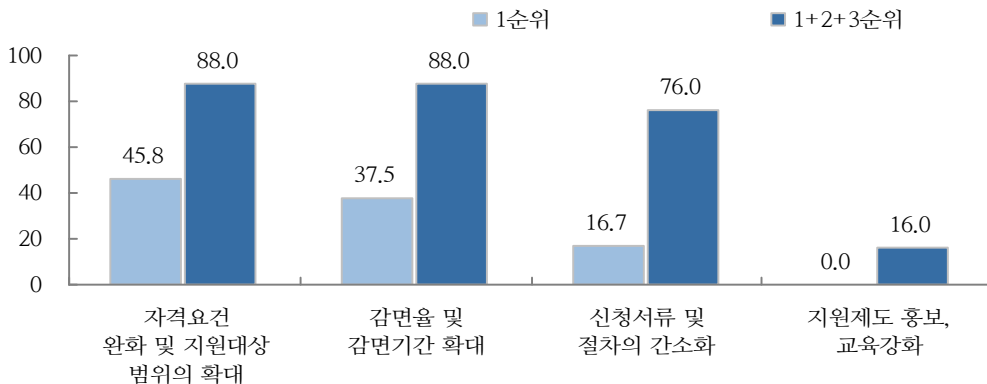
<표 VIII-35>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중 개선사항

결 과	1순위	1+2+3순위
	%	%
자격요건 완화 및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	45.8	88.0
감면율 및 감면기간 확대	37.5	88.0
신청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	16.7	76.0
지원제도 홍보, 교육 강화	0.0	16.0
창업 후 3년 이상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0.0	0.0
보유 기술력에 따른 차등적인 조세지원	0.0	0.0

문) 귀사는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선 필요성이 높은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주시요.

[그림 VIII-32]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중 개선사항

(단위: %)



### 5)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에 대한 세법 개정안 효과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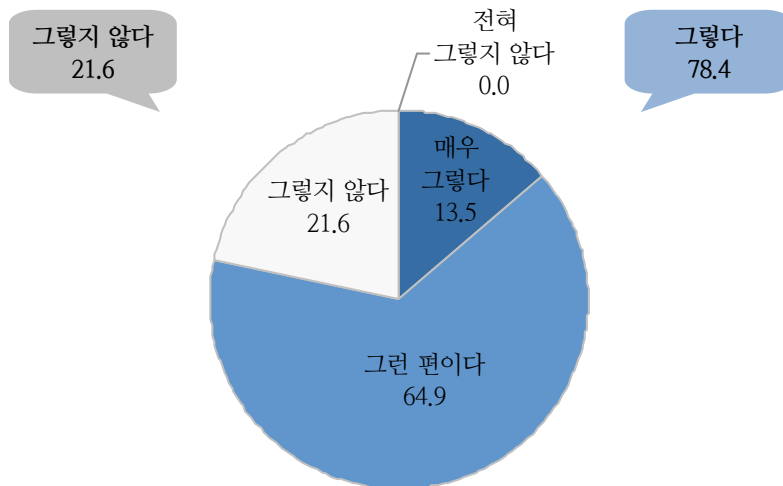
- 본 조사에 참여한 벤처캐피탈 업체의 78.4%가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에 대한 세법 개정안 효과에 대해 ‘효과가 있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고 응답함
- 위 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20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벤처기업 출자액에 대한 5% 세액공제를 핵심으로 하는 벤처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임

<표 VIII-36>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에 대한 세법 개정안 효과 여부

<p>문) 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벤처캐피탈 출자액에 대한 5% 세액공제를 핵심으로 하는 벤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법 개정안이 벤처캐피탈 투자 활성화에 실질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p>		
결 과		%
매우 그렇다	13.5	78.4
그런 편이다	64.9	
그렇지 않은 편이다	21.6	21.6
전혀 그렇지 않다	0.0	
계(n=37)		100.0

[그림 VIII-33]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에 대한 세법 개정안 효과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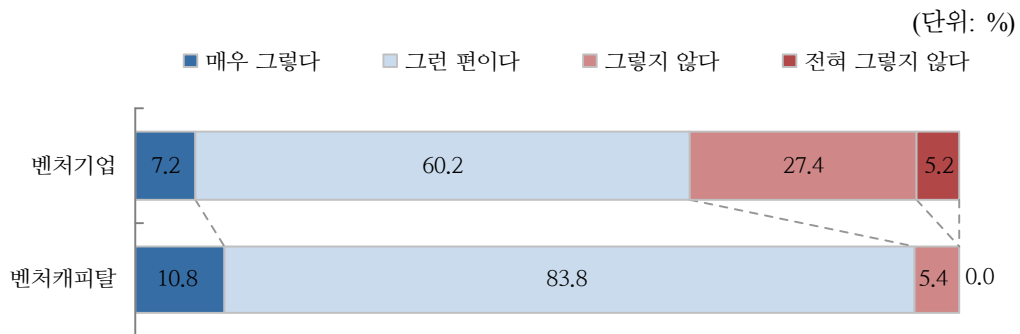


## 6. 조사 결과 요약

### 가. 벤처기업 지원정책 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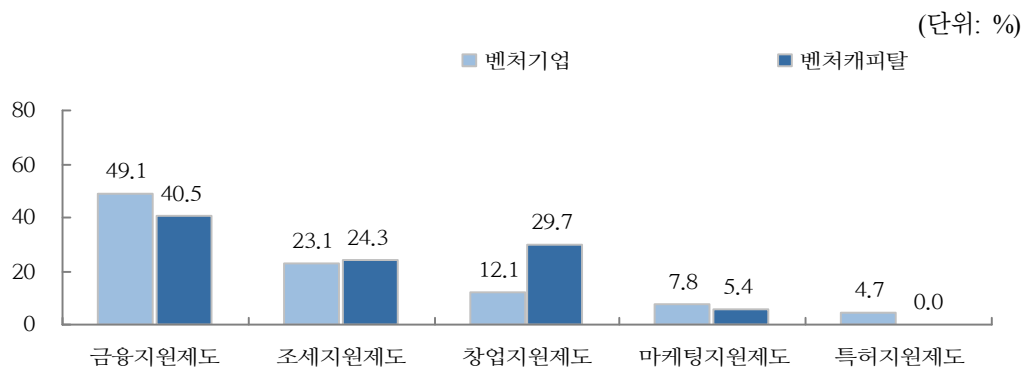
- 벤처지원제도가 전반적인 벤처산업 발전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벤처기업 (67.4%)과 벤처캐피탈(94.6%) 모두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벤처지원제도에는 창업지원제도, 금융지원제도, 조세지원제도, 입지지원제도, 특허지원제도, 마케팅지원제도 등이 있음

[그림 VIII-34] 벤처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효과 여부



- 벤처기업 지원정책 중 확대지원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모두 ‘금융지원제도’(각각 49.1%, 40.5%)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그다음으로 벤처기업은 ‘조세지원제도’(23.1%), 벤처캐피탈은 ‘창업지원제도’(29.7%)에 대한 응답이 많았음

[그림 VIII-35] 확대지원이 가장 필요한 벤처기업 지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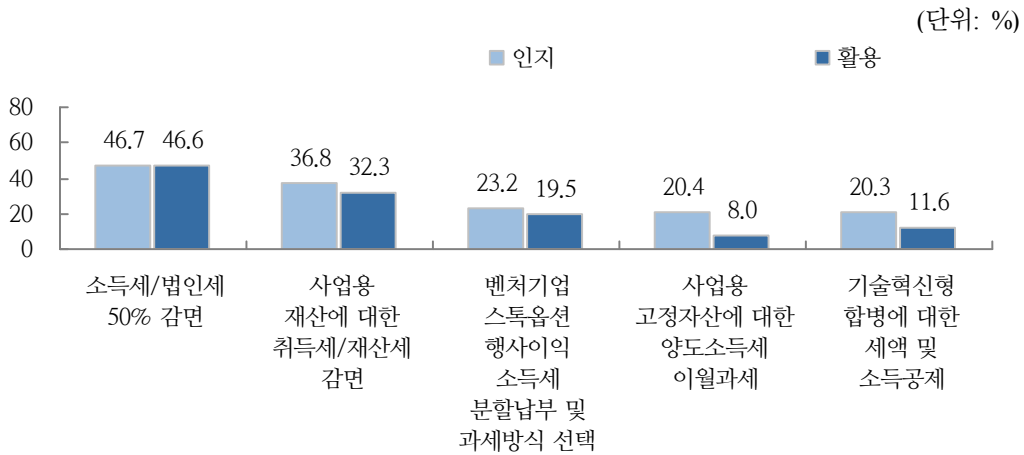


※ 상위 5개 항목만 제시

## 나. 조세지원제도 인지 및 활용 여부

-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인지 및 활용도를 살펴보면,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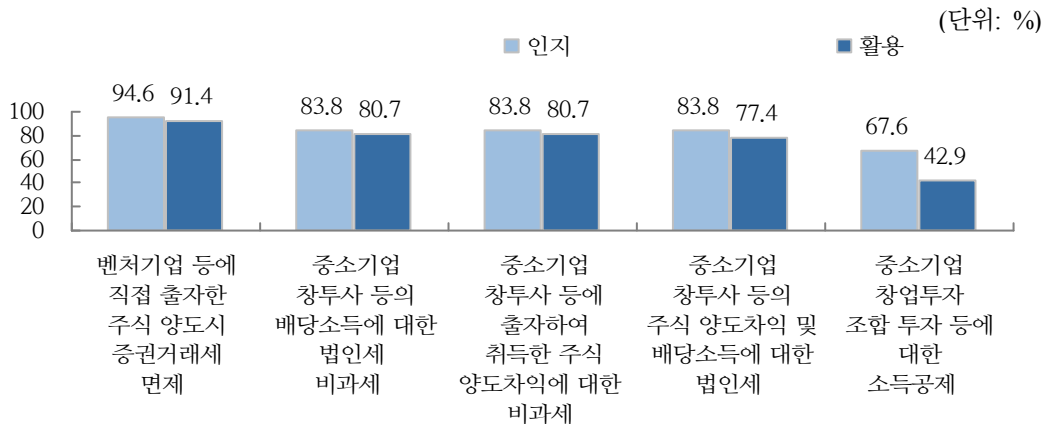
[그림 VIII-36]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인지 및 활용 여부



※ 상위 5개 항목만 제시

-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인지도 및 활용도를 보였으며, 특히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한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VIII-37]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인지 및 활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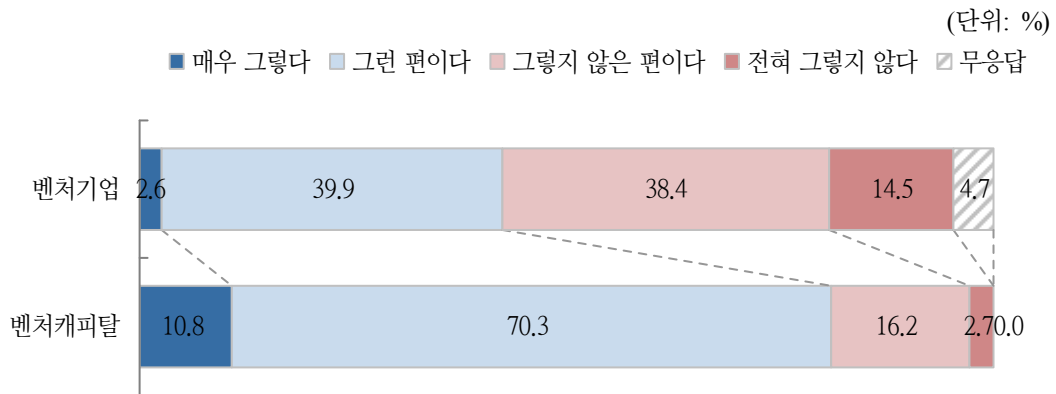


※ 상위 5개 항목만 제시

#### 다. 조세지원제도 활용 및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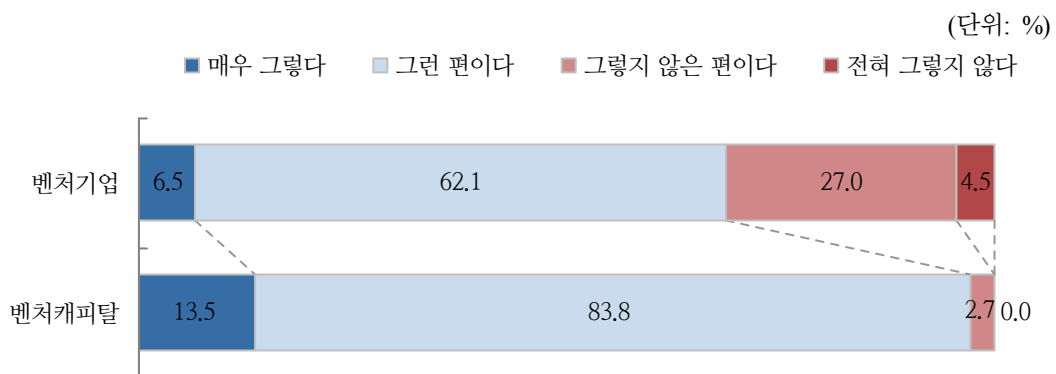
-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벤처기업에서는 ‘활용한다’는 의견이 ‘활용하지 않는다’ 의견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난 반면, 벤처캐피탈에서는 80% 이상이 ‘활용한다’고 응답함.

[그림 VIII-38] 벤처기업/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활용 정도



-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은 ‘효과가 있다’는 응답비율이 ‘효과가 없다’는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벤처캐피탈은 거의 대부분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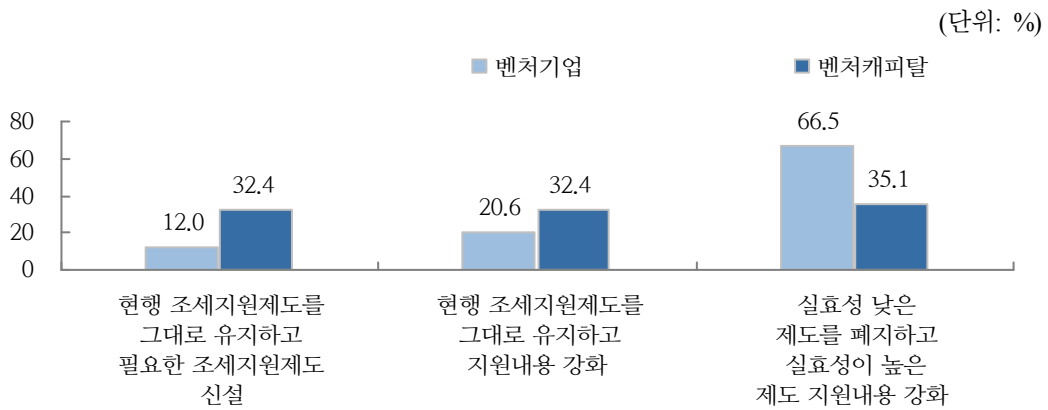
[그림 VIII-39] 벤처기업/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효과 여부



## 라.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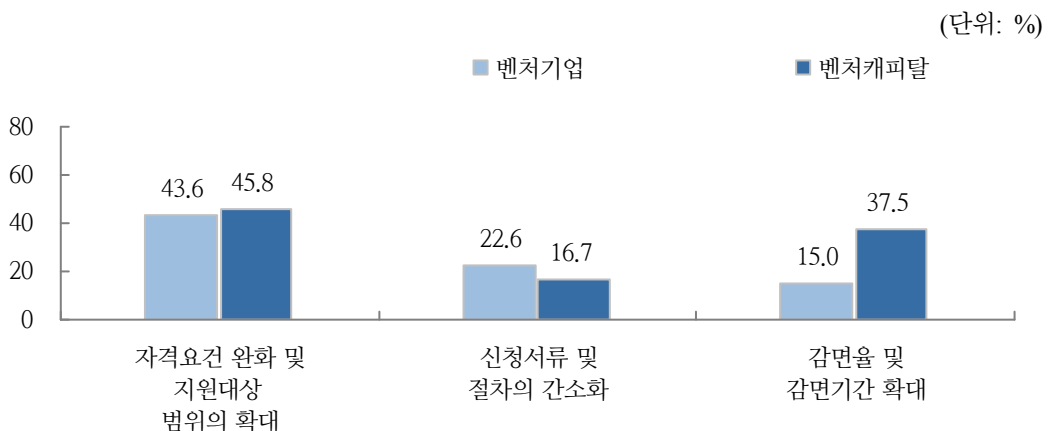
-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 벤처기업에서는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폐지하고, 실효성이 높은 제도의 지원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반면 벤처캐피탈에서는 3가지 응답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VIII-40] 현행 조세지원제도 개선사항



-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중 개선사항으로는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모두 ‘자격요건 완화 및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1순위 기준)

[그림 VIII-41]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중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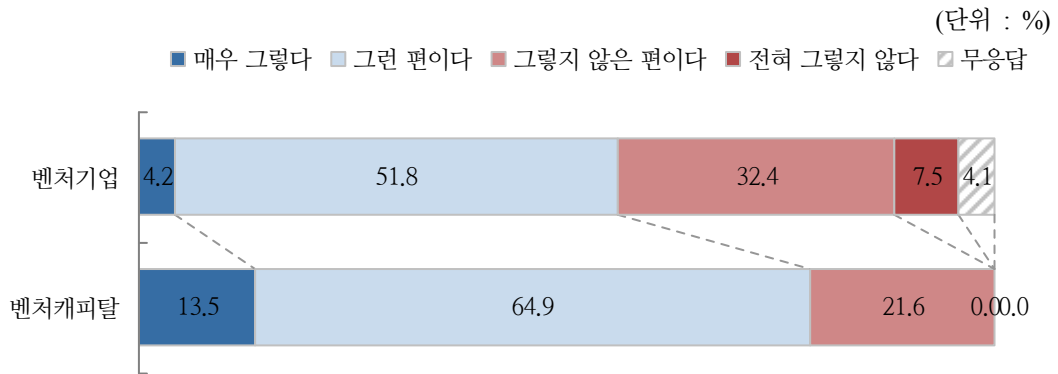


※ 상위 3개 항목만 제시, 1순위 기준

### 마.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에 대한 세법 개정안 효과 여부

□ 세법개정안을 통한 벤처 투자 활성화 방안의 효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벤처기업보다 벤처캐피탈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VIII-42]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에 대한 세법 개정안 효과 여부





## IX. 결 론





## IX. 결 론

### 1. 현황

-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면서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벤처산업의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심층평가함으로써 향후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벤처기업은 “위험은 높으나 성공 시 기대수익이 큰 독자적인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신규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신생 중소기업”을 말함
  - 2016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벤처기업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31,260개이고, 매출액 합계가 약 215조 9,000억원 규모로 집계되어 매출액 순위를 고려하면 벤처기업계의 매출액이 재계 2위에 해당함
  - 2015년 매출액 증가율은 8.6%로 대기업(4.7% 감소)이나 중소기업(8.0%)보다 높은 수준이며, 이러한 추이가 2009~2015년까지 이어져옴
  - 국내 벤처기업은 매출액의 2.4%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중소기업(0.7%)의 3.4배, 대기업(1.5%)의 1.6배 수준임
  - 2015년 기준, 전체 코스닥 상장기업(1,152개) 중 벤처 출신 기업 수는 781개로 2009년 이후 최대이며, 그 비중도 7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벤처기업이 코스닥시장의 핵심 기업군으로 자리매김
  
- (정부지원의 적절성) 벤처산업이 가진 성장성을 고려하여, 사업적 불확실성, 정보의 비대칭성, 기존 기업과의 경쟁의 한계로 인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대상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벤처산업의 특성상 독자적인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성공할 경우, 해당 산업 전반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지고 있어, 벤처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줌

## 2. 실증분석

- 벤처기업 총 1,678개사, 벤처캐피탈 총 324개사를 대상으로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조세지출 지원항목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항목 및 조세지출규모가 적어 조세지원을 통한 벤처산업의 극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는 NICE신용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NewKisValue Database를 이용하여 외부감사를 받는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조세지원제도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 및 정책적 효과를 살펴봄

### 가. 벤처기업

- **(조세지출실적)** 실적이 집계되는 항목은 3개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창업소기업 등에 세액감면을 지원하는 1개 항목에 불과하며, 2015년에 1개 항목에서 미미하나마 적용 실적이 나타남
- **(유효세율)** 창업벤처기업과 대응기업의 유효세율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2014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창업벤처기업의 유효세율이 가장 낮음
  - *t*-test결과, 창업벤처기업의 유효세율이 대응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세부담 완화의 효과가 있음을 보임
- **(경영성과)** 경영성과에 대해 *t*-test를 통하여 검정한 결과,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성이 대응기업 대비 성장성에서 우위를 보이거나, 수익성, 생산성, 건전성 측면에서는 경영성과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
  - 경영성과 분석을 위하여 비교대상이 되는 대응기업을 PMS(Propensity Matching Score)기법을 통해 총자산, 종업원 수, 매출증가율, 총자산이익률, 부채비율 등을 이용하여 추출하여 분류함
  - 대응기업은 창업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벤처중소기업, 비벤처중소기업, 대기업으로 분류

- 성장성은 자산증가율, 고용증가율, 매출증가율로 평가되며, 수익성은 총자산세전순이익률과 총자산당기순이익률, 생산성은 종업원 1인당 매출액, 건전성을 부채비율로 평가됨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제조업과 서비스업, ICT업종과 그 외 업종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서비스업과 ICT업종이 비교대상에 비해 부채비율과 생산성은 유의하게 낮으나 성장성, 수익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나. 벤처캐피탈

- (조세지출실적) 실적이 집계되는 항목은 7개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포함한 4개 항목에 불과함
- (유효세율) *t*-test 결과, 「벤처캐피탈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조항이 벤처캐피탈의 유효세율을 인하하여 세후이익을 증가시키므로 세부담 완화에는 효과가 있으나, 엄격한 비과세 요건으로 인하여 수혜받은 벤처캐피탈의 숫자가 적음
  -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액을 2009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5년 회복세로 돌아선 반면, 벤처캐피탈의 신규투자금액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벤처캐피탈의 신규투자 증가가 조세지원의 효과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음
- (경영성과)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IPO 성공 여부 및 이후 경영성과에 대해 *t*-test를 통하여 검정한 결과,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의 성장성이 대응기업보다 높은 반면, 생산성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벤처캐피탈의 두 가지 기능, 즉 자금제공과 경영지원 기능 중 경영지원 기능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함
  - 제조업과 서비스업, ICT업종과 그 외 업종으로 나누어 벤처캐피탈 투자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제조업과 ICT 외 분야에서는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IPO 이후 비투자기업에 비해 수익성이 더 낮음

-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서비스업과 ICT업종에 속한 투자기업 선별에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함

### 3. 설문조사

- 벤처기업 총 7,059개, 벤처캐피탈 총 57개의 모집단에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모두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높고, 확대지원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금융지원제도’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음
- (인지·활용도) 설문조사 결과, 벤처기업은 ‘소득세/법인세 감면’ 제도가 가장 인지 및 활용도가 높았으며,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한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개선사항)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모두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으로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폐지하고, 실효성이 높은 제도의 지원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개선사항으로는 ‘신청서류 및 절차 간소화’, ‘자격요건 완화 및 지원대상 범위 확대’, ‘감면을 및 감면기간 확대’ 등을 제시함

### 4. 제도 개선방안

- 본 연구는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실증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을 갖춘 조세지원제도의 정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재설정하고, 향후 벤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가.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

- 우리나라 벤처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조세지원제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이 있음

-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이 벤처투자자에 대한 간접 지원의 규모를 크게 앞지르고 있음
  - 2014년 기준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은 513억원 규모이며 벤처투자자에 대한 간접지원은 50억원 규모로, 약 10배에 달함
  - 벤처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정책적 목표가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창업초기 벤처기업 지원에 있다면 벤처기업에 직접지원보다는 벤처투자자에 대한 간접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음
-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지원항목의 숫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항목 및 조세지출규모가 적어 조세지원을 통한 벤처산업 성장의 한계가 있음
-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경우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조세지출실적이 미미하거나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불분명함
- 벤처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규모 역시 2014년 기준 총액이 50억원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증권거래세 면제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 공제가 전체 조세지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함

#### 나. 벤처캐피탈의 두 가지 역할 지원 강화

- 전문투자자인 벤처캐피탈이 자금조달과 경영지원의 두 가지 역할을 이행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설문조사 및 실증분석 결과가 벤처캐피탈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선별해 성장시키는 경영지원의 기능이 약하다는 것을 시사함
  - 그러나 자금제공원으로서 벤처캐피탈의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고, 최근 5년간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 실적이 정체 상태에 있어 지원실적이 부진한 이유 파악과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요구됨
    - 2014년 기준 벤처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50억원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총액 3조 1,831억원의 0.16%에 불과함
  - 벤처투자전문기관에 대한 조세지원 실적이 미진한 이유는 투자조합을 통한 간접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며, 창투자 회수이익 중 감면요건 충족분 비중이 낮은 것도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 실적이 부진한 다른 요인임

## 다. 엔젤투자자 및 기업의 투자 지원 확대

- 비전문투자자인 엔젤투자자와 기업 등을 포함한 벤처기업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금융지원제도의 확대를 요구하는 벤처기업의 수요를 국가나 기존 벤처캐피탈만으로 충족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벤처투자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민간참여 저조로, 정부 의존도가 높다는 점임
    - 정부기관 출자비중은 2007년 26.9%, 2009년 35.8%, 2011년 34.4%, 2013년 45.2%, 2014년 40.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효과성 실증분석 결과, 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가 엔젤투자 증가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 만큼 벤처기업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한 이후 엔젤투자 규모가 급증함
    - 개인투자자는 소득공제와 더불어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동시에 적용되는바, 법인투자자에 대해서도 세수여건 및 세제지원의 효과를 보아가면서 점차 혜택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17년부터 시행예정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시 세액공제」 규정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이 ‘중간 규모의 벤처투자자’ 역할을 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음
    - 실행방안으로 벤처기업의 업력 및 투자규모에 따라 세액공제율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라. 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 보완

- 넷째, 벤처기업이 가진 독자적인 신기술과 아이디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창업벤처기업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의 차별화를 통해 벤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내용에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 기술력이 높은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책으로 한계가 있음

- 수도권 소재기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만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벤처인증이 세부담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함
- 그러나 비수도권 소재기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세제지원을 위해 벤처인증을 획득할 필요성이 낮음
- 수도권 소재기업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소재기업에 대해 3년간 75%, 2년간 50%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마. 중기 이후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 벤처기업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창업 후 3년이 지나 벤처인증을 받거나 벤처인증을 갱신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부족하다는 점임
  - 감면기간 중에는 벤처인증을 유지할 유인이 있으나, 감면기간 종료 후에는 벤처인증에 대한 추가적 세제혜택이 부족함
    - 창업 후 3년 내 벤처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로부터 5년 내 이익을 실현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개발과 상품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기업들은 조세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움
  - 벤처인증 갱신 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투자세액공제나 R&D제 등에 있어 일반 중소기업보다 벤처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바. ICT 산업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ICT 산업에 속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이 예상보다 적어 추가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외감기업 중 ICT기업의 비중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ICT기업의 감면 개시시점을 다른 사업에 비해 늦추어주거나 감면율을 높여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사. 벤처기업 구조조정 지원의 실효성 제고

- 벤처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운영 중이나 감면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므로,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를 분석하여 규정을 흡수·통합하여 세제의 복잡성을 줄이는 것이 납세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i) 혜택에 비해 과도한 과세이연 요건 및 사후관리 규정 ii) 대체적 활용이 가능한 보다 범용적 구조조정세제의 존재 iii) 해당 조항에 대한 납세자의 낮은 인지도임
  
-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은 향후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의 정책방향 결정 시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부당국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정책방향 설계 시,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효과성 및 실효성을 갖춘 조세지원제도를 정립함으로써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참 고 문 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국회예산정책처, 『벤처기업지원사업 평가』, 2010. 9.
- 금융위원회 신성장금융팀,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2013. 9.
- 기획재정부, 『간추린 개정세법』, 각 연도.
- 김건우·서병철, 『벤처캐피탈의 자금투자가 벤처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원, 2010.
- 김기완, 『벤처기업의 성장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확인유형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11. 12.
- 김동우, 『EIF(유럽투자펀드)를 통해 본 정부주도 벤처캐피탈의 명과 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4.
- 김동훈,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 분석」, 『재무와회계정보저널』, 2012.
- 김세중, 『벤처기업 관련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08. 12.
- 김영훈, 『PSM방식을 통한 벤처캐피탈 투자의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 김영훈·오승환·이민혁, 「벤처캐피탈 투자가 기업의 성장성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가?」, 『생산성논집』, 2013.
- 김영훈·임소진, 『정부와 민간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재무성과 비교』, 중소기업연구원, 2015.
- 김재진,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3.
- 김재진·김진수,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2. 12.
- 김재진·양동우, 『벤처캐피탈 투자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
- 김재진·홍범교,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11.

- \_\_\_\_\_, 『창업·벤처투자 지원세제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11.
- 서병철·김건우, 『벤처캐피탈의 자금투자 유형별 효과 분석』,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원, 2011.
- 성하혁·오승환·오인하·이정동,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부 출자지원의 유효성 분석』, 『중소기업연구』, Vol. 36, No. 3, 2014. 09.
- 송원근 외, 『중소기업 모태펀드 운용실태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4.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 『여신금융』, 2016. 5.
- 이인찬·이경원·김성현·이경형, 『벤처 재도약을 위한 시장과 정부의 역할』,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2002.
- 이형수·김갑순, 『내재적 조세를 이용한 벤처기업 조세지원정책의 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10.
- 임길환·정유훈, 『벤처·창업 지원 정책의 주요쟁점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14. 11.
- 조성숙·박정서, 「국내 벤처캐피탈회사의 운용행태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성과분석 연구」, 『벤처경영연구』, 2009. 5.
- 조성숙·이희우, 「벤처캐피탈 투자가 신규상장기업의 투명성 제고에 미치는 영향」, 『한국 콘텐츠학회논문지』, 2012.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각 연도.
-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산업연구원, 『한국 벤처정책 20년사』, 2015. 10.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6 KVCA Yearbook』, 2016.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16. 6.
- Brander, J. A, Q. Du, and T. F. Hellmann “The effects of Government-Sponsored Venture Capital: International Evidence,” NBER Working Paper, 16521, 2010.
- European Commission, “Assessing the Potential for EU Investment in Venture Capital and Other Risk Capital Fund of Funds,” Centre for Strategy and Evaluation Services, Research and Innovation, 2015. 10.
-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and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orea’s Economy,” Vol.30, 2015.
- Link, Albert N., and Jamie R. Link, *Government as Entrepreneur*,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OECD, Policies for Seed and Early Stage Finance: Summary of the 2012 OECD Financing Questionnaire, 2013.

\_\_\_\_\_,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5.

Y. Alperovych, G. Hubner and F. Lobet, “How does governmental versus private venture capital backing affect a firm’s efficiency? Evidence from Belgium,”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01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벤처기업협회, <http://www.venture.or.kr>

벤처캐피탈협회, <http://www.kvca.or.kr>

벤처확인·공시시스템 벤처인, <http://www.venturein.or.kr>

여신금융협회, <http://www.crefia.or.kr>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m-revenue-customs>

코넬 법과대학 법령자료,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

코트라 해외비즈니스포털, <http://tradedoctor.kotra.or.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톰슨 로이터 법령자료, A Thomson Reuters Legal Solution, <http://global.practical-law.com>

